

2011

청소년 백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발간사

정부는 1965년「청소년 백서」를 처음 발행한 후, 46년 동안 해마다 청소년 정책의 핵심내용을 담은「청소년 백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청소년 백서」는 복지, 활동, 안전, 교육 등 여러 분야별로 청소년 정책 현황과 전망, 각종 통계 등을 담아 청소년 분야 전체를 조망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을 위해 해마다 더 발전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지난해 수정된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함께 2011년 청소년정책의 핵심과제였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주요 내용으로 건전 인터넷 문화조성,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한 해 동안의 청소년 정책의 성과와 통계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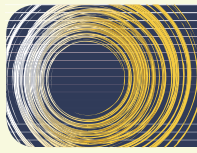
정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2011년도 「청소년 백서」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청소년 정책수립과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건전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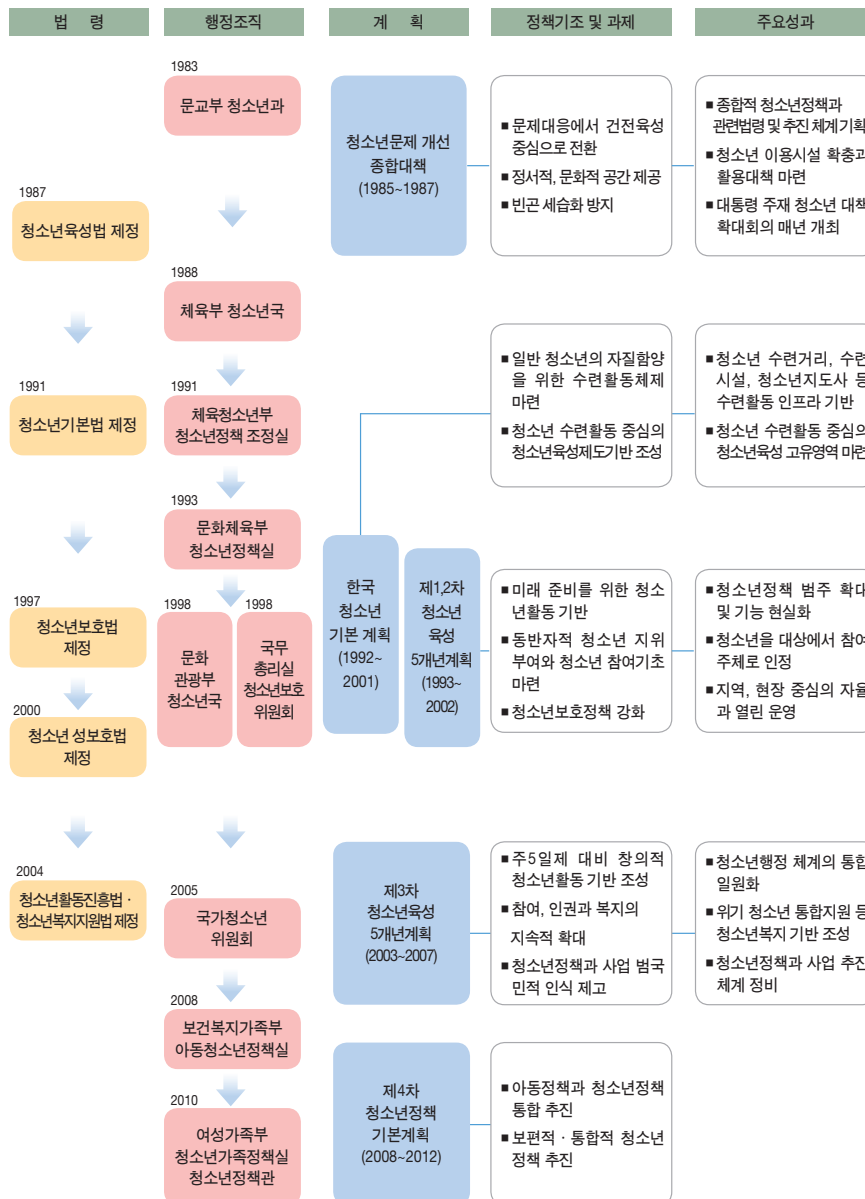
여성가족부장관 김 금 래



통계로 보는 청소년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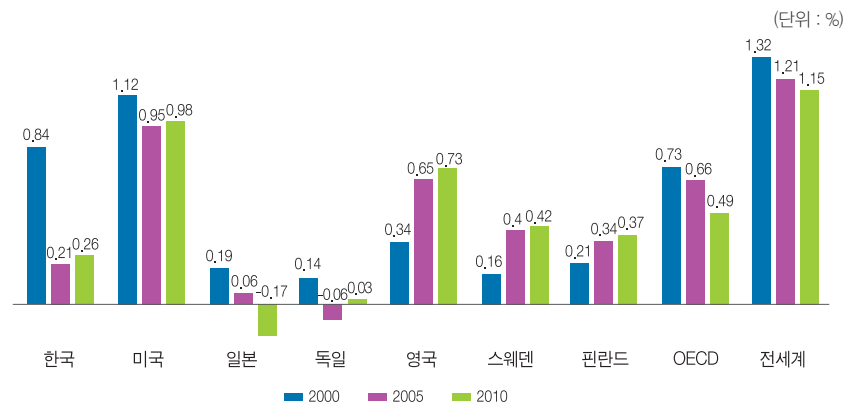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 · 외 주요 지표]

1. 국제비교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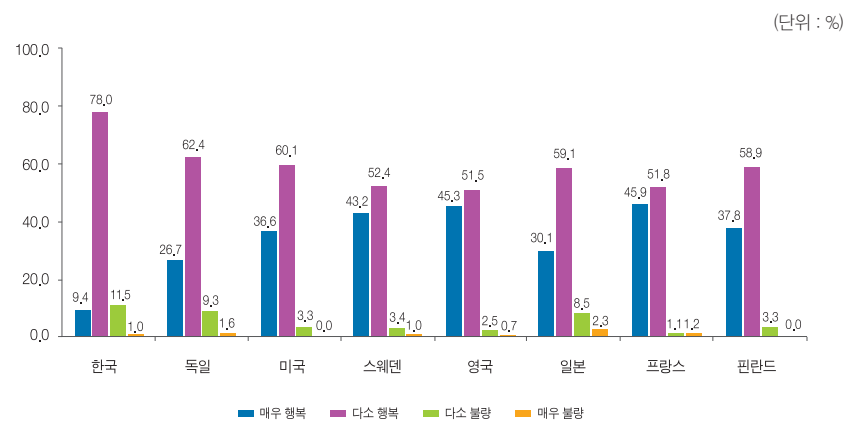
(1) 인구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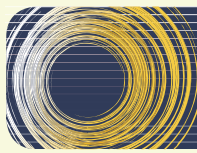
주 : 인구성장률 = (당해년도 연앙인구/전년도 연앙인구 - 1) × 100

자료 : OECD(2010), Factbook 2010

(2) 국가별 주관적 행복감(15~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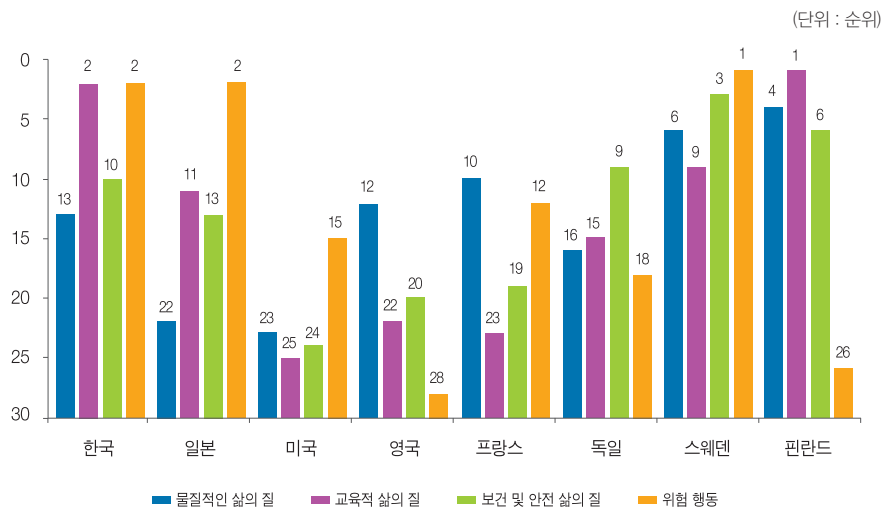
출처 : The World Values Survey, 「Values Survey Databank」, 2011.



통계로 보는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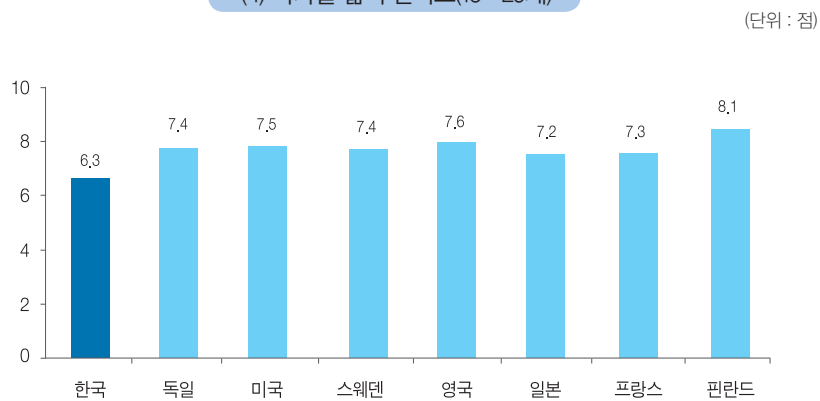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3) 30개 OECD 회원국 간의 청소년 삶의 질 국제비교



자료 : OECD 청소년 삶의 질(Doing Better for Children) 보고서(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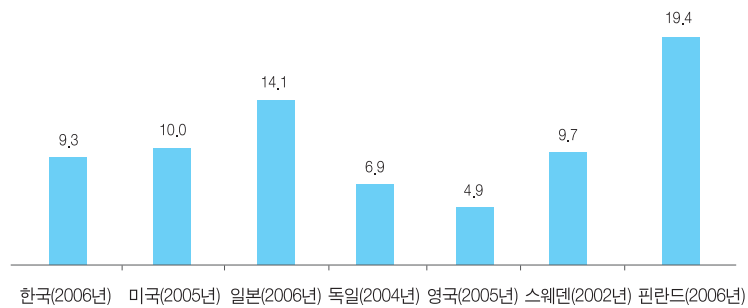
(4) 국가별 삶의 만족도(15~29세)



출처 : The World Values Survey, 「Values Survey Databank」, 2011.

(5) 청소년(15~24세) 자살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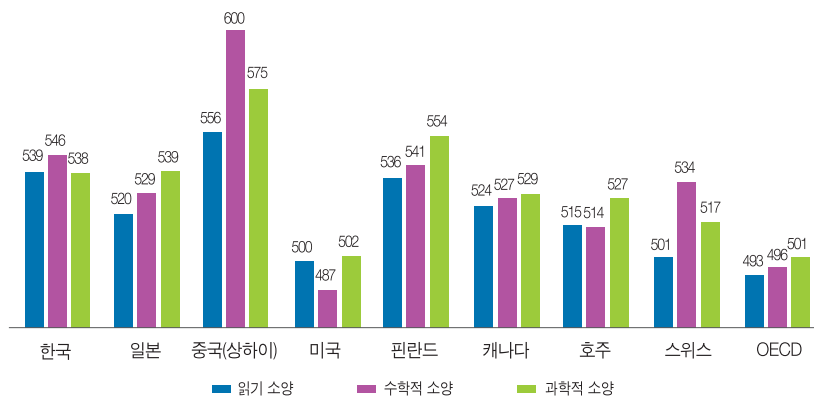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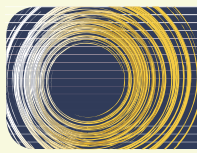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6) 2009 PISA 결과 국제 비교

(단위 : 평균점수)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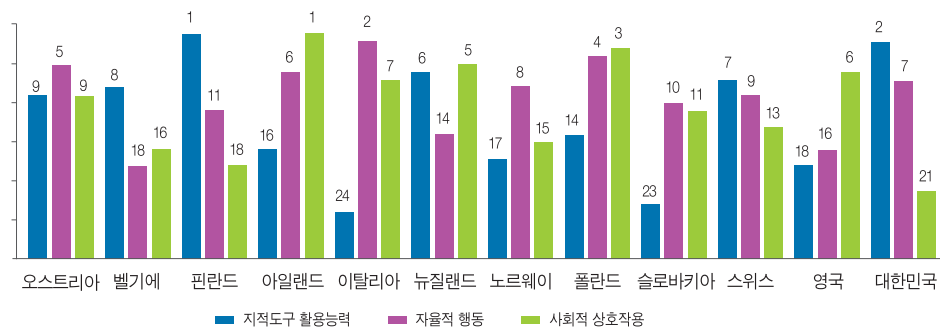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청소년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7) 26개 OECD 회원국 간의 핵심역량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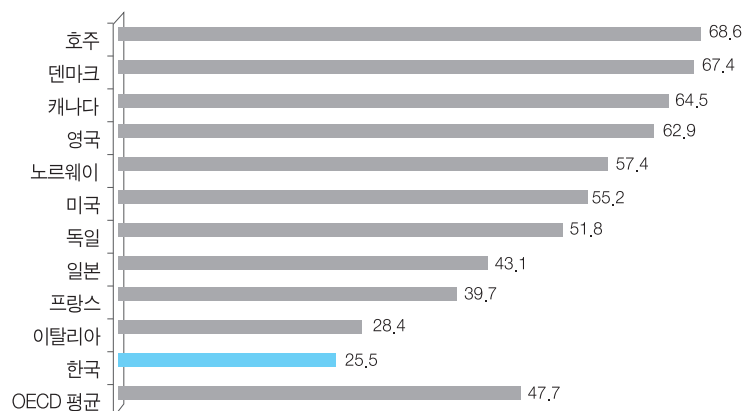
(단위 : 순위)



자료 : 청소년 생애 핵심역량개발 및 추진방안연구 III (김기현, 장근영), 2010.

(8) 2010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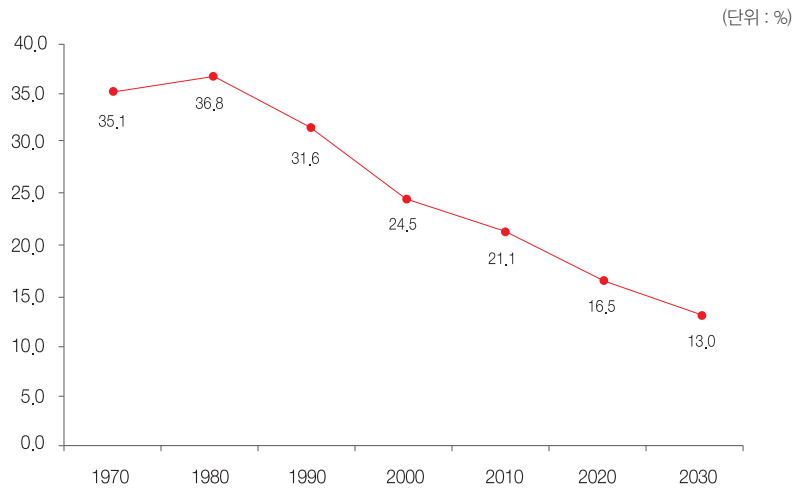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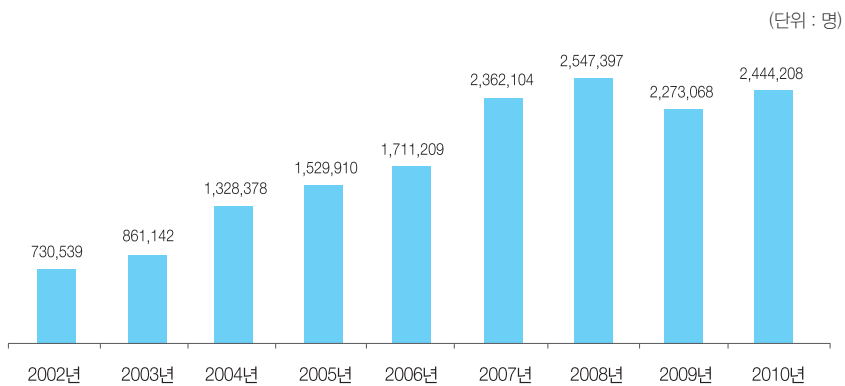
2. 국내 지표

(1) 청소년 인구 증감 추이(1970-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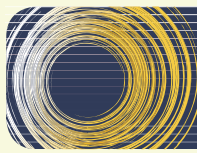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11

(2)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교육·연수포함)인원



자료 : 여성가족부(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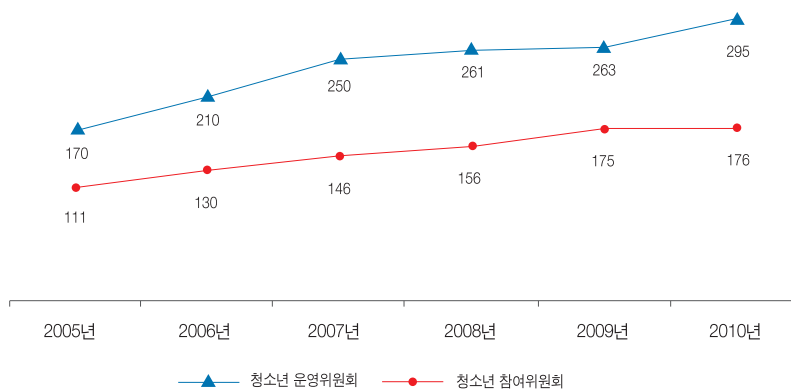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청소년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3)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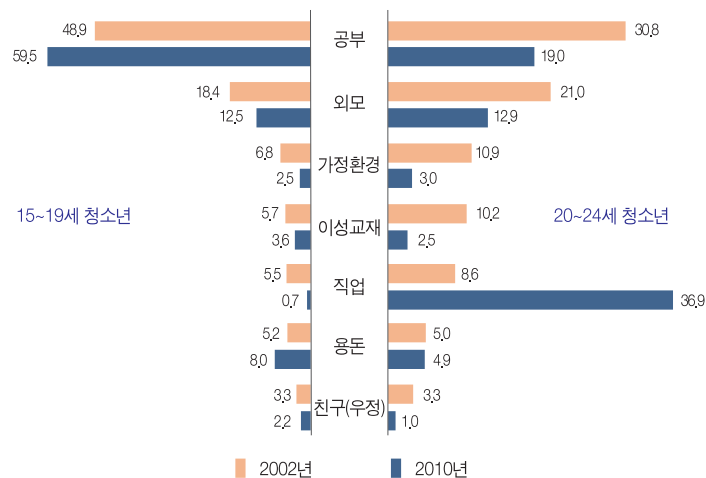
(단위 : 개소)



자료 : 여성가족부(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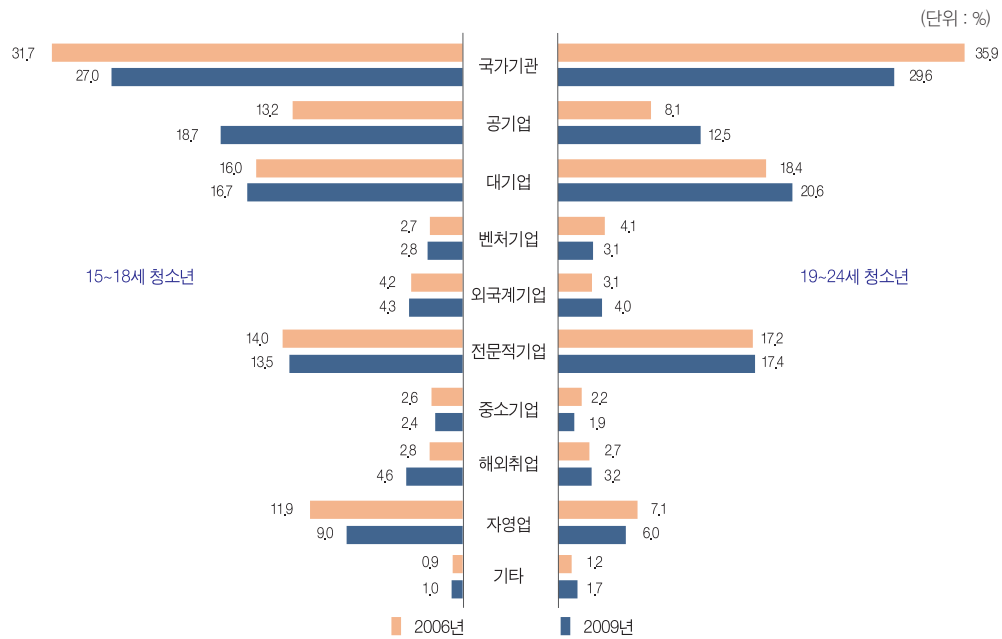
(4) 청소년들의 고민거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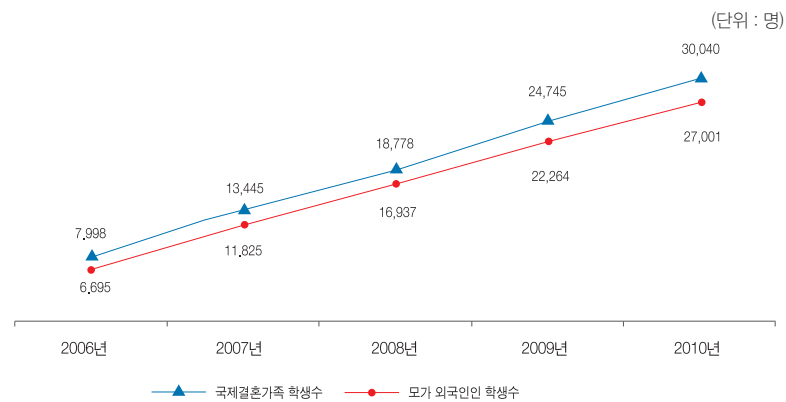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02, 2010)

(5)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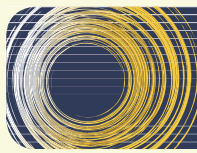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06, 2009)

(6)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생 수 추이



자료 : 통계청(2011), KOSIS.



통계로 보는 청소년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7)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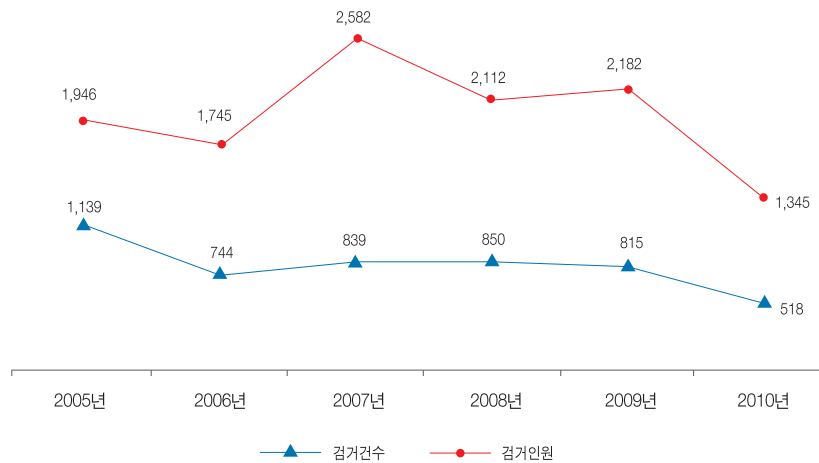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질병관리본부 ·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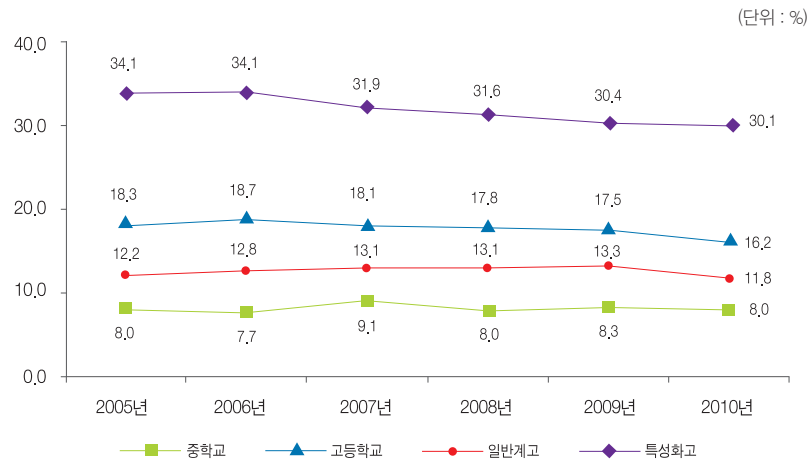
(8) 청소년 성매매 검거 건수 및 검거인원 추이

(단위 : 건, 명)



자료 : 경찰청(2011)

(9) 교급별 현재 흡연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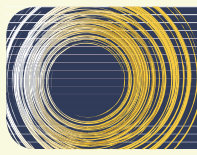


주 : 2005년도 조사대상은 중1~고2까지이며, 2006년부터 고3 학생을 포함하였음.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질병관리본부 ·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년도.

(10) 교급별 현재 음주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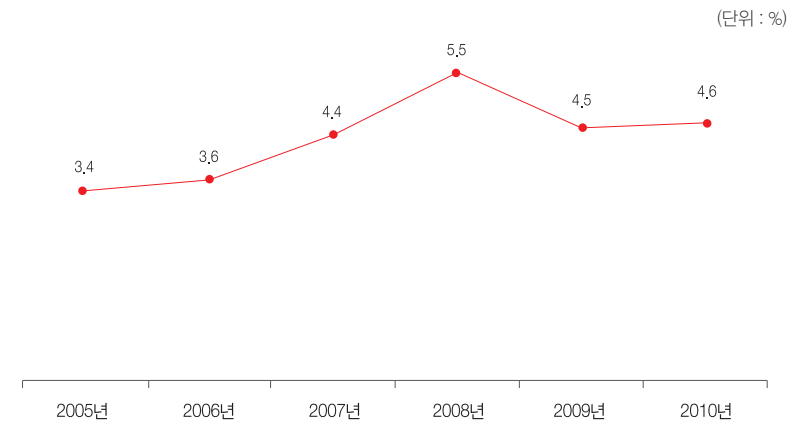
주 : 2005년도 조사대상은 중1~고2까지이며, 2006년부터 고3 학생을 포함하였음.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질병관리본부 ·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년도.



통계로 보는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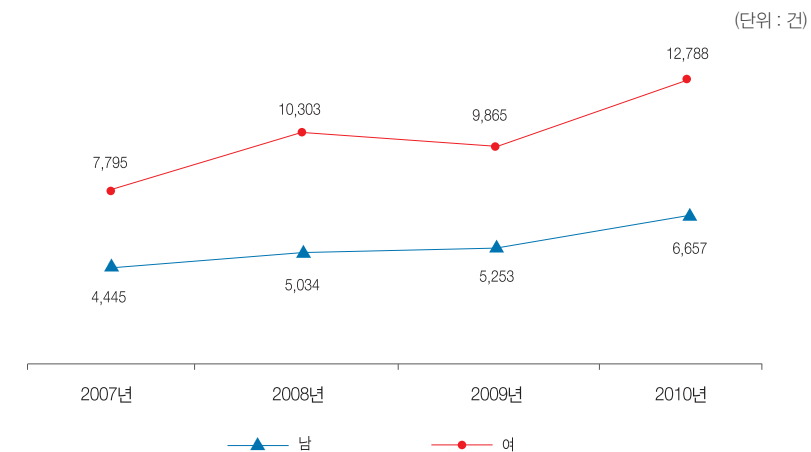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11) 전체범죄대비 소년범죄의 비율 추이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2011)

(12) 청소년(14~19세) 가출 신고 추이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2011)

본문 Contents I

1부 총 론

제1장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	2
제2장 청소년 정책추진 현황	4
1. 청소년정책 참여기반 강화	4
2. 청소년 활동 활성화	5
3.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확대	7
4.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7
5.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8
제3장 세계의 청소년 정책의 흐름	10
1.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10
2. 유럽지역의 아동·청소년정책	16
3. 미주 및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의 아동·청소년정책	24

2부 청소년 인구 및 가족

제1장 청소년 인구현황과 전망	36
1. 청소년 인구 현황	36
2. 청소년 인구 전망	37
3. 청소년 인구동태	39
제2장 가족구성 및 변동	47
1. 가족구성 현황	47
2. 가구수 현황	48
3. 가구의 세대구성	50
제3장 가족관계	52
1. 부모-자녀 간 대화	52
2. 부모-자녀 간 이해도	54
3. 가족이 함께한 여가시간	55

3부 청소년 권리·참여

제1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60

I 본문 Contents

1. 청소년 권리 · 참여 정책의 형성	60
제2장 청소년 권리 · 참여 정책	61
1.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61
2.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66
제3장 청소년 주요 행사	73
1. 청소년 달 행사	73
2. 청소년지도자 대회	77
3. 푸른 성장 대상(大賞)	79

4부 청소년활동

제1장 청소년활동 지원	82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82
2. 청소년문화활동	83
3.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86
4.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Award)	90
5. 창의적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92
제2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96
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도입 배경	96
2.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추진현황	96
제3장 청소년 교류활동	100
1. 청소년 국제교류	100
2.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104
3. 청소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 행사 지원	107

5부 청소년 복지

제1장 취약계층 청소년 현황	112
1. 아동빈곤율 현황	112
2. 한부모 가구 현황	117
3. 다문화 가족 현황	119

본문 Contents I

4. 요보호아동 현황	121
5. 소년·소녀가정 세대 현황	123
제2장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126
1. 가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126
2.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130
3. 다문화청소년 지원	132
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34
5. 지역아동센터운영	137
6. 드림스타트 사업	140
7.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142
8.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144
9. 아동 급식 지원	149
제3장 청소년 상담활동	151
1. 상담서비스	151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159
3.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162
4.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163
5.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두드림존』 사업	164
제4장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167
1.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167
2. 청소년의 영양과 비만	172
3.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175
4. 청소년의 정신건강	180
5. 청소년의 건강대책	183

6부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제1장 청소년 안전	190
1. 학교폭력대책	190
2. 아동학대 대책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191
3. 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196
4.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199
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206

I 본문 Contents

1. 청소년 유해악물예방 기반 구축	206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212
제3장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220
1.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	220
2. 청소년의 바람직한 매체활용 능력 제고	224
제4장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230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대응	230
2.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 지원	235
제5장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238
1. 성매매 대상청소년의 선도보호(재범방지교육)	238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	242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246
4.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	248

7부 청소년의 교육

제1장 학교교육 현황	254
1. 학령인구	254
2. 학생인구 및 학교수	255
3. 조기유학 현황	258
4.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259
5. 진학률	260
6. 교육재정	261
제2장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265
1.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265
2.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	269
제3장 교육복지정책	271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271
2. 방과후학교	278
3. 농산어촌 지역 교육	284
4.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290
5.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293

본문 Contents I

8부 청소년과 노동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302
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302
2.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305
3. 청소년의 취업 현황	306
4. 청소년의 실업 현황	308
5. 임금 및 노동시간	311
6. 청소년 아르바이트	314
제2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316
1.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316
2. 고등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316
3. 특수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 상황	318
4. 대학 졸업자 취업 상황	319
제3장 청소년 직업 · 진로정책	321
1. 청소년고용촉진대책	321
2.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327

9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제1장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현황	332
1. 청소년 비행의 동향	332
2.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335
3. 학생범죄의 동향	337
제2장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처리	338
1. 청소년 권리 · 참여 정책의 형성	338
2. 비행 청소년의 사법 처리	350
3.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360

10부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제1장 청소년 시설	380

I 본문 Contents

1. 청소년 활동시설	380
2. 청소년 보호·복지시설	386
제2장 청소년지도자	389
1. 청소년지도자의 정의 및 유형	389
2. 청소년지도자	390
3. 청소년상담사	395
제3장 청소년 단체	400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400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402
제4장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404
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404
2. 청소년 관련업무 추진기관	410
3. 청소년관련 시·도 행정조직	414
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415
5. 정부 산하기관	416
제5장 청소년관련 연구·개발기관	419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19
2. 청소년관련 학과 및 민간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423
3.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425
제6장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427
1. 청소년정책 재정 현황	427
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및 지원현황	428

부 록 자료편

표 Contents I

〈표 1-3-1〉 연령집단별 주요 정책지원	15
〈표 2-1-1〉 2011년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구	36
〈표 2-1-2〉 총인구와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38
〈표 2-1-3〉 연도별 인구동태 추이	39
〈표 2-1-4〉 연도별 인구동태율 추이	40
〈표 2-1-5〉 출생아수 및 조출생률	41
〈표 2-1-6〉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42
〈표 2-1-7〉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43
〈표 2-1-8〉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수 및 구성비	44
〈표 2-1-9〉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45
〈표 2-1-10〉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46
〈표 2-2-1〉 연도별 가구수 및 가구원수	47
〈표 2-2-2〉 가구유형별 가구수 현황	48
〈표 2-2-3〉 가구의 가구원수 현황	50
〈표 2-2-4〉 세대구성유형별 가구수 현황	51
〈표 2-3-1〉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와의 대화 충분성	52
〈표 2-3-2〉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와의 대화 충분성	53
〈표 2-3-3〉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도	54
〈표 2-3-4〉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도	55
〈표 2-3-5〉 가족이 함께한 여가활동	56
〈표 2-3-6〉 지난 6개월간 평일 여가시간	57
〈표 3-2-1〉 시·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현황	67
〈표 3-2-2〉 시·도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68
〈표 3-2-3〉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선정 및 정책과제 제안 절차	68
〈표 3-2-4〉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과제 제안 현황	69
〈표 3-2-5〉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71
〈표 3-2-6〉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72
〈표 3-3-1〉 청소년 유공자 포상 현황	73
〈표 3-3-2〉 청소년 주간 주요 행사내용	74
〈표 3-3-3〉 청소년 주간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행사	75
〈표 3-3-4〉 역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현황	76
〈표 3-3-5〉 역대 청소년지도자대회 현황	78
〈표 3-3-6〉 푸른성장대상 역대수상자 현황	79
〈표 4-1-1〉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83
〈표 4-1-2〉 전국 청소년 동아리 지원 현황	84

I 표 Contents

〈표 4-1-3〉 전국 시·도별 청소년문화존 지원현황	85
〈표 4-1-4〉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	87
〈표 4-1-5〉 연도별, 기관 유형별 인증수련활동 현황	88
〈표 4-1-6〉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91
〈표 4-1-7〉 포상제 운영 현황	92
〈표 4-2-1〉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현황	97
〈표 4-2-2〉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 등록 회원 수(누적)	98
〈표 4-2-3〉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 등록(가입) 터전 수(누적)	98
〈표 4-2-4〉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수(누적)	98
〈표 4-3-1〉 청소년교류 약정체결국 현황	100
〈표 4-3-2〉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 체결 및 교류 현황	101
〈표 4-3-3〉 한·중 특별 교류 현황	103
〈표 4-3-4〉 한·중·일 우호 만남 현황	104
〈표 4-3-5〉 2010년 청소년 해외체험 활동지원 프로그램 현황	105
〈표 4-3-6〉 2010년 해외테마체험 프로그램	106
〈표 4-3-7〉 2010년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107
〈표 4-3-8〉 2010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108
〈표 5-1-1〉 아동빈곤율 변화추이(절대빈곤율)	112
〈표 5-1-2〉 아동빈곤율 변화추이(상대빈곤율)	114
〈표 5-1-3〉 아동빈곤율 국제비교(중위소득 50%)	116
〈표 5-1-4〉 전국 한부모가족 현황	117
〈표 5-1-5〉 한부모가구 형성요인별 현황	118
〈표 5-1-6〉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118
〈표 5-1-7〉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119
〈표 5-1-8〉 다문화가족 자녀연령별 현황	120
〈표 5-1-9〉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재학 현황	121
〈표 5-1-10〉 요보호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122
〈표 5-1-11〉 요보호아동 보호현황	123
〈표 5-1-12〉 소년·소녀가정 세대현황	124
〈표 5-2-1〉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	127
〈표 5-2-2〉 학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용	127
〈표 5-2-3〉 청소년 쉼터의 발전단계	128
〈표 5-2-4〉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129
〈표 5-2-5〉 쉼터의 종류 및 기능	129
〈표 5-2-6〉 청소년쉼터 이용현황	130

표 Contents I

〈표 5-2-7〉 단계별 지원 체계	131
〈표 5-2-8〉 북한이탈청소년 연도별 입국현황	132
〈표 5-2-9〉 북한이탈청소년 재학현황	132
〈표 5-2-10〉 북한이탈 · 다문화 전문가양성교육 수료자 수	133
〈표 5-2-11〉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개요	135
〈표 5-2-12〉 지역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	136
〈표 5-2-13〉 운영형태별 운영현황	136
〈표 5-2-14〉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내용	137
〈표 5-2-15〉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 현황	138
〈표 5-2-1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연령별 현황	138
〈표 5-2-17〉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소득계층별 현황	139
〈표 5-2-1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현황	139
〈표 5-2-19〉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140
〈표 5-2-20〉 디딤씨앗통장 저축 현황	143
〈표 5-2-21〉 시설보호 아동 현황	144
〈표 5-2-22〉 퇴소 아동 진학률	146
〈표 5-2-23〉 국내 입양 현황	147
〈표 5-2-24〉 가정위탁보호 현황	147
〈표 5-2-25〉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현황	148
〈표 5-2-26〉 정부지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149
〈표 5-2-27〉 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150
〈표 5-3-1〉 2010년 한국청소년상담원 주요 교육연수 실적	153
〈표 5-3-2〉 상담방법 및 대상별 상담실적	154
〈표 5-3-3〉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154
〈표 5-3-4〉 2010년 시 · 도 및 시 · 군 · 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현황	156
〈표 5-3-5〉 2010년 시 · 도 및 시 · 군 · 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성별 · 대상별 상담실적	158
〈표 5-3-6〉 2010년 시 · 도 및 시 · 군 · 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159
〈표 5-3-7〉 CYS-Net 서비스 이용인원	161
〈표 5-3-8〉 CYS-Net 서비스 이용건수	161
〈표 5-3-9〉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주요 실적	162
〈표 5-4-1〉 성별 · 연령별 신장의 추이	167
〈표 5-4-2〉 성별 · 연령별 체중의 추이	169
〈표 5-4-3〉 성별 · 연령별 50m달리기의 추이	170
〈표 5-4-4〉 성별 · 연령별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추이	170
〈표 5-4-5〉 성별 · 연령별 제자리멀리뛰기의 추이	171

I 표 Contents

〈표 5-4-6〉 성별 · 연령별 팔굽혀펴기/매달리기의 추이	171
〈표 5-4-7〉 성별 · 연령별 윗몸일으키기의 추이	171
〈표 5-4-8〉 성별 · 연령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추이	172
〈표 5-4-9〉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분율	172
〈표 5-4-10〉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분율	173
〈표 5-4-11〉 영양소 섭취부족 및 에너지/지방 섭취과잉 대상자 분율	174
〈표 5-4-12〉 끼니별 식사 여부에 따른 결식률 (1세 이상)	174
〈표 5-4-13〉 흡연 관련 지표	177
〈표 5-4-14〉 음주 관련 지표	179
〈표 5-4-15〉 학생건강증진대책 추진과제	184
〈표 5-4-16〉 청소년 대상 국민건강증진 목표(Health Plan 2010)	185
〈표 6-1-1〉 아동학대 사례유형	192
〈표 6-1-2〉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93
〈표 6-1-3〉 아동학대 유형별 실태	196
〈표 6-1-4〉 실종 아동 및 장애인 발생 및 가족복귀 현황(경찰청 182센터)	199
〈표 6-1-5〉 무연고아동 등 신상카드 D/B 구축현황(보건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199
〈표 6-1-6〉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202
〈표 6-1-7〉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관계부처 주요 정책	203
〈표 6-2-1〉 청소년 최근 1년간 음주율(총괄)	207
〈표 6-2-2〉 청소년 음주실태	207
〈표 6-2-3〉 최초 음주시기	207
〈표 6-2-4〉 청소년 흡연율(총괄)	208
〈표 6-2-5〉 청소년 흡연실태	208
〈표 6-2-6〉 최초 흡연 시기	208
〈표 6-2-7〉 관계부처의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 주요 내용	210
〈표 6-2-8〉 관계부처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주요 내용	211
〈표 6-2-9〉 청소년유해업소의 수	212
〈표 6-2-10〉 청소년유해업소 현황	212
〈표 6-2-11〉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213
〈표 6-2-12〉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현황	214
〈표 6-2-13〉 청소년통행금지 · 제한구역 현황	215
〈표 6-2-14〉 정화구역 내 각종업소 지역별 현황	217
〈표 6-2-1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218
〈표 6-3-1〉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221
〈표 6-3-2〉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별 결정 · 고시 현황	223

표 Contents I

〈표 6-3-3〉 청소년유해음반 결정·고시 현황	224
〈표 6-3-4〉 만 3~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 현황	225
〈표 6-3-5〉 유아를 위한 미디어교육 교재 구성	225
〈표 6-3-6〉 학령전 아동의 건전매체 이용습관 형성 지원 교육실적	226
〈표 6-3-7〉 인터넷 이용 실태 현황	226
〈표 6-3-8〉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 추진실적	227
〈표 6-3-9〉 초등학교 자녀를 위한 학부모 미디어교육 교재 구성	227
〈표 6-3-10〉 YP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현황	229
〈표 6-5-1〉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238
〈표 6-5-2〉 청소년 성매매 최초 성립장소 유형	239
〈표 6-5-3〉 교육과정 및 운영기관	240
〈표 6-5-4〉 교육프로그램 구성	241
〈표 6-5-5〉 교육실시현황	241
〈표 6-5-6〉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현황	250
〈표 6-5-7〉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현황	251
〈표 7-1-1〉 학령인구	255
〈표 7-1-2〉 학교급별 학생인구	256
〈표 7-1-3〉 학교급별 학교수	257
〈표 7-1-4〉 교원 1인당 학생수	258
〈표 7-1-5〉 연도별·학교급별 출국 현황	259
〈표 7-1-6〉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259
〈표 7-1-7〉 학교 급별 진학률	261
〈표 7-1-8〉 연도별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 부처 예산	262
〈표 7-1-9〉 GDP대비 교육재정	262
〈표 7-1-10〉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2007)	263
〈표 7-1-11〉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264
〈표 7-2-1〉 PISA 2009 영역별 순위	266
〈표 7-2-2〉 PISA의 평가영역별 순위 및 평균 비교	267
〈표 7-2-3〉 PISA 영역별 성취수준 변화 추이	268
〈표 7-2-4〉 PISA 2009에서 읽기에 대한 학습·심리 척도 분석 결과	268
〈표 7-2-5〉 PISA 2009 읽기 점수에서의 학교 간 및 학교 내 차이	269
〈표 7-2-6〉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269
〈표 7-3-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현황	272
〈표 7-3-2〉 방과후학교의 정책 목표	279
〈표 7-3-3〉 방과후학교의 특징	279

I 표 Contents

〈표 7-3-4〉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280
〈표 7-3-5〉 지역별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280
〈표 7-3-6〉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281
〈표 7-3-7〉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281
〈표 7-3-8〉 대학생 멘토링 운영 현황	282
〈표 7-3-9〉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282
〈표 7-3-10〉 방과후학교 강좌 운영 현황	283
〈표 7-3-11〉 내용별 강좌현황	283
〈표 7-3-12〉 방과후학교 강사 구성 현황	284
〈표 7-3-13〉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정 현황	286
〈표 7-3-14〉 농산어촌 전원학교 연도별 사업비	286
〈표 7-3-15〉 농 · 산 · 어촌 전원학교 학교급별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287
〈표 7-3-16〉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지정 현황	288
〈표 7-3-17〉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사업비 지원	288
〈표 7-3-18〉 농 · 산 · 어촌 연중돌봄학교 학교급별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289
〈표 7-3-19〉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294
〈표 7-3-20〉 2010년 탈북청소년 수학 현황	294
〈표 7-3-21〉 탈북청소년 정규학교 재학생 수	295
〈표 7-3-22〉 탈북청소년 중도탈락 현황(최근 3년간)	299
〈표 8-1-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302
〈표 8-1-2〉 연령계층별 · 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03
〈표 8-1-3〉 청소년(15-24세)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별 현황 추이	305
〈표 8-1-4〉 연령계층별 · 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307
〈표 8-1-5〉 청소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309
〈표 8-1-6〉 연령계층별 · 성별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310
〈표 8-1-7〉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 : 정액 및 초과급여	312
〈표 8-1-8〉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 : 정액 및 초과급여	312
〈표 8-1-9〉 연령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313
〈표 8-1-10〉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314
〈표 8-2-1〉 2010년 중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상황	316
〈표 8-2-2〉 2010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317
〈표 8-2-3〉 2010년 특수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318
〈표 8-2-4〉 2010년 대학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319
〈표 8-2-5〉 2010년 전문대 신규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상황과 취업률	320
〈표 8-2-6〉 2010년 일반대 신규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상황과 취업률	320

표 Contents I

〈표 8-3-1〉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활용 현황	323
〈표 8-3-2〉 성인용 직업심리검사 활용 현황	324
〈표 9-1-1〉 전체범죄인원 중 소년범죄인원의 점유비율	332
〈표 9-1-2〉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333
〈표 9-1-3〉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334
〈표 9-1-4〉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	334
〈표 9-1-5〉 소년범죄의 성별 현황	335
〈표 9-1-6〉 청소년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336
〈표 9-1-7〉 청소년마약범죄의 마약류별 현황	336
〈표 9-1-8〉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337
〈표 9-2-1〉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실적	338
〈표 9-2-2〉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2010년)	339
〈표 9-2-3〉 청소년 상담교실 운영실적	340
〈표 9-2-4〉 사랑의 교실 운영실적	340
〈표 9-2-5〉 명예경찰 소년단 현황	341
〈표 9-2-6〉 명예경찰 소년단 활동실적	341
〈표 9-2-7〉 우범소년 결연사업 추진실적	342
〈표 9-2-8〉 학교담당감사제 활동실적	343
〈표 9-2-9〉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344
〈표 9-2-10〉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345
〈표 9-2-1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임무	346
〈표 9-2-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운영실적 현황	347
〈표 9-2-13〉 대안교육 실시현황	348
〈표 9-2-14〉 청소년심리검사실 운영 현황	349
〈표 9-2-15〉 보호자교육 실적	350
〈표 9-2-16〉 소년범죄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연도별 운영 현황	351
〈표 9-2-17〉 소년범죄 처리 현황	352
〈표 9-2-18〉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현황	353
〈표 9-2-19〉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분류심사 실시현황	355
〈표 9-2-20〉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조사현황	356
〈표 9-2-21〉 소년보호사건 접수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	357
〈표 9-2-22〉 소년보호사건 처리상황	358
〈표 9-2-23〉 제1심 소년형사사건 재판현황	359
〈표 9-2-24〉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수용기간	362
〈표 9-2-25〉 보호소년 수용현황	363

I 표 Contents

〈표 9-2-26〉 소년원 학생 자격 취득 현황	363
〈표 9-2-27〉 소년원학생 취업 현황	364
〈표 9-2-28〉 소년원학생 진학 현황	364
〈표 9-2-29〉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365
〈표 9-2-30〉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	366
〈표 9-2-31〉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367
〈표 9-2-32〉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368
〈표 9-2-33〉 소년수형자 형명 · 형기별 인원	369
〈표 9-2-34〉 소년교도소 학교교육 현황	370
〈표 9-2-35〉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370
〈표 9-2-36〉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접수 추이	372
〈표 9-2-37〉 청소년대상자 보호관찰성적에 따른 조치현황	373
〈표 9-2-38〉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374
〈표 9-2-39〉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375
〈표 9-2-40〉 청소년대상자 판결(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접수실적	376
〈표 10-1-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381
〈표 10-1-2〉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382
〈표 10-2-1〉 청소년 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390
〈표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391
〈표 10-2-3〉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393
〈표 10-2-4〉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394
〈표 10-2-5〉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395
〈표 10-2-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	397
〈표 10-2-7〉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398
〈표 10-2-8〉 청소년상담사 양성현황	398
〈표 10-2-9〉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현황	399
〈표 10-4-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정원현황	408
〈표 10-4-2〉 청소년정책의 변천	408
〈표 10-4-3〉 부처별 청소년 관련 업무 현황	410
〈표 10-4-4〉 시 · 도 청소년관련 행정조직 현황	415
〈표 10-4-5〉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성격	416
〈표 10-5-1〉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회원현황	426
〈표 10-6-1〉 연도별 청소년예산	427
〈표 10-6-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내역	429

그림 Contents I

[그림 1-1-1]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의 청소년 정책 개요	3
[그림 3-2-1] 청소년증 발급 과정 절차	71
[그림 4-1-1] 연도별 참여 청소년 변화 추이	89
[그림 4-1-2] 2010년 효과성 측정 결과	89
[그림 4-1-3] 창의적 체험 활동 목표의 체계	93
[그림 4-2-1]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교육·연수포함)인원	99
[그림 5-2-1] 드림스타트 서비스 제공 체계도	141
[그림 5-2-2] 연도별 아동 및 부모 만족도	141
[그림 5-2-3] 드림스타트 서비스 효과(사업 실시-미실시 지역 비교)	142
[그림 5-3-1] 2010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용자 성별 비율	156
[그림 5-3-2]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서비스별 이용자	157
[그림 5-3-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체제	160
[그림 5-3-4]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2010년 월별 이용 실적	163
[그림 5-3-5]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구조	165
[그림 5-3-6] 두드림존 상설시범센터	165
[그림 5-4-1] 청소년의 비만율(중1~고3)	175
[그림 5-4-2] 학년별 평생 흡연 경험률	176
[그림 5-4-3] 학년별 현재 흡연율	177
[그림 5-4-4] 학년별 평생 음주 경험률	178
[그림 5-4-5] 학년별 현재 음주율	179
[그림 5-4-6] 학년별 스트레스 인지율	180
[그림 5-4-7] 학년별 우울감 경험률	181
[그림 5-4-8] 학년별 자살 생각률	182
[그림 5-4-9] 학년별 자살 시도율	183
[그림 5-4-10] 어린이먹거리안전종합대책 목표 및 추진과제	186
[그림 6-1-1]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	200
[그림 6-3-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절차도	222
[그림 6-3-2] 청소년보호 YP 프로그램의 개념도	228
[그림 6-4-1] 여성가족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 추진 체계도	231
[그림 6-5-1] 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 배치도	249
[그림 7-1-1] 학령인구	254

I 그림 Contents

[그림 7-1-2] 교원 1인당 학생수	257
[그림 7-1-3] 학교 급별 진학률	260
[그림 7-1-4]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2010)	263
[그림 7-3-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 체제	273
[그림 7-3-2] 학교생활적응	275
[그림 7-3-3] 학업효능감	275
[그림 7-3-4] 자존감	276
[그림 7-3-5] 교사의 정서적 지원	276
[그림 7-3-6] 교사효능감	277
[그림 7-3-7] 방과후학교 변천 과정	278
[그림 7-3-8]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체계	296
[그림 8-1-1] 2010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303
[그림 8-1-2] 2010년 청소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304
[그림 8-1-3] 총 취업자 중 청소년 취업자의 비율	306
[그림 8-1-4] 2010년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307
[그림 8-1-5] 2010년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	308
[그림 8-1-6] 2010년 청소년 실업률 국제비교	309
[그림 8-1-7] 2010년 성별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311
[그림 8-1-8] 지난 1년중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종류	315
[그림 8-2-1] 전문계 신규 졸업자의 진학자와 취업자 비율 추이	317
[그림 10-1-1]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380
[그림 10-2-1] 청소년 지도자의 분류	389
[그림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	392
[그림 10-2-3]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396
[그림 10-4-1] 여성가족부 조직도	405

부록 Contents I

〈부록 1〉 청소년관련 학과[전공] 현황	432
〈부록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회원단체 현황	435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440
〈부록 4〉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	464

제1부

청소년 정책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 가족의 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라는 4대 분야를 정하고, 12대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100대 세부추진과제(신규과제 52개, 개선과제 48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사회참여 활성화와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청소년시설 및 단체를 지원하고, 청소년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했다. 국가간 청소년국제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내실화 있는 프로그램과 해외체험활동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해외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국제행사 개최를 확대했다.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 위기개입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의 맞춤형 서비스와 청소년상담인력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가출, 학업중단 등과 같은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과 재활 서비스를 지원했다. 시의적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응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다양한 지역 협력망을 이용하여 예방, 상담, 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또한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스스로지킴이(YP) 프로그램과 같은 청소년의 유해환경 변별력 제고 및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청소년보호종합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특별점검 강화 및 제도 개선에 적극 지원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래사회 주역이고 국가 경쟁력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1부

총론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제1장 |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
- 제2장 | 청소년 정책 추진 현황
- 제3장 | 세계 청소년 정책의 흐름

제1장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비전 및 방향 아래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이 필요 하여 청소년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 강화,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정책개발 및 성과평가 체계화 등의 정책 기반이 필요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청소년시설 법정목표치 달성비율('09)이 수련관 67%, 문화의집 6%여서 현재 청소년 역량 개발 인프라가 취약하고 18세 이하 비만율이 최근 7년간 1.7배 증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08)하고 있어서 청소년 심신 약화 추세를 반영하여 청소년 참여·역량강화 환경 조성 및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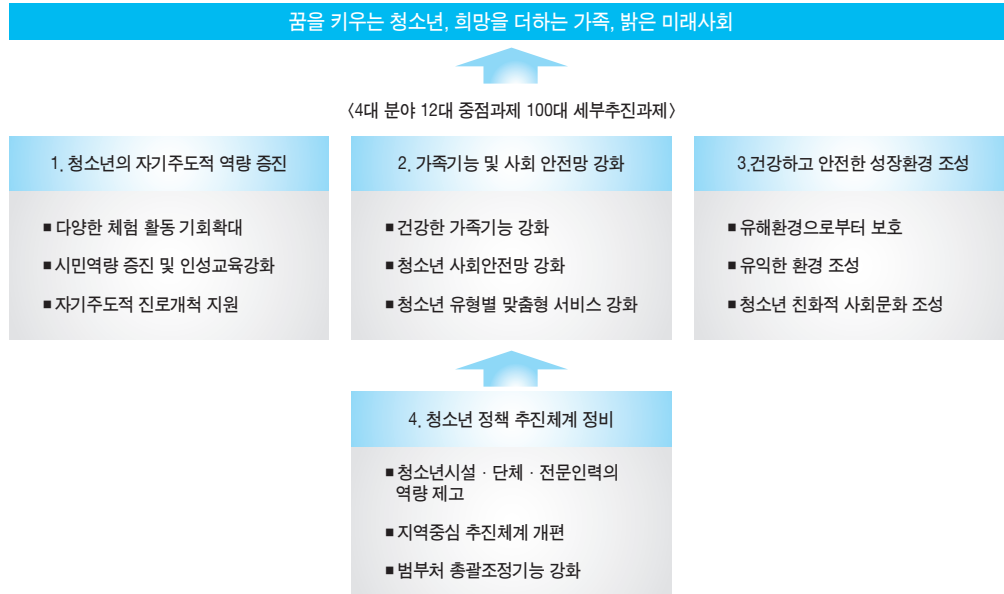
현재 실종·가출청소년(9~19세)이 '07년에 186백명에서 '09년에 223백명(경찰청 신고인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업중단 청소년 역시 '07년에 708백명에서 '09년에 721백명(KEDI통계연보)으로 늘어나고 있는 등 전통적 가족기능 약화로 위기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 중심의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전체 청소년(초5~고3)가운데 80만 명에 해당되는 15.4%가 위기 청소년이고, 3.9%가 자살 계획 및 시도를 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의 32.1%, 여자 청소년의 43.5%가 평상시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위기 청소년 실태조사, 2010). 청소년 유해업소 역시 '07년에 760,386개소였던 것이 '09년에 796,687개소로 늘어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확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작년과 함께 2011년에도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라는 비전으로 [그림 1-1-1]과 같이 정책이 추진되었다. 기본방향은 3가지인데, 첫째는,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역량강화’ 및 ‘기회균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보편적 정책을 실천 펼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을 지원·보호하는 통합적 정책을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청소년, 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추진분야 및 과제는 ①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 ②가족의 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③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④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2대 중

점과제와 이를 토대로 100대 세부추진과제(신규과제 52개, 개선과제 48개)를 설정했다.

[그림 1-1-1]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의 청소년 정책 개요



자료 : 여성가족부(2010)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제2장

청소년 정책추진 현황

1. 청소년정책 참여기반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 청소년정책 수행 역량을 제고하고, 민관협력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정책 개발 활성화 및 성과평가 체계 등 과학적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범부처의 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였는데, 이를 위해 관계부처 실무협의 활성화 등 관계기관 협의기능을 강화하였고, 청소년 언어사용 건전화 방안,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장대책 등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였으며, 청소년관련 정책 이슈 제기 및 정책 현안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추진했다. 또한 지자체 청소년정책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평가지표 포함 등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 문화,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제시하고, 지역 청소년정책 담당자 워크숍, 지역 정책토론회 활성화 등을 통한 지자체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지자체 청소년정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리고 민관협력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단체 간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단체의 전문화·특성화 및 종사자 지도역량을 강화했다. 다음으로 정책 개발 활성화 및 성과평가 체계 등 과학적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정책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정책 시사점 도출 등을 통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성과 지표 개발·적용 및 평가결과 환류체계 구축 등 청소년 정책 성과 평가 기반을 마련했으며, 청소년관련 국가기초통계 정비 및 지속적·체계적 관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특별회의 정비를 통한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을 개선하고 온라인·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청소년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변화프로그램 등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운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달” 행사 등을 통한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지원했다. 먼저, 특별회의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하였는데, 이를 위해 사회지도층 인사로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과제 채택 심의·의결 기능 및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제안과제의 정책반영률 제고 및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또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개선을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선발·구성방법 개선을 통한 대표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했으며, 청소년참여기구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온라인·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청소년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트위터, 스마트폰 등 청소년 친숙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프로그램 등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공모프로그램’을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으로 통합·확대했다. “청소년의 달” 행사 등을 통한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관련단체 등과 연계하고,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소년 주간(5월 23~29일) 행사”를 실시했고,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과 재능 표출 기회 제공을 위한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5월 26~29일, 대전컨벤션센터)”를 개최했으며, “푸른성장대상” 시상 등을 통한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했다.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해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증 제도 내 실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한 편의를 증진하고 청소년 권리 증진을 지원했다. 먼저,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을 위한 홍보를 전개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홍보를 추진했다. 그리고 청소년증 제도 내실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증 관리지침을 수립 및 배포하고, 청소년증 제도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한 청소년증 홍보를 추진했다. 청소년 권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권리 증진 사업 전담기구인 「청소년권리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 권리 관련 실태조사,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사업 등을 수행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대상 청소년 권리교육을 실시했다.

2. 청소년활동 활성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역량개발 지원, 청소년수련시설건립 지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지원 및 청소년 체험활동 기회 확대 등의 정책을 수행하였다. 먼저,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했다. 그래서 학교 밖 생활권 청소년시설 200개소에 154억원을 지원하여 8,400여명의 청소년에게 학습위주 교육이 아닌 다양한 체험활동 위

주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그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2010년 161개소(6,762명), 121억원에서 2011년에는 200개소(8,400명) 154억원으로 확대되었고, 2013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 총 232개소로 그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을 위해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했는데,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와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이 2012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기능보강을 위해 인구규모와 지역현황, 시설별 특성에 맞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되, 생활권의 중·소규모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시설별 준공연도와 시설안전도, 운영상황, 기능보강 내용 및 규모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종류별 3년 주기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2011년에는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292개소)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그리고 2013년에는 청소년문화의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시설 및 단체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 지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 지원, 그리고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먼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해 국립청소년수련원(중앙·평창·고흥)을 위탁·운영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 및 청소년활동 정보를 제공하였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활성화 기반 강화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 및 지원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등을 지원했고 대한민국청소년해외봉사단 파견 등 국내·외 봉사활동을 운영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을 위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1명씩 배치하였고, 청소년지도사들을 위한 다양한 직무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평가 및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했다.

끝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기회확대를 위해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했다. 먼저,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계, 주말공연 및 예술활동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설 청소년 문화·예술·놀이 체험의 장을 운영했고,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활동프로그램공모사업,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사업, 소외계층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을 통해 청소년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했다.

3.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확대

국가 간 청소년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청소년교류 약정국가와 상호 초청(355명), 파견(345명)을 실시하고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사업 청소년 중심 파견단 구성(80% 이상) 및 중국 초청단(500명)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내실화했다. 그리고 해외체험활동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 해외체험프로그램(해외 조사·연수, 국제회의·행사, 해외테마활동, 해외자원봉사)을 지원했다.

또한 국제행사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국제행사 개최를 확대하여 미래를 여는 아시아 청소년 초청 연수, 국제 청소년 광장, 글로벌 프렌드십 캠프, 걸스카우트 국제야영, 동북아 청소년 포럼, 아시아 청소년지도자 초청 연수 등을 실시했다.

4.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 위기개입강화를 위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화 1388 무료화 추진 및 홍보 강화로 대국민 인지도 및 이용률을 제고하여 1388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청소년에게 친숙한 매체 중심의 홍보를 강화했다. 또한 청소년상담인력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강화했는데, 1388 전화수신 요원 및 청소년동반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시 교육이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E-러닝 시스템을 운영하고 특히, 1388 전화수신 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도별 총 22회(1,000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시·도센터의 상시 수퍼비전 체계를 마련했다. 그리고 학업중단·비행 등 중·고위험군, 청소년동반자 사례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쉼터 청소년 사례관리 전담 동반자를 배정(52명) 했다.

가출청소년 조기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출 위기 및 가출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하고, 쉼터 입소 청소년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정서·심리적 안정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청소년쉼터 종합관리 전산망 개선을 통한 통계 및 사례관리 체계화를 추진했고, 학교적응 및 학습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인터넷 학습강좌 무료수강 지원, 기초학습능력 배양프로그램 지원 등을 했다.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진학 및 학업

지원, 생활상담 등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자립지원 프로그램(두드림존) 운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자립지원 체계화를 위한 모형개발, 프로그램 표준화 및 특성화를 제고하고, CYS-Net 전역에 학업중단 청소년 대응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검정고시 대비교실, 학습부진 치료를 위한 학습클리닉, 복교 및 재적응 지원, 취업 및 직업훈련 등을 연계했다.

5.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 심각성을 깨닫고 중독에 대한 시의적 대응을 위해 2011년 청소년 인터넷 중독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 4년과 중학교 1년, 그리고 고등 1년 전체(180만명)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진단 및 중독자를 발굴하였고, 인터넷 중독 상담 및 치료의 전문적이고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진단결과에 맞는 단계별, 특성별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운영으로 중독 예방 및 치료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협력망(청소년상담지원센터 166개소, 건강가족지원센터 137개소, 정신보건센터 156개소, 치료협력병원 179개소 등)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상담 전문 인력 양성과정 운영을 통한 관련분야 전문 상담가를 확보하고 향후 매년 정례적으로 특정 학령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진단·발굴 및 예방, 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상담이 필요한 대상이 2010년에는 초등 4년과 중등 1년이 120만명에서 2011년에는 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에 180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유해 약물·업소·행위 등 생활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강화했는데, 이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 및 업주를 계도하였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음주·흡연예방을 홍보사업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음반 심의제도,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 및 매체업계 자율정화 지원 사업등을 실시했다.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2011년에는 청소년스스로지킴이(YP) 프로그램을 YP 연구학교 45개교, 동아리 230여개를 통해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환경 변별력 제고 및 대응력을 강화하였다. 가정 및 교육현장의 매체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였다. 가정에서 매체이용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미디어교육과 학령전 아동의 건전한 매체

이용 습관 형성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2011년도 이 사업에 초등학교 학부모교육에 4만5천명, 유치원(어린이집) 교사·학부모교육에 6천명이 참여하였다.

청소년보호종합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특별점검 강화 및 제도 개선에 적극 지원하고자 키스방 등 옥외광고물(간판) 특별 점검·단속(1~5월)을 실시하고,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등 영업 형태·실태를 점검(수시)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청소년 불법고용, 약물판매, 유해매체물 등을 점검·단속(수시)했으며,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여 중앙행정기관(9개), 16개 시·도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종합 관리했다.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

제3장

세계 청소년 정책의 흐름

1.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시행은 교육위원회의 하위부서인 교육국에서 담당한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OECD 교육국에서는 6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평생학습의 진흥 및 사회·경제 정책과의 연계 강화이다. 주요내용으로 학습의 사회적 성과를 조사하고 있는데, OECD는 학습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신체 및 정신), 시민참여, 사회통합, 가족 기능 같은 사회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학습의 사회적 성과 사업은 제1단계로 건강과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학습의 성과 평가 및 개선이다. 주요내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교육이 끝나는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적 소양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3년 평가부터 문제해결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업성취도국제비교(PISA)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에 실시했다. PISA는 OECD 회원국 30개국 전부와 28개의 비회원국 등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교육 사업이며, 각국의 교육정책 평가에서도 그 결과가 자주 인용되고 있는 OECD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이다. 또한 International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INES)에서는 향후 자격의 경제적·사회적 성과 측정, 교육기관의 졸업 성과 측정, 학교의 학습 환경에 대한 데이터 개선 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CERI(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에서는 학습의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문해와 수리 및 성인학습과 관련된 학습과학과 두뇌연구의 종합을 시도하고 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교사의 질 향상이다. 주요내용은 학교단위의 효과 증대를 위해 학교장 임용, 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TM(Teachers Matter)의 후속사업으로 학교 리더십의 자질, 역할, 책무성 등에 대한 사업을 제안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INES는

TM에서 도출된 정책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 서베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3년 주기로 실시되며, 매 주기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에 대한 인정, 보상 및 평가, 교장의 리더십, 교사의 수업양태, 신념 및 태도를 조사하게 된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세계 경제에서 고등교육의 역할 제고이다. 주요내용은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국경 간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IMHE(Programme on Institutional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는 리더십 개발 세미나 등을 통해 회원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이다. 주요내용은 교육의 형평성, 특히 장애우, 이민자, 소수민족 등 취약계층의 교육 여건, 학교안전 등이 여기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이다.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에의 효과적 대응과 관련하여 유럽 6개국이 참여하는 YEPP(Youth Empowerment Partnership Programme)을 통해 공공·민간부분이 국가를 초월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취약 청소년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미래 형성이다. 주요내용은 복잡성과 변화로 특징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사고(futures thinking)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래의 학교(Schooling for Tomorrow)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2단계인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분석이 마무리되었고, 제3단계 사업인 Educational Futures Thinking in Action이 추진될 예정이다.

2010년 OECD 연례 교육 보고서(Education at a Glance, 2010)에 따르면 2008~2009년도 경제 위기 기간 동안 OECD 회원국들은 실업률이 상승하고 급속한 기술 발전 및 인구변화로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국가 범위에서의 교육 발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확보해야만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한편 교육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세계적 수준의 교사 확보를 위한 첫 번째 국제 교직 정상회담을 2011년 3월 16~17일에 미국 뉴욕에서 개최했다. 그리고 8월 2일에는 ‘그리스를 위한 교육정책 어드바이스’를 발행하여 그리스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9월 15일에는 2011년 1분기까지 회원국들의 고용 현황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 ‘OECD Employment Outlook 2011’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최근 1년 이상 실직 상태인 장기 실업자와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위한 각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나. 유엔(UN)

유엔총회는 1985년을 “국제청소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청소년의 참여, 발전, 평화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해 왔다. 유엔의 청소년정책은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UN의 세계 청소년행동 프로그램”에 따라 청소년의 교육, 취업, 기아와 빈곤, 건강, 약물남용, 여가, 여자 청소년 등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전개됐다. 하지만 2003년 세계 청소년 보고서에 따라 청소년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세계화를 통한 전 세계 청소년의 네트워크, 인터넷의 보급과 활용을 통한 첨단 정보와 기술, 청소년관련 문제에 대한 저연령화와 HIV감염과 전염, 청소년들의 전쟁참여, 세대 간 문제 등으로 유엔의 관심과 활동의 범위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또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지역, 기타 작은 섬들 등의 청소년들과 시장경제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변화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2011년 1월 30일에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UN은 아동 군인 모집 방지 협약을 체결하여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군사적 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청소년 군인 모집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서약했다. 그리고 3월 28일에는 아프가니스탄 청소년들의 컴퓨터 교육을 지원하여 2011년에는 약 40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신청했다. 7월 25일에는 ‘국제 청소년의 해(International Year of Youth)’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 뉴욕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오늘날 청소년들이 직면한 수많은 문제 및 그들이 보유한 막대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탐색했다. 8월 12일에는 ‘세계 청소년의 날(IYD, International Youth Day)’을 맞이하여 독재 철폐에 맞서는 청소년의 활동을 강조했다.

다. 유니세프(UNICEF)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는 UN(United Nations) 총회(General Assembly) 아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펀드를 담당하는 유엔 산하기구이다. 유니세프 조직은 본부, 국가위원회, 대표사무소, 지역사무소, 물류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뉴욕에 위치한 유니세프 본부(Unicef Headquarters)는 유니세프의 모든 활동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전담하며 정책결정기구인 36개의 이사국인 집행이사회와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어린이를 위해 실제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니세프국가위원회는 36개 선진국에 설치된 비정부 기구로 유니세프가 전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어린이를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유니세프와 세계 어린이들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어린이돕기 기금을 모아

유니세프본부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유니세프 연간 수입의 3분의 1을 제공하며, 모금 과정에서 미래의 잠재적 파트너인 의사와 변호사, 기업, 학교,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이슈들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한다. 특별기구로 유니세프의 모든 구호물품을 보관, 배송하는 물류센터(Supply Division)와 어린이와 관련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통해 기금모금과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는 이노첸티 리서치 센터(Innocenti Research Center)가 있다. 유니세프의 모든 활동은 개인, 기업, 사회단체와 정부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되고, 2006년 유니세프의 총수입은 27억 8천 1백만 불이었으며, 각국 정부의 기부금이 58%, 민간부문 및 비정부기구 지원금 29%, 기구간 조정 6%, 기타 7%였다(UNICEF, 2006).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는 1946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는 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긴급원조계획을 목적으로 국제연합아동긴급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이래 1953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 156개국 개발도상국 어린이의 생존과 보호, 발달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유니세프 사업전략은 영양, 보건, 식수공급 및 위생, 기초교육, 긴급구호, 특별히 어려운 어린이보호 등의 기본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식수와 위생시설을 개선하고 모든 나라의 90% 예방접종률을 달성하기 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말라리아 발생지역의 모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기장 보급률이 60%가 되도록 모기장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에이즈 퇴치를 위해 에이즈 문제가 심각한 54개국을 중심으로 에이즈 고아를 위한 보호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린이용 에이즈치료제인 ARV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 외에 어린이의 권리를 위해 2007년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18주년을 기념해 아동권리 관련기관들이 유니세프 제네바지역사무소와 유니세프 뉴욕본부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침해당하는 아동권리 문제를 다뤄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또한 '어린이 생존(Child Survival)'이라는 주제로 2008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2008 세계 아동 현황 보고서(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Report 2008)를 발표해 어린이 생존을 개선에 기여한 효과적인 전략들과 앞으로의 개선을 위해 남아있는 과제들을 제시했다.

2010년 6월 30일에는 유네스코(UNESCO)와 유니세프(UNICEF)의 여성 청소년 교육회담을 진행했고, 성인여성과 여성 청소년의 교육 증진을 위해 유네스코, 유니세프, 전 세계 공공·민간 부문 대표들이 모였다. 성인여성 및 여성 청소년 교육 증진을 위하여 남성과 여성의 교육 격

차 해소를 통해 양성 평등을 실현하고 성인여성 및 여성 청소년 교육 증진을 위하여 각 나라별 상황을 고려한 활동이 요구됨을 강조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는 아이티 지진 피해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 보급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2010년 6월 말에는 협동학교를 통해 기증받은 소설, 동화, 만화 등 800여권의 도서를 처음으로 포르토프랭스에 전달하고 이재민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3~17세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보급했다.

최근 2011년 2월 25일에 ‘2011년 세계 아동 현황 보고서(2011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Report)’를 발표하여 전 세계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교육, 훈련, 취업 프로그램 등 청소년 관련 이슈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니세프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 물질적인 보장, 교육과 사회화 등에 대한 각국의 실제적인 노력과 집행에 대한 관점을 강조하며, 아동의 양육과 보호야말로 인류 진보의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어린이의 건강과 교육, 인권을 위해 국적과 인종, 이념, 종교, 성별에 상관없이 정부, UN, 인도주의적 NGO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라.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은행(World Bank)은 경제개발과 빈곤퇴치에 초점을 두면서 교육, 보건, 영양 등 아동과 청소년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정책의 투자기회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생애주기적 접근은 우선, 개입이 누적적이고 한 연령집단의 최대 이익은 보다 앞선 연령집단의 개입을 통해 얻어질 수 있으며 한 세대의 개입은 후속세대에게 이익을 주게 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적 연령집단별 주요 정책개입 분야를 살펴보면, 영아 및 유아기의 경우 영아 및 아동사망을 줄이기 위한 아동보호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령기 아동의 경우 기초학습능력향상 및 학교기반시설 개선에 투자가 집중돼야 한다. 초기 청소년기에는 직업체험기회 및 통합적인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18세부터 24세까지의 후기청소년기에는 중도탈락청소년들을 위한 치료교육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프로그램과 청소년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과 함께 하는 국가청소년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표 1-3-1〉 연령집단별 주요 정책지원

연령집단	투자기회	주요 부문 및 영역	기대된 결과
영아 및 초기 아동기 (0~5세)	■ 태아기, 분만기, 신생아 보호 ■ 아동보호 (모유수유, 면역, 아동질병 관리) ■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 ■ 여성 및 가정에 대한 대출지원	■ 보건 ■ 수송, 농업 ■ 건강 ■ 교육 ■ 사회적 보호 ■ 금융	■ 영아 및 아동 사망 감소 ■ 발병 및 장애 감소 ■ 신체 및 지능 개발 ■ 초기 중도탈락 및 사회적 배제 가능성 감소
학령기 아동 (6~12세)	■ 사회적 기반 수송시설 및 학교 기반시설 개선 ■ 교사 임용 및 훈련 ■ 학교 보건 및 영양 프로그램 ■ 여성 및 가정에 대한 대출지원	■ 수송 ■ 교육 ■ 보건 및 영양 ■ 금융	■ 학교 등록률 증가, 학업성취도 향상 및 중도탈락을 감소 ■ 기초 기능 및 능력의 향상
초기 청소년기 (12~18세)	■ 중등교육기회 ■ 직업체험기회 ■ 생애기능습득 기회 ■ 통합적인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 청소년 중심의 재생산적 보건 서비스 ■ 취약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서비스 ■ 미성년자 법적 보호, 아동 및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 교육 ■ 비형식교육 및 사회개발 ■ 스포츠 활동 ■ 보건 ■ 사회적 보호 및 사회성 개발 ■ 청소년사법	■ 생활기술 개선 ■ 사회응집력 개선 ■ 건전한 라이프스타일 ■ 임신, HIV/AIDS, 폭력의 위험 감소
후기 청소년기 (19~24세)	■ 형식교육 시스템에서 중도 탈락한 청소년을 위한 치료교육 ■ 청소년 보건서비스 ■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 사회·경제·정치 시스템에서의 권한강화 및 참여 ■ 청소년과 함께하는 국가청소년 정책 ■ 청소년의 법적 보호	■ 교육 ■ 비형식교육 및 사회성개발 ■ 보건 ■ 노동 ■ 스포츠 ■ 청소년사법	■ 생산성 향상 ■ 재생산적 보건 개선 ■ 청소년실업 감소 ■ 폭력 및 범죄 감소 ■ 사회응집력 증가 ■ 사회적 통합 향상 ■ 안전 개선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2010년 세계은행에서는 인도의 기술공학 교육의 질 개선 프로젝트 일환으로 3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인도의 기술공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협정을 맺었고, 2006년 8월부터 몽골 시골 지역 학교의 학습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소비에트연방 붕괴 후 무너진 몽골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3,800개 이상의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도서를 보급했으며 4,500명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새로운 교수법을 전수하는 트레이닝에 참여했다. 2010년 세계 청소년 회담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정부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 및 남아시아 지역 청소년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했고 아랍 지역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아랍 17개국 장관급 전문가회의(2010년 9월 21~22일)에 참석하여 아랍 지역 전역의 교육의 질 향상 및 학교,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2011년 1월 11일에 세계은행 이사회(World Bank Board of Directors)는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청년 고용과 교육 개선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고, 3월 24일에는 파키스탄 교육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4억 달러 지원을 승인했고, 4월 20일에는 라디오 드라마로 동티모르 여성들의 고등교육을 촉구했으며, 5월 26일에는 세네갈 고등교육 시스템에 1억 달러를 지원했다.

2. 유럽지역의 청소년정책

가.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에서 청소년정책을 다루는 것은 유럽위원회이다. 유럽위원회에서 청소년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을 선정하고 지원하며, 이에 따른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기관이 EACEA(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이다. EU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의 참여, 교육, 고용·직업훈련·사회통합, 복지·개인의 자율성·문화, 유럽의 가치관·이동의 자유·국제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EU연합국은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문제, 언어문제, 빈곤층문제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도 다양한 문화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청소년정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포럼이

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 등이다.

2010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청소년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서 2007~2013년까지 진행되는 ‘Youth in Action’ 유럽 청소년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 도입에 적용했다.

최근 유럽연합(EU)과 중국은 2011년 1월 11일에 ‘2011년 유럽연합 - 중국 청소년의 해(EU-China Year of Youth)’ 개막을 선언하여 유럽연합과 중국, 청소년들의 대화와 협력 활동을 촉구했다. 유럽 청소년들의 지식 및 기술 습득, 취업을 위한 경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15회 폴란드 교육 박람회에서 ‘Youth on the Move’를 소개했다. 2011년 5월 15일~21일 동안 2011년 유럽 청소년 주간(European Youth Week 2011) 운영을 ‘구조화된 대화(structured dialogue)’라는 주제로 사회·문화적 교류, 민주적 토론, 구조화된 대화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들과 유럽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나. 영국

영국의 청소년정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청소년의 교육과 발달을 추구하는 것이다. 영국 잉글랜드지역에서 청소년정책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였는데 2007년 6월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로 개편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교육기술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교육, 기술교육, 직업교육이 새로운 부서인 혁신·대학·기술부(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 Skills)로 이양됨으로써 현재의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교육부에서 같이 다루던 대학과 직업교육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인식한 동시에, 취약 연령인 아동과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동·학교·가족부는 산하 6개의 국을 두고 있는데 팔목할만한 점은 새로운 부서의 개편과 함께 청소년국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의 교육기술부가 청소년과 그에 관한 정책을 평생교육 관련 부서에서 전담했던 것을 고려해보면 청소년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의 발로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주요 청소년정책은 수차례에 걸친 교육법의 개혁과 맞물리고 있다. 영국의 잉글랜드를 포함한 4개의 모든 연방의 지방정부는 각 지역에 학교교육과 청소년에 관련된 사회보장서비스(청소년활동 포함)를 제공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1988년 국가교육 과정이 도입된 이후로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하는 16세까지의 청소년에게는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을, 11세

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에게는 성인으로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하여 다방면의 교육지원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청소년단체와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지는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종합적 복지서비스 성격을 가진 커넥션즈(Connections)라고 할 수 있다. Personal Adviser라는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중등학교와 대학교, 커넥션즈 사무실, 지역사회 등에서 폭넓게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대표적인 청소년정책은 러셀위원회의 설립과 자원봉사에 관한 것이다. 2004년 5월 발족한 러셀위원회는 청소년의 자원봉사와 시민적 사회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두 개의 자문 그룹과 컨설턴트, 평가팀을 구성했고 별도로 구성된 독립자문기관에는 자원봉사분야의 대표자들, 경제와 매체분야의 대표자들과 청소년자문위원회들이 활동하고 있다.

2010년 3월 영국 17세 소녀가 페이스북에서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해 페이스북(Facebook)에 ‘패닉 버튼(panic button)’ 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즉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패닉 버튼(panic button)’을 설치할 것을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홈페이지와 영국의 아동 보호 기관인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 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EOP)를 바로 연결하는 ‘ClickCEOP’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했다.

최근 2011년 5월 24일에 영국은 학교 교유의 교사 관리 권한확대를 추진하여 관료주의적 성격을 상당부분 제거하고 학교 교유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2011년 7월 12일에는 영국 교육부에서 장기 결석 기준 변경을 추진하여 현행 제도에서는 전체 학교 수업 중 20% 이상을 빠진 학생을 장기 결석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수업 중 15% 이상 빠진 학생을 장기 결석자로 분류할 예정이다. 8월 26일에는 영국 교육부에서 십대 부모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심의하여 ‘Care to Learn’의 개선안을 2012년 9월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영국은 청소년정책이나 청소년만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존재하지 않지만 청소년을 사회와 지역사회,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여 이들이 모든 사회정책과 연계되어 지원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적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분야의 위상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 독일

현재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청소년지원(Jugendhilfe)’이다. 이 개념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성인들이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청소년들을 돕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지원’의 내용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업 밖에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사회화, 육성, 교육과 관련된 여러 대책들, 노력들과 기관 및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지원이라는 큰 개념을 실천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으로서 ‘청소년사업(Jugendarbeit)’과 사회복지적 의미를 가진 협의의 ‘청소년사회사업(Jugendsozialarbeit)’의 개념이 청소년정책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청소년지원을 위한 여러 청소년사업들과 청소년사회사업들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은 ‘아동·청소년지원법(KJHG)’과 여기서 명시된 여러 정부조직 구조들과 제도들로 구성되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지원구조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연방공화국인 독일(Bundesrepublik Deutschland)의 국가 최고 통치기구로서의 연방은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지원법’을 통하여 각 주(州)정부를 총 지휘하는 청소년지원의 장려와 고무의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아동·청소년지원법’ 8조 2항에 따라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된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Bundesjugendkuratorium)’에 의한 청소년지원의 근본 문제들을 자문한다.

셋째, 각 정부의 임기동안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보고서(Kinder-und Jugendbericht)’를 연방의회와 상원에 제출한다.

독일의 청소년지원 조직의 기본 골격은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상세한 사항들은 각 주(州)의 시행령에서 보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법적 근거들은 주(州) 자치단체법령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법적 근거에서는 청소년정책 업무에서 실질적인 실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청(Jugendamt)’과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Jugendhilfeausschuss)’의 과제와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은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 전국에 ‘청소년청’이 구성되도록 정하여 자치단체 행정관청의 다른 영역들과 구별되게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보고서’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44조를 따른 것으로, 매년 새 정부가 임기 중에 청소년들의 현황과 청소년지원의 노력과 시행들에 관하여 연방의회와 상원(上院)에 보고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따로 ‘청소년보고위원회(Jugendberichtskommission)’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아동정책을 수행하는 행정조직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하위부서인 청소년부이고, 지역차원에서는 청소년청(Jugendamt)이다. 연방정부에서는 청소년부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지역차원에서는 모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실무기관인 청소년청이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독일의 아동·청소년 정책의 큰 특징은 아동·청소년은 물론 가족 및 노인정책을 관할하는 부처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독일에서는 아동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을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과 연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교육부 혹은 사회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독일이 가진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주요 청소년정책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중앙정부인 ‘가족·노인·노인·여성·청소년부’의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는 크게 세계아동권리, 아동·청소년보호, 통합(integration), 관용과 민주주의, 참여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 정책영역은 다시 청소년사회사업, 범죄·극우주의·외국인 적대 예방, 아동·청소년보호와 폭력보호, 통합, ‘연방아동·청소년계획’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육성, 사교(邪交) 집단과 사이코집단 관리, 아동·청소년지원, 아동보육관리, 중앙과 지방 연계 전국 청소년정책 공동사업, 지식정보사회 청소년지원, 유럽청소년정책들과 같은 관련 청소년정책들로 나뉘어 있다.

이외에도 독일은 1964년 이래 정부와 민간의 협력 사업으로 지금까지 12회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독일 청소년지원 주간(Deutscher Jugendhilfetag)’과 최근 2005년에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기획된 ‘국가행동계획(NAP : Nationaler Aktionsplan 2005년~2010년)’이 수립되어 시행 중에 있다.

한편, 독일의 청소년정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적 대상은 무엇보다도 독일의 주(州) 아래의 행정단위인 시(市)들과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들에 실패처럼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청소년청’이다. ‘제국청소년복지법’에 의해 1925년부터 ‘청소년청’이란 이름으로 최초로 설치된 이후 현행 독일의 ‘사회법’(SGB) VIII권에서는 모든 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청소년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각 자치단체 ‘청소년청’은 독일의 모든 청소년정책의 실천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청소년정책 수행의 중심에 서서 아동·청소년정책 업무의 기획, 시행, 예산 등을 총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청’은 각 주의 청소년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의 결정과 자문을 받아 계획되며, 시행되고 있다. 광역시에는 구(區)마다 ‘구 청소년청’(Bezirksjugendamt)이 설치되어 있고, 시에는

‘시 청소년청’ (Stadtjugenamt), 기초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 청소년청’ (Kreisjugendamt)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2007년에 실시된 아동 및 청소년 관련정책 중 가장 특기할만한 것은 부모수당 제도의 도입이다. 이전에는 직장을 가진 부모든 직장을 갖지 않는 부모든 연방정부로부터 일괄적으로 양육수당을 받았다. 2007년부터 시행된 부모수당 규정에 의하면, 직장을 가진 부모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둘 경우 소득의 67%를 받는다. 반면, 직장을 갖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직장을 가진 경우보다는 낮은 액수의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중적 제도가 새롭게 정착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부모의 근로활동에 대한 보상을 더 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라. 프랑스

프랑스의 청소년정책은 보건·청소년·체육부(Ministre de la Sant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내 청소년대중교육실(la Direction de la Jeunesse et de l' Education Populaire ; DJEP)에서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대중교육실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에 걸쳐 있는 청소년 정보망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일반적이고, 시사적이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회를 통해 청소년의 의사가 공공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들에게 문화, 체육, 인류애, 경제, 시민활동 등과 같은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고무하고 청소년들이 사회 전체 및 직업사회에 동화되도록 돕고 있다.

넷째, 청소년 및 대중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과외 활동 및 학업 외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여섯째, 바캉스 센터와 여가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보호한다.

일곱째, 청소년들의 국제적 혹은 유럽 내 교류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청소년정책의 지방담당 부서는 국가청소년대중교육연구원(L' Institut National de la Jeunesse et de l' Education Populaire ; INJEP)이다. 이 연구원은 교육 기관인 동시에 연구기관의 역할을 하고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숙박센터의 역할도 담당한다. 그리고 유럽 및 국제적인 청소년 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하며, 특히 청소년 및 관련 단체들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개발 센터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청소년관련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청소년지원, 청소년사업 등에 관하여 특별법으로 제정해 놓지 않고, 일반 법률에 청소년관련규정을 포함시키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동보호법, 교육법, 사회활동 및 가정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에 일

부 청소년을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은 크게 청소년정보정책,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정책(행동하는 욕구 프로그램), 바캉스·여가 센터운영, 사회·문화 활동, 국제교류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정보정책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발달된 각 지역 정보망으로 청소년 관련 모든 분야의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정보망과 사이버 청소년 특성의 발전과 프로젝트로 청소년 정보망 속의 멀티미디어 공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회는 청소년과 정부 기관 간의 의사소통의 장소로서 청소년관련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전국청소년의회(CNJ), 청소년체육단체생활지방의회(CDJSVA), 지역청소년의회(Les Conseils locaux de la jeunesse)로 구성된다.

셋째, “행동하려는 욕구(Envie d’Agir)” 프로그램은 청소년 참여와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최초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성, 책임감, 참여의 방향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재능 표출, 행동 능력, 창조적 활동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들이 사회 및 직업사회에 대한 동화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넷째, 바캉스·여가정책은 물리적·도덕적 안전을 보장하는 관리된 체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질 높은 교육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다.

다섯째, 사회 문화적 활동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여가 시간동안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및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유럽 및 국제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청소년 운동을 주관하는 담당자, 전문가 혹은 자원봉사자들 및 협회 책임자들을 고무하기 위한 프로그램 활동을 마련하고 있다.

마. 핀란드

핀란드의 청소년정책은 교육문화부가 담당하고 있다. 교육문화부는 각 업무의 조정과 총괄 책임을 지며 각 부처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청소년의 연령은 대개 15세에서 29세까지며 사안에 따라서는 0세부터 29세까지의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청소년활동에 적합한 세 가지 개념을 정립하여 일반적인 지침으로 사용한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기본계획은 청소년의 개인적인 개발, 생활조건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적 행위에 대한 활동과 관련된다.

둘째, 청소년활동이라는 용어는 29세 미만 청소년의 도시 활동과 도시지역에서 청소년의 개

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를 나타낸다.

셋째, 청소년활동 계획은 청소년활동의 증진과 관련된 것이다.

청소년사업을 위한 조치의 책임을 3단계로 나누어 중앙차원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차원에서는 지방정부(the Provincial State Office)가, 지역차원에서는 지역당국(local authorities)이 청소년사업을 실행한다.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시·도와 같은 수준의 주 행정을, 지역당국(시와 군)은 지방 간의 협력과 개발을 위해 지방위원회(Regional Council)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역당국은 12개 주 단위의 432개로 각 지역당국에서 청소년의 시민활동, 생활조건 개선, 국제적 협력지원과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핀란드의 청소년정책 사업 중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기에 청소년활동과 접목된 근로(진로) 경험을 증대시키고 있는 점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기반을 확충하고 직업 능력 강화 및 진로지도 이행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2011년에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지역 정부를 통해 청소년 활동을 지원했다. 핀란드 정부의 한 해 전체 예산에서 교육문화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2010년의 경우 총 6조 2,180억 유로)이고, 교육문화부는 지역 정부의 청소년 정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9세 이하 인구수를 기준으로 각 지방 행정부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여 예술, 스포츠, 연구, 청소년 관련 활동을 활성화했다.

바.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다양한 부처가 아동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는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이다. 교육연구부는 취학전 아동을 위한 교육, 방과후 학교, 초등교육 특수학교 및 국가의 감독을 받는 자립학교 등과 관련된 일을 관장하며, 교사훈련, 학교행정 프로그램, 교재개발과 장애아동 교육 등도 담당하고 있다. 교육연구부 산하 행정 기구 중 아동정책과 관련된 기구로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국립 학교개선위원회(Swedish National Agency for School Improvement), 스웨덴 특수학교 연구소(Swedish Institute for Special Needs Educ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보육기관과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가치들과 기본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시설 감시, 관련 인력 교육 및 재교육을 담당한다.

보건사회부의 사회보험 분과에서는 가족수당, 아동수당, 연금, 산재 보험 등의 현금급여, 아동이나 가족관련 수당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분과에서는 일부 업무로 청소년

년 보호시설의 관리를 담당한다. 보건사회부 산하 중앙행정기구 중 아동옴부즈맨(Children's Ombudsman)이 있다. 아동옴부즈맨은 아동 및 청소년 이슈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아동정책 이행을 평가하는 기구이고 지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협약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스웨덴 국제입양국(Swedish Intercountry Adoptions Authority)도 보사부 관할 아래에 있는 행정기구로서 입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시설보호국(National Board of Institutional Care)은 업무의 일부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지역자치단체는 아동정책의 직접 서비스 제공자이다. 지역자치단체 중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에는 보육 및 청소년위원회(Child Care and Youth Committee), 사회복지국(Social Welfare Board) 혹은 지역위원회(District Committee) 등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지역자치단체가 아동관련 서비스에 대한 재정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지방이양 형태를 갖고 있다. 단,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의 경우,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서비스는 지자체가 제공한다.

이와 같이 스웨덴에서는 다양한 기구와 부처에서 아동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동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동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다. 스웨덴 아동정책의 핵심은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관점을 아동정책 뿐 아니라 모든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3. 미주 및 아시아 · 오세아니아지역의 청소년정책

가. 미국

미국의 청소년정책은 아동정책과 마찬가지로 연방 보건국 산하 아동가족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Ed)는 법제상 교육에 관한 권한이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과 교육 및 서비스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보건복지부(DHHS)와 교육부(Ed)이외의 부처에서도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데, 노동부(DOL)는 청소년 고용, 미성년자 근무 시 안전대책, 청소년을 위한 공정한 고용기회 프로그램,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농림부(USDA)는 농촌청년활동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DOJ)에서는 '교정국', '청소년사법과 비행예방사무국(OJJDP)'을 두어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통제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미성년 재판 및 미성

년 비행예방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무부(DS)는 청소년관리 단체 등을 다루고 있으며,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는 도시청소년 프로그램인 Yb(Youth build)를 주 정책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 관련 법제는 수없이 많다. ‘연방청소년정책 조정에 관한 법률(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은 행정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청소년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 명문화됐다.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 NCLB)은 미국의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불우한 학생들과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학업성취의 격차를 줄이고자 마련되었다.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은 성취도 평균을 하락시키는 저소득계층과 소외계층 지역의 학교 성공자를 늘리고 이 학생들을 위한 보충교육,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가출 및 노숙청소년법(Runaway & Homeless Youth Act)은 가출·노숙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력성공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은 광범위한 취업과 교육 프로그램의 문화를 통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은 청소년 노동자 고용을 한정하기 위한 법이다.

아동 및 가정복지서비스 증진법(Child and Family Services Improvement Act)은 안전하고 안정된 가족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동 및 가족 안전유지법(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은 아동학대 방지 및 관리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 2003년 개정된 것으로 아동의 학대와 방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미국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청소년문제행동 예방, 치료, 교정 중심 정책이 고비용·저효율이라는 진단에 기초하여 최근 ‘긍정적 청소년발달’을 강조하고 있으며, 방과 후 시간에 다양한 긍정적 기회와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운동(After-school Movement) 등에 정책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NCLB 프로그램과 청소년 개발(Youth Development)을 들 수 있다. NCLB 프로그램을 통해 그간 고질적인 미국의 교육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미국의 전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올바른 역할 정립, 충분한 연방재원 확보 및 적절한 배분, 지나친 경쟁 논리 및 교육시장화에 따른 대책강구, 다양한 교육주체들에 대한 설득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NCLB의 4대 원리는 책무성(accountability)의 원리, 자율성(freedom)의 원리, 방법론(methods)의 원리, 선택권(choice)의 원리이다. ‘청소년 개발(Youth Development)’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청소년의 능력을 개발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청소년들의 잠재역량 개발을 도와줌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2010년에는 각 부처가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 및 학업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활동을 전개했다. 주요 서비스는 온라인 학습 레지스트리(Online Learning Registry) 구축인데, 이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교육 자원들을 공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연방 정부와 뉴욕주는 2010년 7월 14일에 뉴욕주 내 청소년 교도소에 적용될 새로운 청소년 관리법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물리적 제재 제한, 청소년 수감자의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마약, 알코올 중독, 발달 장애 및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 수감자들에게 수감 생활 중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리고 불링(bullying) 방지 및 대처를 위한 미국 교육부 노력의 일환으로 불링(bullying) 방지 및 대처를 위한 웹사이트(www.bullyinginfo.org)를 개설했다. 불링 정보 웹사이트는 불링과 관련된 연방 정부의 자원들에 쉽게 접근하여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2011년 2월 1일에 미국 백악관은 ‘2011년 최고의 고등학교 졸업식을 위한 경쟁(Race to the Top Commencement Challenge)’ 행사를 개시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2020년까지 미국의 대학 졸업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2010년 행사에서는 1,000개 이상의 공립학교가 경쟁에 참가했고, 그 중 미시건(Michigan)주의 칼라마주 센트럴 하이스쿨(Kalamazoo Central High School)이 우승을 차지했다. 2011년에는 3월 7일부터 ‘2011 전국 청소년 금융 역량 대회(2011 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Challenge)’를 개최하여 미국 청소년들로 하여금 저축, 지출계획, 투자 등 향후 개인 재무 관리에 요구되는 기본 지식 습득을 촉구했다. 2011년 4월 4일에는 미국 정부, 학생 성폭력 예방 가이드를 소개했고, 6월 20일에는 미국 청소년 클럽(BGCA, Boys & Girls Clubs of America)에서 청소년 게임 디자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고, 7월 14일에는 미국 교육부에서 학교 기반의 건강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으며, 9월에는 여성청소년의 기술 능력 개발 및 직업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나. 일본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및 제도의 정비, 둘째, 연령대별(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정책을 통하여 정책대상 연령을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령대별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셋째, 문제상황(장애청소년대책, 비행청소년대책, 학대, 재해 및 범죄 예방대책, 노동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별 대책 등)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넷째, 청소년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환경정비대책(서비스지원체제, 학교, 지역사회, 정보 및

소비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의식 및 생활 전반에 관한 조사 및 청소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위의 5가지 정책적 특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의 정비와 중장기계획의 마련을 들 수 있다. 일본정부는 2003년 6월,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내각 부(副)총리대신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서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소년육성 추진본부’를 설치했다. 청소년육성추진본부 산하에는 부(副)본부장(관방장관, 문부과학성대신, 법무대신, 후생노동대신 등)으로 구성된 회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의 과장급회의, 청소년국제교류관련 연락회의, 청소년비행대책을 위한 과장급회의, 커리어교육추진회의 등을 설치하여 정책의 종합적 추진과 정책의 체계성, 구체성을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의 중장기적 계획마련의 일환으로 2003년 12월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책정했다. 2006년 6월에는 청소년들을 비행 또는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안전 및 안심 추진계획-비행, 범죄피해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마련했으며, 2006년 12월에는 청소년들의 커리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커리어교육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둘째, 정책대상인 청소년의 연령을 유아기에서 성인기 이전 단계까지 매우 폭넓게 설정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을 보호, 지원, 육성, 개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먼저, 영유아기에 대한 주요정책으로는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의 확충, 식생활 개선을 통한 모자 보건의 증진, 육아서비스의 확충, 탁아시설 및 유치원 서비스의 개선 및 제3자에 의한 서비스 평가 등과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기에 대한 주요정책으로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상담 및 의료서비스 지원체제의 정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함양, 기초 학력의 배양,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공동체意識의 함양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다. 사춘기에 대한 주요정책으로는 취업능력 및 취업의식의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주요정책으로는 대학교육의 충실, 직업능력의 개발 및 취업지원시스템의 구축,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겠다.

셋째, 청소년정책을 문제 상황별로 설정함으로써 정책과제 및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는 먼저, 학습장애(LD)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장학금제도의 확충, 생활보호, 다문화가정출신 청소년에 대한 지원),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 가정폭력, 아동학대, 원조고제, 이지메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예방 및

보호, 장애, 비행 및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에 대한 취업지원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겠다.

넷째, 청소년정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제의 정비에 관한 정책들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 인력의 배치(의료, 복지, 심리상담, 진로상담분야 전문가 등), 청소년지원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환경 분위기 조성(학교 내 상담체제의 구축, 교사의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 학교재량권의 확대, 선택제 수업의 확충 등),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환경의 조성,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공간의 확충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겠다. 아울러, 정보화사회, 소비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회 및 제도적 장치(Town Meeting, 모니터링제도의 실시 등)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매년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권에 관한 계몽 활동, 사회성 함양을 위한 캠페인, 청소년들도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과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일본 내각부는 심각한 비행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고, 2010년 5월 27일에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에 대한 ‘블로킹(blocking : 열람방지조치)’ 도입을 골자로 한 ‘아동포르노 근절 종합대책안’을 공포했다. 또한 일본 내각부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촉진하는 자녀용과 보호자용 2가지 웹플릿을 발행했다. 뿐만 아니라 내각부에서는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약물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최근 2011년 1월 7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고교생에게도 커리어(career) 교육을 도입하여 특정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육성하도록 하고 2012년도(2012년 4월~2013년 3월)에 시범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3월 8일에는 일본 내각부에서 ‘필터링 보급에 관한 관계각료 간담회’를 열고, 국가공안위원회,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과 청소년 휴대전화에 필터링(유해사이트 차단 기능)을 보급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4월 22일에는 일본 문부성에서 지진 피해 학생 지원책을 발표했고, 지진 피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수업료를 감면해 주었다. 6월 1일에는 아동·청소년 자살원인조사 지침을 문부성에서 마련했다. 또한 8월 20일에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 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켜 비행과 등교거부, 은둔형 외톨이 등 문제 청소년들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원했다. 9월 28일에는 일본 시즈오카(静岡)현에서 고등학생 대인관계 지원 사업을 개시하여 2011년 10월부터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인간관계 구축 및 감정 컨트롤 훈련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개시했다.

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지역사회발전·청소년·스포츠국(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 MCYS)’에서 가족과 아동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및 정책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정책은 MCYS 산하 ‘공동양육·사회지원부(Comecare and Social Support Division)’와 ‘사회복귀·보호·거주서비스부(Rehabilitation, Protection and Residential Services Division), ‘가족서비스부(Family Service Division)’에서 주관하며, ‘공동양육·사회지원부(Comecare and Social Support Division)’는 ‘지역사회개발의회(Community Development Councils(CDCs))’에 의해 지휘·감독된다. ‘가족서비스부(Family Service Division)’는 베이비보너스부서(Baby Bonus Branch), 가족보육 부서(Family Care Branch), 입양신청·계획·행정부서(Adoption petitions and the Planning and Administration Branch)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1998년 11월 1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2004년에 싱가포르 행정부(15개) 중의 하나인 ‘지역사회개발 및 스포츠부(MCDS,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Sports)’가 MCYS로 개편되면서 청소년 주무부서가 되었다. 기존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통폐합된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으로 연계되어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개발청소년부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Council),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가족부(Ministry of Home Affairs) 등 3개의 부서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행정부서인 MCYS는 싱가포르를 위해 용기와 의식 있는 청소년을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더 넓은 지역 사회와 국가와 관계되는 청소년의 역동성과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MCYS의 다섯 가지 중요한 사업 중에서 청소년관련 업무는 먼저, 용기와 의식 있는 청소년을 기르기 위한 일을 하고, 다음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청소년 분과의 세부적인 활동으로는 첫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와 강인한 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제공하며, 둘째, 청소년의 리더십 육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셋째,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목표는 청소년들의 역동성을 개발하고 이들의 기상을 높이며 체력증진으로 글로벌 청소년을 육성하는 데 있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먼저 이들의 가치와 미래기술은 국가와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프로그램과 재정지원을 통하여 청소년기에 증가하고 있는 위험과 역동성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을 중심 과제로 삼고 있다.

싱가포르 청소년 정책의 특징은 학문적인 연구보다는 청소년수련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비율이 높다는 점과 여러 관련기관에서 청소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라. 호주

호주에서 청소년의 연령은 12세~25세다. 청소년들이 집단 활동을 통하여 참여하는 구체적인 청소년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과제 클럽(예 : 선생님으로부터 숙제하는 것 도움 받기)
- ▶ 직업프로그램 (예 : 이력서 쓰는 것을 돕거나 유급직 알선)
- ▶ 방과 후 활동 (예 : 스포츠 혹은 보석 만들기)
- ▶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예: 전통 춤 혹은 현대 춤)
- ▶ 스포츠 프로그램(예 : 농구, 축구, 수영)
- ▶ 학교휴일활동(예 : 영화 보러가기, 동물원 방문하기, 혹은 캠프 참여)
- ▶ 리더십, 멘토링, 그리고 다른 훈련 프로그램들(예: 연설기술 배우기)
- ▶ 청소년 그룹 프로그램들(예 : 자존감 및 정체성 강화)

청소년 지지 프로그램(Youth Support Program)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고 있다.

- ▶ 실질적인 도움(예 : 서류양식 작성하기, 스터디 등록하기, 약속 잡기, 교재 찾기)
- ▶ 청소년들과 가족들이 고려하는 선택 혹은 이슈에 대한 정보(예: 문화적 이슈)
- ▶ 가족, 친구, 혹은 학교와 관계를 강화하도록 돕기(예: 가족 내의 의사소통 향상시키기)
- ▶ 다른 서비스, 프로그램, 혹은 활동에 관한 정보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을 돕기
(예 : 법적 정보, 의사 찾기, 혹은 이주 정보를 돕기)
- ▶ 상담

호주는 전통적인 다문화사회이기 때문에 호주의 청소년 정책 중 눈에 띄는 것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다. 대표적 예로, CMYI(Center for Multicultural Youth Issues)를 들

수 있다. 멜버른 칼튼(Carlton)에 위치한 이 기관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생활의 기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조직은 크게 행정부서, 서비스담당부서, 정책집행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연방정부(Family & Communication Services), 주정부(Office of Youth, Department of Victorian Communities), 시 등에서 지원받고 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멘토링 프로젝트

2004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문화적·언어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16세~21세의 청소년들이 소수 인종 커뮤니티 안에서 그들의 요구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2년 동안 지속된다. 청소년문제에 관심이 많고 청소년과의 친교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 중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선발된 멘토(mentor)들은 청소년들과의 일대일 멘토링(mentoring)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호주 사회 적응에 필요한 노하우나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멘토들은 2주에 한 번씩 2시간 동안 이들 청소년들과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멘토링 참가 청소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모여 야외활동을 통하여 바비큐나 볼링 등을 즐기면서 상호 친목을 도모한다.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은 매달 멘티와의 경험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멘토들은 두 달에 한 번 멘토관리훈련(Mentor Supervision Training)을 통하여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는 기회를 갖는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영어를 향상시키기도 하고, 호주사회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무엇보다도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친교를 쌓을 수 있다.

(2) 새로 이민온 청소년 지원 서비스(Newly Arrived Youth Support Services : NAYSS)

NAYSS는 막 이민 온 12세~21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고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집이 없거나 노숙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들의 가족, 교육, 직업훈련, 일, 그리고 지역사회에의 관여와 참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담, 집단 사회사업, 가족 의료사업과 사회사업 지원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3) 리더십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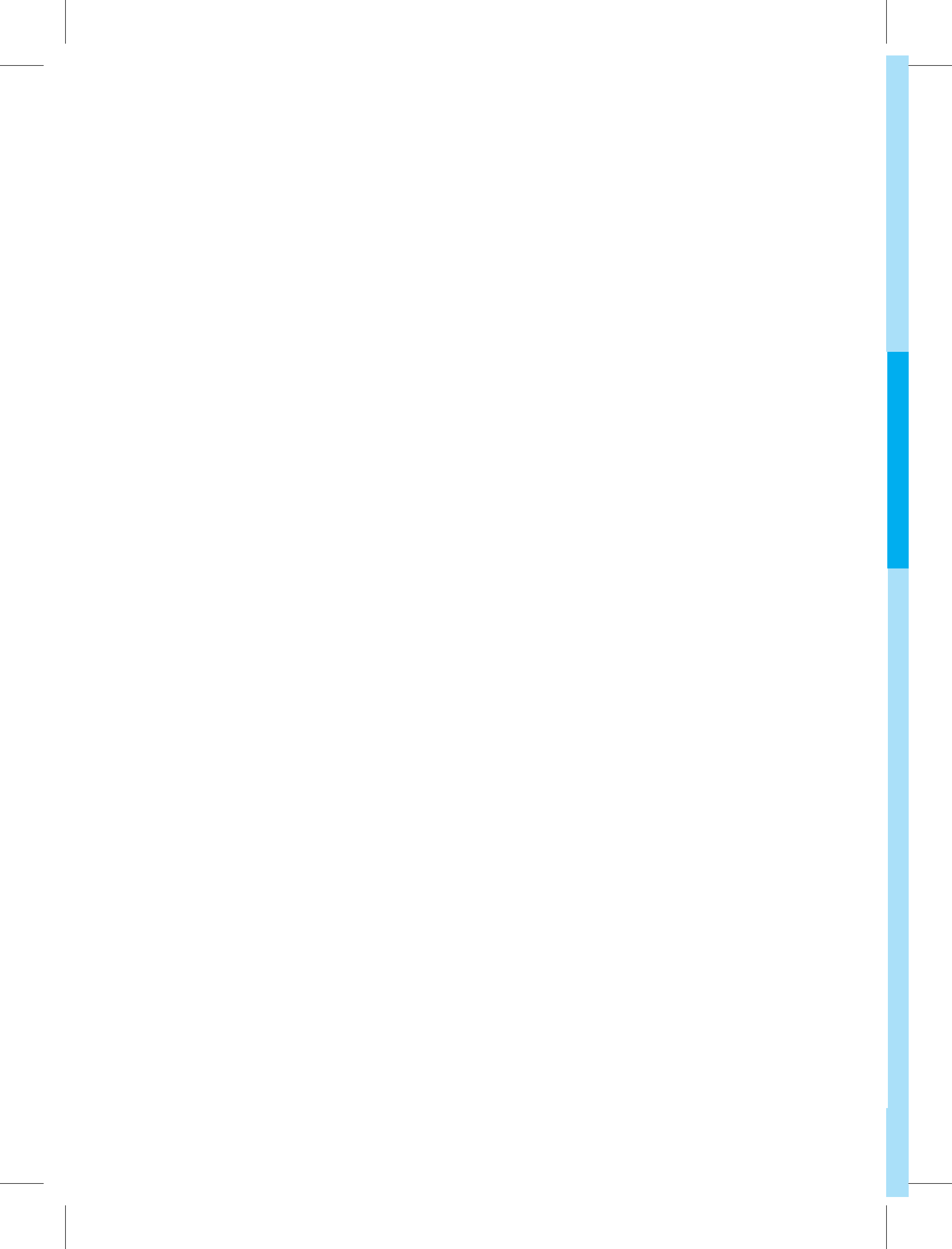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이민 혹은 망명 온 지 10년이 지난 청소년들의 리더십 스킬 함양과 지역사회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4) 망명청소년 지지서비스(Reconnect Young Refugees)

이것은 집, 학교, 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세~18세의 망명자 청소년과 호주에 막 도착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CMYI 지원서비스로 청소년들이 가족, 학교, 친구, 지역사회와 더욱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도울 수 있는 긍정적인 전략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이외에도 다문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프로젝트, 재정착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멜버른에 위치한 Frontyard Youth Services는 집이 없거나 혹은 위협에 처한 25세 이하 청소년들의 신체적, 감정적, 그리고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멜버른과 빅토리아 주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과 미래 번영을 위하여 헌신하는 단체이다. 주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단체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여러 서비스 중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알선하거나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간호사나 의사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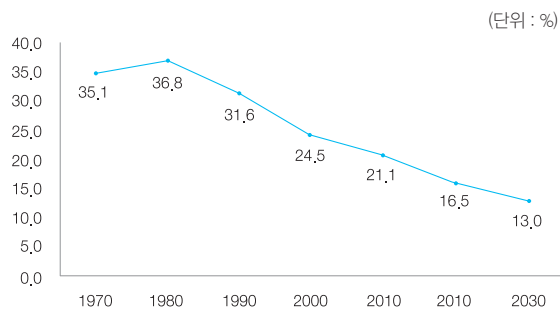
최근 2010년 12월 7일에 주 브로드밴드 통신 디지털경제부(DBCDE)는 8~17세 청소년 위원들로 구성된 호주의 청소년 고문단(Youth Advisory Group) 및 사이버안전 실무협의회(Consultative Working Group on Cybersafety)의 자문을 통해 개발된 ‘사이버안전 버튼(Cybersafety button)’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2011년 2월 17일에는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육 혁명(DER)’의 일환으로 9~12학년 학생 전원에 컴퓨터 보급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21세기에 요구되는 컴퓨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7월 5일에는 정부에서 내놓은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진학 지원금을 제공했다.



제2부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1970년에 전체 인구의 35.1%를 기록하였고 1980년에 36.8%로 증가한 이후 1990년에 31.6%, 2000년에 24.5%, 2010년에는 21.1%로 계속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16.5%, 2030년에는 13.0%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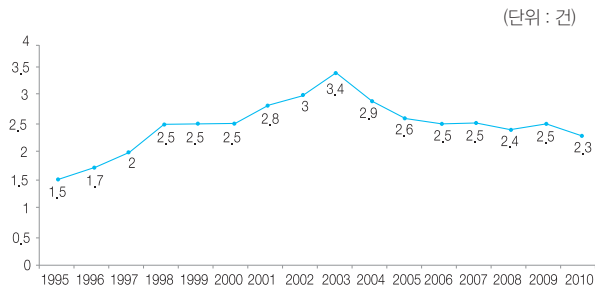
청소년 인구 증감 추이(1970-203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11.

2010년 한 해 동안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2.3건으로 전년보다 0.2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까지 지속되던 증가세가 2004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0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조이혼율의 추이(1995~201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혼인편)」, 각 년도.

제2부

청소년 인구
및 가족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제1장 | 청소년 인구 현황과 전망
- 제2장 | 가족구성 및 변동
- 제3장 | 가족관계

제1장

청소년 인구 현황과 전망

1. 청소년 인구 현황

2011년 현재 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1,014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9~24세 인구 중 17~18세가 각각 6.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9세 인구는 청소년 인구의 5.2%로 가장 적었다.

여자 1백명당 남자를 의미하는 성비는 2011년 전체인구가 100.8명인데 반해, 9~24세 청소년 인구는 111.6명으로 청소년 인구의 남녀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7세 인구의 성비는 114.4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연령이 낮아질수록 성비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9세의 성비도 109.2명으로 여전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0~24세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1,41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9%를 차지하며 성별로는 남자 744만 명, 여자 674만 명으로, 성비는 110.5명이다.

〈표 2-1-1〉 2011년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구

(단위 : 천명, %)

연령	청소년 인구	구성비(9~24세)	구성비(0~24세)	남자	여자	성비
0세	432	—	3.0	224	208	108.1
1세	435	—	3.1	225	210	107.4
2세	439	—	3.1	227	211	107.5
3세	442	—	3.1	229	213	107.7
4세	443	—	3.1	230	213	107.8
5세	436	—	3.1	226	210	107.5
6세	446	—	3.1	231	215	107.5
7세	473	—	3.3	246	227	108.1
8세	486	—	3.4	253	233	108.8
9세	523	5.2	3.7	273	250	109.2
10세	583	5.7	4.1	304	279	108.9

〈표 2-1-1〉 2011년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구(계속)

(단위: 천명, %)

연령	청소년 인구	구성비(9~24세)	구성비(0~24세)	남자	여자	성비
11세	613	6.0	4.3	320	292	109.5
12세	610	6.0	4.3	320	290	110.3
13세	629	6.2	4.4	328	301	109.1
14세	653	6.4	4.6	341	312	109.5
15세	672	6.6	4.7	355	317	112.0
16세	683	6.7	4.8	363	320	113.5
17세	690	6.8	4.9	368	322	114.4
18세	691	6.8	4.9	367	323	113.7
19세	678	6.7	4.8	359	319	112.3
20세	653	6.4	4.6	347	307	113.1
21세	626	6.2	4.4	336	291	115.5
22세	612	6.0	4.3	326	286	114.0
23세	608	6.0	4.3	318	289	110.0
24세	619	6.1	4.4	323	296	108.9
계(9~24세)	10,143	100.0	—	5,349	4,795	111.6
계(0~24세)	14,175	—	100	7,441	6,735	110.5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11.

2. 청소년 인구 전망

우리나라의 청소년(9~24세) 인구는 1960년 796만 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1980년에는 1,401만 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청소년 인구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1,029만 명까지 감소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2015년의 청소년 인구는 943만 명, 2020년에는 812만 명, 2030년에는 633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1960년에 전체 인구의 31.8%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80년에 36.8%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서 1990년에 31.6%, 2000년에 24.5%를 나타내

었으며, 2010년 현재 21.1%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 같은 감소추세는 지속되어 2015년에는 19.1%, 2020년에는 16.5%, 2030년에는 13.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총 인구증가율은 1960~1965년 2.95%p의 높은 수준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995~2000년 0.85%p로 1%p이하로 낮아졌으며, 2000~2005년에는 0.48%p를 기록하고 있다. 이후에도 서서히 낮아져 2015~2020년에는 0.02%p, 2020~2025년에는 감소상태인 -0.09%p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청소년 인구증가율은 1960~1965년 2.92%p로 총 인구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1975~1980년 1.75%p로 2%p 이하로 낮아졌으며, 1980~1985년에 -0.06%p로 이미 마이너스 성장상태에 접어들은 후 현재까지 계속 감소상태를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2010~2015년 -1.68%p, 2015~2020년 -2.77%p, 2025~2030년 -1.78%p의 수준을 보이며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2〉 총인구와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단위 : 명, %)

연 도	총 인 구	연평균증가율	청소년 인구	구 성 비	연평균증가율
1960	25,012,374	—	7,956,903	31.81	—
1965	28,704,674	2.95	9,120,576	31.77	2.92
1970	32,240,827	2.46	11,329,714	35.14	4.84
1975	35,280,725	1.89	12,885,563	36.52	2.75
1980	38,123,775	1.61	14,014,932	36.76	1.75
1985	40,805,744	1.41	13,974,697	34.25	-0.06
1990	42,869,283	1.01	13,553,357	31.62	-0.60
1995	45,092,991	1.04	12,751,383	28.28	-1.18
2000	47,008,111	0.85	11,501,436	24.47	-1.96
2005	48,138,077	0.48	11,027,943	22.91	-0.82
2010	48,874,539	0.31	10,288,487	21.05	-1.34
2015	49,277,094	0.16	9,426,011	19.13	-1.68
2020	49,325,689	0.02	8,121,776	16.47	-2.77
2025	49,107,949	-0.09	6,945,297	14.14	-2.90
2030	48,634,571	-0.19	6,326,204	13.01	-1.78
2035	47,734,323	-0.37	5,994,622	12.56	-1.05
2040	46,343,017	-0.58	5,722,657	12.35	-0.91
2045	44,520,935	-0.79	5,388,875	12.10	-1.17
2050	42,342,769	-0.98	4,911,792	11.60	-1.7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11.

3. 청소년 인구동태

인구동태통계(Vital statistics)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본적인 인구변동 사건에 대한 통계로서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통계를 총칭하는 것이다. 조출생률, 조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율 등 다양한 인구동태 지표가 작성되고 있다.

〈표 2-1-3〉 연도별 인구동태 추이

(단위: 명, 건수)

연 도	출 생	사 망	자연증가	혼 인	이 혼
1970	1,006,645	258,589	748,056	295,137	11,615
1975	874,030	270,657	603,373	283,226	16,453
1980	862,835	277,284	585,551	403,031	23,662
1985	655,489	240,418	415,071	384,686	38,187
1990	649,738	241,616	408,122	399,312	45,694
1995	715,020	242,838	472,182	398,484	68,279
1996	691,226	241,149	450,077	434,911	79,895
1997	668,344	241,943	426,401	388,960	91,160
1998	634,790	243,193	391,597	373,500	116,294
1999	614,233	245,364	368,869	360,407	117,449
2000	634,501	246,163	388,338	332,090	119,455
2001	554,895	241,521	313,374	318,407	134,608
2002	492,111	245,317	246,794	304,877	144,910
2003	490,543	244,506	246,037	302,503	166,617
2004	472,761	244,217	228,544	308,598	138,932
2005	435,031	243,883	191,148	314,304	128,035
2006	448,153	242,266	205,887	330,634	124,524
2007	493,189	244,874	248,315	343,559	124,072
2008	466,000	246,000	220,000	327,715	116,535
2009	444,849	246,942	197,907	309,759	123,999
2010	470,171	255,403	214,768	326,104	116,858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2010년에 태어난 출생아수는 47만명, 사망자수는 25만5천명이었다. 2010년 한해 동안 출생아수와 사망자수의 차이를 의미하는 자연증가에 의해 21만6천명의 인구가 증가한 셈이다.

출생아수 추이는 1970년 1백만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절반이하의 수준인 43만 5천명까지 감소했다. 반면 사망자수 추이는 1970년 25만 8천명에서 증가한 후 1980년대 후반 부터는 24만명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7년 이후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은 전년에 비해 혼인은 늘고, 이혼은 감소했다. 2010년 연간 혼인건수는 32만 6천건으로, 전년의 30만 9천건에 비해 1만 6천건이 증가했다. 2010년의 이혼은 11만6천건으로 2009년에 비해 7천건 감소했다.

혼인은 1996년 43만 5천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3년 30만 3천건까지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이혼은 1970년에 1만 2천건에서 1998년에는 11만 6천건으로 열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16만 6천건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 조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수)은 9.4명으로 2009년 9.0명보다 0.4명이 증가했다. 조사망률(인구 1천 명당 사망자수)은 5.1명으로 2009년보다 0.1명이 증가했다. 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차감한 자연증가율은 2010년 4.3명으로 2009년보다 0.3명이 증가했다.

2010년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6.5로 2009년 6.2보다 0.3이 증가했고,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2.3으로 2009년 2.5건보다 0.2가 감소했다.

〈표 2-1-4〉 연도별 인구동태율 추이

(단위 : 건/1천명당)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조출생률	31.2	24.8	22.6	16.1	15.2	15.7	13.3	11.6	10.2	10.2	9.8	8.9	9.2	10.0	9.4	9.0	9.4
조사망률	8.0	7.7	7.3	5.9	5.6	5.3	5.2	5.0	5.1	5.1	5.0	5.0	5.0	5.0	5.0	5.0	5.1
자연 증가율	23.2	17.1	15.4	10.2	9.5	10.3	8.2	6.5	5.1	5.1	4.7	3.9	4.2	5.1	4.4	4.0	4.3
조혼인율	9.2	8.0	10.6	9.4	9.3	8.7	7.0	6.7	6.3	6.3	6.4	6.5	6.8	7.0	6.6	6.2	6.5
조이혼율	0.4	0.5	0.6	0.9	1.1	1.5	2.5	2.8	3.0	3.4	2.9	2.6	2.5	2.5	2.4	2.5	2.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연도

가. 출생

2010년의 출생아수는 47만명으로 하루 평균 1,288명이 태어났다. 전년도의 44만5천명에 비해 5.7%(2만 5천명) 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면서 20~30대의 미혼자 비중이 늘고, 초혼연령이 상승하면서 출생은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2006년 ‘쌍춘년’과 2007년 ‘황금돼지해’ 등의 영향으로 2007년의 출생은 49만명까지 증가했다. 2008년과 2009년은 출생아수가 감소했으나 2010년에는 47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표 2-1-5〉 출생아수 및 조출생률

(단위 : 명, %)

연 도	출생아수	증 감	증감률(%)	1일평균	조출생률
1995	715,020			1,959	15.7
1996	691,226	-23,794	-3.3	1,889	15.0
1997	668,344	-22,882	-3.3	1,831	14.4
1998	634,790	-33,554	-5.0	1,739	13.6
1999	614,233	-20,557	-3.2	1,683	13.0
2000	634,501	20,268	3.3	1,734	13.3
2001	554,895	-79,606	-12.5	1,520	11.6
2002	492,111	-62,784	-11.3	1,348	10.2
2003	490,543	-1,568	-0.3	1,344	10.2
2004	472,761	-17,782	-3.6	1,292	9.8
2005	435,031	-37,730	-8.0	1,192	8.9
2006	448,153	13,122	3.0	1,228	9.2
2007	493,189	45,036	10.0	1,351	10.0
2008	465,892	-27,189	-5.5	1,273	9.4
2009	444,849	-21,043	-4.5	1,219	9.0
2010	470,171	25,322	5.7	1,288	9.4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2010년 출생아 모의 연령별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을 보면 30대 초반(30~34세)의 출산율이 112.4명으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25~29세)이 79.7명, 30대 후반(35~39세)이 32.6명 순으로 높았다. 미혼과 만혼이 늘면서 주요 출산연령층이 높아져, 2007년에 처음

으로 20대 후반보다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더 높아졌다. 20대 후반의 출산율은 1996년 167.6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0년에는 절반 수준인 79.7명까지 감소했다. 반면 30대 초반 출산율은 1996년 71.1명에서 2010년 112.4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1-6〉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단위 :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명)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5~19세	3.3	3.0	2.8	2.6	2.5	2.2	2.6	2.5	2.3	2.1	2.2	2.2	1.7	1.7	1.8
20~24세	58.8	54.2	48.3	43.3	38.8	31.4	26.5	23.6	20.6	17.8	17.6	19.5	18.2	16.5	16.5
25~29세	167.6	159.7	152.1	147.2	149.6	129.2	110.9	111.7	104.5	91.7	89.4	95.5	85.6	80.4	79.7
30~34세	71.1	71.5	71.2	72.3	83.5	77.5	74.5	79.1	83.2	81.5	89.4	101.3	101.5	100.8	112.4
35~39세	15.5	15.4	15.2	15.3	17.2	17.0	16.6	17.1	18.2	18.7	21.2	25.6	26.5	27.3	32.6
40~44세	2.4	2.3	2.3	2.4	2.5	2.4	2.4	2.4	2.4	2.4	2.6	3.1	3.2	3.4	4.1
45~49세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일반출산율 ¹⁾	53.5	49.6	46.7	45.0	46.3	40.3	35.7	35.7	34.4	31.8	32.9	36.3	34.4	33.0	35.2
합계출산율 ²⁾	1.58	1.52	1.45	1.41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1.15	1.23

주 : 1) 15~49세 여자인구 1천명당 명.

2) 여자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수, 여자 1명당 명.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2010년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6.9명으로 2009년 106.4명보다 0.5명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출생성비는 105명을 기준으로 ± 2 명(103~107명) 수준을 의미한다. 출생성비는 출산율이 줄어 들면서 1980년 중반이후 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1994년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강화되면서 출생성비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정상성비 범위인 107.8명까지 감소했다.

자녀의 출생순위별로는 성비 차이가 있었다. 2010년 첫째아와 둘째아의 성비는 106.4명과 105.8명으로 정상성비를 보이나, 셋째아 이상인 경우는 110.9로 남아 비중이 아직 높다. 그러나, 셋째아 이상의 성비도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1-7〉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단위 : 여아 1백명당 남아수)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출생성비	111.5	108.3	110.2	109.6	110.2	109.1	110	108.7	108.2	107.8	107.5	106.2	106.4	106.4	106.9
첫째아	105.1	105.2	106	105.6	106.3	105.5	106.5	104.9	105.1	104.8	105.7	104.5	104.9	105.1	106.4
둘째아	109.8	106.3	108.1	107.5	107.4	106.4	107.3	107	106.2	106.5	106	106	105.6	105.8	105.8
셋째아 이상	166	136.1	146	143.3	144.2	141.5	141.4	136.9	133	128.5	121.9	115.7	116.7	114.3	110.9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나. 사망

2010년 총사망자 25만 5천명 중 청소년(10~24세) 사망은 2,86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를 차지한다. 청소년 사망 중 10~14세는 417명(14.6%), 15~19세는 1,034명(36.1%), 20~24세는 1,411명(49.3%)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사망원인은 전체 사망자에 비해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운수사고, 자살 등)에 의한 사망자 비중이 높다. 청소년 사망의 66.2%는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이었고, 신생물에 의한 사망 11.7%,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 5.4%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체 연령의 사망원인은 신생물 28.6%, 순환기계통의 질환 22.0%,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12.8%의 순이다.

〈표 2-1-8〉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수 및 구성비

(단위 : 명, %)

사망원인	총사망		청소년사망				
	계	구성비	계	구성비	연령별 구성비		
					10~14세	15~19세	20~24세
전체	255,403	100.0	2,862	100.0	100.0	100.0	100.0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6,679	2.6	33	1.2	0.7	1.4	1.1
신생물	73,145	28.6	335	11.7	20.4	12.5	8.6
혈액 및 조혈기관질환과 면역 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614	0.2	27	0.9	2.4	0.8	0.6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11,148	4.4	25	0.9	1.9	0.7	0.7
정신 및 행동장애	4,947	1.9	4	0.1	0.0	0.3	0.1
신경계통의 질환	6,050	2.4	154	5.4	9.6	6.4	3.4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3	0.0	1	0.0	0.0	0.0	0.1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3	0.0	0	0.0	0.0	0.0	—
순환기계통의 질환	56,126	22.0	146	5.1	7.4	4.7	4.7
호흡기계통의 질환	18,530	7.3	33	1.2	1.2	1.3	1.1
소화기계통의 질환	11,064	4.3	24	0.8	1.7	0.4	0.9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490	0.2	1	0.0	0.2	0.0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 조직의 질환	1,871	0.7	11	0.4	0.2	0.4	0.4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4,846	1.9	12	0.4	1.0	0.3	0.4
임신, 출산 및 산후기	69	0.0	2	0.1	0.0	0.1	0.1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814	0.3	0	0.0	0.0	0.0	—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498	0.2	45	1.6	3.8	1.3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25,859	10.1	113	3.9	3.6	4.4	3.8
질병이한 및 사망의 외인	32,647	12.8	1,896	66.2	45.8	65.3	73.0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10.

다. 혼 인

2010년 한 해 동안 총 혼인건수는 32만 6천건(쌍)으로, 하루 평균 893건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2010년의 혼인은 전년도에 비해 5.3%(1만 6천건) 증가했다. 최근 혼인추이는 2004년 이후 4년간 증가세를 보이다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2008년과 2009년에 연속해서 감소한 후 2010년에 다시 증가했다. 2010년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도 6.5건으로 전년보다 0.3건이 증가했다.

〈표 2-1-9〉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단위 : 건)

연 도	혼인건수	증 감		1일평균	조혼인율 (천명당)
			증감률(%)		
1995	398,484			1,092	8.7
1996	434,911	36,427	8.4	1,188	9.4
1997	388,960	-45,951	-11.8	1,066	8.4
1998	373,500	-15,460	-4.1	1,023	8.0
1999	360,407	-13,093	-3.6	987	7.6
2000	332,090	-28,317	-8.5	907	7.0
2001	318,407	-13,683	-4.3	872	6.7
2002	304,877	-13,530	-4.4	835	6.3
2003	302,503	-2,374	-0.8	829	6.3
2004	308,598	6,095	2.0	843	6.4
2005	314,304	5,706	1.8	861	6.5
2006	330,634	16,330	4.9	906	6.8
2007	343,559	12,925	3.8	941	7.0
2008	327,715	-15,844	-4.8	895	6.6
2009	309,759	-17,956	-5.5	849	6.2
2010	326,104	16,345	5.3	893	6.5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혼인편)」, 각 년도.

라. 이혼

2010년 한 해 동안 이혼은 11만 7천건(쌍)으로 1일 평균 320건(쌍)이 이혼했다. 2009년의 이혼 12만 3천건에 비해 2010년은 5.8%(7,141건) 감소했다. 이혼은 1995년 6만 8천건에서 증가하여 IMF이후인 1998년에 11만건을 넘어섰고, 2003년에는 16만 6천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이혼건수는 2010년 11만 7천건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이혼건수는 이혼숙려제의 도입으로 둔화추세이다. 2010년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도 2.3건으로 전년보다 0.2건 감소했다.

〈표 2-1-10〉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단위 : 건)

연 도	이혼건수			1일평균	조이혼율 (천명당)
		증 감	증감률(%)		
1995	68,279			187	1.5
1996	79,895	11,616	14.5	218	1.7
1997	91,160	11,265	12.4	250	2.0
1998	116,294	25,134	21.6	319	2.5
1999	117,449	1,155	1.0	322	2.5
2000	119,455	2,006	1.7	326	2.5
2001	134,608	15,153	11.3	369	2.8
2002	144,910	10,302	7.1	397	3.0
2003	166,617	21,707	13.0	456	3.4
2004	138,932	-27,685	-19.9	380	2.9
2005	128,035	-10,897	-8.5	351	2.6
2006	124,524	-3,511	-2.8	341	2.5
2007	124,072	-452	-0.4	340	2.5
2008	116,535	-7,537	-6.5	318	2.4
2009	123,999	7464	6.4	340	2.5
2010	116,858	-7141	-5.8	320	2.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이혼편)」, 각 년도.

제2장 | 가족구성 및 변동

1. 가족구성 현황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일컫는 가구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사회적 단위이다.

〈표 2-2-1〉 연도별 가구수 및 가구원수

(단위 : 가구, 명)

연 도	총가구수	일반가구수	집단가구수	평균가구원수(명)
1970	5,856,901	5,792,983	63,918	5.25
1975	6,754,257	6,647,778	106,479	5.04
1980	7,992,968	7,969,201	23,767	4.54
1985	9,598,796	9,571,361	27,435	4.09
1990	11,370,160	11,354,540	15,620	3.71
1995	12,974,194	12,958,181	16,013	3.34
2000	14,326,224	14,311,807	14,417	3.12
2005	15,988,274	15,887,128	16,551	2.88
2010	17,574,067	17,339,422	20,727	2.7

주 : 1) 외국인 가구 제외.

2) 1970년대에는 1인 단독가구를 추정(216,706)하여 일반가구에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가구구성에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전통적인 대가족의 해체, 친족가구의 비율감소, 핵가족 비율의 증가, 1인 가구 및 고령화로 인한 노인가구의 증가, 출산율 감소 등으로 가구수는 증가한 반면, 가구당 평균가구원 수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2010년 총 가구수는 1,757만 가구로, 2005년에 비해 158만가구가 증가했고, 1970년에 비해서는 가구수가 약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평균가구원수는 2.7명으로 2005년 2.88명에서 0.18명 감소했다. 평균가구원수는 1970년대 5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3명 이하로 줄었다.

2. 가구수 현황

가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2010년 총 1,757만 가구 중 일반가구가 98.7%(1,734만 가구), 외국인 가구가 1.2%(21만 가구), 기숙사나 사회시설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가 0.1%(2만 가구)를 차지한다. 일반가구는 혈연가구와, 1인 가구, 남남끼리 사는 비혈연가구로 구성되는데, 2010년에는 혈연가구 73.9%, 1인 가구 23.6%, 남남끼리 사는 비혈연 가구는 1.2%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 비해 일반가구는 9.1% 증가했는데, 혈연가구는 4% 증가한 반면, 1인 가구는 30.6% 증가하여 최근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가구구성은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혈연가구는 동지역이 74.7%로, 읍면지역 70.6%보다 높았다. 반면, 1인 가구는 동지역이 22.8%로, 읍면지역 26.8%보다 낮았다. 읍면지역에 1인 가구 비율이 동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혼자 사는 노인의 비중이 동지역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2-2〉 가구유형별 가구수 현황

(단위 : 가구,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증감률(%)
	가 구 수	구 성 비	가 구 수	구 성 비	가 구 수	구 성 비	
전 국							
총가구	14,391,374	100	15,988,274	100	17,574,067	100.0	9.9
일반가구	14,311,807	99	15,887,128	99	17,339,422	98.7	9.1
(혈연가구)	(11,928,143)	(83)	(12,490,507)	(79)	12,994,994	73.9	4.0
(1인가구)	(2,224,433)	(16)	(3,170,675)	(20)	4,142,165	23.6	30.6
(비혈연가구)	(159,231)	(1)	(225,946)	(1)	202,263	1.2	-10.5
집단가구	14,417	0	16,551	0	20,727	0.1	25.2
외국인가구	65,150	1	84,595	1	213,918	1.2	152.9
동 부							
총가구	11,290,609	100	12,826,173	100	14,224,508	100.0	10.9
일반가구	11,229,476	99	12,744,940	99	14,031,069	98.6	10.1
(혈연가구)	(9,459,798)	(84)	(10,127,839)	(80)	10,630,848	74.7	5.0
(1인가구)	(1,642,618)	(15)	(2,439,761)	(19)	3,244,064	22.8	33.0
(비혈연가구)	(127,060)	(1)	(177,340)	(1)	156,157	1.1	-11.9

〈표 2-2-2〉 가구유형별 가구수 현황(계속)

(단위: 가구,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증감률(%)
	가 구 수	구 성 비	가 구 수	구 성 비	가 구 수	구 성 비	
집단가구	9,116	0	10,413	1	12,420	0.1	19.3
외국인가구	52,017	1	70,820	1	181,019	1.3	155.6
읍 면 부							
총가구	3,100,765	100	3,162,101	100	3,349,559	100.0	5.9
일반가구	3,082,331	99	3,142,188	99	3,308,353	98.8	5.3
(혈연가구)	(2,468,345)	(80)	(2,284,064)	(79)	2,364,146	70.6	3.5
(1인가구)	(581,815)	(19)	(730,914)	(19)	898,101	26.8	22.9
(비혈연가구)	(32,171)	(1)	(127,210)	(2)	46,106	1.4	-63.8
집단가구	5,301	0	6,138	0	8,307	0.2	35.3
외국인가구	13,133	0	13,775	0	32,899	1.0	138.8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0, 2005, 2010.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는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4인 가구(31.1%)였으나, 2010년에는 2인 가구(24.3%)가 4인 가구(22.5%)나 3인 가구(21.3%)보다 더 많았다.

가구원수 분포에도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있었다. 동지역은 4인 가구가 24.0%로 가장 많았으나, 읍면지역은 2인 가구의 비중이 31.8%로 가장 높았다.

〈표 2-2-3〉 가구의 가구원수 현황

(단위 : 천가구, %)

구 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전 국								
2010 (비 율)	17,339,422 (100.0)	4,142,165 (23.9)	4,205,052 (24.3)	3,695,765 (21.3)	3,898,039 (22.5)	1,078,444 (6.2)	241,063 (1.4)	78,894 (0.5)
2005 (비 율)	15,887 (100.0)	3,171 (20.0)	3,521 (22.2)	3,325 (20.9)	4,289 (27.0)	1,222 (7.7)	267 (1.7)	93 (0.6)
2000 (비 율)	14,312 (100.0)	2,225 (15.5)	2,731 (19.1)	2,988 (20.9)	4,447 (31.1)	1,443 (10.1)	345 (2.4)	135 (0.9)
동 지 역								
2010 (비 율)	14,031,069 (100.0)	3,244,064 (23.1)	3,153,892 (22.5)	3,119,746 (22.2)	3,373,482 (24.0)	892,371 (6.4)	189,651 (1.4)	57,863 (0.4)
2005 (비 율)	12,744 (100.0)	2,440 (19.1)	2,558 (20.1)	2,771 (21.7)	3,703 (29.1)	1,006 (7.9)	203 (1.6)	65 (0.5)
2000 (비 율)	11,229 (100.0)	1,643 (14.6)	1,890 (16.8)	2,420 (21.5)	3,778 (33.7)	1,159 (10.3)	252 (2.3)	89 (0.8)
읍 면 지 역								
2010 (비 율)	3,308,353 (100.0)	898,101 (27.1)	1,051,160 (31.8)	576,019 (17.4)	524,557 (15.9)	186,073 (5.6)	51,412 (1.6)	21,031 (0.6)
2005 (비 율)	3,142 (100.0)	731 (22.7)	962 (29.9)	554 (18.0)	586 (20.0)	217 (7.0)	6 (2.1)	28 (0.4)
2000 (비 율)	3,082 (100.0)	582 (18.9)	841 (27.3)	568 (18.4)	669 (21.7)	284 (9.2)	93 (3.0)	46 (1.5)

주 : 각 통계표의 가구는 일반가구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0, 2005, 2010.

3. 가구의 세대구성

2010년의 세대구성유형별 가구 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가구(일반가구 기준) 중 부부와 자녀

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가 51.3%로 가장 많고, 1인 가구가 23.9%, 1세대 가구 17.5%, 3세대 가구 6.1%, 비혈연 가구 1.2%, 4세대 이상 가구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비해 2세대 가구 비율은 4.1%p 감소한 반면, 1인 가구는 1세대 가구는 각각 3.9%p와 1.3%p 증가했다.

2세대 가구의 비중은 동지역이 54.2%, 읍면지역은 39.1%로 농촌지역의 2세대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1세대 가구 비중은 동지역이 15.5%, 읍면지역이 25.6%로 읍면지역의 비중이 높았다.

읍면지역에서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의 구성비가 비교적 높은 것은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노인부부 및 노인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2-2-4〉 세대구성유형별 가구수 현황

(단위 : 천가구,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가 구 수	구 성 비	가 구 수	구 성 비	가 구 수	구 성 비
전 국	14,312	100.0	15,887	100	17,339	100.0
1세대가구	2,034	14.2	2,575	16.2	3,027	17.5
2세대가구	8,696	60.8	8,807	55.4	8,892	51.3
3세대가구	1,177	8.2	1,093	6.9	1,063	6.1
4세대이상가구	22	0.2	16	0.1	13	0.1
1인가구	2,225	15.5	3,171	20.0	4,142	23.9
비혈연가구	159	1.1	226	1.4	202	1.2
동지역	11,230	100.0	12,744	100.0	14,031	100.0
1세대가구	1,352	12.0	1,793	14.1	2,182	15.5
2세대가구	7,237	64.5	7,482	58.7	7,599	54.2
3세대가구	858	7.6	842	6.6	842	6.0
4세대이상가구	13	0.1	10	0.1	9	0.1
1인가구	1,643	14.6	2,440	19.1	3,244	23.1
비혈연가구	127	1.1	177	1.4	156	1.1
읍면지역	3,083	100.0	3,142	100.0	3,308	100.0
1세대가구	682	22.1	781	24.9	846	25.6
2세대가구	1,459	47.3	1,325	42.2	1,294	39.1
3세대가구	319	10.4	250	8.0	221	6.7
4세대이상가구	9	0.3	6	0.2	4	0.1
1인가구	582	18.9	731	23.3	898	27.1
비혈연가구	32	1.0	49	1.5	46	1.4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이혼편)」, 각 년도.

제3장 가족관계

제3장의 가족관계 부분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의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전국규모의 실태조사인 「제2차 가족실태조사」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8월~10월 중 6주간 실시되었으며, 전국 일반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크기는 2,500가구, 가족원 4,754명이다.

1. 부모-자녀 간 대화

2010년 가족실태조사¹⁾는 설문지 문항을 통해 부모들에게 자녀와 얼마나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응답 결과 아버지(34.4%)가 어머니(19.8%)보다 더 자녀와 대화가 부족하다(매우부족+조금부족)고 응답하였다. 한부모가정(48.5%), 맞벌이 가정(28.1%), 주말부부(38.9%)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자녀와 대화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한부모가정의 경우 절반 가까이(48.5%)가 자녀와 대화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2-3-1〉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와의 대화 충분성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부족	조금 부족	대체로 충분	매우 충분	해당 없음	전 체
성별	아버지	빈도	11	164	298	34	2	509
		%	2.2	32.2	58.5	6.7	0.4	100.0
	어머니	빈도	4	103	331	96	6	540
		%	0.7	19.1	61.3	17.8	1.1	100.0

1) 제2차 가족실태조사 중 부모-청소년자녀 관계는 부모의 경우, 12세~2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청소년 자녀는 15세~24세 이하인 경우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원 중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1,051명이고, 청소년은 692명(중고등 학생 314명, 대학생 209명)이다.

맞벌이 여부	맞벌이	빈도	3	105	227	46	3	384
		%	0.8	27.3	59.1	12.0	0.8	100.0
	홀벌이	빈도	8	136	371	62	3	580
		%	1.4	23.4	64.0	10.7	0.5	100.0
주말부부 여부	해당	빈도	3	4	10	1	0	18
		%	16.7	22.2	55.6	5.6	0	100.0
	비해당	빈도	12	263	620	129	8	1032
		%	1.2	25.5	60.1	12.5	0.8	100.0
한부모 가족 여부	해당	빈도	0	16	12	5	0	33
		%	0	48.5	36.4	15.2	0	100.0
	비해당	빈도	15	251	617	125	8	1016
		%	1.5	24.7	60.7	12.3	0.8	100.0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10.

한편 같은 질문문항에 대하여 자녀들은 딸들(25.1%)이 아들들(20.1%)보다 더 ‘부모와 대화
가 부족하다(매우 부족+조금부족)’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머니(11.7%)보다 아버지
(33.5%)와 더 ‘대화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2-3-2〉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와의 대화 충분성

(단위: 명, %)

구 분			매우 부족	조금 부족	대체로 충분	매우 충분	해당 없음	전 체
아버지	아들	빈도	11	87	185	41	19	343
		%	3.2	25.4	53.9	12.0	5.5	100
	딸	빈도	27	104	148	41	21	341
		%	7.9	30.5	43.4	12.0	6.2	100
어머니	아들	빈도	3	37	260	39	4	343
		%	0.9	10.8	75.8	11.4	1.2	100
	딸	빈도	4	36	228	70	2	340
		%	1.2	10.6	67.1	20.6	0.6	100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10.

이를 통해, 부모가 응답한 ‘자녀와의 대화부족(26.9%)’이 자녀가 응답한 ‘부모와의 대화부
족(22.6%)’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 19.8%가 ‘자녀와 대화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자녀는 11.7%만이 ‘어머니와 대화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2. 부모-자녀 간 이해도

부모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설문 문항을 통해 알아본 결과, 어머니(19.4%)가 아버지(12.2%)보다 더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없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의 형태별로 살펴보면, 한부모(55.9%), 맞벌이부부(17.4%)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 절반 이상(55.9%)이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2-3-3〉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도

(단위 : 명,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별	아버지	빈도	30	205	213	61	1	510
		%	5.9	40.2	41.8	12.0	0.2	100
	어머니	빈도	28	210	198	100	5	541
		%	5.2	38.8	36.6	18.5	0.9	100
맞벌이 부부 여부	해당	빈도	24	124	169	66	1	384
		%	6.3	32.3	44.0	17.2	0.3	100
	비해당	빈도	34	292	242	95	5	668
		%	5.1	43.7	36.2	14.2	0.7	100
주말 부부 여부	해당	빈도	0	8	9	1	0	18
		%	0	44.4	50.0	5.6	0	100
	비해당	빈도	58	408	402	160	6	1,034
		%	5.6	39.5	38.9	15.5	0.6	100
한부모 가족 여부	해당	빈도	0	7	8	19	0	34
		%	.0	20.6	23.5	55.9	0	100
	비해당	빈도	58	409	403	142	6	1,018
		%	5.7	40.2	39.6	13.9	0.6	100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10.

한편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를 설문문항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아들(23.6%)이 딸(16.7%)보다 더 ‘부모가 나를 잘 이해하지 못 하신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 자녀들은 ‘어머니(22.2%)가 아버지(18.2%)보다 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돈독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대

화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좁혀지지 못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2-3-4〉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도

(단위 : 명,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전체
아버지	남자	빈도	25	92	128	73	1	24	343
		%	7.3	26.8	37.3	21.3	0.3	7.0	100
	여자	빈도	22	85	167	45	5	16	340
		%	6.5	25.0	49.1	13.2	1.5	4.7	100
어머니	남자	빈도	18	132	102	78	10	4	344
		%	5.2	38.4	29.7	22.7	2.9	1.2	100
	여자	빈도	21	125	127	57	7	5	342
		%	6.1	36.5	37.1	16.7	2.0	1.5	100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10.

전체적으로, 부모가 응답한 ‘자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15.9%)이 자녀가 응답한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20.2%)보다 낮게 나타나 부모-자녀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족이 함께한 여가시간

부모와 자녀에게 ‘지난 6개월 간 가족과 함께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을 질문한 결과 부모와 자녀의 경우 모두 TV시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3-5〉 가족이 함께한 여가활동

(단위 : 명, %)

구 분			문화예술훈람	여행가기	공원가기	주말농장	등산	산책	스포츠활동	스포츠경기관람	종교생활	쇼핑	게임	TV 시청	비디오보기	외식하기	목욕 / 사우나 / 찜질방	노래방	자원봉사	기타	전체
자녀	아들	빈도	2	12	7	17	5	55	5	0	0	1	25	195	1	3	0	—	—	7	335
		%	0.6	3.6	2.1	5.1	1.5	16.4	1.5	0	0	0.3	7.5	58.2	0.3	0.9	0	—	—	2.1	100
	딸	빈도	8	31	17	0	10	51	1	3	2	16	12	168	1	4	2	—	—	4	330
		%	2.4	9.4	5.2	0	3.0	15.5	0.3	0.9	0.6	4.8	3.6	50.9	0.3	1.2	0.6	—	—	1.2	100
부모	아버지	빈도	8	6	11	1	11	76	35	1	15	10	5	297	11	6	0	0	2	3	498
		%	1.6	1.2	2.2	0.2	2.2	15.3	7.0	0.2	3.0	2.0	1.0	59.6	2.2	1.2	0	0	0.4	0.6	100
	어머니	빈도	6	11	8	8	29	99	24	4	1	5	2	311	10	7	3	1	3	4	539
		%	1.1	2.1	1.5	1.5	5.4	18.5	4.5	0.7	0.2	0.9	0.4	58.0	1.9	1.3	0.6	0.2	0.6	0.7	100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10.

한편, 부모에게 ‘지난 6개월 동안 가족과 함께 보낸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을 질문한 결과 아버지(86분)가 어머니(97분)보다 짧게 나타났다. 또, 맞벌이 부부(85분)가 홀벌이 부부(96분)보다, 주말부부(34분)가 주말부부가 아닌 경우(93분)보다 다 짧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와 자녀들이 가족 간의 대화의 충분성과 이해도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현상은 충분한 시간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2-3-6〉 지난 6개월간 평일 여가시간

(단위 : 시간 : 분 : 초)

구 분		자녀	부모
성별	남자	1:01:55	1:26:28
	여자	1:11:19	1:36:57
맞벌이여부	맞벌이	0:58:34	1:25:16
	홀벌이	1:14:12	1:36:19
주말부부여부	해당	0:19:08	0:34:11
	비해당	1:07:30	1:33:03
한부모 가족여부	해당	2:00:08	1:35:29
	비해당	1:04:43	1:31:58
경제수준	하층	0:50:34	1:08:55
	중하류층	1:10:24	1:34:04
	중류층	1:05:11	1:34:30
	중상류층	1:37:40	1:13:46
	상류층	—	1:06:44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10.

제3부

정부는 청소년의 권리신장을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고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권리침해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1년 5월 중앙차원의 청소년전담기구로써 청소년희망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년)에서는 ‘교사, 사회 활동가, 법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집단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해 청소년의 권리 및 인격권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맞춤형 권리교육 교재 개발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동시에 청소년 친화적 교육·보육·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대상의 높이에 맞는 맞춤형 권리교육을 3개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을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회구성원, 인류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UN이나 EU의 경우에는 청소년 참여를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여성가족부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176개 지역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295개 지역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에서는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을 정책의제로 선정하여 과제 발굴 및 활동을 추진하였고, 청소년 참여 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참여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 ‘전국청소년참여대회’ 등 다양한 참여기구 활동을 지원하였다.

청소년 권리·참여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제1장 |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 제2장 |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 제3장 | 청소년 주요 행사

제1장

청소년 권리 · 참여 정책의 형성

1. 청소년 권리 · 참여 정책의 형성

가. 지역아동센터

1991년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여 협약 당사국이 됨에 따라 요보호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정책이 권리보장 관점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협약에 명시된 차별금지 원칙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확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도입,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운영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년~2002년)과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 기본계획(2003년~2007년)을 계기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자율 · 참여’가 주요 정책이념으로 되는 획기적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 · 청소년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가 만들어지고 청소년이 정책에 직접 참여 ·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청소년의 생존 · 보호 · 발달 · 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의 정비 등으로 아동 · 청소년의 기본생활보장은 물론 권리 · 참여, 안전 · 보호, 교육 및 여가보장 등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장 | 청소년 권리 · 참여 정책

1.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가. 유엔 아동권리 협약

국제사회는 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1989년 11월 20일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91년에 동 협약에 가입하였다. 협약에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 사회, 가정 모두가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주며 아동의 인격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가입 후 2년 내에 이행상황에 대한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는 5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4년과 2000년에 1차와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1996년과 2003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심의받았다. 이후 3차 국가보고서는 2004년에 제출되어야 했으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자체심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 형태로 2008년 12월 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2008년 12월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에 실시된 2차 보고서 심의에서 가정폭력처벌특별법 제정(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200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2001년) 등 아동권리의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1차 보고서 심의(1996년)에서 지적된 권고사항의 이행 미흡, 상설 아동권리조정기구의 미설립, 아동권리협약의 유보조항 철회노력 부족, 시민사회와의 협력 부족, 아동권리협약의 교육홍보 미흡 등에 대해 우려가 표명되었다.

이러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정부는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수준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권리 침해사례의 실질적 조사와 아동권리신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를 두고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전문가, 법조, 의료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브즈퍼슨 21명과 옴브

즈키드 10명을 위촉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성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교육교재 개발, 교육커리큘럼 신설, 교육인력 풀 등을 추진하고, 청소년특별회의 및 아동 총회 개최, 아동권리주간 운영 등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문제에 대응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 44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외 2007년 민법을 개정하여 혼인 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조정하였고, 협약 비준 당시 유보하였던 부모면접교섭권에 대한 철회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2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2개의 선택의정서인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24일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 그리고 선택의정서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2007년 3월 9일에 제출하고, 2008년 5월 23일 심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심의에서 현역병 지원 입대 연령을 17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병역법 개정(2004년)과 18세 미만의 아동이 무력분쟁에 참여하게 한 공군규정을 개정(2005년)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해외 평화유지 인력과 망명·난민아동 관련 집단에 대한 협약 홍보 및 교육, 소형무기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등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동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 의정서’ 심의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보호 관련 법률의 제·개정, 혼인가능연령을 18세로 높인 민법 개정,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 추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립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선택 의정서의 조항과 국내 법률의 조화를 위한 조치, 경찰·검사·판사·의료진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권리교육 교재 및 과정 개발, 입양허가제 유보조항 철회 및 헤이그협약 비준, 아동상담전화 통합 등을 권고하였다.

2008년 12월에 제출한 이번 보고서에는 관계부처와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아동관련학계 및 단체, 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통해 내용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있을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및 협약 전반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 상황과 그간의 노력을 평가 받고, 향후 아동·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앞으로 이 같은 국가보고서는 다양한 매체에 공개하여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

(1) 추진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수준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 아동·청소년의 권리수준은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주로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가정, 학교 및 근로 현장 등에서 권리 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지원기관이 미흡한 실정이고, 권리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2008년 7월 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 권리센터 4개소를 시범운영하였으며, 2011년 5월 중앙차원의 청소년 권리보호 전담기구로서 청소년 희망센터를 개소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요기능

청소년 희망센터는 청소년 권리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사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UN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의 권리증진에 대한 기획과제를 발굴·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 대상 교육연수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청소년 참여기구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의 권리 상황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청소년 권리 시범사업기관 및 지역사회의 관련 민간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청소년 권리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청소년 희망센터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권리 관련 학계, 기관·단체, 실무자 등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과제에 대한 정기적 논의, 운영 계획 검토 등 정기적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 맞춤형 권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급

(1) 추진배경 및 목적

최근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권익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아동 · 청소년 권리교육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년)에서는 ‘교사, 사회 활동가, 법관 등 아동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집단에 대한 교육이 미흡’ 한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동 · 청소년의 권리 및 인격권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맞춤형 권리교육 교재 개발을 통해 아동 · 청소년의 시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 · 청소년 친화적 교육 · 보육 ·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 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권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2) 맞춤형 권리교재 개발 3개년 추진 기본계획 수립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며, 권리 관련 지식 · 태도 · 행동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맞춤형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3개년(2008년~2010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1차년도(2008년)에는 공통, 초등교사(초등학생), 복지시설 종사자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Text) 기반의 기본교재를 개발하고, 2차년도(2009년)에는 개발된 교재를 활용한 맞춤형 권리교육 실시 및 1차년도에 개발한 기본교재를 토대로 웹(Web)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3차년도(2010년)에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시범교육을 실시하였다.

(3)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2008년 7월, 공통, 초등교사(초등학생), 복지시설 종사자 및 보육교사 대상의 교재 개발을 위해 민 · 관 공동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교육대상과 내용별로 공통분과, 아동분과, 보육분과, 복지분과로 4개 분과를 구성하여 교재를 개발하였다.

공통교재는 아동 · 복지 · 보육 교재의 기초 교재로서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과 각 조항에 대한 이해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권리의 개념, 역사, 국내외적인권기준 및 다양한 교수기법 등을 담은 이론서와 비차별, 비폭력, 건강, 보호 및 학대 방지 등 포괄적 아동권리에 대해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방법 등을 담은 실용서로 개발되었다.

초등교사(초등학생)용 교재는 아동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전반적인 권리문화의 기반이 되는 태도 형성에 중점을 둔 아동용과, 아동용 교재의 구체적 활용 및 교수 방법을 담은 가이드용(교사용)으로 구분 · 개발되었다.

또한, 보육교사용 교재는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해 효과적인 양육방법, 국내·외 인권기준, 양육상황별 상담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이론서와 현장에서 실천·적용할 수 있는 사례 및 활동지침을 포함하는 실용서로 개발되었고, 복지시설 종사자용 교재는 아동양육기관, 그룹홈, 쉼터 등의 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해 관련시설 및 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을 체벌하지 않고 건강하게 양육·지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담은 이론서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포함한 실용서로 개발되었다.

각 분과별로 개발된 교재는 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보급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맞춤형권리 청소년인권교육을 2월, 4월, 9월에 걸쳐 아동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의 기초, 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시설의 아동권리증진, 아동청소년정책과 아동권리 테마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2010년에는 청소년의 시민권 강화와 권리의식 제고, 청소년 지도자의 권리 친화적인 교육·지도 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맞춤형 권리교재」(3종)를 개발하였다.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권리 교육이 아닌 권리에 대한 가치관, 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는 내용이며,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재 개발을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집필하였다.

중·고생 대상 교재인 청소년용은 청소년의 권리 의식 함양을 위한 핵심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청소년 교육용은 워크시트 등을 수록하여 청소년 지도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용 매뉴얼로 개발하였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용은 청소년 시설·단체 등에 종사하는 지도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권리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교재를 활용하여 2010년에는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 632명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2.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가. 청소년참여위원회

(1) 목적 및 기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주무부처(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정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의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동 계획에 따라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 내에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운영주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기·임시 회의를 통한 청소년 관련 정책의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제안과 정책자문, 각종 토론회·워크숍 개최 및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은 개인적으로 청소년 자신의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2) 운영 및 활동 현황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중앙부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총 176개(‘10.12.31현재)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표 3-2-1〉 참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자치위원회, 청소년회의, 차세대위원회, 청소년구정평가단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별 운영규모는 10~30명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선발된 약 3,200여명의 청소년이 활동 중에 있다.

2011년 현재 운영예산은 16개 시·도에는 매년 10백만원(국비 5백만원, 지방비 5백만원), 시·군·구에는 3백만원(국비 1.5백만원, 지방비 1.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1〉 시·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현황

(단위 : 개)

계	중앙 부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6	1	3	2	2	10	2	2	6	31	19	5	16	12	23	23	18	1

자료 : 여성가족부(2010)

나. 청소년운영위원회

(1) 목적 및 기능

전국의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998년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의 정책기조가 청소년의 자율·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2000년대 초반 서울시 노원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위원회’, 중랑청소년수련관의 ‘21세기 청소년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설치되었으며, 이후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급속도로 설치가 확대되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심의·평가 등을 통해 시설 운영전반에 참여함은 물론 프로그램의 직접 기획·운영, 청소년 대표로서 각종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행사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현황 및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에서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1년이다(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4조). 2010년 12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의 338개 생활권 수련시설 중 295개의 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표 3-2-2〉 참조).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국 약 4,1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비해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이는 전담 지도자 배치나 시설 내 전용공간 확보 등 활동인프라가 청소년참여위원회보다 양호하다는 이유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의욕과 청소년 의견에 대한 반영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2011년 현재 운영예산은 운영위원회별 매년 2백만원(국비 1백만원, 지방비 1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지원하고 있다.

〈표 3-2-2〉 시·도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95	44	14	9	12	6	10	7	59	29	15	11	16	14	13	15	20

자료 : 여성가족부(2010)

다. 청소년특별회의

(1) 목적 및 기능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여성가족부 및 16개 시·도 청소년 과 청소년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자치단체 또는 청소년시설 중심의 지역 규모의 참여기구인데 반해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동일한 정책의제로 함께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참여기구라 할 수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의 청소년 대표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활동, 복지, 보호를 위해 선정한 지역 예비의제를 바탕으로 출범식 및 의제선정 워크숍을 통해 당해 연도 최종 정책의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정책의제에 따라 지역별로 청소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해 발굴한 정책과제 및 의제연구를 통해 세부정책과제를 선정한 후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건의한다.

〈표 3-2-3〉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선정 및 정책과제 제안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10)

(2) 현황 및 운영

2010년에는 청소년 357명, 전문가 56명 등 총 413명이 참여하여 6월~10월까지 16개 시·도 지역회의별 논의 활동을 거쳐 선정된 3개 부문 53개의 세부정책과제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였다. 또한, 학계, 정계, 단체 등의 사회지도층 인사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대국민 관심을 제고하였고, 5년간(’05년~’09년)의 정책세부추진과제를 모니터링 하여 146개 과제 중 130개 과제의 이행을 확인하는 등 정책실효성을 높여가고 있다.

〈표 3-2-4〉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과제 제안 현황

연도	의 제	수용률
2004 (시범)	■ 청소년 인권·참여(13개 과제)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
2005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35개 과제)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영역 31개 과제 수용	88.6%
2006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37개 과제)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33개 수용	89.2%
2007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18개 과제) - 선거연령 하향 등 15개 수용	83.3%
2008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35개 과제)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29개 수용	82.9%
2009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20개 과제)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개 수용	70.0%
2010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53개 과제)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49개 수용	92.4%

자료 : 여성가족부(2010)

2011년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는 온라인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SNS 청소년특별회의 홈페이지 운영, 카페토론방 개설 등을 통하여 청소년수요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청소년추진단 내 ‘의제연구팀’에 여성가족부 및 16개 시·도 위원 참여를 의무화하여 정책과제발굴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였다. 2011년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을 정책의제로 선정하여 과제발굴 및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라. 청소년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정부는 청소년 참여 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참여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 ‘전국청소년참여대회’ 등 다양한 참여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화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실천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주로 참여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 보전, 기초 질서 지키기, 청소년 권익 개선 등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을 제안 받고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0년 공모를 통해 청소년관련 기관을 지원하던 ‘참여공모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1년 현재 공모로 선정된 74개팀이 활동 중에 있다.

‘전국청소년참여대회’는 청소년 참여기구 정보교류 및 연대 구축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청소년참여대회는 토론, 참여활동 발표회 등으로 진행되며 모집·선발, 홍보 및 세부 프로그램 선정 등 행사 전반을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기획단이 주관한다. 2010년에는 전국참여기구 등에서 선발된 3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사례 발표’ 등 활동을 통해 대회를 개최하였다.

마. 청소년증 발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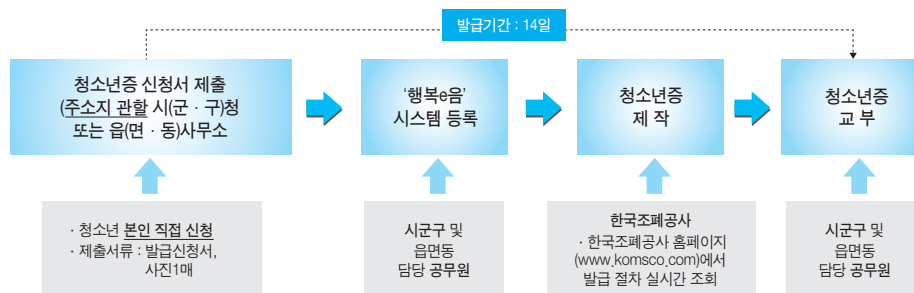
청소년증은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학생, 비학생간 차별없이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2004년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에게 시·군·구청장이 발급한다. 청소년증 발급 희망 청소년이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보유)와 함께 사진 1매(반명함판)를 주민등록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기간은 14일이다. 2008년에는 이용 청소년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여 접수 및 배송 직후에 발급 진행 상황을 SMS로 안내해 주고 있다.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공·릉,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또는 일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증은 위의 경제적인 혜택 외에도 예금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기획재정부 협조), 대학입시·검정고시·각종 경시대회에서 신분증으로 활용(교육과학기술부 협조)이 가능하다.

〈그림 3-2-1〉 청소년증 발급 과정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10)

〈표 3-2-5〉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릉 : 50%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영화관 : 500~1,000원 등
- ※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증의 연도별 발급 현황은 〈표 3-2-6〉와 같다.

〈표 3-2-6〉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단위 : 건)

년 도 별 시도별	2003년 (시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515	11,848	14,120	12,478	24,455	30,265	33,656	36,263
서울	436	1,515	1,781	4,355	6,975	8,251	8,480	8,954
부산	—	381	672	971	1,724	2,198	2,492	2,401
대구	—	181	214	580	1,754	1,905	2,212	2,072
인천	—	751	353	640	1,676	2,464	2,216	2,527
광주	—	282	61	110	318	416	509	576
대전	66	103	287	304	607	853	917	945
울산	—	86	105	220	640	844	897	952
경기	—	4,381	1,966	2,894	6,243	7,477	8,863	9,897
강원	13	148	85	341	428	566	835	908
충북	—	648	995	350	479	614	845	913
충남	—	311	4,275	368	855	720	765	889
전북	—	1,266	450	164	498	1,027	1,066	1,226
전남	—	244	175	141	390	499	616	625
경북	—	521	1,597	486	810	1,048	1,229	1,369
경남	—	983	677	418	893	1,165	1,440	1,738
제주	—	47	427	136	165	218	274	271

제3장 | 청소년 주요 행사

1. 청소년 달 행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 문화, 진로 등에 대한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해 오고 있다.

5월 한 달 동안 전국 일원에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청소년 주간 기념식,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청소년 유공자 포상,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통신, 과학체험 행사 및 성년의 날 행사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의 달’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계의 역량을 한 주에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5월 4째주를 청소년 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청소년주간 기념식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에 기여한 청소년과 청소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유공자를 발굴·시상하고 있다.

〈표 3-3-1〉 청소년 유공자 포상 현황

(단위 : 명)

행사별	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청소년 주간	181	2	3	8	18	150

자료 : 여성가족부(2011)

가. 청소년주간

2011년 청소년주간은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힘차게! 신나게! 당당하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라는 주제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와 협력하여 전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1년 청소년 주간 기념식은 청소년 주간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정부의 청소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청소년, 청소년 단체·기관, 유공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하여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기념식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건강한 청소년을 키우는 희망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할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청소년 현장 낭독,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MOU 체결,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발표,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 실천서약, 청소년 유공자 포상, 샤이니 민호와 축구선수 여민지의 청소년 명예 홍보 대사 위촉식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강변축제”를 개최하여 온가족 걷기대회, 청소년 명랑운동회, 자연문화탐방, 생태체험 등을 진행하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족과 함께 청소년의 달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표 3-3-2〉 청소년 주간 주요 행사내용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청소년 관련 기관장 간담회	5.23(월), 코엑스 오디토리움 5.23(월), 코엑스 오디토리움	청소년 정책 비전 공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협력·공조·단합의 계기 마련(40여명 참석)
청소년 주간 기념식		- 청소년 주간 선포 및 기념식 - 새로운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방향 공유 -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업무 협약식 -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정부 포상(정부포상 등 181명) - 청소년 현장 낭독 - 청소년 명예 홍보 대사 위촉 등(1,000여명 참석)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강변축제	5.14(토)	- 낙동강변을 활용, 걷기대회 코스로 구성한 아름다운 우리의 강을 가족들과 함께 탐방 - 가족 건강 구기종목 대항전, 가족 진기록 대회 등 운동회 진행 - 강변 생태 체험

자료 : 여성가족부(2011)

중앙행정기관 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도 5월 청소년주일을 맞아 청소년들이 우정과 화합을 꾀하고, 미래 청소년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표 3-3-3〉 청소년 주간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행사

시·도	내 용
계	전국 850여개
서울	제39회 성년의 날 기념행사, 보라매공원 가족축제 등 65개 행사
부산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강변축제, 장애인청소년어울마당 등 120개 행사
대구	청소년 대잔치, 청소년그림그리기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등 36개 행사
인천	청소년 금연건강 마라톤 대회, 청소년일일문화탐험대 등 58개 행사
광주	2011년 청소년주간 기념행사, 테마가 있는 신나는 데이캠프 등 35개 행사
대전	제7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제23회 걸스카우트 큰잔치 등 30개 행사
울산	청소년과 선생님이 만드는 푸른축제, 청소년직업체험축제 등 9개 행사
경기	장애청소년문화예술기행 등 130개 행사
강원	제12회 자랑스런 강원 청소년상 시상, 청소년그룹댄싱가요대회 등 66개 행사
충북	청풍명월 청소년 한마음 축제, 제5회 생겨진천 미래지기축제 등 58개 행사
충남	전국청소년암벽등반대회, 청소년 클럽대항 피구대회 등 35개 행사
전북	청소년건강걷기대회, 청소년 뉴스포츠 대축전 등 45개 행사
전남	청소년의 달 기념 심포지움, 청소년 녹차페스티벌 등 50개 행사
경북	전통예절을 통한 성년례,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등 52개 행사
경남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 축제, 성년의 날 기념식 등 50개 행사
제주	청소년가족 야영대회, 제주MBC 청소년가요제 등 14개 행사

자료 : 여성가족부(2011)

나.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웃어라! 청소년, 빛나라! 내일아」라는 주제로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 및 무역전시관 일대에서 열린 ‘2011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등에게 다양한 체험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숨은 재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건강관, 도전관, 성장관의 3개관에서 12가지 테마로 200여 개 부스를 구성하여 100여 개 청소년 단체가 참여하였고, 전국 청소년, 지도자, 교사, 학부모 등 14만 6천여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으로 국제로봇올림피아드, 동아리 문화공연제, 청소년

년 지역토론회 및 학술행사, 저명인사 초청 릴레이 강연, 청소년 명랑체력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005년부터 개최된 박람회는 2008년부터 행사 장소를 서울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단위의 행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광주, 2009년에는 대구, 2010년에는 부산, 2011년에는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표 3-3-4〉 역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현황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기간	2005. 5.21~5.22	2006. 5.19~5.21	2007. 6.1~6.3	2008. 5.29~6.1	2009. 5.28 ~ 5.31	2010. 5.27~5.31	2011. 5.26~5.28
장소	서울무역 전시장 (서울)	서울무역 전시장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 (서울)	김대중 컨벤션 센터 (광주)	EXCO 전시컨벤션 센터 (대구)	부산 BEXCO (부산)	대전 컨벤션센터 (대전)
주제	청소년,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청소년 미래비전	희망/기회/ 성취의 빛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디자인하다	청소년의 꿈을 찾아!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아!	웃어라, 청소년! 빛나라, 내일!
주최	청소년 위원회	국가청소년 위원회	국가청소년 위원회	보건복지 가족부, 광주광역시	보건복지 가족부, 대구광역시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
주관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후원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 개발원 등	교육인적 자원부, 한국청소년 수련원, 한국청소년 개발원 등	산업자원부, 노동부, KTF, LG전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알파	교육과학 기술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 안전청	교육과학 기술부, 노동부	교육과학 기술부, 문화체육 관광부, 부산교육청	교육과학 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지식경제부
인원	12,000여명	40,000여명	40,000여명	80,000여명	100,000여명	150,000여명	146,000여명

자료 : 여성가족부(2011)

다. 성년의 날

성년식은 만 19세와 20세를 맞는 청소년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행사이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관례(冠禮)란 성인식으로, 특히 양반사회에서 남자는 상투를 틀어 올리고 여자는 계례(笄禮)라 하여 쪽을 지어 비녀를 꽂는 의식을 말한다. 하지만 현대의 성인식은 관례라는 전통의식이 없어지고 대신 1973년에 제정되어 만 20세가 되는 해에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여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 청소년지도자 대회

‘청소년지도자대회’는 청소년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정보 및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교류와 화합의 문화를 통해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청소년을 돌보는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처음 실시 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08년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기관 통합으로 행사명이 “청소년지도자대회”에서 아동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지도자대회”로 통합 개최하였으나, 2010년 여성가족부로 ‘청소년’ 업무가 이관되어 다시 ‘청소년지도자대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 중에 있다. 2010년에는 청소년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안으로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대한 정보제공, 청소년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역량 결집의 장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2011년에는 “청소년의 꿈! 지도자의 열정! 희망찬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9월경 개최될 예정이다.

〈표 3-3-5〉 역대 청소년지도자대회 현황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기간	'05.9.26~27	'06.12.8~9	'07.9.16~17	'08.12.19~20	'09.8.28~29	'10.10.19
장소	올림픽 파크텔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올림픽 파크텔
주관	한국 청소년 단체 협의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청소년단체 협의회 (한국청소년 수련시설협회 등 4개 협의기구 공동주관)	아동단체협의회, 아동복지협회, 청소년단체 협의회, 청소년수련 시설협회 공동주관	아동단체협의회, 아동복지협회, 청소년단체 협의회,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공동주관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 상담원 공동주관
참여 인원	1,000여명	729명	1,500명	1,000여명	745명	2,000여명
주제	청소년 지도자의 삶과 도전 그리고 희망	청소년 지도자! 희망을 이끄는 사람들	꿈과 희망을 여는 사람들, 우리는 청소년 지도자!	아동 · 청소년 지도자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꿈 + 미래, "행복 공감 지도자대회"	만남 + 소통 + 공감 = 청소년 지도자의 행복
주요 프로 그램	기념식, 위원장과 대화, 콜로키움, 청소년 지도자의 밤 등	개회식, 배워봅시다, 청소년 지도자의 밤 및 교류회, 한마음 체육대회	청소년 지도자의 날 전야제 (축하공연, 기념식, 지도자 경연대회), 교류회, 청소년지도자 체육대회 (대동제)	소통의 장 (팀원 간 단합, 민속공연), 만남의 장 (개회사, 기념공연, 지도자 비전 공유), 화합의 장 (지도자 친선교류), 도약의 장 (명랑 운동회 등)	주제발표 및 토론, 아동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발전방안, 기념식, 우수운영사례 경진대회, 단합대회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이해와 사례 발표, 분야별 우수사례 발표, 제4차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정 · 보완 소개, 기념식, 올해의 지도자상 수상, 결의문 낭독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10)

3. 푸른 성장 대상(大賞)

여성가족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개인 혹은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격려함으로써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푸른성장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1년 제7회 푸른성장대상」은 기존의 활동, 복지, 보호로 나뉘어져 있던 수상 부문 구분을 없애고 부문을 통합하였으며, 올해 주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으로 선정되었다. 추천 대상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수공기간 제한없이 추천할 수 있으며, 청소년 부문 역시 추천 주제에 대한 공적이 있는 청소년 개인 및 동아리이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개인 수상자는 10백만원, 단체 수상자는 15백만원을 수여받게 되고, 청소년 부문 의 개인 수상자는 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동아리 수상자는 1백만원을 수여받게 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후보자 추천기회를 확대하여 숨은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청소년 분야의 활동이 있는 기관 및 단체 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표 3-3-6〉 푸른성장대상 역대수상자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주최		보건복지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보건복지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주관		푸른성장대상위원회	푸른성장대상위원회	푸른성장대상위원회	푸른성장대상위원회
시상 부문		4개 부문(활동, 복지, 보호, 참여·인권)	5개 부문(활동, 복지, 정책, 학술, 미디어)	4개 부문(활동, 복지, 보호, 청소년)	-
상금		개인 2명 각 10백만원, 2개 단체 각 20백만원	4개 부문 각 10백만원	개인 1명 10백만원, 2개 단체 각 15백만원, 7개 동아리 각 1백만원, 청소년 1명 (20만원)상품권	개인 10백만원, 단체 15백만원, 청소년 상품권 (50만원), 동아리 - 1백만원
위원장		이한동 (대한민국약속재단총재)	박완서 (서울대 명예문학박사)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유인촌 (극단 유 시어터 대표)
시 상 식	일자	12.26(금) 16:00	11.30(월) 16:00	12.3(금) 15:00	11.18(금) 15:00(예정)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MBC 여의도 D공개홀	MBC 여의도 공개홀
	참석수	250여명	250여명	250여명	250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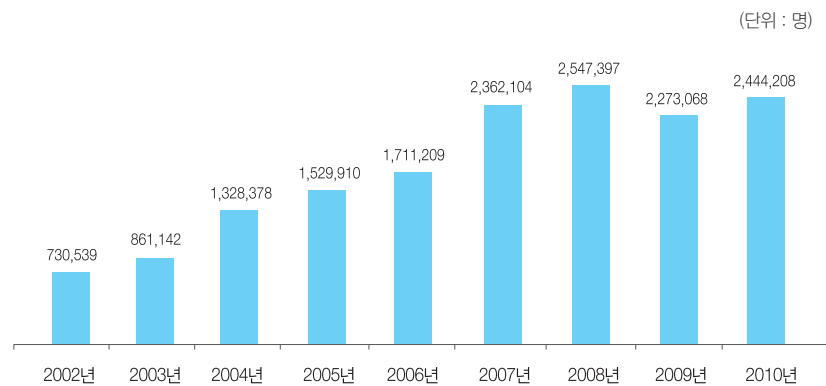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11)

제4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는 청소년들이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 제반자원의 경제적인 활용 방향을 확립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직업준비, 환경보전 등의 활동을 통해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전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수는 2010년 12월말 현재 2,444,208명으로 2009년도보다 7.5%(171,140명) 증가하였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교육·연수포함)인원



자료 : 여성가족부(2010)

제4부

청소년활동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제1장 | 청소년활동 지원
- 제2장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 제3장 | 청소년 교류활동

제1장

청소년활동 지원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는 주 5일제 수업 실시에 따라 청소년들이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동기 부여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 제반자원의 경제적인 활용 방향을 확립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직업준비, 환경보전 등의 활동을 통해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평가 및 환류과정을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컨설팅 및 평가 사업’을 실시하였다. 공모를 통해 컨설팅 및 평가사업 주관기관으로 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선정되었고, 컨설팅 및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최우수 기관은 군포시당동청소년문화의집, 우수기관은 관악청소년회관·도계청소년장학센터, 장려기관은 서울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이다.

〈표 4-1-1〉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구분	활동영역	지원(수)	지원금액(천원)	비고
상반기	① 수련 영역	12	262,052	
	② 교류 영역	2	37,500	
	③ 문화	18	311,489	
	④ 봉사 영역	5	82,635	
	⑤ 진로 영역	6	96,934	
하반기	① 인성함양 영역	6	94,000	
	② 과학환경 영역	7	11,8700	
	③ 가족통합 영역	6	93,000	
	④ 봉사 영역	6	102,000	
	⑤ 진로 영역	5	80,500	
합계		73	1,278,810	

자료 : 여성가족부(2010)

2.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 문화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라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통하여 입시위주의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들이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 건전문화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과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들 수 있다.

가.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동아리활동은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건강한 또래관계형성 및 자신의 특기·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율적 활동이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시·도별 청소년

년 시설 및 각급 학교(초·중·고·대학교)의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청소년수련 시설과 연계하여 우수청소년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2,000개의 청소년동아리를 선정·지원하였다.

〈표 4-1-2〉 전국 청소년 동아리 지원 현황

구분	동아리 지원수(개수)	동아리지원금액(백만원)	
		국고	지방비
서울	412	206	206
부산	152	76	76
대구	110	55	55
인천	112	56	56
광주	68	34	34
대전	68	34	34
울산	46	23	23
경기	440	220	220
강원	60	30	30
전북	62	31	31
전남	78	39	39
충남	74	37	37
충북	68	34	34
경북	104	52	52
경남	124	62	62
제주	22	11	11
합계	2,000	1,000	1,000

자료 : 여성가족부(2010)

나. 청소년문화존

청소년문화존은 주5일 수업제의 확대 실시와 청소년이 생활권 주변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놀이 체험의 장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문화존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진행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표현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서 청소년들의 욕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문화존은 중앙과 지방이 50:50 매칭펀드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되며, 2004년 및 2005년에는 8개 광역시·도에서 운영되었고, 2006년부터 11개 시·도로 확대되고 시범사업으로 5개 시·도를 지정하여 총사업비 36억원 규모(2007년)로 운영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청소년문화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로 특성화된 대한민국 10대 청소년문화축제를 운영하였다. 2009년도에는 16개 대표 문화존과 90개 시·군·구 문화존이 운영·지원되었으며 2010년도에도 16개 대표 문화존과 90개 시·군·구 문화존이 운영·지원되었다.

〈표 4-1-3〉 전국 시·도별 청소년문화존 지원현황

구분	계 (국고보조액)	대표문화존		시군구 문화존	
		개수	금액(천원)	개수	금액(천원)
계	3,315,000	16	800,000	90	1,665,000
서울	410,000	1	50,000	10	185,000
부산	206,500	1	50,000	5	92,500
대구	171,000	1	50,000	4	74,000
인천	171,000	1	50,000	4	74,000
광주	133,500	1	50,000	3	55,500
대전	133,500	1	50,000	3	55,500
울산	107,000	1	50,000	2	37,000
경기	570,000	1	50,000	18	333,000
강원	170,500	1	50,000	5	92,500
충북	168,500	1	50,000	5	92,500
충남	175,500	1	50,000	5	92,500
전북	173,500	1	50,000	5	92,500
전남	171,500	1	50,000	5	92,500
경북	223,500	1	50,000	7	129,500
경남	250,000	1	50,000	8	148,000
제주	79,500	1	50,000	1	18,500

자료 : 여성가족부(2010)

3.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가. 추진배경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2006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된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이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글로벌·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청소년의 활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5일제 수업 시행 등으로 늘어나는 여가시간과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청소년들의 사회문화적 역량을 개발·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 기반 확립과 학교교육과 연계한 활동 지원 확대의 요구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2004년 2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특징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인증으로 양질의 활동 기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수요자인 청소년의 욕구가 반영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유용성, 공공성, 안정성을 강조하며, 인증받은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실적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개발과 진로탐색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인증제 추진 현황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2006년 3월에 시작하였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위원회 15인 위촉 및 인증심사원 192명을 선발·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5월 인증접수를 시작으로 79건의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였다.

2007년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증제도 운영에 반영하여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인증기준과 인증심사절차의 간소화, 국제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개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업무의 효율적 연계운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354건의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였으며, 인증 받은 활동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연구기획과 만족도 조사를 시작하

였다. 2008년은 인증심사원 91명을 추가 선발하여 283명의 인증심사원 인력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증심사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인증제도 홍보와 인증수련활동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학부모 참관단 32명을 시범·운영하였다.

〈표 4-1-4〉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

영역	영역별 활동 예시(안)
건강·보건활동	신체단련활동, 약물예방활동,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 안전·응급처치활동, 성교육활동
과학정보활동	모형 및 로봇활동, 인터넷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 등
교류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국제이해활동, 다문화이해활동, 세계문화비교활동, 한민족청소년캠프 등
모험개척활동	탐사·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활동, 오지탐사활동, 극기훈련활동, 호연지기활동, 수상훈련활동, 한국의 산수 탐사활동, 안전지킴이활동 등
문화예술활동	지역문화, 세계문화, 대중문화, 역사연극활동, 어울마당, 전통예술활동 등
봉사활동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참여활동 등
직업체험활동	청소년모의창업, 경제캠프, 사회생활기술, 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체험 등
환경보존활동	생태활동, 환경탐사활동, 자연지도 만들기, 숲체험, 환경음식 만들기, 환경살리기 활동, 환경·시설 보존활동 등
자기(인성) 개발활동	표현능력개발 수련활동, 자기탐구활동, 자기존중감향상 프로그램, 자기표현활동, 심성수련활동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10)

2009년은 제2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가 출범하고, 인증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 설문조사, 현장 전문가회의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생활기록부에 인증수련활동 참여기록을 등재하기로 결정하는 등 학교교육정책과 인증제도와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청소년관련학과를 설치한 9개 대학과 대입시 가산점 반영을 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지역 내 인증수련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학부모참관단(107명) 운영과 인증수련활동 참여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활동영역별 효과성 측정 연구를 통해 인증수련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10년은 참여청소년 확대를 위한 중·단기 제도개선을 수립하고 창의적체험활동으로 활용 가능한 포트폴리오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6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입학시 청소년수련활동 참여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MOU 체결 대학 : 15개교). 인증심의 317건 중 250건이 인증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으며 70건의 이행여부 확인을 실시하여 인증받은

사항과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인증프로그램의 신뢰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에는 이행여부 확인 실시를 더 확대 강화하였다.

다. 인증수련활동 및 활동기록 현황

수련활동 인증신청은 매월 상시적으로 인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접수된 청소년수련활동은 1개 프로그램당 2명의 인증심사원이 배정되어 20일 동안의 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가 최종심의를 하게 된다. 2010년까지 인증된 수련활동은 316개 기관 1,327건이며, 이 중 4건이 인증사항 이행여부확인을 통해 취소되고, 24건은 인증 받은 운영기관의 요청에 의해 철회되었으며 13건이 인증유효기간 만료되어 2010년 12월 현재 총 1,286건의 인증수련활동이 유지되고 있다.

〈표 4-1-5〉 연도별, 기관 유형별 인증수련활동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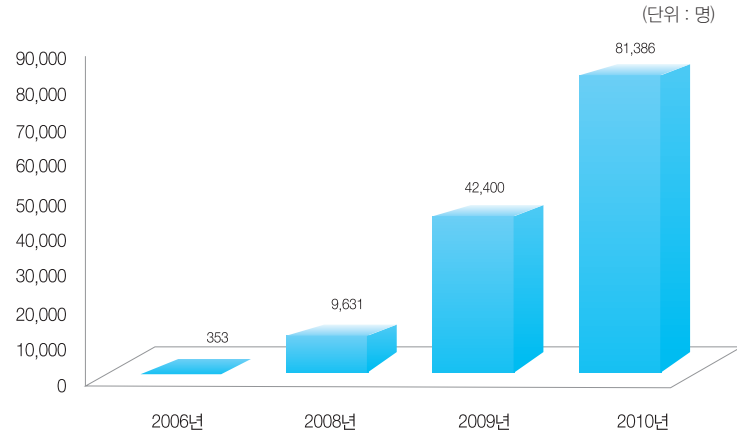
연도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단 체	청소년 기 관	청소년 이용 시설	청소년 보호 복지 시설	일반	기타	총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기타							
2006	—	13	15	6	—	11	3	—	1	1	—	50
2007	2	171	30	43	2	4	20	2	2	—	—	276
2008	4	266	35	79	9	15	24	5	—	1	1	439
2009	2	142	30	39	9	12	16	1	1	3	—	255
2010	7	172	18	39	3	8	12	2	—	4	1	266
총계	15	764	128	206	23	50	75	10	4	9	2	1,286

자료 : 여성가족부(2010)

국가가 인증한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해 누계 관리되며 주무부처 장관 명의 인증서를 실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수련활동 참여청소년은 81,386명으로 정기형 참여 청소년 48,851명, 숙박형 참여 청소년 31,419명, 이동형 참여 청소년 1,116명이다. 인증수련활동기록서는 청소년의 활동실적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이 자기계발과 상급학교 진학 시 및 대입시, 취업 시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참여한 활동의 개요와 활동시간, 지도자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1-1] 연도별 참여 청소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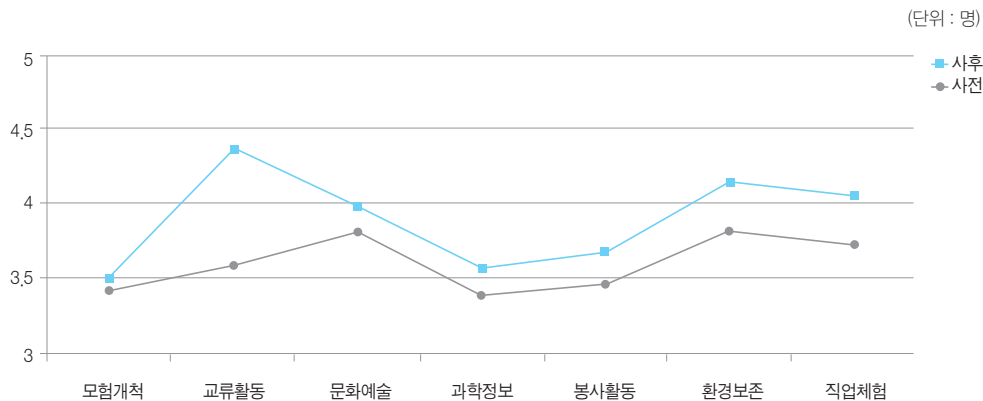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10)

라. 인증수련활동의 효과

인증수련활동 참여청소년의 활동영역별 참여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입증하여 인증수련활동의 객관적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 2007년 기초 연구를 시작하였다. 2008년에는 인증수련활동 효과성 연구 지표를 개발하였고, 2009년에 참여 청소년 690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타당성 검토를 하였다. 2010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74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인증수련활동 참여 청소년의 글로벌리더십, 교육의 적극성, 문화예술이해, 공동체의식, 자기효능감, 사회적책임감, 자연친화성, 자기이해, 직업의식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2010년 효과성 측정 결과



자료 : 여성가족부(2010)

4.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Award)

가. 제도현황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Award, 이하 '포상제')는 1956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부군인 에딘버러공작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 131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80만 세계 청소년들이 포상제에 참여하고 있다. 포상제를 총괄하는 국제포상협회(International Award Association)는 국가운영기관(National Award Authorities, 61개국)과 독립운영기관(Independent Operators, 70개국)이 속해 있으며, 유럽·지중해·아랍 지역,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메리카 지역의 사무국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포상제는 비경쟁성, 평등성, 균형성, 성취지향성, 과정 중시성, 지속성 등의 10가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참여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성과 도전정신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포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만 14세부터 만 25세까지로, 만25세 생일전까지 포상활동을 마칠 수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상활동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 단련, 탐험 4가지 활동이며 주어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금장 활동일 경우 합숙활동은 4가지 활동과 함께 추가로 활동해야 한다. 포상단계는 동장(6개월), 은장(6~18개월), 금장(12~18개월)으로 4가지 활동영역 모두 포상활동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하고 성취목표를 달성해야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표 4-1-6〉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구 분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	합숙
금장 16세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48회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48회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48회 이상)	3박 4일	4박 5일 ※ 금장 단계 한함
은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은장 15세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4회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4회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4회 이상)	2박 3일	-
동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동장 14세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2회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2회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2회 이상)	1박 2일	-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3개월 수행					

※ 활동은 1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활동 주기는 7일 간격을 유지해야 함

자료 : 여성가족부(2010)

나. 포상제 추진 현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국제포상협회(International Award Association)로부터 2008년 독립 운영기관 자격을 취득(2008년 5월)하였고, 2009년 10월 다음 단계인 임시회원국가(Provisional Membership) 자격을 취득(2009년 10월)하였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포상제의 한국사무국으로서 2012년 정회원국가 자격 취득을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 행사 개최 등으로 자격 요건들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0년에 아시아·태평양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10.24~10.30)하였다.

포상제는 2008년과 2009년 2단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은 한국사무국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9년은 지역사회 중심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사무국과 중앙운영기관 체제를 적용하였다.

또한 참여 청소년들의 활동기록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정보시스템(www.koraward.or.kr)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정보시스템 개발로 인해 포상활동

기록의 신뢰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청소년 활동 기록의 포트폴리오 변환 기능 및 인증 시스템으로 진학 및 취업 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상제는 포상 자체보다는 포상활동의 과정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상 활동에서 도전에 대한 실패는 없다. 다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여 도전한다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참여 청소년들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도전의 지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표 4-1-7〉 포상제 운영 현황

(단위 : 명, 개)

구 분	참가 청소년	포상 청소년	포상담당관	운영기관
2008년	352명	—	162명	15개
2009년	2,139명	398명	1,198명	194개
2010년	4,169명	457명	1,830명	309개
누적 계	6,660명	855명	3,190명	518개

주 : 2008년 시범사업 시행으로 7월부터 청소년 참여가 이루어 졌으며, 포상을 받기 위한 가장 낮은 단계 동장은 평균 7~8개월 소요되어 2008년에는 포상 청소년이 없음

자료 : 여성가족부(2010)

5. 창의적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적잖은 개정을 거듭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그 중 편제상 가장 큰 변혁이 이루어진 시기는 제7차 교육과정시기(1997~2007)이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특별활동은 자치, 적응, 계발, 봉사, 행사활동인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특별활동을 통한 학습의 목표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다. 신설된 재량활동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을 촉진하고 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된다. 창의적 재량활동은 학교의 특수한 교육적 필요와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2009년 6월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에 따라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재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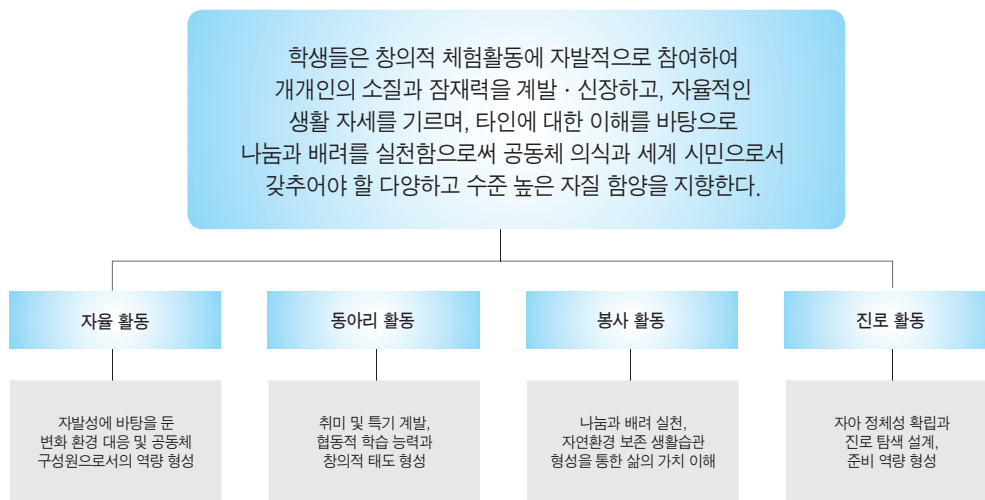
으로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고시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외 활동의 실효성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없는 내용을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구체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표와 방법, 그리고 활동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나. 창의적체험활동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학생, 학급, 학년,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권고한 영역별 활동 내용을 참고하여 각 학교에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과정으로 재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림 4-1-3]에서 알 수 있듯이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을 통하여 4개 하위 영역의 실천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함양이 실현됨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4-1-3] 창의적체험활동 목표 체계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2011년 초 1, 2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을 시작으로 2012년 초 1~4학년, 중 1~2학년, 고 1~2학년, 2013년도 전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2011년도 8월부터 16개 시·도에 88개(광역 10개, 거점 78개)의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창의적체험활동 연계·지원 추진현황

여성가족부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5월 18일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고, 5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2009 개정교육과정(창의적체험활동)연계·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7월에는 창의적체험활동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창의체험자원지도 제작 및 시범사업 참여,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권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 창의적체험활동 추진지침’을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시달하였다. 또한 창의·인성교육넷(CRM)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자원지도(YRM)’를 구축하였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봉사활동 등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활동기록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향후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edupot)’과의 연계를 위한 가칭 청소년활동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11~2012년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체험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을 연계·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기반 청소년체험활동 시범사업을 서울 노원지역과 경기 수원지역에서 실시하였으며(2개 수련관, 6개교, 1,592명 참가), 국립청소년수련시설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 중심의 사례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였다(중앙, 평창, 고흥 국립수련원, 강원·충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3개 학교). 아울러 지역에서 학교와 청소년활동 현장을 연계·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연계 코디네이팅 연수’ 과정 개발 및 교육 실시(13회, 585명)로 향후 청소년체험활동 학교연계·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지원한 우수사례 발굴·보급 및 전국단위 학교 요구조사를 통해 정책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창의적체험활동에 활용할 청소년활동 정보제공을 위하여 YRM에 전국적으로 총 18,227건(청소년 시설·단체 2,750건, 활동프로그램 15,300건, 지도자 177건)의 정보를 제공했으며, CRM과의 연동을 통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하여 창의적체험활동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청(학교), 청소년시설·단체, 기타 지역사회 시설·단체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창

의적체험활동 지역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창의적체험활동의 지역사회 이해도를 높였다. 청소년활동과 연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설명회 및 대상별 워크숍을 110회 8,465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고, 지역 내의 전문인력 양성 및 YRM 정보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부
록

제2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도입 배경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물질만능주의 가치관과 부모의 지나친 보호 속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남을 먼저 배려하기 보다는 오직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풍조에 물들게 되었다. 게다가 치열한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은 청소년기에 길러주어야 할 인성을 빼앗아 버렸다.

이에 입시 위주에 매몰된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직업에 대한 탐색과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학교수업 외의 무엇인가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5.31 교육개혁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2.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추진현황

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국가는 청소년자원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5년 5월 교육부의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인성교육과제로 포함되는 것을 계기로 당시 문화체육부 정책의 하나인 “바른청소년육성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자원봉사은행을 설치하고 1996년 2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원계획을 시·도로 통보하였다. 이에 1996년 4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중앙 및 16개 시·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를 완료하였고 청소년 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10여 년간 지속되어온 청소년봉사활동이라는 특

화된 영역의 지원기관에서 2006년 7월 청소년활동 지원과 청소년봉사활동 활성화의 2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개편을 하여 조직의 기능을 확대하고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 지원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였다.

〈표 4-2-1〉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현황

지 역	센 터 명 칭	기관주소	홈페이지
서울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56-0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 보라매공원 내	www.sy0404.or.kr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 활동진흥센터	(601-836)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44-7	www.bsyouthvol.net
대구	(재)대구청소년 종합지원센터	(700-191) 대구시 중구 종로1가 83-1번지	www.daeguyouth.net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 활동진흥센터	(406-05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82-1 가천인력개발원 내	www.inyouthvol.net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 활동진흥센터	(501-1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5-4	www.gjcenter.net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 활동진흥센터	(302-834)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96 평송청소년문화센터 2층	www.tjyvc.net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 활동진흥센터	(680-845)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336-2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www.usyv.net
경기	경기도청소년활동 진흥센터	(440-7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05-3 2층	www.gysc.or.kr
강원	강원도청소년활동 진흥센터	(220-010)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18-3 시민복지센터 4층	www.gwysc.or.kr
충북	충청북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69-1 2층	www.cbyouth.net
충남	(재)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	(331-96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90번지 진암빌딩 4층	www.cnyouth.or.kr
전북	전라북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36-13번지 3층	www.jb0479.or.kr
전남	(재)전라남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534-821)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442번지 여성플라자 4층 (재)전라남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지원팀	www.jnyouth.or.kr
경북	경상북도청소년 지원센터	(760-140) 경북 안동시 신안동 290-3번지	www.we7942.or.kr
경남	(재)경상남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	(641-706) 경남 창원시 삼동동 293 늘푸른전당 3층 301호	www.gnyouth.net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690-8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022-13	www.jejuyouth.net

자료 : 여성가족부(2010)

나. 청소년봉사활동 포털사이트(www.dovol.net) 및 관리시스템 개발·운영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관리는 2005년도에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CS버전)을 구축하여 시·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지역별 봉사활동 기관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실적 등을 보다 쉽게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봉사활동 신청 및 경력관리, 봉사활동 확인서 출력 등을 이용하는 편리성을 갖추게 되었다.

2008년 청소년봉사활동관리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성 확대 및 기능강화를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역별로 운영·관리되었던 시스템(CS버전)에서 통합 시스템(WEB버전)으로 개편, 청소년봉사활동관리의 안정성, 편리성, 정보 제공 확대 등을 꾀하고 있다.

청소년봉사활동 포털사이트(www.dovol.net)의 2010년 회원 수는 1,161,356명이고, 운영프로그램 건수는 747,754건에 이른다. 또한 등록된 봉사활동 운영기관(터전)은 2010년 8,053개 소로 지난 해 대비 18.4%의 증가율을 보이며 총 회원 수의 급증으로 명실상부한 청소년봉사활동 대표 사이트로 거듭나고 있다.

〈표 4-2-2〉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 등록 회원 수(누적)

(단위 : 명)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회원 등록 수	294,158	490,737	687,912	876,025	1,161,356

자료 : 여성가족부(2010)

〈표 4-2-3〉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 등록(가입) 터전 수(누적)

(단위 : 건)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입 터전 수	2,752	3,657	4,635	6,802	8,053

자료 : 여성가족부(2010)

〈표 4-2-4〉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수(누적)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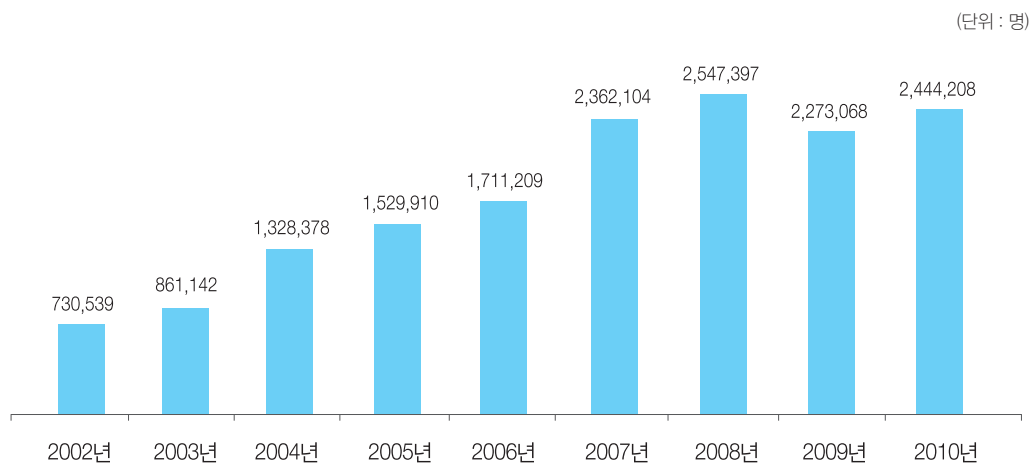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프로그램 수	250,799	367,924	475,974	629,565	747,754

자료 : 여성가족부(2010)

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현황

전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수는 2010년 12월말 현재 2,444,208명으로 2009년도보다 7.5%(171,140명) 증가하였다.

[그림 4-2-1]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교육·연수포함)인원



자료 : 여성가족부(2010)

제3장

청소년 교류활동

1. 청소년 국제교류

가. 국가 간 청소년 교류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양국 청소년 담당 부처 간 약정 등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대상국의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방문, 양국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간 토론, 민박, 역사·문화 유적지 답사, 산업시설 견학 등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보와 경험 등을 교환하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1년에는 22개국과 파견 343명, 초청 333명 등 총 676명의 교류가 예정되어 있다.

〈표 4-3-1〉 청소년교류 약정체결국 현황

▷ 아시아 (10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부르나이
▷ 유럽 (10개국)	러시아, 프랑스, 체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그리스, 터키, 스페인, 불가리아
▷ 중남미 (2개국)	칠레, 멕시코
▷ 중동·아프리카(8개국)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수단, 모로코,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튀니지

자료 : 여성가족부(2010)

〈표 4-3-2〉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 체결 및 교류 현황

(2010.12.31 기준)

교류 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최초 시행년	약정 내용 (인원 · 기간)	'10년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총인원
30개국				3,647명	3,818명	7,465명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문화협정('65) 청소년교류약정('92.4)	'79	청소년 15명, 10일간 - 청소년체육부 주관 지도자 15명 별도, 10일간 - 공공행정처 주관('02~)	559명	557명	1,116명
사우디 (청소년복지처)	양국정부합동 위원회 합의('81) 청소년협력협약각서('01)	'81	청소년 · 지도자 20명, 10일간(연초협의)	264명	265명	529명
일 본 (내각부)	정상회담 공동선언('84)	'87	청소년 40명, 15일간 ('03년부터 30명씩)	689명	786명	1,475명
중 국 (중화전국 청년연합회)	양국수교시교류합의('92) 청소년교류양해각서 ('98.11.20)	'93	청소년 · 지도자 20명, 2회, 10일 또는 2주 (통상 40명, 1회, 10일)	602명	636명	1,238명
헝가리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 ('92.4.6)	'93	인원 · 기간 규정 없음 (15명, 10일간)	25명	57명	82명
러시아 (체육관광 청소년정책부)	청소년협력계획서('95)	'94	청소년 · 지도자 30명, 기간 규정 없음(통상10일)	159명	165명	324명
필리핀 (교육문화체육부)	청소년교류협력계획서('95) 청소년교류약정서('07.9.20)	'96	청소년 · 지도자 10~20명, 10일간(연초협의)	115명	141명	256명
모로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스포츠교류협정('90.5) 청소년부속서('94.3.25)	'96	('95~'96)15~20명, 10~14일 ('09부터 통상16명, 10일)	85명	118명	203명
핀란드 (교육부)	청소년협력협약각서('96) 약정갱신('05.12.8)	'96	청소년전문가 5명, 7일간 (연초에 협의 결정)	53명	71명	124명
칠 레 (청소년처)	청소년협력약정서 ('96.12.16)	'98	청소년 · 지도자 20명 이내, 10일간	26명	47명	73명
베트남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교류약정서('99) 약정갱신('09.2.5)	'99	20명(지도자3포함), 10일 (베트남초청은 30명) 5명(고위공무원), 7일	368명	237명	605명
몽 골 (사회복지노동부)	청소년분야협력 약정서 ('01.2.13)	'00 시범교류	10명(기업인, 학생, 지도자), 10일간(사전협의)	114명	104명	218명
멕시코 (청소년원)	청소년협력약정서 ('00.11.9)	'01	인원(청소년 · 지도자) 및 기간(사전협의)	96명	103명	199명
이스라엘 (청소년교류협회)	청소년협력약정서 ('02.4.24)	'02	청소년 · 지도자 10~20명, 10일간(연초 협의)	79명	87명	166명

〈표 4-3-2〉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 체결 및 교류 현황(계속)

(2010.12.31 기준)

교류 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최초 시행년	약정 내용 (인원 · 기간)	'10년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총인원
프랑스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 (‘02.4.26)	‘05	인원 및 기간 (연초 협의)	2명	—	2명
체코 (교육청소년 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03) 약정갱신(‘08)	‘06	청소년 10명, 10일간 (체코측 사정상 격년실시)	30명	40명	70명
수단 (청소년체육부)	청소년 · 체육협력약정서 (‘04.5.18)	‘06	인원 · 기간 규정 없음 (통상 10명, 10일간)	50명	57명	107명
폴란드 (교육체육부)	청소년 · 체육교류 양해각서(‘04.12.3)	‘03	청소년 · 지도자 10~20명, 10일간 (연초 협의)	60명	60명	120명
인도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약정서 (‘05.4.4)	‘03	청소년 · 지도자 10~20명, 5~7일간 (연초 협의)	70명	69명	139명
파키스탄 (청소년부)	문화교류계획서 (‘05.9.29)	‘05	청소년 7명, 7일간(연초협의)	39명	9명	48명
이집트 (청소년부)	청소년교류양해각서 (‘05.12.14)	‘06	청소년 · 지도자 10~20명, 10일간(연초협의)	20명	50명	70명
터키 (청소년체육부)	문화 및 과학 교류계획서(‘05.9.23)	‘06	청소년 10~20명, 10일간(연초협의)	30명	28명	58명
그리스 (교육종교부)	청소년분야양해각서 (‘06.12.13)	‘06	8명(공무원5, 지도자3),6일간	42명	40명	82명
스페인 (청소년청)	청소년분야협력프로그램 (‘07.3.26.)	‘07	인원(청소년정책수립관계자) 및 기간연초협의	3명	3명	6명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 양해각서 (‘07.4.23)	‘08	인원 (약20명의 청소년 · 지도자) 및 기간은 연초협의	29명	29명	58명
불가리아 (청소년체육처)	청소년분야양해각서 (‘07.12.10)	‘08	인원(청소년 · 지도자) 및 기간은 매년초 협의 결정	12명	19명	31명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협력약정 (‘09.6.1)	‘10	청소년 또는 지도자 각 10명(연초협의), 10일간	11명	10명	21명
싱가포르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분야 협력 양해각서 (‘09.6.26)	‘09 (격년)	청소년 · 지도자 10명, 10일간	10명	10명	20명
튀니지 (청소년체육부)	청소년 분야 협력 약정 (‘09.6.30)	‘10	인원(청소년 · 지도자) 및 기간은 매년초 협의 결정	5명	10명	15명
브루나이 (문화청소년 체육부)	청소년 분야 협력 약정 (‘10.2.10)	‘11	청소년 또는 지도자 각 10~20명(연초협의), 10일간	—	—	0명

자료 : 여성가족부(2010)

나.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2003년 7월 한·중 양국 정상 간의 청소년 교류 확대 합의에 따라 2004년부터 우리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중국 청소년 500명이 10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2006년부터 매년 한국 청소년 100명을 초청하였고, 2009년에는 200명을, 2010년에는 400명을 중국에 초청하였다. 2011년에는 중국 측이 200명의 한국 청소년을 초청하기로 해, 총 700명(초청 500명, 파견 200명)의 교류가 시행될 예정이다.

〈표 4-3-3〉 한·중 특별 교류 현황

구 분	초 청				파 견			총 계
	1차	2차	3차	계	1차	2차	계	
2004	198명 (7.21~7.30)	189명 (11.1~11.10)	100명 (11.17~11.26)	487	—	—	—	487
2005	192명 (7.6~7.15)	100명 (9.7~9.16)	191명 (11.15~11.24)	483	—	—	—	483
2006	96명 (5.24~6.2)	193명 (7.5~7.14)	200명 (11.1~11.10)	489	98명 (4.12~4.21)	—	98	587
2007	200명 (4.7~4.16)	100명 (6.13~6.22)	191명 (11.1~11.10)	491	97명 (7.3~7.12)	—	97	588
2008	154명 (8.18~8.27)	100명 (10.29~11.7)	150명 (11.5~11.14)	404	95명 (7.22~7.31)	—	95	499
2009	196명 (7.8~7.17)	99명 (9.16~9.25)	185명 (11.11~11.20)	480	96명 (5.13~5.22)	99명 (8.3~8.12)	195	675
2010	192명 (6.2~6.11)	100명 (10.13~10.22)	187명 (11.11~11.20)	479	192명 (5.11~5.20)	190명 (9.7~9.16)	382	861

자료 : 여성가족부(2010)

다. 한·중·일 청소년 우호 만남

한·중·일 3국 정상은 2007년을 “한·중·일 교류의 해”로 설정하고 3자간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2007년에는 중국에서 「한·중·일 청소년 우호 만남」행사가 개최되어 한국 청소년 100명이 파견되었고 2008년에는 일본, 2009년에는 한국, 2010년에는 중국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2011년에는 제5회 행사가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한국 청소년 100명이 파견된다.

〈표 4-3-4〉 한·중·일 우호 만남 현황

회 차	연 도	개최국	장 소	기 간	인 원
1회	2007	중국	베이징	8.16~22	300명 (한·중·일 각국 100명)
2회	2008	일본	도쿄	9.17~23	300명 (한·중·일 각국 100명)
3회	2009	한국	서울	7.21~27	300명 (한·중·일 각국 100명)
4회	2010	중국	베이징	7.21.~27.	300명 (한·중·일 각국 100명)
5회	2011	일본	도쿄	'11년 하반기	300명 (한·중·일 각국 100명)

주 : 차기 우리나라 개최연도 : 2012년
자료 : 여성가족부(2010)

2.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집행하는 청소년 자율 프로그램과 해외자원봉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실시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시민의식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조사·연수단」,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꿈과 사람 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대한민국 청소년 발전프로젝트, 해외테마체험단」 등 4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그램 전체비용의 일부를 참여청소년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저소득청소년들이 참여할 경우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표 4-3-5〉 2010년 청소년 해외체험 활동지원 프로그램 현황

연번	프로그램명	내 용
1	해외조사·연수단('06~)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선진외국의 청소년정책, 인문사회, 이공분야 등을 주제로 하여 청소년들 스스로 창안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연수활동 지원 * 75개팀 300명 참가('10)
2	국제회의·행사참가단('08~)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다양한 국제회의·행사 등에 청소년들을 파견 * UN총회 파견 등 95명('10)
3	해외테마체험단('07~)	대한민국 청소년 발전 프로젝트 청소년에게 세계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 및 강점분야의 연수·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소통능력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16개 프로그램 363명('10)
4	해외자원봉사단('02~)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 강화 * 12개국, 6개 단체, 34개팀, 654명('10)

자료 : 여성가족부(2010)

가.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조사·연수단

4명 내외의 청소년들이 1개 팀을 이루어 외국의 청소년분야, 해외 한민족의 생활과 발전방향, 인문사회·이공분야 및 진로·취업분야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활동 주제를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제출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선발팀은 선택 주제에 대해 스스로 준비를 갖추어 해외에 나가 조사·연수활동을 펼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조사·연수활동을 펼치며, 2010년에는 300명의 청소년들이 75팀을 이루어 조사·연수를 다녀왔다. 2011년에도 75개팀 3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나.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행사참가단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가할 국제회의나 포럼, 캠프 등을 조사하여 참가계획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파견대상자를 선발한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역할이 있어야 하며, 단순 참관 등은 배제된다. 2010년에는 UN 총회 등에 95명의 청소년을 파견하였으며, 2011년에는 70여명을 참가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 “대한민국 청소년 발전프로젝트”, 해외테마체험단

세계 주요선진국가의 선도적 강점분야 등을 체험·연수하여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배양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10년도에는 16개 프로그램에 363여명의 청소년을 평균 10일 내외의 기간으로 파견하였다.

2010년도 주요 프로그램은 독일의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뉴질랜드의 ‘여성인권과 여성의 사회적 위치’ 등이다. 2011년에는 15개 해외테마프로그램에 300명의 청소년을 파견할 계획이다.

〈표 4-3-6〉 2010년 해외테마체험 프로그램

(단위 : 명)

사 업 명	시기(기간)	장 소	인원	비 고
친구할까요	5.30~6.5	필리핀	20명	삼성농아원
우리는 브릿지 메이커스	6.15~20	베트남	15명	글로벌투게더
우리는 모두 하나예요	6.15~20	필리핀	25명	나눔과 기쁨
“수평적 다양화” 교육정책과 청소년활동 조사	7.20~8.1	미국	20명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Amenity 도계를 꿈꾸다!	8.16~20	일본	18명	국제청소년교류연맹
환경과 빈곤	8.5~12	몽골	20명	푸른아시아
미래식량자원 황금어장 노르웨이를 찾아서	8.25~9.2	노르웨이	22명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국제안보/ 평화와 분쟁	5.5~23	호주	19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기후 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7.5~15	독일	20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양국간 법적용 차이에 대한 이해	7.18~27	미국	23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문명간의 대화	8.2~11	터키	20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 인권 및 여성의 사회적 위치	8.21~29	뉴질랜드	20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과거사와의 화해	8.21~30	독일	20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문명간의 대화	10.25~11.3	터키	26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일 문화교육의 역사	11.7~12	일본	27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글로벌 시민으로의 한걸음	12.1~4	중국	48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합 계			363명	

자료 : 여성가족부(2010)

라. “꿈과 사람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등을 위하여 겨울방학 및 여름방학기간을 활용해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2010년은 아시아 12개국에 34개팀 654여명의 봉사단을 10~14일 내외로 파견하였다. 2011년에는 700명의 청소년을 파견할 계획이다.

〈표 4-3-7〉 2010년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단위 : 팀, 명)

구분	태국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몽골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라오스	스리랑카	계
파견팀수	1	4	4	3	2	1	2	3	1	4	8	1	34
파견자수	16	67	67	51	56	17	32	51	17	67	196	17	654

자료 : 여성가족부(2010)

3. 청소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 행사 지원

국제청소년 행사의 국내 개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청소년들에게 한국문화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개최하는 아시아 청소년캠프와 세계 각국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청소년광장, 아시아태평양 잼버리 등이 있다. 2011년에는 아시아청소년초청연수, 국제청소년포럼, 동북아청소년포럼,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아시아청소년지도자초청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4-3-8〉 2010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단위 : 개국, 명)

행사명	일 시	참가현황	
		참가국	인 원
2010년 미래를 여는 아시아청소년 캠프	7.28~8.11(15일)	23개국	300명
제21회 국제청소년광장	8.18~8.25(8일)	40개국	130명
제27회 아시아태평양 잼버리	8.4.~8.9(6일)	42개국	11,217명
제7회 동북아 청소년 포럼	8.17~8.22(6일)	3개국(한 · 중 · 일)	80명
제4회 아시아청소년지도자초청연수	10.3~10.27(25일)	7개국	22명
유엔 참전국 청소년평화캠프	(1차) 7.3~7.4(2일) (2차) 7.24~7.25(2일)	19개국	350명
제10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7.23~7.25(3일)	40개국	38,000명

자료 : 여성가족부(2010)

제5부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전국 16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 Community Youth Safety - Net)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CYS-Net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경찰서, 교육청, 노동지청, 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청소년 지원시설,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 전국아동청소년그룹홈연합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회, 전국 의료원, 변호사모임, 지역내 각 전문영역 종사자 등 각 계 각층의 기관, 단체, 전문가 모임, 개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두각되어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중독, 학업중단, 자활자립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CYS-Net 시스템을 활용하여 특성화해서 지원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의 탈중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레스큐 스쿨(rescue school)이라는 특성화된 기숙형 치료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해 기초사회생활교육 및 학교복귀, 직장, 사회적응, 학습방법 지원 등의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해밀, 학습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두드림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제5부

청소년 복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제1장 | 취약계층 청소년 현황
- 제2장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 제3장 | 청소년 상담활동
- 제4장 |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제1장

취약계층 청소년 현황

1. 아동빈곤율 현황

아동빈곤율은 성인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측정하는 절대빈곤율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아동빈곤율에 대입하면 아동빈곤율이란 전체 아동이 있는 가구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아동가구의 수를 백분율화 한 것이다. 때로는 가구 수가 아니라 개인수를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도시가구의 아동빈곤율은 1999년 6.7%에서 2000년 4.4%, 2005년 3.9%, 2010년 2.6%(1인가구 포함 : 2.6%)등으로 감소의 추세에 있다. 전가구의 경우는 2003년 5.4%에서 2005년 5.7%, 2010년 4.7%(1인가구 포함 : 4.7%)등으로 도시가구보다 2~9%p 정도 높은 수준이다. 즉, 도시 보다는 농어촌에서 아동이 더 빈곤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 5-1-1〉 아동빈곤율 변화추이(절대빈곤율)

(단위 : %)

	도시근로자 ^{주1)}	전가구기준 ^{주2)}
1999	6.7	—
2000	4.4	—
2001	3.6	—
2002	2.6	—
2003	3.3	5.4
2004	2.8	6.4
2005	3.9	5.7
2006	3.3	5.7
2007	2.9	5.2
2008	3.4	7.8
2009	3.1	4.8

〈표 5-1-1〉 아동빈곤율 변화추이(절대빈곤율) (계속)

(단위 : %)

	도시근로자 ^{주1)}	전가구기준 ^{주2)}
2010	2.6	4.7
2006 ²⁾	3.3	5.7
2007 ²⁾	2.9	5.7
2008 ²⁾	3.4	5.2
2009 ²⁾	3.1	4.8
2010 ²⁾	2.6	4.7

주1: 1) 도시가구 전체 : 1인가구, 농어촌 지역 제외 (경상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미만).

2) 도시근로자 가구 중 아래줄의 2006~2010년의 경우 : 1인가구 포함, 농어촌지역 제외.

3) 도시근로자 가구 : 아동은 0~18세 미만을 기준으로 분석, 단 1987~97년의 경우 19세 이하를 기준으로 분석.

주2: 1) 전가구 :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전가구 중 아래줄의 2006~2008년 :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 김문길 외(2011),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간행.

한편 상대빈곤율은 OECD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통 가처분 중위소득의 40%, 50%, 60%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중위소득의 50%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 변화추이를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는 1990년대 초반에는 6.3%(1990년), 5.2%(1991년), 5.8%(1993년)로 감소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0년대 전반에는 6~7%대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후 2006년 이후에는 6%대로 약간 감소하고 있다. 2010년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의 상대아동빈곤율은 5.8%(1인가구 포함 : 5.8%)이다.

전국가구의 경우 2003년 이후에 와서야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가구(단 농어가가구 제외)의 아동빈곤율 추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어촌가구를 포함한 전국가구의 아동빈곤율은 도시보다 다소 높은 8~10%대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도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아동빈곤율이 다소 높음을 시사한다. 전국가구의 상대아동빈곤율은 2000년대 중반에 11.2%로 약간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는 매우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감소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 현재 아동빈곤율은 8.6%(1인가구 포함 : 8.6%)이다.

〈표 5-1-2〉 아동빈곤율 변화추이(상대빈곤율)

(단위 : %)

	도시근로자 ^{주1)}	전가구기준 ^{주2)}
1990	6.3	—
1991	5.2	—
1992	8.7	—
1993	5.8	—
1994	6.2	—
1995	6.7	—
1996	5.9	—
1997	6.7	—
1998	7.0	—
1999	7.6	—
2000	6.3	—
2001	6.3	—
2002	5.5	—
2003	7.0	10.0
2004	7.1	10.7
2005	7.9	11.2
2006	6.3	10.0
2007	6.5	10.6
2008	6.2	9.6
2009	6.3	8.8
2010	5.8	8.6
2006 ²⁾	6.3	10.0
2007 ²⁾	6.5	10.6
2008 ²⁾	6.2	9.7
2009 ²⁾	6.3	8.8
2010 ²⁾	5.8	8.6

주1 : 1) 1인가구, 농어촌 지역 제외(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

2) 1인가구 포함, 농어촌지역 제외.

3) 아동은 0~18세 미만을 기준으로 분석, 단 1987~97년의 경우 19세 이하를 기준으로 분석.

주2 :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 김문길 외(2011),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간행.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 현황을 국제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국가간 아동빈곤율을 비교하기 위해서 룩셈부르크 소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이 자료에서는 각국의 아동빈곤율을 측정하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빈곤율을 측정하였다. 2000년과 2004년 두 지점을 비교하여 국제적인 빈곤율 변동의 추이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0년(일부 국가의 경우 1997년, 1999년)의 경우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로 26.9%이고, 그 다음은 미국으로 21.9%의 빈곤율을 보인다. 2004년에도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 22.2%, 미국 21.2%로 두 국가 모두 아동빈곤율이 약간 감소하였다. 그 다음은 영국 17.0%, 이태리 16.6%, 스페인 16.0%, 아일랜드 15.8%, 캐나다 15.5%, 호주 14.9% 등의 순으로 주로 앵글로 색슨국가와 남유럽국가의 아동빈곤율이 높다.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아동빈곤율은 덴마크 2.7%, 핀란드 2.8%, 노르웨이 3.4%, 스웨덴 4.2%로 매우 낮다. 중간수준의 아동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은 대륙의 조합주의 국가인 오스트리아 7.8%, 프랑스 7.9%, 독일 9.0%, 룩셈부르크 9.1% 등이다.

2004년의 경우도 이와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영국의 경우 빈곤율이 14.0%로 상당히 감소되었다. 반면 독일과 룩셈부르크 같은 조합주의 국가의 빈곤율은 각 10.7%, 13.3%로 2000년 9.0%, 9.1%에 비해 약간 상승하였다. 아울러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경우도 빈곤율이 모두 약간 증가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덴마크 2.7%에서 3.9%, 핀란드 2.8%에서 3.7%, 노르웨이 3.4%에서 4.9%, 스웨덴 4.2%에서 4.7%로 모두 증가하였다. 전체 평균을 보면 2000년은 11.3%이었는데, 2004년에는 11.5%로 0.2%p 증가하였다.

한국의 아동빈곤율은 2004년 10.7%로 아동빈곤율이 10%이상인 국가군에 속한다. 한국과 동일한 군에 속하는 국가에는 그리스 13.2%, 호주 14.0%, 캐나다 16.8%, 아일랜드 15.8%, 스페인 17.2%, 이태리 18.4%, 영국 14.0%이 속한다. 이중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동빈곤율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동(또는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잔여적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영미권 국가에서 아동빈곤율이 높다는 점이다.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매우 관대한 경향을 보인다. 대륙국가들은 양자의 중간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이 제공되고는 있지만, 오히려 여성의 사회진출 약화 등으로 아동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영미권 및 남유럽 국가보다는 낮은 아동빈곤율을 보인다.

〈표 5-1-3〉 아동빈곤율 국제비교(중위소득 50%)

(단위 : %)

아동빈곤율 수준	국가 (년도)			아동빈곤율	
	국가	A	B	A	B
5% 미만	덴마크	2000	2004	2.7	3.9
	핀란드	2000	2004	2.8	3.7
	노르웨이	2000	2004	3.4	4.9
	스웨덴	2000	2005	4.2	4.7
5~10% 미만	네덜란드	1999	1999	6.3	6.3
	벨기에	1997	2000	7.6	7.2
	오스트리아	2000	2004	7.8	7.0
	프랑스	2000	2000	7.9	7.9
	스위스	2000	2004	8.9	9.2
	독일	2000	2004	9.0	10.7
	룩셈부르크	2000	2004	9.1	13.3
10~20%미만	한국	2003	2004	10.0	10.7
	그리스	2000	2004	12.7	13.2
	호주	2001	2003	14.9	14.0
	캐나다	2000	2004	15.5	16.8
	아일랜드	2000	2000	15.8	15.8
	스페인	2000	2004	16.0	17.2
	이태리	2000	2004	16.6	18.4
	영국	1999	2004	17.0	14.0
20% 이상	미국	2000	2004	21.9	21.2
	멕시코	2000	2004	26.9	22.2
평균				11.3	11.5

주 : 한국은 2003년 이후 전국가구 빈곤율 측정이 시작됨.

자료 : Luxembourg Income Study, Homepage, 2010. (<http://www.lisproject.org>)

2. 한부모 가구 현황

자녀가 부모 혹은 조부모 중 한 명 하고만 사는 가족형태인 한부모가구는 최근 들어 이혼 증가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4%(960천 가구)에서 2000년에는 7.9%(1백만 가구 이상)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8.6%로 1백4십만 가구에 이르고 있고, 2010년에는 9.2% 1백6십만 가구에 이른다. 2010년 현재 한부모가구의 78%는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구이고, 부자가구는 22%이다. 모자가구는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데, 부자가구는 약간씩 증가추세이다. 한부모가구의 증가에 따라 자녀양육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모자가구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반면, 부자가구의 경우는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구의 구성에 따라 어려움이 다르므로 가구형태별로 차별화된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표 5-1-4〉 전국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 1,000가구, %)

연 도	총가구수	한 부모 가 구		
		계(비율 ^{주1)})	모자가구	부자가구
1995	12,958	960 (7.4)	788 (82)	172 (18)
2000	14,312	1,124 (7.9)	904 (80)	220 (20)
2005	15,887	1,370 (8.6)	1,083 (79)	287 (21)
2010	17,339	1,594 (9.2)	1,247 (78)	347 (22)

주 : 1)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가족 비율임.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2010.

한부모가구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별은 1990년 56.0%에서 2000년 44.7%, 2005년 36.6%, 2010년 29.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26.3% 감소), 이혼의 경우는 1990년 8.9%에서 2000년 21.9%, 2005년 29.1%, 2010년 32.8%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3.7배 증가). 미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형성도 10%대를 유지하고 있어 미혼모 및 미혼부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미혼모 및 미혼부뿐만 아니라 유배우자의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22~25%대로 적지 않은데, 이는 배우자의 가출, 복역, 장기출타 등 다양한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5-1-5〉 한부모가구 형성요인별 현황

(단위 : 1,000가구, %)

연도	총 가구수	한 부모 가 구					한부모가구 비율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	
1990	11,355	227(25.5)	498(56.0)	79(8.9)	85(9.6)	889(100)	7.8
1995	12,958	216(22.5)	526(54.8)	124(12.9)	94(9.8)	960(100)	7.4
2000	14,312	252(22.5)	502(44.7)	245(21.9)	122(10.9)	1,124(100)	7.9
2005	15,887	328(23.9)	501(36.6)	399(29.1)	142(10.4)	1,370(100)	8.6
2010	17,339	413(25.9)	474(29.7)	523(32.8)	185(11.6)	1,594(100)	9.2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2011.

지난 6년간 전체 한부모가구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즉,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 국가보훈법 대상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대략 10만~18만 가구의 분포이다. 이는 전체 한부모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저소득 한부모가구수는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74.7%가 모자가구이고, 부자가구는 22.1%, 모혼모가구 1.3% 미혼부가구 0.2%, 조손가구 1.7%의 분포이다.

〈표 5-1-6〉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 세대, 명)

연도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미혼부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04	109,039	294,648	88,179	238,341	20,860	56,307	—	—	—	—	—	—
2005	123,666	334,066	99,671	268,975	23,995	65,091	—	—	—	—	—	—
2006	140,188	374,094	112,347	299,430	27,841	74,664	—	—	—	—	—	—
2007	147,947	395,335	118,074	315,220	29,873	80,115	—	—	—	—	—	—
2008	152,853	400,646	118,116	312,718	30,534	82,456	—	—	—	—	2,203	5,472
2009	170,767	454,742	129,935	347,889	36,847	97,872	1,888	3,926	360	814	1,737	4,241
2010	184,749	480,999	138,071	361,066	40,759	106,738	2,392	5,033	379	839	3,148	7,323

주 : 저소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국가보훈법대상

자료 : 여성가족부,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통계연보」, 2011, p291.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수를 보면 2010년 기준 약 10만 7천세대로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58.1%를 차지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하에서 자녀에게 지원되

는 혜택이 제한적이고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것은 더욱 미약해서 지원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의 경우 자녀양육 중 사교육비 부담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교육은 빈곤탈출의 주요 경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 공교육 뿐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5-1-7〉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단위 : 세대, 명)

연도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미혼부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04	47,405	123,461	38,993	101,165	8,412	22,296	—	—	—	—	—	—
2005	56,903	146,056	46,013	117,162	10,890	28,894	—	—	—	—	—	—
2006	66,163	170,530	53,120	135,728	13,043	34,802	—	—	—	—	—	—
2007	73,471	190,373	57,924	148,919	15,547	41,384	—	—	—	—	—	—
2008	81,792	212,581	62,198	160,963	17,909	48,047	—	—	—	—	—	—
2009	94,487	245,793	70,572	183,021	22,265	59,214	1,203	2,489	267	598	180	471
2010	107,313	276,378	79,452	204,042	25,698	67,614	1,504	3,175	299	653	360	894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09년 이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p291, (2010년)

3. 다문화 가족 현황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여서 사회적인 관심의 증폭되고 있는 가족유형이 다문화가족이다. 다문화가족이란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 이주민가족(노동자, 유학생) 등이 포함된다. 한편, 우리나라 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을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만으로 국한하고 있다.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교육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07년에는 4만4천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103,484명, 2010년에는 3배 증가한 121,935명으로 파악되었다. 자녀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만 6세

이하는 75,776명으로 비중으로는 과반수를 넘는 6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은 2009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로 신생아가 지속적으로 태어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만 7~12세 이하로 30,587명(25.1%)이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 이하 아동은 8,688명(7.1%)이고, 고등학생 연령대인 만 15~18세 이하 아동은 6,884명(5.6%)으로 파악되었다. 즉, 아직까지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낮은 편이나, 향후 5~10년 후에는 학령기에 도달하여 학교적응 및 정체성 문제, 낙인감,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예견된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국제결혼가족 총 재학생수는 2010년 현재 30,040명인데, 이는 2009년에 비해 5,300명가량이 증가한 수치이다. 학년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78.6%, 23,602명이고, 그 다음은 중학생으로 16.0% 4,814명이고, 고등학생은 가장 적은 1,624명, 5.4%이다. 점차 고학년 아동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국제결혼가족 중 모가 외국인이 학생의 비중은 전체의 89.9%(27,001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국제결혼가족 학생수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21,410명이고, 중학생 4,204명, 고등학생 1,387명의 분포이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 다문화가족의 학생분포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연령대에 있다. 전체적으로 국제결혼가족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고, 학년도 점차적으로 고학년화되고 있는 추이로써, 고학년 아동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표 5-1-8〉 다문화가족 자녀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 도	만6세 이하	만7세~ 만12세이하	만 13세~ 만15세이하	만15세~ 만18세이하	계
2007	26,445	14,392	2,080	1,341	44,258
2008	33,140	18,691	3,672	2,504	58,007
2009	61,700	27,568	7,785	6,431	103,484
2010	75,776	30,587	8,688	6,884	121,935
'09년 비율	59.6	26.7	7.5	6.2	100.0
'10년 비율	62.1	25.1	7.1	5.6	100.0

자료 : 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2009년. (2009년 이전)
행정안전부, 2010. (2010년 통계)

〈표 5-1-9〉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재학 현황

(단위: 명, %)

연도	국제결혼가족 학생수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2005	6,121	5,332	583	206	—	—	—	—
2006	7,998	6,795	924	279	6,695	5,854	682	159
2007	13,445	1,444	1,588	413	11,825	10,387	1,182	256
2008	18,778	15,804	2,213	761	16,937	14,452	1,885	600
2009	24,745	20,632	2,987	1,126	22,264	18,845	2,519	900
2010	30,040	23,602	4,814	1,624	27,001	21,410	4,204	1,387
'09 구성비	100.0	83.4	12.1	4.5	90.1 ¹⁾	91.3 ¹⁾	84.3 ¹⁾	79.9 ¹⁾
'10 구성비	100.0	78.6	16.0	5.4	89.9 ¹⁾	90.7 ¹⁾	87.3 ¹⁾	85.4 ¹⁾

주 : 1)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비율은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대비임.
 자료 : 통계청, KOSIS, 2011.

4. 요보호아동 현황

요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이러한 아동들에게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요보호아동 수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의 IMF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증가추세였는데, 경제가 안정화됨에 따라 몇 년 전부터는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요보호 아동의 발생원인은 1990년대에는 주로 미혼모 아동, 기아, 비행, 가출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부모의 학대, 부모이혼, 부모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인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긴급전화(1391)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사례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주로 사회의 양극화, 가정해체의 증가 등 사회문제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현재 요보호아동은 총 8,590명으로 2009년에 비해 400여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가장 많은 발생원인은 부모의 학대/실직/사망/질병/이혼 등으로 인한 것으로

4,613명이고, 그 다음이 미혼모로 2,804명이다. 비행·가출아동도 772명이나 되고, 미아 210명, 기아 191명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아동가출이나 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실종아동을 위한 보호체계가 공고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로 인한 요보호아동의 발생에 주목하여, 아동폭력예방 및 신고의무화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5-1-10〉 요보호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단위 :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9,085	10,586	10,057	10,222	9,393	9,420	9,034	8,861	9,284	9,028	8,590
기 아	1,270	717	634	628	481	429	230	305	202	222	191
미혼모	4,190	4,897	4,337	4,457	4,004	2,638	3,022	2,417	2,349	3,070	2,804
미 아	152	98	74	79	62	63	55	37	151	35	210
비행·가출	1,757	728	749	595	581	1,413	802	748	706	707	772
학대									891	1,051	
부모빈곤실직									1,036	710	
부모사망	1,716	4,146	4,263	4,463	4,265	4,877	4,925	5,354	732	763	4,613
부모질병									274	230	
부모이혼등									2,943	2,240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10 (2009년 이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11, p268, (2010년).

요보호아동의 보호는 시설보호, 가정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으로 나누어진다. 전반적으로 시설보호는 거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정위탁은 상승과 감소의 추이를 반복하고 있고, 입양도 다소 증가 → 감소 →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은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향후 가정 중심의 보호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위탁이나 국내 입양이 보다 활성화되어 아동이 영구적으로 보호 및 양육될 수 있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뒷받침과 일반 가정의 협조가 필요하다.

〈표 5-1-11〉 요보호아동 보호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9,085	10,586	10,057	10,222	9,393	9,420	9,034	8,061	9,284	9,028	8,590
시설보호	4,481	4,774	4,663	4,824	4,782	4,818	4,366	3,245	4,964	4,767	4,842
가정위탁	2,285	3,090	2,177	2,392	2,212	2,322	3,101	3,378	2,838	2,734	2,124
입 양	1,755	1,848	2,544	2,569	2,100	1,873	1,259	1,191	1,304	1,314	1,393
소년소녀가정	564	874	673	500	299	407	308	247	178	213	231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10. (2009년 이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11. p268 (2010년).

5. 소년 · 소녀가정 세대 현황

우리나라의 소년 · 소녀가정 세대는 1997년 이래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1997년(9,544세대) IMF를 정점으로 1999년 7,924세대, 2001년 5,248세대, 2003년 3,994세대, 2005년 2,755세대, 2007년 1,630세대, 2009년 1,054세대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0년 소년 · 소녀가정의 세대수는 905세대이고, 세대원 수는 1,327명이다.

〈표 5-1-12〉 소년·소녀가정 세대현황

(단위 : 명, 세대)

연도	세대수	전 세 대 원					
		계	미취학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기 타
1990	6,696	13,778	142	3,593	4,009	2,998	3,036
1991	6,902	13,985	121	3,650	4,093	3,194	2,927
1992	7,089	14,081	136	3,521	4,404	3,374	2,646
1993	7,322	14,293	119	3,331	4,710	3,622	2,511
1994	7,540	14,372	124	3,026	4,940	3,892	2,390
1995	8,107	15,118	124	2,914	5,261	4,392	2,427
1996	8,849	16,001	149	2,854	5,447	4,833	2,718
1997	9,544	16,547	174	2,830	5,382	5,516	2,645
1998	8,407	13,627	150	2,428	4,515	5,141	1,393
1999	7,924	12,427	150	2,356	4,046	4,992	883
2000	6,229	9,579	121	1,862	3,217	4,041	338
2001	5,248	8,060	133	1,640	2,611	3,414	262
2002	4,531	6,947	115	1,478	2,232	2,936	186
2003	3,994	6,184	99	1,309	1,966	2,668	142
2004	3,504	5,444	87	1,244	1,681	2,331	101
2005	2,755	4,332	85	901	1,343	1,923	80
2006	2,086	3,271	39	572	1,031	1,570	59
2007	1,630	2,501	25	401	789	1,226	60
2008	1,337	2,058	12	292	621	1,080	53
2009	1,054	1,596	10	196	440	904	46
2010	905	1,327	9	149	375	753	41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10. (2009년 이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p252. (2010년)

2010년 소년소녀가정의 재학상태별로는 미취학 9명, 초등학교 149명, 중학교 375명, 고등학교 753명, 기타 41명이다. 즉, 소년·소녀가정은 고등학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학생이고 초등학생 순이다. 미취학의 경우도 9명이 있어 건강한 양육발달을 위해 가정보호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010년도의 경우 전년도인 2009년(1,054세대)에 비해 소년소녀가정세대가 149세대 감소하였고,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가장 많았던 1997년(9,544세대)에 비해서는 무려 10분의 1(905세대)로 감소하였다.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급격한 감소는 최근의 정책적 변화에 기인한다. 특히, 15세 미만의 아동세대를 구성할 경우 정부에서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를 강구함에 따라서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 것이다. 소년·소녀가정이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1천여 명이 있어 아동의 보호권 보장을 위해서 영구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가정과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부
록

제2장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1. 가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가.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은 연간 62천명('10년도) 수준이며,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매년 증가 추세이다. 학업중단의 주된 사유는 학습부진 및 교사·교우 관계 등에 따른 학교부적응과 가정의 실직, 가정해체 등에 따른 가사문제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청소년을 분류할 때, 이미 위기상황이 발현된 고위기군과 방치할 경우 위기발현 가능성이 높은 잠재위기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위기 청소년의 주요 발현 위기유형은 인터넷 중독(25.8%), 가출(23.1%), 학업중단(21.3%), 자살충동(12.4%) 순이며, 그 중 39%는 2가지 이상의 위기유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전국 166개소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일상생활 등 기초사회생활교육,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복귀 지원, 사회적응 지원 등의 학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검정고시 지원, 학습도우미 연결 등의 학업복귀를 돕기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9박 10일 과정의 기숙형 대안캠프 “성장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태도 개선 및 학업복귀 동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성장과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8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표 5-2-1〉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

- * 지원대상 : 만 9~18세 이하 위기청소년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미만인 자
(단, 생계비, 의료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미만)
- * 사업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지원 등 (월10만원~연350만원 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2010)

〈표 5-2-2〉 학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용

구분	학업복귀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학습방법 지원)
■ 수행기관	-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대상	- 학업중단청소년	- 학습능률 부족, 학습수준 평가를 원하는 청소년
■ 프로그램 내용	- 총 12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 생활 점검, 미래 인생곡선, 약점과 강점 이해, 공부의욕 다지기, 학교갈등해결, 성공경험 등을 다룸	- 구성 : 8개 학습전략 (전체 35회기) · 학습전략 : 학습동기, 학습유능감, 기초기억, 심화기억, 주의집중, 시험전략, 시험불안조절, 자기관리 · 학습수준 진단 및 주의집중력 테스트
■ 운영목표	-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복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학업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갖게 함.	- 학습흥미 유발 및 자신감 회복을 통해 학습능력 향상
■ 사업특성	- 학업복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학업 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복귀 동기 강화 및 복귀후 학교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입 가능	- 참여자의 학습유형과 교급에 따라 8가지 학습전략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 학습수준 진단을 통해 객관적인 자신의 학습유형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도 가능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0)

나. 가출 청소년

최근 사회적 문제인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리생활을 하면서 범죄 및 비행 등의 문제행동 유발, 건강 훼손은 물론, 절도·폭행·성매매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가출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6개월 이상의 장기 가출과 가출의 반복성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에 따라 청소년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가출한 청소년은 신속하게 보호, 상담,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가출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 정책의 변화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1992년 최초로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청소년 선도 예방활동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참여정부”에서는 「가출청소년 쉼터 확대」를 대선공약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2005년 2월 시행)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법적인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한 가지 유형의 쉼터로 운영되다가 가출 청소년의 상황 및 욕구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서비스 내용을 차별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에 드롭인센터(일시쉼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는 중장기적인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장기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표 5-2-3〉 청소년 쉼터의 발전단계

① 도입기	- 1992년 최초의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 1998년 5개 광역시별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② 확대기	- 2001년 청소년기본법 제정 - 2003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법적근거 마련 - 2004년 드롭인센터 설치·운영 - 2005년 중장기쉼터 설치·운영
③ 성숙기	- 2006년부터 정체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시행중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 사업내용 및 규모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생활보호뿐만 아니라 상담, 자립역량 강화, 고충처리, 문화활동 프로그램 기회제공 등을 통해 가출청소년들의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시설의 전문화 및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단기 및 중·장기 쉼터로 특성화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쉼터의 활동범위(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 관리 등이 포함된다.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개입, 가정 및 사회복귀

를 위한 청소년쉼터는 자치단체경상보조의 형태(Matching Fund, 정책정율보조)로 지원되고 있다. 2011년 현재 청소년쉼터는 8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쉼터의 운영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나 지역실정 및 여건 등에 따라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표 5-2-4〉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구분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일시쉼터	7	9	9	10	10	10
단기쉼터	43	45	42	47	49	48
중장기쉼터	21	25	25	24	24	25
계	71개소	72개소	76개소	81개소	83개소	83개소

자료 : 여성가족부(2011)

(3) 청소년쉼터 종류 및 유형별 기능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지원하는 쉼터의 종류는 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이며 그 유형별 기능과 2011년 청소년쉼터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청소년쉼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은 1992년 설립된 서울 YMCA 쉼터이고, 2004년에 가출청소년의 긴급 보호를 위하여 일시보호시설인 ‘일시쉼터(드롭인센터)’를 서울과 인천, 대전에 각각 설립하였으며, 2011년 현재 일시쉼터 10개소, 단기쉼터는 48개소, 중장기쉼터는 2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표 5-2-5〉 쉼터의 종류 및 기능

구분	일시쉼터(10개소)	단기쉼터(48개소)	중장기쉼터(25개소)
기간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3개월 내외의 단기보호	2년 내외 이상 중장기보호
이용대상	일반청소년, 거리생활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
기능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 구조·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결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 및 예방 활동 전개 -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 서비스제공 -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출청소년 분류,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2011)

(4) 청소년쉼터 운영현황

청소년 쉼터 이용현황은 <표 5-2-6>과 같으며, 쉼터이용 청소년 실적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 전산망인 ‘행정지원시스템’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시쉼터 10개소를 제외한 단기·중장기 쉼터 73개소의 수용 가능한 총 정원은 851명이다.

<표 5-2-6> 청소년쉼터 이용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예산(백만원)	3,533	4,165	4,639	4,651	5,874
쉼터수(개소수)	71	72	76	81	83
이용인원(명)	11,018	14,360	15,133	16,519	16,687

자료 : 여성가족부(2011)

(5)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내실화

청소년쉼터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일시·단기·중장기로 특성화하고, 쉼터유형별로 운영 모형 및 운영목표 등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쉼터 운영역량 강화 및 가출 청소년의 가정·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 평가사업, 이행실태 점검, 사례관리 및 집단프로그램 경진대회, 종사자 워크숍 및 역량강화 연수, “청소년쉼터 주간”(최초 쉼터 설치 일인 10월 28일이 속해 있는 주)을 설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접근·개입을 위해 아웃리치 전담인력을 전국 일시쉼터에 배치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2.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북한이탈청소년은 입국과정에서의 심리·정서적 상흔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하나원 교육생 중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을 앓는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 학습 공백기간, 동급생보다 나이가 많은 문제, 교육시스템 부적응 등으로 학교생활 및 적응이 어려워 중도탈락률이 일반청소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재)무지개청소년센터를 통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바, 해당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에 알맞은 단계별 종합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및 사회적응 지원,

학업지원, 취업지원과 함께 유관기관·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 등 안정적 사회 정착 및 건강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입국초기(하나원 재원 중)부터 정착 시(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정착후)까지 단계별 지원구축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하나둘학교에 청소년전문가를 파견하여 심리·정서적 지지 및 개별적 맞춤형 교육 지원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정착 이후 통일부 관련 기관들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관련기관 및 지역의 복지관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국초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입국 초기 단계의 북한이탈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지 및 개별적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하나둘학교 협력운영, 하나원 방문교육, 비교문화체험학습, 사회입문프로그램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단계별 입국초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5-2-7〉 단계별 지원 체계

하나원 재원 중			퇴소 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 라포 형성 - 문화이해 제고	- 라포 형성 - 일상생활 적응강화	- 진로이해 증진 - 정착불안해소	- 생활 현황 파악 - 지역자원 연계
하나둘학교 협력운영 (하나원과의 MOU체결 교사 2명 파견)	비교문화체험학습 (월 1회, 2박3일 35시간)	하나원 방문교육 (월 1회, 4시간)	사회입문프로그램 (분기 1회, 8시간)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 지역사회 정착지원사업

북한이탈청소년 밀집 거주지역(서울, 경기, 인천)과 전국(경상, 충청, 전라, 강원, 제주)에 분산 거주하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특성 및 개인의 역사·상황·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서울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밀집 거주하는 곳으로, 해당 지역 내 전문기관인 인천새터민지원센터를 지역센터로 지정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청소년 사례관리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북한이탈청소년 현황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 규모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통상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6세에서 20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청소년기본법¹⁾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연령 상한선인 24세를 포함시킬 경우 9세부터 24세미만 북한이탈청소년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15.7%이다.

〈표 5-2-8〉 북한이탈청소년 연도별 입국현황

(단위 : 명)

구분	소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3월
9세~24세	3,517	357	467	562	594	706	569	262

자료 : 통일부 정착지원과(2011)

〈표 5-2-9〉 북한이탈청소년 재학현황

구 분 (연도)		정규학교 재학현황 (교과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북한이탈 청소년	2011	1,020명 (60.6%)	288명 (17.1%)	373명 (22.1%)	1,681명(2011.4) (100%)
	2010	773명 (54.5%)	300명 (21.2%)	344명 (24.3%)	1,417명(2010.4) (100%)
	2009	562명 (49.2%)	305명 (26.7%)	276명 (24.1%)	1,143명(2009.4) (100%)
	2008	492명 (50.9%)	294명 (30.5%)	180명 (18.6%)	966명(2008.4) (100%)

자료 : 통일부(2011)

3. 다문화청소년 지원

최근 한국사회의 이주민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청소년이 늘고 있다. 이들 가정의 경제적 구조의 열악함과 부모의 불안한 일자리 등으로 언어습득, 학습능력 및 또래문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소년 연령을 만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다.

화 경험 등 양육여건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외국인 부모의 국가에서 생활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하는 동반·중도입국청소년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필요한 지원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증가와 더불어 문화적 이질성 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 현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외모, 언어능력 등에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의식으로 한국사회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은 신분상의 불안정(미등록)으로 정규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이에,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과 우리사회의 청소년 일반과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이주배경청소년통합지원사업 ‘Happy Rainbow’ 전국 10개지역(서울, 고양, 안산, 천안, 익산, 나주, 창원, 거제, 부산, 제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Happy Rainbow는 매달 휴무토요일, 각 지역의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체험활동, 지역사회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반·중도입국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성장기에 입국한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입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어 지도, 편·입학 지도, 정체성 및 교우관계, 생활법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2개 지역 시범실시과정에서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2011년에는 9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광주, 청주, 익산, 수원, 안산, 제주), 10개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청소년관련 기관(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실무자들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이탈·다문화청소년 전문가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83명의 청소년관련 종사자가 수료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표 5-2-10〉 북한이탈·다문화 전문가양성교육 수료자 수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총 계
수료자 (명)	55	102	110	116	383

자료 : 여성가족부(2010)

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개요 및 특징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의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 학습 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건전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 활동을 통해 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맞벌이·한부모·부모의 실직·파산·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을 받는 청소년(초4~중2)은 2005년 2,350명(연인원 : 225,600명), 2006년 4,200명(연인원 : 1,260,000명), 2007년 6,300명(연인원 : 1,890,600명), 2008년 7,680명(연인원 : 2,165,760명), 2009년 7,245명(연인원 : 2,064,825명), 2010년 6,645명(연인원: 1,727,700명)으로 2009년부터 부실운영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중단 조치로 인원수가 소폭 감소하였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시행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실시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시설 등을 활용하고 있다. 2008년 185개소가 운영되다가, 2009년 178개소, 2010년 161개소로 축소운영 되었으며, 2005년 시범실시(46개소) 이후 2006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국비 50%)되어 지자체매칭펀드방식으로 운영되다가 2009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었다. 2010년 현재 245억원이 예산으로 투입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30%, 다른 지역의 경우 50%가 국비에서 지원되었다.

〈표 5-2-11〉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의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건전한 성장 지원
사업대상	맞벌이·한부모·부모의 실직·파산·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홀로 지내는 청소년(초4~중2) -2005년 : 2,350명(연인원: 225,600명) -2006년 : 4,200명(연인원: 1,260,000명) -2007년 : 6,300명(연인원: 1,890,600명) -2008년 : 7,680명(연인원: 2,165,760명) -2009년 : 7,245명(연인원: 2,064,825명) -2010년 : 6,645명(연인원: 1,727,700명)
시행주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운영
설치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시설 등
사업기간	2011.1~12월 연중 상시 실시(토요일, 방학중에도 운영)
사업	161개소(기본형: 1개소 총40명, 1개반 20명, 2개반) 운영
사업예산	121억원(국비지원율: 서울 30%, 지방 50%)

자료 : 여성가족부(2010)

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

(1) 지역별 운영 현황

지역별 운영현황을 보면 16개 시·도가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 전국적으로 161개소가 운영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총 4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전체의 25.5%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5-2-12〉 지역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참여현황												
	계	지원				일반				혼합			
		소계	초등	중등	혼합	소계	초등	중등	혼합	소계	초등	중등	혼합
서울	14	13	11	0	2	1	1	0	0	0	0	0	0
부산	9	9	6	3	0	0	0	0	0	0	0	0	0
대구	7	7	7	0	0	0	0	0	0	0	0	0	0
인천	5	5	2	1	2	0	0	0	0	0	0	0	0
광주	4	4	4	0	0	0	0	0	0	0	0	0	0
대전	5	5	5	0	0	0	0	0	0	0	0	0	0
울산	4	4	2	2	0	0	0	0	0	0	0	0	0
경기	27	25	16	4	5	0	0	0	0	2	2	0	0
강원	9	9	8	1	0	0	0	0	0	0	0	0	0
충북	9	9	9	0	0	0	0	0	0	0	0	0	0
충남	9	9	8	1	0	0	0	0	0	0	0	0	0
전북	15	15	9	6	0	0	0	0	0	0	0	0	0
전남	12	12	9	3	0	0	0	0	0	0	0	0	0
경북	9	9	6	1	2	0	0	0	0	0	0	0	0
경남	15	15	8	2	5	0	0	0	0	0	0	0	0
제주	8	8	5	1	2	0	0	0	0	0	0	0	0
계	161	158	115	25	18	1	1	0	0	2	2	0	0

자료 : 여성가족부(2010)

(2) 운영형태별 운영 현황

전체 161개소 중 지원형은 158개소로 가장 많은 98.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형 1개소와 혼합형 2개소가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5-2-13〉 운영형태별 운영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시 설 수	비 율
일 반 형	1	0.62
지 원 형	158	98.14
혼 합 형	2	1.24
합 계	161	100.00

자료 : 여성가족부(2010)

5. 지역아동센터운영

가.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 11호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보고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내용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읍·면·동에 위치하여, 아동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아동복지시설이다. 이곳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5대 영역, 즉 생활지원, 학습지원, 놀이 및 특별활동 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빈곤아동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들의 복지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5-2-14〉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내용

구 분	상 세 내 용
생활지원(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내 방임 아동보호, 일상생활 지원, 건강생활 지도, 위생 지도, 안전 지도, 급식제공
이용자 사례관리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아동사례 관리, 가족지원하기 등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지역내 인적 자원 확보 및 관리, 물적 자원 확보 및 관리, 관련기관 연계프로그램, 홍보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생활 준비 지원, 학년별 학습지도하기, 학습 부진아 지도, 학습지원 성과 평가하기, 숙제지도, 예체능 교육 등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놀이 활동 지원, 특기 적성 프로그램 지원 등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사업 안내」, 2010.

(3)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이용 현황

지역아동센터는 201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3,690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는 개인이 전체의 56.4%(2,079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종교단체 19.2%(710개소), 사회복지법인 9.0%(331개소), 재단법인 6.8%(252개소), 사단법인 3.8%(142개소)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2-15〉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시민단체	66	80	97	92	95
재단법인	144	146	180	235	252
사단법인	89	111	123	148	142
사회복지법인	245	267	302	324	331
종교단체	757	861	902	737	710
개인	660	1,085	1,322	1,873	2,079
지자체	5	4	6	4	4
기타	63	64	81	61	77
합계	2,029	2,618	3,013	3,474	3,690

자료 : 보건복지부(2010.12)

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연령별 현황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총 100,233명으로 전년에 비해 2,307명이 증가하였다. 지역아동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년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40.2%(40,233명)이며 다음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37.8%(37,865명), 중학생 15.0%(15,075명), 미취학이 4.4%(4,376명), 고등학생이 2.3%(2,346명), 기타 0.3%(338명)의 순이다.

〈표 5-2-1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연령별 현황

계	미취학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탈학교 등
100,233명 (100%)	4,376명 (4.4%)	37,865명 (37.8%)	40,233명 (40.2%)	15,075명 (15.0%)	2,346명 (2.3%)	338명 (0.3%)

자료 : 보건복지부(2010.12)

②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소득계층별 현황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차상위(저소득)아동이 37.7%(37,80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수급권아동이 26.6%(26,657명), 기타승인가동이 21.9%(21,942명), 일반아동이 13.8%(13,833명)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5-2-17〉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소득계층별 현황

구분	계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기타승인가동	일반아동
인원	100,233명	26,657명	37,801명	21,942명	13,833명
비율	100.0%	26.6%	37.7%	21.9%	13.8%

※ 차상위아동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말함.

※ 학교중식지원아동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아동을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2만9천원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말함(교육인적자원부 자료).

※ 기타승인가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아동과 차상위 인정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아동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신빈곤층 아동을 말하며 공신력있는 기관 및 담당자의 추천서를 통해 해당 아동으로 인정됨.

※ 2009년부터는 학교중식지원아동이 아닌 기타승인가동으로 조사됨.

자료 : 보건복지부(2010.12)

③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별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현황은 시설장이 45.9%(3,690명)이며, 생활복지사는 54.1%(4,352명)이다. 생활복지사 중 남자는 5.8%(463명), 여자는 48.3%(3,889명)이다.

〈표 5-2-1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현황

구분	계	시설장	생활복지사		
			소계	남	여
인원	8,042명	3,690명	4,352명	463명	3,889명
비율	100.0%	45.9%	54.1%	5.8%	48.3%

자료 : 보건복지부(2010.12)

④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현황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2004년 1월 법제화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2,788개소에 총 282억원의 국고 지원이 이루어졌던데 비해 2010년에는 2,946개소에 월 320만원씩 총 54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었다.

〈표 5-2-19〉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개소	500	800	902	1,800	2,788	2,788	2,946
지원단가 (만원/월,개소)	67	200	200	200	220	상반기 : 220 하반기 : 320	320
예산(억원)	12	73	98	206	282	457	543

자료 : 보건복지부(20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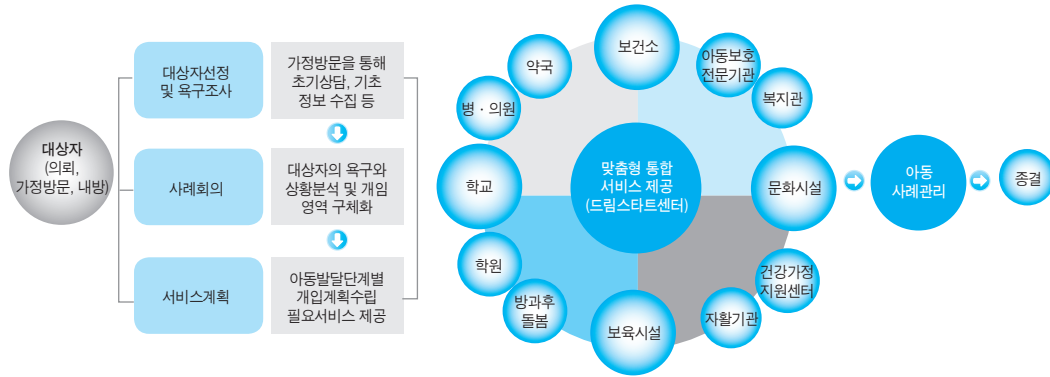
6. 드림스타트 사업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이고 예방적인 인적자본 개발을 통해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 나가는 아동정책 중의 대표적인 것이 “드림스타트 사업”이다. 기존 아동복지서비스가 문제 발생 이후 단편적으로 개입하는 사후관리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다면, 드림스타트 사업은 빈곤 아동들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능력 등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전 예방적·통합적 아동보호서비스로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초수급, 차상위 등 저소득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양육관련 부모교육 및 부모직업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기능을 회복시켜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의 위기도 수준을 사정하여 위기수준별 상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일련의 사례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지역사회내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학교, 보육기관,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 등 다양한 아동복지자원과 연계하여 131개 사업지역에서 약 3만 5천여명의 아동과 5만 2천여명의 가족 및 임산부에게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5-2-1] 드림스타트 서비스 제공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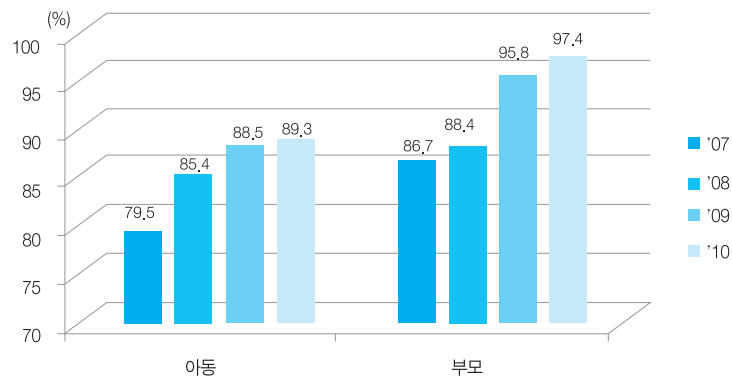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10)

동 사업은 2007년 16개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2008년 32개, 2009년 75개, 2010년 101개 지역으로 확대, 2011년 현재 131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서비스 수준을 강화한 결과 매년 서비스 대상아동 및 부모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5-2-2] 연도별 아동 및 부모 만족도

(단위 : 만족이상 답변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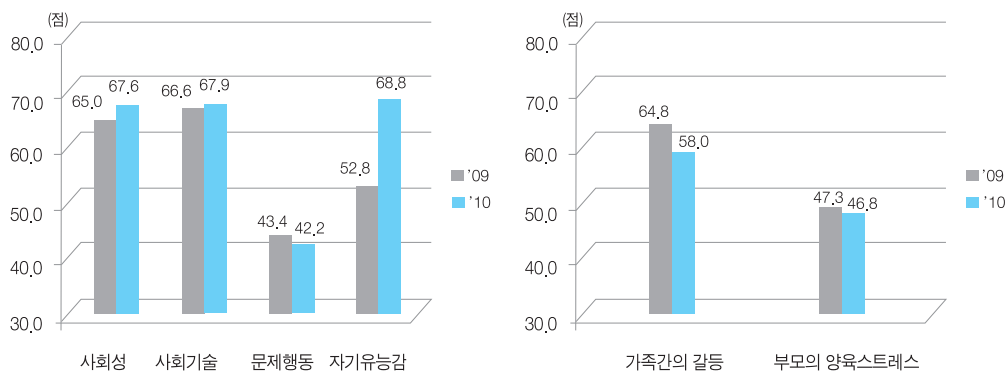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10)

또한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받은 아동(수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횟수가 3회 이상인 아

동) 1,760명 및 부모(1,7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10.10), 서비스를 지원받은 아동이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은 아동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협동·책임감·자기통제 등 사회성이 높으며, 우울·불안·비행 등 문제행동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3] 드림스타트 서비스 효과(사업 실시-미 실시 지역 비교)

(단위 : 점)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에는 사업지역을 181개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드림스타트와 같이 아동빈곤에 대한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복지투자의 확대는 빈곤세습의 고리를 단절하고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사회통합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어 나가야 할 사업이 될 것이다.

7.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최근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들에게까지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저소득 아동의 자립의지 함양을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발달지원계

좌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친근감을 갖도록 2009년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이라는 대국민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설보호·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에게 전달이 된다. 단순히 개인 용돈이나 물품으로 주는 것이 아닌 만 18세 이후 시설을 떠나 혼자서 살아야 할 아이들을 위해 적게나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다. 0~17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아동이 저축한 만큼 국가가 추가로 적립(월 3만원한도)하여 저축액이 두배가 되게 한다. 또한 디딤씨앗통장으로 모아진 저축은 학자금, 취업훈련, 주거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된다. 디딤씨앗통장이 기존의 기부와 다른 것은 우리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국가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의 디딤씨앗통장에 매월 30,000원을 후원하면 국가에서 추가로 30,000원을 적립하여 총 60,000원이 아이들의 디딤씨앗통장에 적립되게 된다. 이는 우리가 기부한 후원금이 두 배가 되어주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 주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월 6만원(아동 3만원, 정부매칭 3만원)을 0~17세까지 적립시 2,235만원 수령하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단순히 자립을 위해 저축액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목표와 계획에 맞게 돈을 모으게 하는 경제교육 효과도 있으며, 아이들 나름대로 디딤씨앗통장으로 사회 진출 시 어떠한 목적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게 하여 자립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키워주는 장점도 있다. 2010년 말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은 40,829명이고, 적립금액 누계는 685억이다. 아동 1인당 월평균 적립액은 29,129원(정부매칭지원금 제외)이다.

〈표 5-2-20〉 디딤씨앗통장 저축 현황

구 분	총계	시설 보호	가정 위탁	소년소녀 가정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 시설	가정 복귀
통장유지(명)	40,829	17,826	15,439	1,454	1,872	2,654	1,584
저축률(%)	96	97	94	94	94	97	94
1인당 입금액(원)	29,129	28,350	31,185	48,815	29,826	18,514	18,030

주 : 저축률은 통장유지 아동 중 매월 저축액 불입 아동 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2010)

8.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가. 시설보호 아동지원사업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 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생활시설과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이용시설, 그리고 아동종합시설로 구분되며 2010년에는 283 개소의 아동생활시설에서 17,119명의 요보호아동이 보호를 받았다.

〈표 5-2-21〉 시설보호 아동 현황

년도	구분	계	양육	직업 훈련	보호 치료	자립 지원	일시 보호	종합 시설	아동 복지관	아동 전용
2003	시설수(개소) 수용인원(명)	279 18,818	239 17,437	5 158	6 373	13 244	10 437	2 169	1 —	3 —
2004	시설수(개소) 수용인원(명)	279 19,014	239 17,675	4 130	6 376	13 246	11 432	2 155	1 —	3 —
2005	시설수(개소) 수용인원(명)	286 19,151	242 17,729	4 110	8 457	13 229	13 457	2 169	1 —	3 —
2006	시설수(개소) 수용인원(명)	285 18,817	243 17,517	3 75	8 436	13 235	13 391	2 163	— —	3 —
2007	시설수(개소) 수용인원(명)	286 18,426	243 17,161	3 72	8 404	13 269	13 365	3 155	— —	3 —
2008	시설수(개소) 수용인원(명)	285 17,992	242 16,706	2 69	10 477	12 257	14 341	5 142	— —	3 —
2009	시설수(개소) 수용인원(명)	280 17,586	239 16,239	2 65	11 514	12 262	13 368	3 138	— —	3 —
2010	시설수(개소) 수용인원(명)	283 17,119	238 15,787	2 69	11 495	12 235	14 402	3 131	— —	3 —

주 : 종합시설은 일시보호시설과 아동상담소를 겸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0)

정부에서는 시설보호아동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초등학교 보육에서 전체 아동의 보육까지 보육사의 2교대를 확대하는 등 시설운영비를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이나 시설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요보호아동의 경우 가정위탁, 입양 등 가정보호정책 중심으로 아동복지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이 감소되고 있어 시설의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어 보호치료시설 등으로 기능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가정과 같은 형태의 보호 욕구 변화에 부응하여 아동시설의 보호방법을 종래의 대규모 집단보호의 형태에서 가정단위의 소(小)숙사 제도나 그룹홈 형태 등 소규모 가정 보호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으로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한 아동과 보육사를 가정으로 구성, 보호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시설아동도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0년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직업훈련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복지관을 시설의 종류에서 삭제하여 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하였으며, 2011년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설의 인력기준과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시설 생활아동의 복지를 증대할 예정으로 있다.

앞으로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호양육에 치중된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을 상담, 일시보호, 급식, 방과 후 교육,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기능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설이 지역사회 아동복지 거점시설로 전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은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지만, 대학이하 재학, 직업훈련시설 등에서 교육훈련중인 자와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 미만 및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연장을 요청한 자 등은 보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연장보호를 받을 수 있다. 퇴소연장아동에게는 취업준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를 위한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을 통해 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낮아 시설환경개선 및 자립 생활관 이용기간을 24세에서 25세까지로 확대하고, 최장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퇴소 및 연장아동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시설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 퇴소 시에는 침구나 취사도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시설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997년도부터 시설보호아동의 사회적응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군부대입소, 자연탐방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아동자립지원센터에서는 퇴소하게 되는 연장아동을 대상으로 취업지도, 직업교육, 사회생활에 대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2006년도부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퇴소아동 공동생활가정 및 전세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진학, 기숙사 배정우대 및 학자금 지원 확대와 자립지원시설 상담인력 증원 및 아동복지시설에 자립전담인력 배치 추진 등의 퇴소아동자립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자립지원시설, 아동자립지원센터 등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시설퇴소연장자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계획이다.

〈표 5-2-22〉 퇴소 아동 진학률

(단위 : 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퇴소아동	910	855	825	813	817	792	834
진학자수	243	307	298	375	356	428	470
진학률	26.7%	35.9%	36.1%	46.1%	43.6%	54.0%	56.4%

자료 : 보건복지부(2010)

나. 가정보호사업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2항에서는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가정 내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모의 빈곤·실직, 미혼모 출산 등으로 인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입양, 가정위탁 등 가정을 제공해 주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 국내입양

국내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시키기 위한 국내입양 사업은 아동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되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최근 들어 국내입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와 같은 아동복지 차원의 입양문화는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로는 여아선호 및 까다로운 선별입양(친부모 학벌, 혈액형, 외모)의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경제적·제도적 지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매월 중증 62.7만원, 경증 55.1만원의 양육보조금과 연간 26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입양아동에 대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국내입양가정에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단,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만 해당된다. 또한 입양도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일간의 입양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개입양부모의 모임인 한국입양홍보회를 통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입양교

육, 입양가족대회, 입양세미나 개최 등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홍보사업과 국내입양문화 개선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아동복지차원의 입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양에 대한 홍보 및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며, 특히 입양은 국민의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입양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5-2-23〉 국내 입양 현황

(단위 :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694	1,564	1,641	1,461	1,332	1,388	1,306	1,314	1,462

자료 : 보건복지부(2010)

(2) 가정위탁 보호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건전한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형태로 그 동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2000년도부터 정부차원에서 가정위탁가정에게 양육보조금(월 10만원이상)을 지원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시범운영(강원도) 하면서 활성화 되었다.

또한 위탁가정 발굴, 부모교육, 위탁아동 및 위탁 가정의 조사, 사후관리 등에 있어 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전국에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7월부터 중앙가정위탁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2006년에는 위탁아동의 예기치 못한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시 위탁가정에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위탁아동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정서적 장애가 있는 위탁아동의 원활한 보호를 위하여 위탁아동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말 기준 16,359명의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가정에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표 5-2-24〉 가정위탁보호 현황

(단위 : 명)

2007	2008	2009	2010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16,200	16,454	16,608	16,359	10,865	4,371	1,123

자료 : 보건복지부(2010)

그동안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위탁가정의 선정기준도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선정기준을 입양아동 선정기준에 준하여 재산이 충분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가정이 화목하고 위탁부모의 연령도 2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가정위탁의 정의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가정위탁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2005년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가정위탁보호의 정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위탁활성화와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위탁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를 대비하였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가정에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표 5-2-25〉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현황

구분	전체 가정위탁 아동	총 가입 인원	총 가입 금액	총 보험 처리 건수
2010년	16,359명	15,179명	1,085,360천원	309건

자료 : 보건복지부(2010)

(3) 소년·소녀가정 아동 보호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의 결함으로 만 18세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아동은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10년말 기준 전국에 905세대, 1,327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생계·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육보조금(월 10만원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복비, 영양급식비 및 학용품비·교통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을 통해 정서적인 측면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은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하여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후견인, 결연기관 담당자, 담당 공무원 등이 수시로 방문·면담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하지만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가능한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는 추진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4)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아동 5~7인으로 가구를 구성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형태로서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10년말 기준 정부지원 공동생활가정은 416세대로서 앞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룹홈 생활 아동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를 지원하고, 퇴소 시 양육시설 퇴소아동과 같은 액수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소규모 가정형태의 보호체계가 요보호 아동에게 심리·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인식하에 시설보호 비중을 낮추는 방안의 하나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2004년 1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종류에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010년에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저평가시설에 대하여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하여 운영 내실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5-2-26〉 정부지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단위 : 세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32	32	32	60	120	176	248	348	416

자료 : 보건복지부(2010)

9. 아동 급식 지원

정부는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또는 부모의 질병, 사망, 가출 등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발생하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2000년 10월부터 아동급식을 실시하여 아동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동급식은 사회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2001년 11월부터는 국무조정실의 급식지원 확대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취학아동에 대해 조·석식,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조·중·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 주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사업 시작 이후 1만5천여 명의 결식 또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 방학 중, 토·공휴일 중식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여 급식을 실시하게 되어 여름방학에는 3만9천명에 대하여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였다. 겨울방학에는 급식지원대상을 결식우려 아동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확대하는 적극적 급식지원으로 추진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학기 중 급식을 받는 학생 중 급식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7만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이 지원되었다.

결식아동의 누락방지를 위해 2008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급식 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사회에서 결식을 하는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2009년에는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자 조사 및 선정 주체를 담임교사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결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2005년 지방이양 이후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비로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여 왔으나, 2009년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방학 중 급식지원대상자 증가(47만여 명)로 인해 2009년 및 2010년에 한해 국비가 지원되었다.

급식지원 대상자는 연중 조사하되, 전화, 서면 및 방문조사, 교사·통장·이장·반장·이웃주민·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개인별로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로 실시하고 급식지원대상자 조사·선정(방문조사 또는 전화상담 등)시 아동의 심리적 상처 등 낙인(stigma) 방지에 유의하고 있다. 아동급식전달 방법은 지역실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단체급식소 급식과 인근지역의 일반음식점 급식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였고 지역의 도시락업체를 통한 도시락배달과 지역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부식지원과 식품만 교환이 가능한 식품권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급식전달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급식지원대상의 확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 등 인적자원과 종교·시민단체 등의 급식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 물적 자원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표 5-2-27〉 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단위 :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5,112	13,552	13,610	14,533	235,202	214,009	257,276	271,616	452,321	476,444	485,811	471,515

자료 : 보건복지부(2011)

제3장 | 청소년 상담활동

1. 상담서비스

가. 청소년상담서비스 배경

청소년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에 있어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다.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빈번하게 경험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고통과 문제는 방치할 경우 성인기에 악화된 형태로 나타나 개인과 사회에 파괴적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우리의 청소년들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족갈등, 또래와의 갈등, 학업 문제, 사회적 압력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어려움들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예방과 개입 및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당시 체육부)가 청소년상담정책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청소년종합상담실(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은 현재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2010년 16개 시·도와 150개 시·군·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0년에 설치된 체육부 청소년종합상담실은 1993년에 청소년 대화의 광장(현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법인화됨으로써 중앙지도 차원의 상담시설과 지역 중심의 상담지원을 위한 기관설치 및 운영의 기본 틀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과 학부모 및 지도자 대상의 제반 상담서비스 제공과 각종 교육 및 연수, 학술 및 연구 활동, 각종 매체상담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개발과 직·간접 제공에 힘써왔다. 그러던 중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발족과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의 보호 업무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청소년 육성 업무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등 청소년 정책 환경의 일대 변혁이 단행되면서, 기존 청소년상담기관의 위상과 역할 및 조직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구체적인

로 살펴보면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그 역할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최근 급속한 문화적 변동, 전통적 가치관과 가정기능의 붕괴 등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심화되었으나 이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 등의 1차적 사회안전망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학업중단, 가출,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위기청소년들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청소년상담 활동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상담 활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서 기존 활동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해결 및 예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상담기법을 개발하여 이를 제공하고 있다.

나. 한국청소년상담원의 교육 연수 및 상담 실적

한국청소년상담원은 6회째를 맞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많은 청소년상담 전문인력을 배출하였다. 또한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전문 영역별 보수교육을 통해 실제 청소년상담업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선에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 밖에 지속적인 또래상담지도자 양성교육과 활성화 대회를 개최하여 또래상담자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였으며, 품성개발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지침서를 개발함으로써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청소년동반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고품질의 직무연수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동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좀 더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 많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업은 전문상담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지원체계 활성화사업에서는 청소년상담 중추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상담기관 관계자 회의를 통해 상담기관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상담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CYS-Net 지원사업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능동적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CYS-Net)운영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5-3-1〉 2010년 한국청소년상담원 주요 교육연수 실적

(단위 : 명)

구 분		수료인원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482
또래상담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1,882
품성개발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909
부모교육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703
센터직원 직무연수		1,160
사업별 직무 연수	인터넷중독상담 전문가 교육	502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전문가 워크숍	63
	학교관리자 및 보건교사대상 성교육	6,742
	두드림존 전문가과정	264
	교사직무연수	1,010
	성상담 전문가 양성교육	36
	자살예방교육 지도자	244
	자살위기개입상담전문가 교육	71
	학교폭력예방 '알콩달콩' 지도자	37
	잠재적학업중단 개입 지도자	134
	이혼가정 청소년상담프로그램 지도자	129
총 계		14,368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0)

2010년도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 이용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이용건수는 18,324,894건으로 나타났다. 대면상담의 총 건수는 5,443건이었으며, 매체상담은 총 18,326,406건이었다. 문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문제가 26.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문제가 17.9%, 학업 및 진로문제 14.3%와 정신건강 11.4%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상담은 가족문제가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대인관계가 19.2%, 정신건강 18.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화 상담은 기타를 제외하고 비행문제가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 14.6%, 대인관계 12.1% 순이었다. 또한

사이버상담의 게시판상담에서는 대인관계문제가 33.8%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가족문제 22.8%, 학업 및 진로문제가 17.1% 순으로 나타났고, 채팅 상담에서도 역시 대인관계문제가 36.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학업 및 진로문제 16.0%, 정신건강문제가 13.3%로 나타났다.

〈표 5-3-2〉 상담방법 및 대상별 상담실적

(단위 : 명)

구 분	대 면 상 담			매 체 상 담					계
	개 인	집 단	심리 검사	전화 상담	사이버상담		DB상담 (자료조회) DB상담 (자료조회)	웹심리 검사 웹심리 검사	
					게시판 상담	채팅 상담			
지 도 자	0	408	2	235	42	8	—	—	695
학 부 모	776	110	92	2,914	191	90	—	—	4,173
일 반 인	28	210	1	652	160	1,036	—	—	2,087
청 소 년	2,181	943	692	966	5,257	3,959	18,295,108	15,788	18,324,894
계	2,985	1,671	787	4,767	5,650	5,093	18,295,108	15,788	18,331,849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0)

〈표 5-3-3〉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단위 : 명, %)

상담 방법	구분	가족	비행	학업 및 진로	성	대인 관계	성격	정신 건강	생활 습관 태도	기타 상담	계
개인 상담	건수	739	263	403	55	573	170	563	1	218	2,985
	비율	24.8	8.8	13.5	1.8	19.2	5.7	18.9	0.0	7.3	100
전화 상담	건수	697	726	468	466	577	99	381	52	1,301	4,767
	비율	14.6	15.2	9.8	9.8	12.1	2.1	8.0	1.1	27.3	100
게시판 상담	건수	1,290	61	965	261	1,910	215	495	110	343	5,650
	비율	22.8	1.1	17.1	4.6	33.8	3.8	8.8	1.9	6.1	100
채팅 상담	건수	576	116	814	237	1,65	308	678	57	442	5,093
	비율	11.3	2.3	16.0	4.7	36.6	6.0	13.3	1.1	8.7	100
계	건수	3,302	1,166	2,650	1,019	4,925	792	2,117	220	2,304	18,495
	비율	17.9	6.3	14.3	5.5	26.6	4.3	11.4	1.2	12.5	100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0)

다. 시·도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의 현황과 실적

(1)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현황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2조와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서 지역의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운영,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찾아가는 상담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 운영,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사업,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인 두드림 존, 인터넷중독청소년 치료를 위한 레스큐 스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심리상담 및 놀이치료, 또래상담사업, 학부모상담자원봉사회 운영, 청소년상담관련 심리교육, 지도자 양성, 학부모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1990년에 대구, 광주에 최초로 청소년종합상담실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1991년도에 부산, 대전, 청주, 1992년도에 인천, 전북(전주), 1993년도에 경기(수원), 강원(춘천), 경남(창원), 1994년도에 충남(천안), 전남(순천), 경북(안동), 1995년도에는 제주(제주), 1997년도에 서울(중구), 1999년 울산에 설치되었으며, 2006년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었다.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충북(청주) 1개소이며, 시·도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곳은 대구, 충남(천안), 전남(무안), 경북(안동), 경남(창원) 등 5개소이고, 청소년유관단체에서 위탁 운영되는 곳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수원), 강원도(춘천), 전북(전주), 제주 등 10개소이다.

(2)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현황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2조와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생활권 중심의 실질적인 청소년상담체제를 구축하고자 150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로 운영재원을 지원받고 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150개소 중 62개소(41%)가 시·군·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88개소(59%)는 청소년유관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기초자치단체수 대비 설치비율은 전국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상담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

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상담과 지역사회 내 전문 인력 활용 등의 통합적이고 문제영역별 전문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5-3-4〉 2010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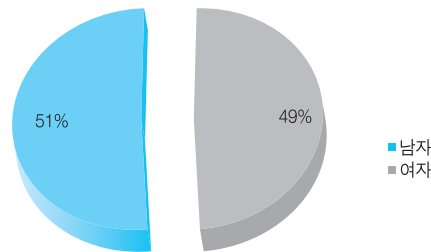
지 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수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시군구	수	17 (25)	5 (16)	1 (8)	6 (10)	0 (5)	1 (5)	2 (5)	9 (18)	31 (31)	4 (12)	16 (16)	14 (14)	12 (22)	11 (23)	20 (20)	1 (0)
	%	68	31	13	60	0	20	40	50	100	33	100	100	55	48	100	—

주 : ()는 기초자치단체 수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0.9)

(3)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활동

2010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연간상담건수는 4,017,242건으로 지난해 이용건수(4,071,477건)보다 1.3%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여자 2,050,909건(51.1%), 남자 1,966,333건(48.9%)으로 남자이용자보다 여자이용자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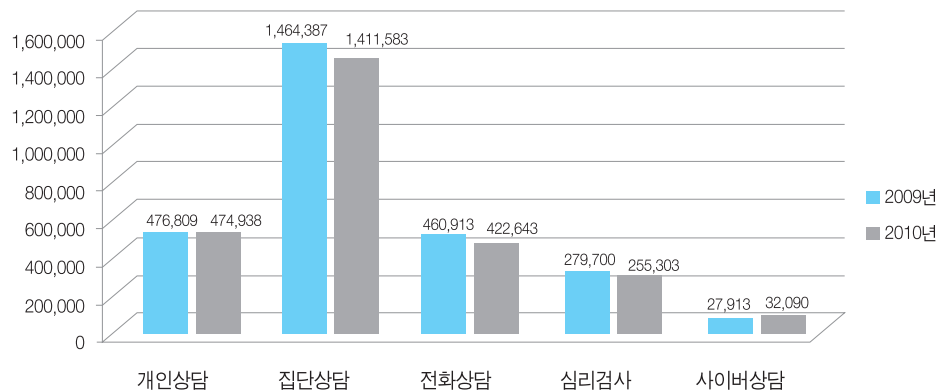


[그림 5-3-1] 2010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용자 성별 비율

또한 2010년 상담서비스 유형별 이용추세를 살펴보면, 개인상담 11.8% (474,938), 집단상담 35.1%(1,411,583), 전화상담 10.5%(422,643), 심리검사 6.4%(255,303명), 사이버상담 0.8%(32,090명), 사업수행프로그램 0.3%(10,690), 지원서비스 34.9%(1,403,494), 기타 상담

0.2%(6,501)로 집단상담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집단상담의 특성상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여러 회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5-3-2]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서비스별 이용자



자료 : 한국청소년 상담원(2010)

청소년과 성인이용자를 비교하면 청소년이 77.3%(3,105,611명), 성인이 22.7% (911,631명)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이용자 중 초등학생이 23.7% (951,990명), 중학생 27.3%(1,097,846), 고등학생 18.8%(771,727명), 대학생 1.6%(62,457명), 근로청소년 0.5%(18,761명), 무직청소년 5.0%(202,830명)로 중학생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성인 이용자는 학부모가 11.3%(453,474명)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지도자가 7.4%(295,380명), 일반 성인이 4.1%(162,777명)이었다.

〈표 5-3-5〉 2010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성별·대상별 상담실적

(단위 : 명)

구분	성별			대상별								
	남자	여자	소계	초	중	고	대	근로 청소년	무직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일반인
개인상담	257,275	217,663	474,938	122,949	150,464	84,277	5,729	3,394	30,579	60,013	12,618	4,915
집단상담	686,765	724,818	1,411,583	498,470	418,859	290,248	16,190	1,947	29,997	71,213	65,596	19,063
전화상담	181,950	240,693	422,643	16,079	42,224	52,872	7,456	2,500	17,726	106,839	86,795	90,152
심리 검사	개별	40,416	36,932	77,348	19,157	26,457	17,166	2,283	494	3,509	6,662	365
	집단	89,435	88,520	177,955	44,910	67,519	51,328	3,418	313	1,286	4,925	2,381
사이버 상담	메일	11,112	14,826	25,938	2,059	6,964	7,994	2,782	127	650	1,399	2,898
	채팅	1,910	4,242	6,152	278	1,506	1,933	495	47	528	130	1,084
사업수행 프로그램		5,033	5,657	10,690	2,880	3,178	2,157	689	79	489	611	268
지원 서비스	개별	277,835	304,306	582,141	130,863	170,168	131,893	17,002	628	25,866	42,182	25,665
	그룹	411,482	409,871	821,353	113,612	209,177	131,164	6,364	9,152	91,757	158,511	87,309
기타상담	3,120	3,381	6,501	733	1,330	695	49	80	443	989	887	1,295
합 계	1,966,333	2,050,909	4,017,242	951,990	1,097,846	771,727	62,457	18,761	202,830	453,474	295,380	162,777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0)

2010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용자의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볼 때 학업 및 진로 문제가 22.4%(770,181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대인관계 16.1% (552,594명), 일탈 및 비행 12.5%(438,492명),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11.8% (405,256명)로 나타나, 작년에 비해 학업 및 진로 문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대인관계, 일탈 및 비행, 컴퓨터 인터넷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겪는 학업 및 진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진로정보탐색 46.5%, 학업흥미/학업동기 부족 16.3%, 학교생활부적응 9.7%, 학습능력 부족 6.9%, 진로의식부족 6.1%, 등교거부 4.1%, 시험불안/학업스트레스 1.8% 순이었다.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의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친구관계 고민이 67.8%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및 왕따 14.5%, 이성교제 1.9%, 교사와의 관계 1.6%, 어른과의 관계 1.4% 순이었다. 일탈 및 비행문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28.5%, 가출 24.5%, 금품갈취/절도/도박 18.0%, 비행친구와 어울림 7.9%, 음주/흡연/약물오남용 6.6%, 학교외의 폭력 3.3% 낮은 귀

가/찾은 외박 3.0% 순이었다. 그밖에 컴퓨터/인터넷 사용문제에서는 인터넷 게임과다문제가 52.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5-3-6〉 2010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단위 : 명)

구분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 /진로	성	성격	대인 관계	정신 건강	생활 습관 /외모	컴퓨터 /인터넷 사용	정보 제공	법률 정보	활동	기타	합계
개인상담		60,097	75,268	102,155	8,077	55,150	80,800	57,846	6,204	23,966	4,074	108	1,110	83	474,938
집단상담		54,285	131,875	328,136	54,531	66,459	307,776	64,667	7,695	309,016	21,859	690	64,594	0	1,411,583
전화상담		22,839	41,690	34,725	21,702	9,775	24,246	16,888	2,436	13,901	157,544	857	5,692	70,348	422,643
심리 검사	개별	6,896	7,995	29,318	897	12,429	8,468	6,323	387	4,170	298	7	92	68	77,348
	집단	2,211	2,233	91,092	393	41,572	10,842	4,531	217	22,081	1,466	0	1,317	0	177,955
사이버 상담	메일	1,771	698	6,574	2,429	1,198	7,406	1,611	1,545	192	2,359	66	87	2	25,938
	채팅	653	259	1,111	263	370	2,054	743	73	50	424	9	50	93	6,152
사업수행 프로그램		676	1,041	4,472	366	380	814	406	30	631	490	0	1,384	0	10,690
지원서비스 (개별)		94,338	176,613	171,638	13,102	65,721	109,511	87,751	12,842	30,947	47,888	286	10,659	57	821,353
기타상담		581	820	960	83	428	677	516	33	302	1,768	11	139	183	6,501
소계		244,347	438,492	770,181	101,843	253,482	552,594	241,282	31,462	405,256	238,170	2,034	85,124	70,834	3,435,101

주 : 집단지원서비스의 경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따로 산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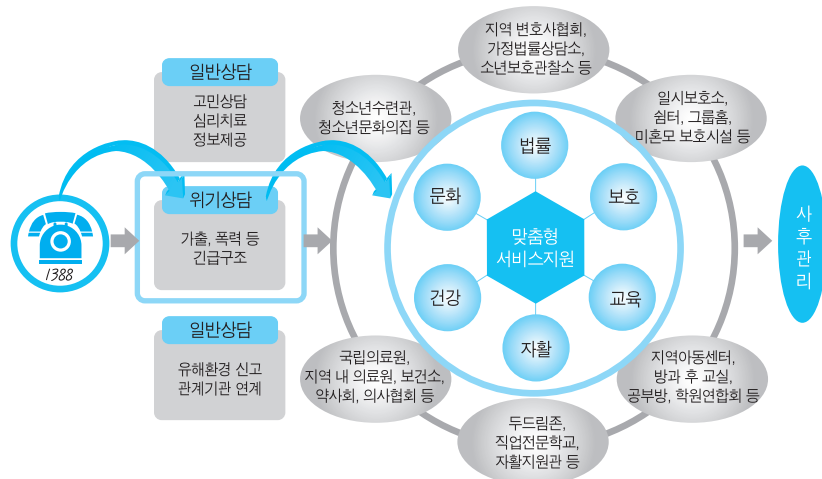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0)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속적인 이혼율 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한 가정의 실직 등으로 가정해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 가족 기능 약화에 따라 경제적·심리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별로 인프라의 편차가 있거나 상호협력체계가 부재하여 대상자 조기발견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별화된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학업중단, 가

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림 5-3-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체제



자료 : 여성가족부(2010)

CYS-Net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CYS-Net 사업은 2010년 전국 16개 시·도 및 110개 시·군·구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28,426명의 위기 청소년에게 1,403,494회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으며, 2013년까지 전국 244개 지역(시·도 16개, 시·군·구 228개)에 확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더불어, CYS-Net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연계망의 범위를 민간사회로 확대하여 가출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의 업소를 주축으로 위기청소년의 발견, 긴급구조 및 보호서비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1388청소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민간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며 CYS-Net의 민·관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CYS-Net 서비스 이용 실인원은 전년도 대비 31% 상승한 128,426명이고 남자가 52.2%(67,035

명)이며, 여자가 47.8%(61,391명)로 여자 보다 남자 청소년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7〉 CYS-Net 서비스 이용인원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합계
2007	27,845	29,054	56,899
2008	40,977	40,025	81,002
2009	47,825	50,195	98,020
2010	67,035	61,391	128,426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0)

CYS-Net을 통해 청소년에게 지원된 서비스를 살펴보면, 전체 1,403,494건으로 전년도 대비 96.1% 상승하였다.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이 62.8%로 가장 많이 지원된 서비스로 나타났고,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이 16.1%, 여가 및 문화 활동지원이 9.2%, 교육 및 학업지원이 6.0%, 사회적 보호지원이 4.5%, 자활지원이 0.8%, 의료지원이 0.4%, 법률 자문 및 권리구제지원이 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8〉 CYS-Net 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 건)

구분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자활지원	의료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지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합계
2007	303,356	25,176	55,035	6,986	2,463	4,902	1,800	13,093	412,811
2008	286,069	30,497	80,857	10,740	2,754	5,759	1,362	16,243	434,281
2009	504,540	43,517	109,428	18,210	3,387	5,431	1,283	29,793	715,589
2010	882,001	62,456	225,721	84,535	11,544	6,254	1,728	129,255	1,403,494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0)

3.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2005년 4월 27일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청소년 긴급전화 1388, 가출청소년 상담전화 1588-0924,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전화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전화 등을 1388로 통합(2005년 9월 1일)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CYS-Net)의 관문으로 운영하고 있다.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일반국민 누구나 청소년을 위하여 이용하는 전화로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원봉사 및 수련활동 정보제공, 인터넷 중독치료 등 청소년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365일 24시간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388 전화 일평균 이용 수는 2005년 9월 통합 이후 하루 17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도 270건, 2007년도 666건, 2008년 969건, 2009년 1,164건 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기준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150개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등 전국 166개 센터에서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다.

〈표 5-3-9〉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주요 실적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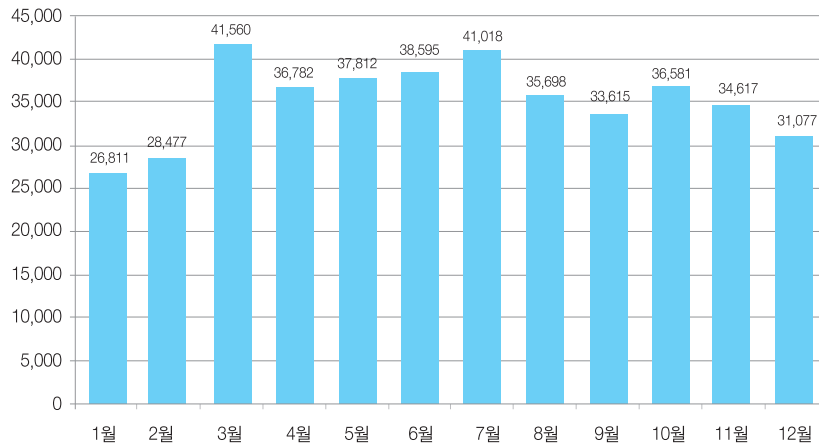
주요 사업내용		실 적		증(△)감	
		2009년(A)	2010년(B)	B-A	%
Help Call 청소년전화1388이용실적	통화횟수	424,739	422,643	△2,096	△0.5
	일평균	1,164	1,158	△6	△0.5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0)

한편, 청소년전화 1388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의 인터넷 홍보, PC방 협회 등 관련기업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홍보, 한국교총, SKT 등 단체나 일반기업과 연계로 사회공헌 차원의 청소년전화 1388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TV, 라디오, 신문매체, 지하철, 전광판, 홍보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림 5-3-4]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2010년 월별 이용 실적

(단위 : 건)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0)

4.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위기 청소년은 자신감의 약화와 사회적 도움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로 인해 자발적으로 상담이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상담전문가가 상담 및 심리,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는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후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기 청소년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에 힘쓰고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동반자들은 위기 청소년에게 각종 상담, 심리·정서적 지지, 자활 지원, 학습·진로 지도,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게 된다.

2005년도에 4개시도(서울·경기·광주·경남)시범운영시 청소년동반자 223명이 활동하던 것을 2008년도에는 16개 시·도 운영 및 청소년동반자 470명으로 확대하였다.

2009년도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800명의 동반자가 추가 선발되어 시도 및 시군구 센터에서 약 1,270명의 청소년동반자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위기청소년이 필요한 도움과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2010년도에는 본 예산에 반영되어 880명의 동반자가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이 덕분에 CYS-Net, 청소년지도자, 일반 개인 등의 프로그램 신청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었고, 보다 많은 위기청소년들이 개인특성과 필요에 따른 수준 높은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효율성과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두드림존」 사업

가. 추진배경

학업중단, 가출, 시설보호, 학교부적응, 다문화 청소년 등 성인기로의 자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청소년들이 매년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취약청소년들은 심각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과 자립역량 부족 등으로 자립이행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또 이러한 취약상황이 지속될 경우 근로빈곤층(working poor)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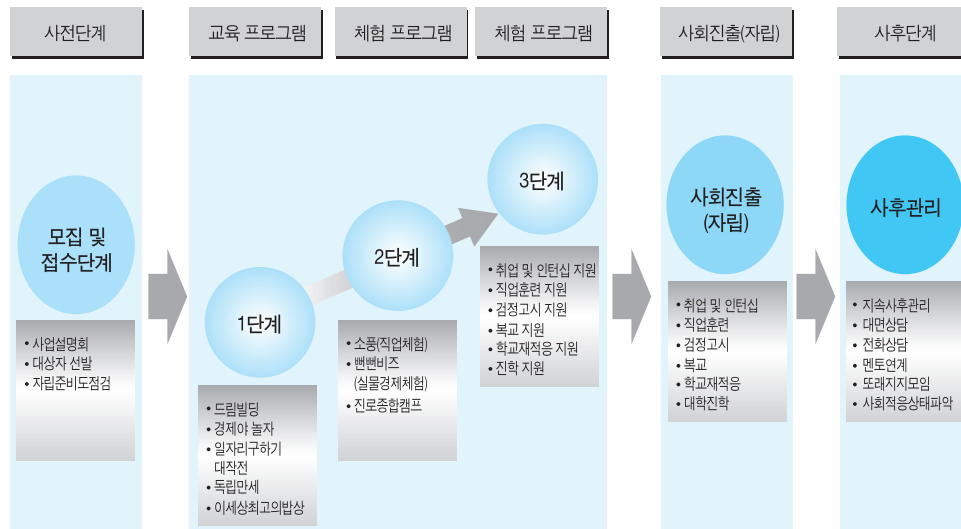
이러한 취약청소년들이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립준비 영역(목표·가치관, 직업준비, 경제관리, 주거생활, 사회기술, 학업교육, 건강, 자원활용기술, 심리정서)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서비스들은 파편화되어 있고 분절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2007년부터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험중심적 자립준비 프로그램 ‘두드림존(Do Dream Zone)’이 개발·운영되어오고 있다. 두드림존은 ‘꿈을 가지고, 미래의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로서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전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 속에서 자립지원 유관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나. 두드림존 사업의 특징

2007년부터 시작된 두드림존은 프로그램 개발 및 개정, 상설 두드림존 설치, 자립지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 등이 추진되어 왔다. 두드림존 프로그램은 만 15~24세 사이 학업중단, 가출, 학교부적응, 대안학교, 교정시설, 보호관찰, 보호시설, 복지시설, 다문화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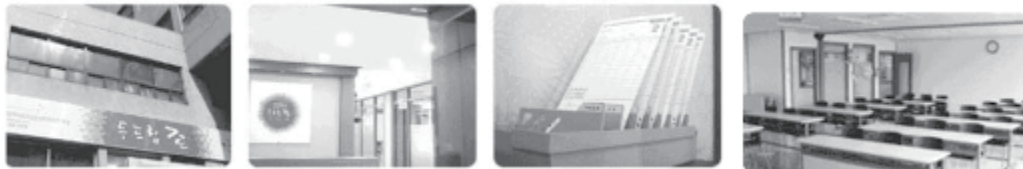
소년중 자립의 문제가 시급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여자의 자립준비 수준에 따라 ‘교육 - 체험 - 사회진출 지원’의 3단계로 구분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림 5-3-5]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구조



두드림존은 22종의 교구재를 활용하여 취약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체험중심적으로 진행되며 청소년의 꿈과 도전을 상징하는 두드림존 교육장이 함께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의 연계를 통해 상담과 교육, 체험제공, 청소년동반자와 전문 멘토의 지속적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5-3-6] 두드림존 상설시범센터



다.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의 토대 마련

이전의 청소년의 자립지원사업은 대부분 아동양육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상 진로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청소년을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단편화된 교육 위주로 진행되어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어려웠다. 두드림존 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맞춤형 토털지원사업의 취지 아래 시행되었다. 2007년에 12개소로 시작된 두드림존은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36개소(상설두드림존 16개소, 시범두드림존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전국의 26,9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두드림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2,300여명의 청소년들이 사회진출(자립)과정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보호시설 및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두드림존 특성화 프로그램이 개발·운영 중에 있으며, 15,500명의 청소년들에게 두드림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자립생활관 등 자립지원기관과의 연계활성화, 직업체험·학습지원·문화체험 등의 자립지원자원 연계로, 자립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최종단계인 자립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청소년의 역량강화와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정책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제4장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1.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1.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2010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만6~17세)의 체격검사 결과, 17세의 평균 신장은 남자 173.7cm, 여자 160.9cm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에 있어서 12세까지는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13세부터는 남녀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17세의 신장을 10년 전 2000년과 비교해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0.7cm, 여학생의 경우는 0.4cm 증가하였다. 또한 2005년까지 12세 성차가 2cm 미만인 반면에 2006년 2cm부터 2010년 2.4cm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아동청소년의 2차 성징이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4-1〉 성별 · 연령별 신장의 추이

(단위 : cm)

측정연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5	119.4	118.4	125.2	123.9	130.7	129.3	135.6	135.0	140.6	141.4	146.3	147.9
1996	119.6	118.5	125.2	124.2	130.6	130.0	135.7	135.3	140.8	141.7	146.6	147.9
1997	119.8	118.3	125.5	124.3	130.9	129.9	135.9	135.5	141.0	142.0	146.8	148.4
1998	119.8	118.5	125.7	124.0	130.9	129.5	136.2	135.6	141.2	142.0	147.3	148.8
1999	120.1	118.6	125.7	124.3	131.0	129.8	136.2	135.5	141.6	142.4	147.5	149.1
2000	120.1	118.9	125.8	124.9	131.3	130.1	136.6	136.0	141.9	142.3	148.1	149.2
2001	120.3	118.8	126.2	124.8	131.4	130.3	136.8	136.2	142.2	142.5	148.2	149.1
2002	120.3	119.1	126.4	125.0	131.9	130.6	136.9	136.5	142.4	143.1	148.6	149.6
2003	120.8	119.4	126.7	125.4	132.2	130.9	137.1	137.0	142.9	143.5	148.7	149.8
2004	120.6	119.6	126.7	125.2	132.1	131.1	137.6	137.0	142.9	143.7	149.1	150.3
2005	120.6	119.3	126.5	125.3	132.0	131.0	137.3	137.1	143.0	143.7	149.1	150.3
2006	121.7	120.2	127.1	125.8	132.6	131.5	138.7	138.3	143.5	144.4	150.0	150.9

〈표 5-4-1〉 성별 · 연령별 신장의 추이 (계속)

(단위 : cm)

측정연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8	122.0	120.7	127.4	126.2	133.1	131.7	138.7	138.5	143.5	144.6	150.2	151.0
2009	121.9	120.6	127.7	126.2	133.0	132.0	138.3	138.0	143.9	144.7	150.5	151.0
2010	121.8	120.6	127.7	126.4	133.1	132.0	138.4	138.1	144.0	144.6	150.2	151.2
측정연도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5	152.6	153.2	159.5	156.2	165.3	158.2	168.8	158.9	170.4	159.4	171.5	159.8
1996	152.9	153.2	159.9	156.4	165.5	158.5	169.4	158.8	171.1	159.6	172.0	160.1
1997	153.7	153.5	160.3	156.7	165.7	158.6	169.6	159.2	171.6	160.0	172.2	160.3
1998	153.6	153.7	160.8	156.8	166.3	158.7	169.8	159.3	172.0	159.9	172.6	160.5
1999	154.3	153.9	161.3	157.0	166.6	158.7	170.3	159.6	171.9	159.9	172.7	160.6
2000	154.9	154.4	161.8	157.3	167.2	158.9	170.4	159.5	172.2	160.2	173.0	160.5
2001	155.2	154.3	162.2	157.5	167.2	159.0	170.9	159.7	172.2	160.2	173.1	160.7
2002	155.5	154.3	162.4	157.5	167.2	159.3	170.7	160.0	172.5	160.3	173.3	160.9
2003	155.9	154.8	162.5	157.6	167.7	159.3	171.1	160.1	172.6	160.6	173.6	161.0
2004	156.2	154.8	163.3	157.7	167.8	159.4	171.4	160.3	172.7	160.6	173.6	161.6
2005	156.4	154.9	163.2	157.9	168.5	159.3	171.6	160.2	172.8	160.7	173.6	161.0
2006	158.1	156.1	164.2	158.2	168.7	159.5	171.8	160.4	173.0	160.7	173.9	161.1
2007	158.3	156.1	164.2	158.3	169.2	159.7	172.0	160.4	173.1	160.7	173.9	160.9
2008	158.1	155.9	164.3	158.4	169.1	159.7	172.0	160.5	173.3	160.8	173.9	161.2
2009	157.8	155.7	164.3	158.0	169.1	159.6	171.9	160.4	173.2	160.7	173.8	161.1
2010	157.9	155.5	164.2	158.2	168.9	159.6	171.8	160.6	173.0	160.7	173.7	160.9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체중은 17세 남자의 경우 평균 68.1kg, 여자의 경우 55.6kg이었다. 10년 전 2000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2.8kg, 여자는 0.7kg 증가하였다.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비슷한 수준의 신장증가에도 불구하고 체중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2〉 성별 · 연령별 체중의 추이

(단위 : kg)

측정연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5	22.8	22.0	25.7	24.6	28.9	27.7	32.1	31.0	35.5	35.3	39.7	40.5
1996	22.9	21.9	25.6	24.6	28.9	27.9	32.6	31.0	35.8	35.5	40.0	40.1
1997	23.1	21.9	25.9	24.6	29.2	27.9	32.6	31.5	36.4	36.0	40.5	40.8
1998	23.1	22.1	26.0	24.9	29.3	27.8	32.8	31.5	36.4	35.9	40.6	40.9
1999	23.2	21.9	26.1	24.9	29.3	28.0	32.8	31.4	36.5	36.1	41.0	41.2
2000	23.3	22.4	26.4	25.4	29.9	28.5	33.6	32.2	37.8	36.3	42.0	41.8
2001	23.5	22.4	26.9	25.5	30.3	28.7	34.1	32.5	38.1	36.8	42.7	41.8
2002	23.8	22.7	27.1	25.8	30.7	29.4	34.6	32.9	38.8	37.6	43.9	42.8
2003	23.8	22.8	27.2	25.9	30.8	29.3	34.7	33.3	39.2	37.8	43.8	43.1
2004	24.0	22.8	27.1	25.9	30.7	29.4	34.9	33.1	39.3	37.2	44.4	43.2
2005	24.0	22.9	27.3	26.0	31.0	29.4	34.8	33.4	39.4	38.1	44.5	43.6
2006	24.5	23.2	27.7	26.4	31.6	29.7	35.8	34.0	39.8	38.6	44.7	43.7
2007	24.4	23.3	27.9	26.4	31.7	29.9	35.9	34.2	40.2	38.9	45.1	44.0
2008	24.7	23.5	27.9	26.4	31.9	29.9	36.0	34.3	40.1	38.6	45.5	44.0
2009	24.7	23.5	28.2	26.6	31.7	30.0	35.9	33.9	40.6	38.8	45.9	44.0
2010	24.9	23.7	28.4	26.9	32.1	30.3	35.9	34.2	41.1	39.2	46.1	44.4
측정연도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5	44.6	45.4	49.8	48.8	54.8	51.9	59.1	52.8	61.4	53.5	63.4	54.4
1996	45.0	45.5	50.1	49.4	55.4	51.9	59.7	53.2	61.9	54.0	64.0	54.2
1997	45.7	45.7	51.1	49.6	55.7	52.4	60.1	53.2	62.2	54.4	64.1	54.8
1998	45.9	45.8	51.5	49.6	56.0	52.2	60.0	53.4	62.3	54.1	64.1	54.8
1999	46.5	45.7	51.7	49.6	56.6	52.0	60.1	53.4	62.5	54.1	64.6	54.5
2000	47.4	46.7	52.9	49.9	57.7	52.5	60.8	53.3	63.2	54.2	65.3	54.9
2001	48.3	46.7	53.7	50.6	58.3	52.4	61.8	53.8	63.4	54.3	66.1	54.9
2002	49.2	47.0	54.7	51.1	59.4	53.3	62.5	53.9	64.7	54.8	66.9	55.2
2003	49.4	47.5	55.0	51.1	60.2	53.3	63.6	54.1	65.6	54.9	67.6	55.4
2004	49.7	47.5	55.7	51.1	60.2	53.4	63.4	54.0	66.3	55.2	68.1	55.8
2005	50.2	47.8	55.7	51.0	61.0	53.1	64.1	54.4	66.1	55.2	68.1	56.1
2006	50.7	48.0	56.6	51.2	60.5	52.9	64.3	54.2	66.5	54.8	68.2	55.4
2007	50.9	48.1	56.7	51.4	61.1	53.2	64.0	54.0	66.3	54.8	68.3	55.4
2008	50.8	48.1	56.7	51.5	61.4	53.3	63.8	53.8	65.8	54.4	67.7	55.1
2009	51.9	48.0	57.0	51.2	61.5	53.3	64.2	54.3	66.5	55.2	68.1	56.0
2010	51.7	48.2	57.2	51.5	61.5	53.2	64.7	54.9	66.6	55.5	68.1	55.6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신체능력검사 2010년의 결과를 10년 전 2000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50m달리기, 오래달리기 및 걷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초·중등학생 제외),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등의 종목에서 전반적으로 2010년 기록이 저조해 아동청소년들의 기본 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의 제자리멀리뛰기와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를 제외한 항목, 그리고 여자의 모든 항목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보다 3학년이 기록이 저조한데 이러한 결과는 입시준비에 따른 학업 증가로 신체활동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표 5-4-3〉 성별·연령별 50m달리기의 추이

(단위: 초)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9.8	10.4	9.4	10.2	8.8	9.8	8.4	9.9	8.1	9.9	7.8	9.9	7.7	9.9	7.6	9.9
2005	9.8	10.2	9.4	10.1	8.7	9.8	8.3	9.9	8.1	9.9	7.8	9.9	7.7	9.9	7.8	10.2
2006	10.1	10.5	9.5	10.2	8.8	10.0	8.4	10.1	8.1	10.2	7.8	10.1	7.8	10.3	7.9	10.5
2007	9.9	10.5	9.5	10.3	8.8	10.1	8.4	10.2	8.1	10.3	7.9	10.1	7.8	10.1	8.1	10.4
2008	9.9	10.4	9.5	10.4	8.9	9.9	8.4	10.1	8.1	10.1	7.9	10.2	8.0	10.1	8.0	10.3
2009	10.0	10.5	9.6	10.4	8.7	9.9	8.4	9.9	8.1	9.9	7.8	9.9	7.7	9.9	7.7	10.1
2010	10.1	10.5	9.7	10.4	8.9	10.0	8.5	10.1	8.2	10.1	7.8	9.9	7.7	9.9	7.9	10.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5-4-4〉 성별·연령별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추이

(단위: 분, 초)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6.03	6.30	5.44	6.27	9.13	7.34	8.39	7.42	8.16	7.41	7.54	7.41	7.47	7.48	7.42	7.52
2005	6.07	6.30	5.50	6.24	9.22	8.00	8.57	7.56	8.27	7.56	8.07	8.00	8.04	7.56	8.10	8.25
2006	6.14	6.45	6.02	6.36	9.36	8.29	9.10	8.26	8.48	8.30	8.16	8.10	8.17	8.13	8.28	8.37
2007	6.27	7.06	6.15	6.57	9.49	8.26	9.20	8.36	9.07	8.36	8.29	8.14	8.20	8.19	8.37	8.36
2008	6.26	6.55	6.14	7.00	9.43	8.30	9.17	8.22	8.54	8.26	8.28	8.07	8.20	8.17	8.40	8.42
2009	6.29	6.56	6.15	7.00	9.34	8.20	9.20	8.36	8.44	8.22	8.23	8.03	8.15	8.08	8.19	8.23
2010	6.31	6.59	6.15	6.57	9.57	8.44	9.31	8.44	9.06	8.41	8.07	8.01	7.97	7.91	8.21	8.24

주: 초등학교 1,000m, 중·고 여자 1,200m, 중·고 남자 1,600m.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5-4-5〉 성별 · 연령별 제자리멀리뛰기의 추이

(단위 : cm)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156.0	136.9	167.1	142.7	190.0	155.3	205.8	158.1	218.2	161.5	228.5	163.4	234.9	164.7	240.7	166.6
2005	153.8	138.9	166.0	144.8	185.1	151.8	200.3	155.3	213.3	158.4	221.4	158.1	228.0	162.0	232.0	161.4
2006	152.9	136.8	165.0	141.7	181.9	149.7	196.4	151.8	207.3	154.0	219.1	157.0	224.1	156.0	226.0	154.1
2007	151.8	136.0	163.9	139.8	180.8	149.9	195.8	151.7	207.5	153.9	216.9	156.9	223.4	159.4	222.8	155.4
2008	155.0	140.4	163.7	141.3	183.2	148.3	196.9	151.5	209.2	155.3	219.3	156.4	224.4	156.6	226.2	157.2
2009	151.2	134.5	161.6	137.9	185.8	151.1	199.3	153.9	210.1	155.3	217.8	156.5	222.9	158.5	226.6	158.4
2010	148.5	132.6	157.8	135.9	173.8	140.7	186.6	142.4	197.5	144.6	219.5	155.6	223.4	156.8	226.0	156.6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6〉 성별 · 연령별 팔굽혀펴기/매달리기의 추이

(단위 : 회)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	—	—	—	23.0	6.7	26.7	7.0	30.4	7.5	33.5	9.5	35.2	10.2	38.8	10.9
2005	—	—	—	—	23.3	6.0	26.9	6.5	30.1	6.4	33.2	6.5	35.8	7.0	35.5	7.5
2006	—	—	—	—	24.4	5.4	26.0	5.0	30.1	5.3	33.4	5.8	35.8	5.9	34.7	6.4
2007	—	—	—	—	23.4	5.2	25.3	4.7	27.9	6.0	32.6	6.0	34.9	6.4	33.1	6.4
2008	—	—	—	—	23.3	5.2	25.3	5.4	27.9	5.9	32.6	5.9	34.8	6.3	33.9	6.6
2009	—	—	—	—	23.7	5.5	25.6	6.3	28.7	6.1	33.5	7.4	35.4	7.6	35.7	7.0
2010	—	—	—	—	—	—	—	—	—	—	32.8	8.3	35.7	8.2	34.7	7.6

주 : 여학생은 팔굽혀매달리기(단위 : 초).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7〉 성별 · 연령별 윗몸일으키기의 추이

(단위 : 회)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31.5	23.8	35.1	26.4	38.1	27.7	41.6	28.4	44.6	29.9	46.5	30.2	48.3	31.6	50.1	33.1
2005	32.5	24.9	36.1	26.9	38.7	27.1	41.6	28.1	43.6	28.1	45.2	29.3	46.5	30.3	46.1	30.3
2006	32.1	24.2	35.3	26.1	37.9	27.1	41.0	27.4	42.8	28.1	44.3	29.1	45.4	29.8	44.9	28.3
2007	31.9	24.1	35.7	26.1	38.4	26.4	40.1	26.2	42.9	27.0	44.6	28.0	46.0	29.1	44.5	28.6
2008	31.9	25.3	35.8	25.8	38.0	26.4	40.8	27.6	43.0	28.3	45.6	29.2	47.1	29.9	44.4	29.3
2009	48.4	—	56.3	—	38.3	27.1	41.0	28.4	43.6	28.9	45.5	29.9	47.1	30.8	46.6	29.9
2010	49.7	39.0	55.9	38.9	53.9	32.6	58.2	33.0	59.2	33.0	45.6	30.9	47.0	31.2	45.6	30.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8〉 성별 · 연령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추이

(단위 : cm)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7.6	10.7	8.2	11.9	9.7	13.9	11.3	14.8	13.4	16.5	15.6	17.4	16.8	17.9	17.9	17.8
2005	8.6	12.3	8.7	13.3	9.8	15.0	10.6	15.9	12.6	16.5	13.6	16.6	14.5	17.1	14.8	16.6
2006	9.0	12.6	8.5	13.6	9.4	14.6	10.5	15.6	11.2	16.2	13.6	16.3	14.0	16.7	14.5	16.1
2007	8.2	12.0	8.2	12.8	9.0	14.4	9.9	14.9	11.2	15.6	12.4	16.5	13.4	16.7	13.8	16.1
2008	8.8	12.5	7.9	12.3	8.8	14.2	9.7	14.9	11.1	16.0	12.5	16.3	12.8	16.7	13.1	16.0
2009	7.7	12.0	7.5	12.8	9.0	14.7	10.2	15.6	11.4	16.3	12.4	17.3	14.5	17.2	13.4	16.7
2010	7.5	11.9	7.0	12.6	7.6	13.7	8.6	14.4	9.8	15.1	12.8	17.3	13.0	17.7	13.7	16.9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 청소년의 영양과 비만

아동청소년의 연령층별로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평균 섭취분율을 비교하면 〈표 5-4-9〉와 같다. 대부분의 영양소에 대해 모든 연령층에서 권장량에 근접한 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칼륨은 모든 연령대에서 권장수준 미만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만 12~18세 청소년의 평균 칼슘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의 50% 정도였다. 반면에 나트륨은 모든 연령층에서 기준보다 섭취량이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충분섭취량의 2배, 3배로 섭취량이 증가해 이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표 5-4-9〉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분율

(단위 : %)

영양소 \ 연령(세)	1~2	3~5	6~11	12~18	19~29
에너지	95.7	86.5	98.6	85.8	84.1
단백질	266.6	211.6	196.2	135.8	147.1
칼슘	90.6	68.3	64.0	50.3	71.4
인	132.8	152.7	126.3	120.5	165.7
나트륨	159.9	205.4	224.8	269.9	330.8
칼륨	55.0	55.5	52.8	53.5	61.5

〈표 5-4-9〉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분율 (계속)

(단위 : %)

영양소 \ 연령(세)	1~2	3~5	6~11	12~18	19~29
철	90.2	97.6	97.6	85.9	112.9
비타민A	151.8	156.7	135.5	101.1	111.5
티아민	132.2	157.6	151.0	116.8	119.1
리보플라빈	150.3	137.2	132.2	89.5	95.8
나이아신	108.7	118.6	120.2	99.3	109.7
비타민C	139.3	168.1	129.4	89.2	101.2

주 : 영양섭취기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 에너지, 필요추정량; 나트륨, 칼륨, 총분섭취량; 기타, 권장섭취량.
 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09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년도(2009)-」, 2010.

〈표 5-4-10〉은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을 섭취한 대상자 분율을 연령층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영양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칼슘은 1~2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50% 이상이 평균필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섭취수준을 보여 전반적으로 섭취상태가 불량한 영양소로 파악되었다. 특히 12~18세 연령층에서 대부분의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이 매우 높았다.

〈표 5-4-10〉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분율

(단위 : %)

영양소 \ 연령(세)	1~2	3~5	6~11	12~18	19~29
에너지	28.8	33.1	23.8	40.6	46.6
단백질	2.5	2.4	2.4	14.9	19.4
지방	42.1	18.1	21.6	18.6	20.1
칼슘	34.3	55.3	66.8	85.8	69.4
인	9.7	6.8	15.0	19.4	12.4
철	48.9	30.1	43.6	55.5	43.6
비타민 A	30.4	19.4	29.2	53.5	44.1
티아민	27.5	12.4	16.6	30.9	35.5
리보플라빈	20.5	20.0	23.4	53.6	50.4
나이아신	36.1	16.2	17.5	34.7	33.4
비타민 C	40.8	31.1	42.1	62.3	51.4

주 : 영양섭취기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 에너지, 필요추정량의 75%; 지방, 지방에너지적정비율의 하한선; 그 외 영양소, 평균필요량.
 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09 국민건강통계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년도(2009)-」, 2010.

〈표 5-4-11〉에서 영양소 섭취부족 대상자 비율은 12~18세에 21.9%, 19~29세에 19.2%로 이들 연령층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너지/지방 섭취과잉은 19~29세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11〉 영양소 섭취부족 및 에너지/지방 섭취과잉 대상자 비율

(단위 : %)

연령(세)	구분	영양소 섭취부족 ¹⁾			에너지/지방 섭취과잉 ²⁾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2		8.2	5.7	10.9	0.6	0.8	0.3
3~5		7.4	6.3	8.4	1.2	1.6	0.8
6~11		7.9	7.1	8.7	4.1	4.9	3.3
12~18		21.9	19.3	24.9	2.1	2.2	2.1
19~29		19.2	14.9	23.8	8.7	11.8	5.3

주 : 1) 영양소 섭취부족 :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인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비율.

2) 에너지/지방 섭취과잉: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125% 이상인면서 지방 섭취량이 적정 에너지 섭취비율을 초과한 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09 국민건강통계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년도(2009) -」, 2010.

조사 직전 2일간의 끼니별 결식률을 살펴보면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29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4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2~18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27.8%로 높았다.

〈표 5-4-12〉 끼니별 식사 여부에 따른 결식률 (1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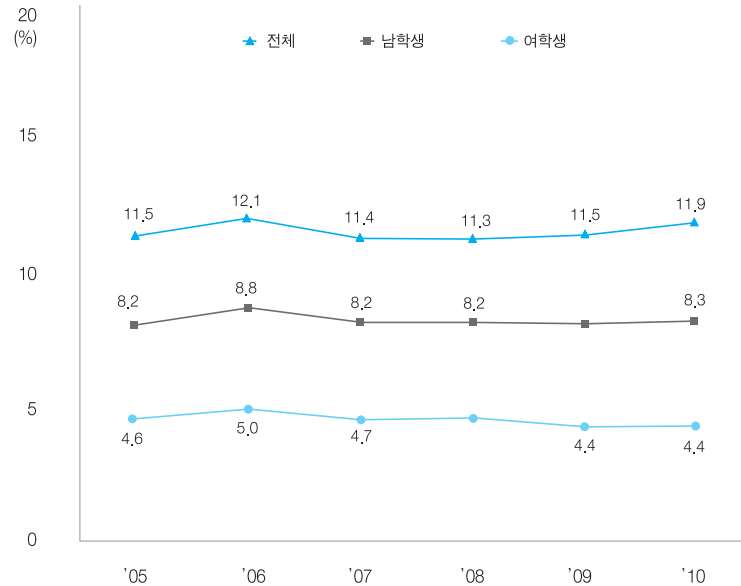
(단위 : %)

연령(세)	구분	아침	점심	저녁
1~2		10.4	4.2	1.8
3~5		7.6	2.6	1.1
6~11		8.8	2.9	2.1
12~18		27.8	5.1	4.9
19~29		40.6	9.9	7.0

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09 국민건강통계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년도(2009) -」, 2010.

청소년의 비만율은 2010년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남학생의 비만율은 11.9%, 여학생의 비만율은 4.4%로 남학생의 비만율은 여학생의 2배 이상이었다.

[그림 5-4-1] 청소년의 비만율(중1~고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3.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2010년 청소년의 평생 흡연 경험률은 남학생 32.9%, 여학생 18.4%,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 16.6%, 여학생 7.1%로, 평생 흡연 경험률과 현재 흡연율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처음 흡연 경험 연령 및 매일 흡연 시작 연령에는 성차가 별로 없었으나,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남학생 12.7세, 여학생 12.7세로 같았다. 즉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흡연 경험률이나 흡연율은 낮으나, 흡연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들과 같은 연령대에 흡연을 첫 경험하고 매일 흡연하게 되는 연령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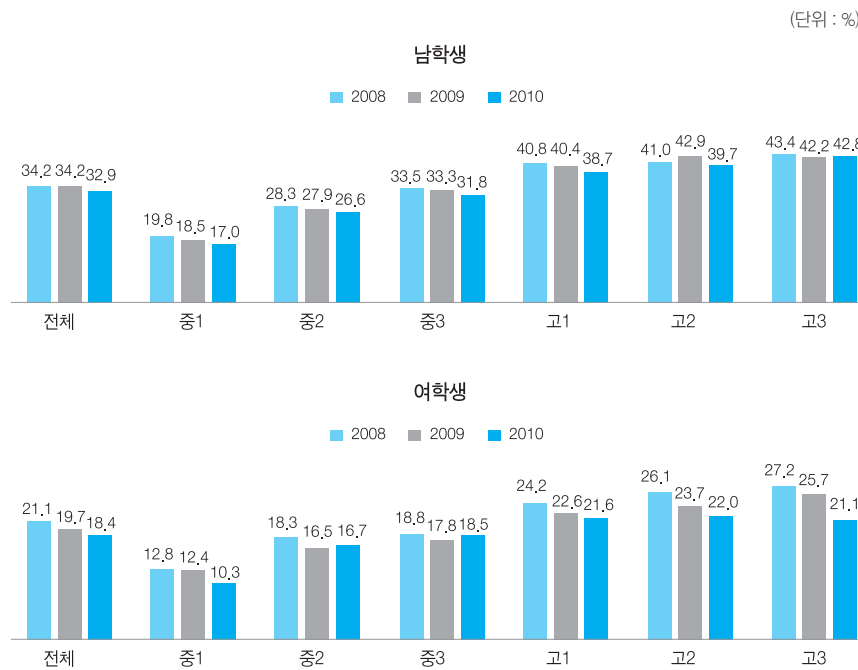
중학교 입학 전 흡연 경험률은 2007년 9.0%, 2008년 8.5%, 2009년 8.1%, 2010년 7.9%로 감소하였다.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2008년 이후 3년간 12.7세로 조사되었으며, 매일 흡연하기 시작하는 연령은 2007년 이후 3년간 14.0세, 2010년 13.9세로 조사되어 연령에는 연도별 큰 변

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부터 조사된 간접흡연 노출률은 2010년에도 40.8%로 매우 높아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접흡연 방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평생 음주 경험률은 남학생 57.1%, 여학생 52.2%,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23.5%, 여학생 18.3%로, 남녀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처음 음주 경험 연령도 남학생 12.7세, 여학생 13.0세로 성차가 크지는 않았다. 중학교 입학 전 음주 경험률은 2010년 15.9%로 조사되어 10명 중 2명에 가까운 청소년이 초등학교 시기에 첫 음주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대상의 음주예방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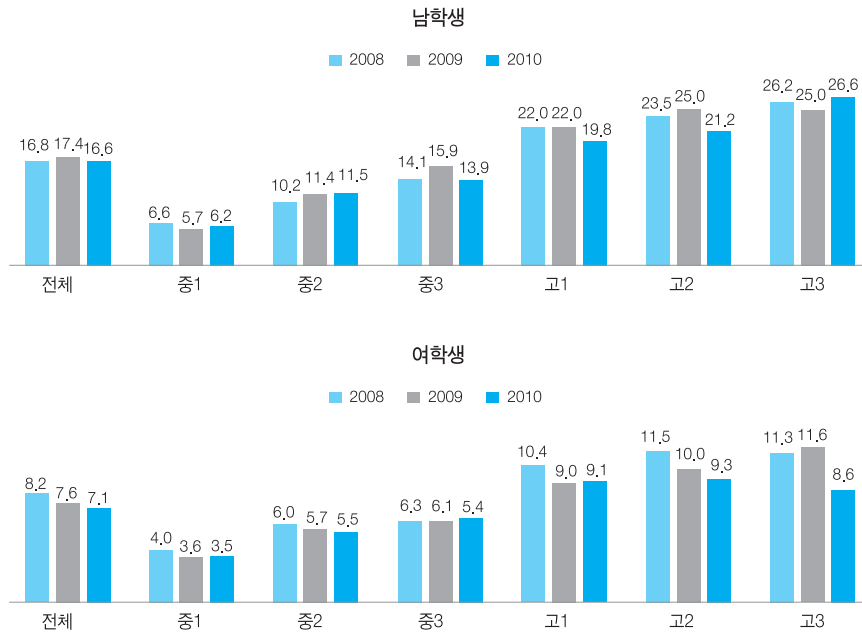
[그림 5-4-2] 학년별 평생 흡연 경험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그림 5-4-3] 학년별 현재 흡연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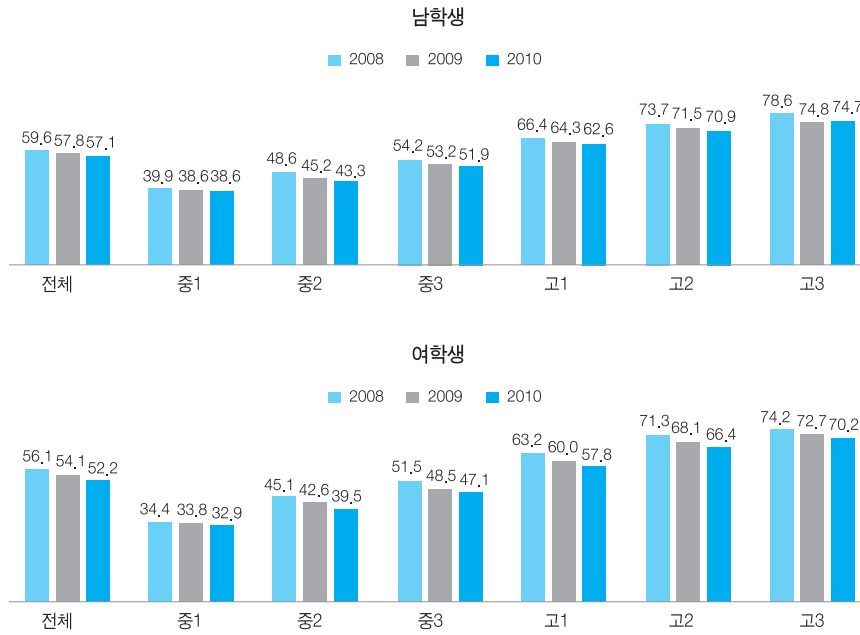
〈표 5-4-13〉 흡연 관련 지표

영역	2007년(중1~고3)			2008년(중1~고3)			2009년(중1~고3)			2010년(중1~고3)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처음 흡연 경험 연령(세)	12.5	12.5	12.5	12.7	12.6	12.7	12.7	12.7	12.8	12.7	12.7	12.7
매일 흡연 시작 연령(세)	14.0	14.1	14.0	14.0	14.1	14.0	14.0	14.0	14.1	13.9	14.0	13.9
중학교 입학 전 흡연 경험률	9.0	10.9	7.0	8.5	10.3	6.5	8.1	10.0	5.9	7.9	10.0	5.5
주1일 이상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	46.9	46.2	47.7	46.8	46.0	47.6	41.2	40.1	42.4	40.8	40.3	41.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그림 5-4-4] 학년별 평생 음주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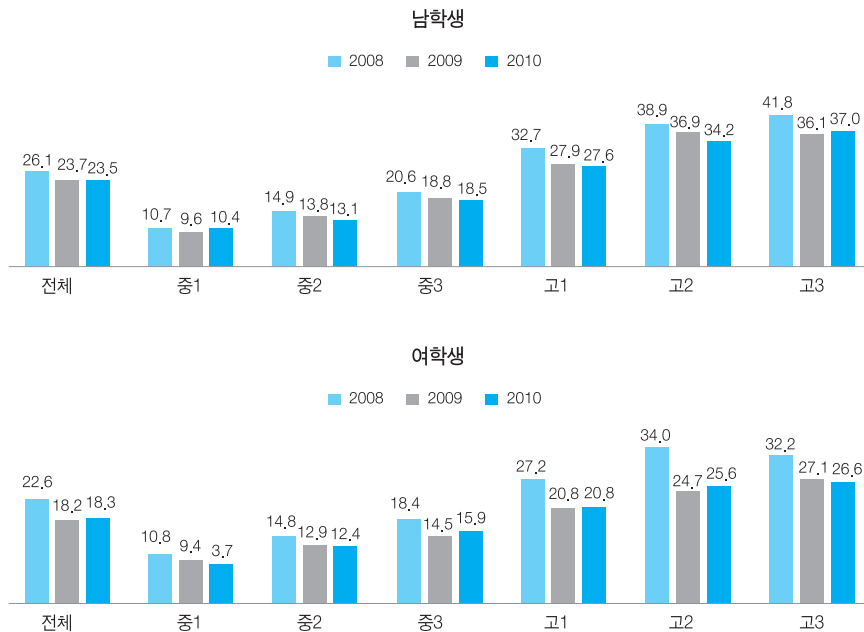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그림 5-4-5] 학년별 현재 음주율

(단위 : %)



〈표 5-4-14〉 음주 관련 지표

영역	2007년(중1~고3)			2008년(중1~고3)			2009년(중1~고3)			2010년(중1~고3)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처음 음주 경험 연령(세)	12.8	12.7	12.9	12.8	12.7	13.0	12.8	12.7	13.0	12.8	12.7	13.0
중학교 입학 전 음주 경험률	17.3	19.1	15.3	16.7	18.7	14.6	16.6	18.2	14.6	15.9	17.9	13.8
고위험 음주율 (현재 음주자)	31.5	30.7	32.5	31.2	30.9	31.6	33.0	33.7	32.0	32.7	32.9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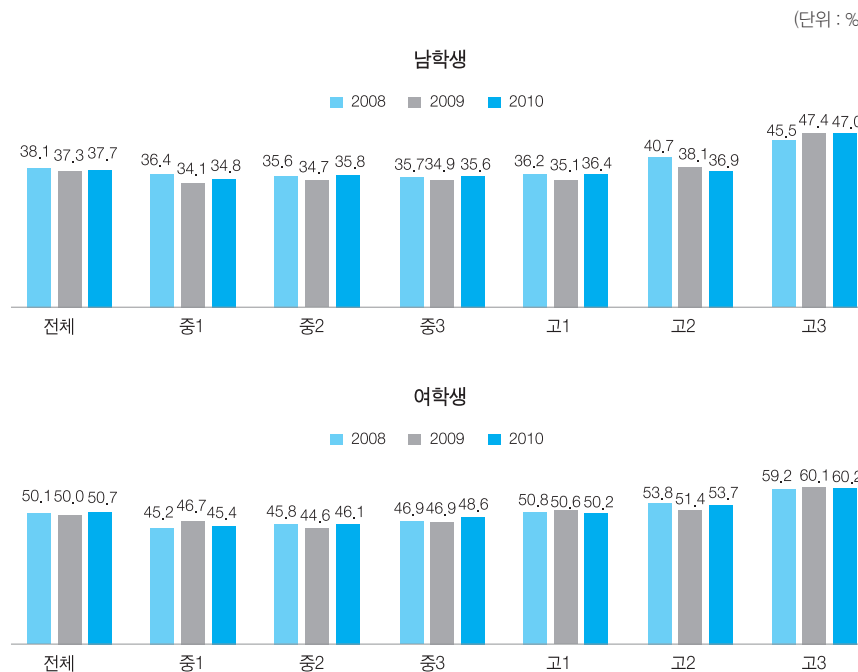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년도.

4. 청소년의 정신건강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청소년의 비율은 남학생 37.7%, 여학생 50.7%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사 전 일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남학생 32.7%, 여학생 42.6%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하여 고3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49.2%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률은 남학생 15.6%, 여학생 23.5%, 자살 시도율은 남학생 3.8%, 여학생 6.3%로 여학생의 정신건강이 남학생보다 더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내내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청소년의 40% 정도가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청소년 정신건강이 위험수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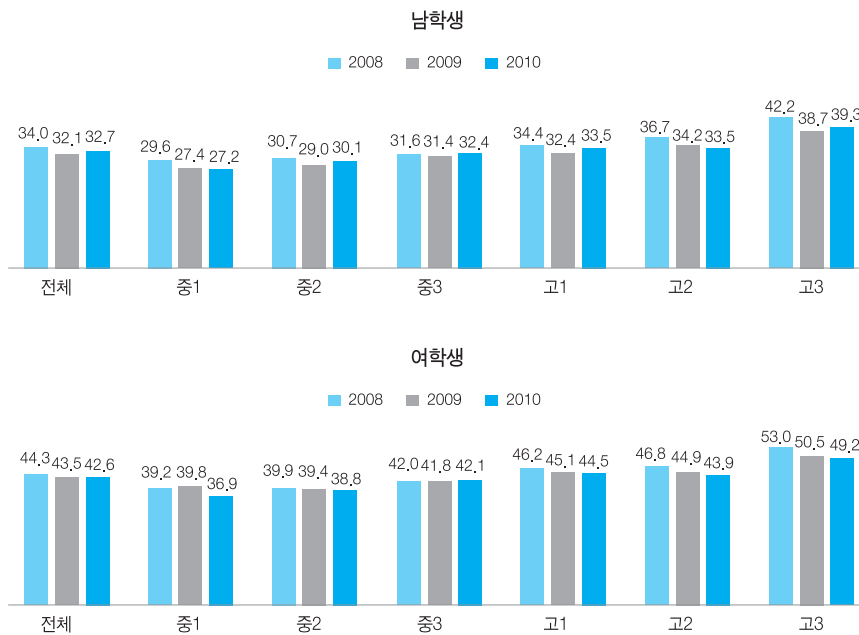
[그림 5-4-6] 학년별 스트레스 인지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그림 5-4-7] 학년별 우울감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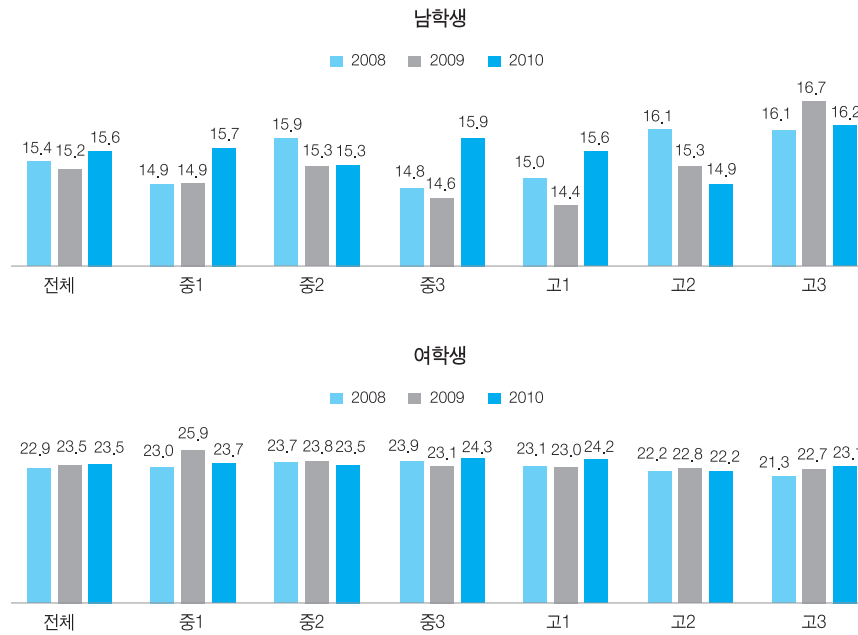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그림 5-4-8] 학년별 자살 생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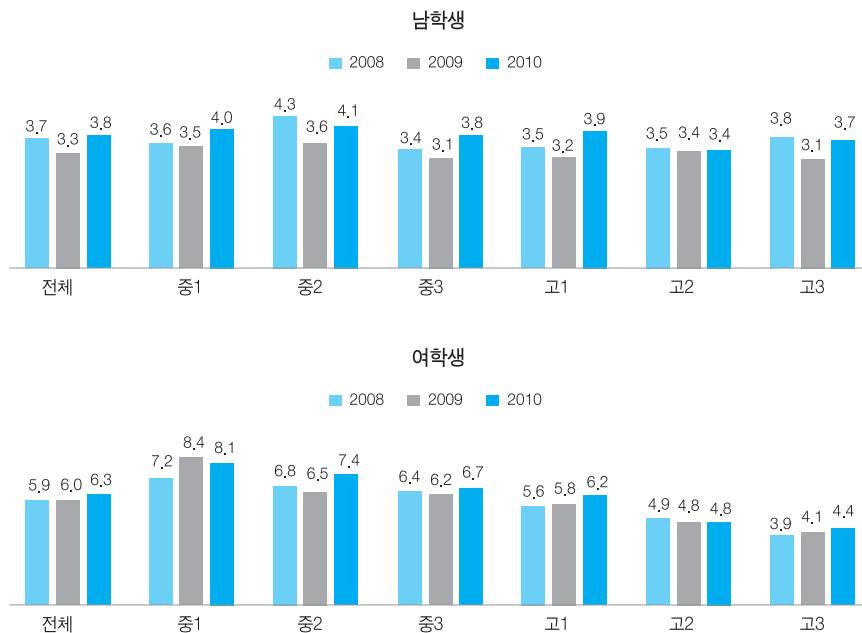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그림 5-4-9] 학년별 자살 시도율

(단위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5. 청소년의 건강대책

가. 학생건강증진대책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9월에 학생건강증진대책을 발표하였다. 2011년까지 5년간 시행할 학교 보건·급식분야 11개 추진과제, 학교 체육 분야 6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5-4-15〉 학생건강증진대책 추진과제

학교 보건·급식 분야	학교 체육 분야
1. 비만예방 프로그램(비만탈출) 운영·정착 2.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금지 등 비만유발 환경 개선 3. 학교급식 영양표시제 운영 4. 음주·흡연 등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운영·정착 5.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전문기관 연계치료 지도 6. 점심식사 후 이 닦기 생활화 7. 1일 8회 30초 손씻기(1830) 운동 전개 8. 학생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9. 학교 건강환경평가제 도입 10. 학교 환경위생 개선 11.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협력체제 강화	1.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도입 2. 초등학교 체육수업 활성화 3. 신체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4. 웰빙 건강체조 실시 5. 주 5일 60분 이상 운동하기(7560+) 운동 전개 6.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학생 건강증진 대책 -학교 보건·급식 분야-」, 2007.
교육인적자원부, 「학생 건강증진 대책 -학교 체육 분야-」, 2007.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학생건강증진대책을 시달하고, 매년 말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한다. 학생건강증진대책에서는 2006년 3월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초·중·고등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 급식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정확한 양을 표시하고, 2010년에는 학교건강환경평가제를 도입하여 교실내 공기 질, 식수, 소음, 새학교증후군 등 학교환경을 평가하며, 점심식사 후 이닦기와 1일 8회 30초 손씻기 운동을 학교에서 전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2011년까지 학생 비만율을 15%로, 흡연률을 5%로, 음주율을 7%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지난 2002년에 수립되었으며, 2005년에 1차 수정되었다. 수정된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 예방중심의 건강 및 질병 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환경 조성의 4개 중점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4개 분야에 총 24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각 중점과제별로 목적, 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24개의 중점과제에 108개의 세부추진사업과 169개의 목표를 결정하여 추진 중이다. 169개 목표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목표는 〈표 5-4-16〉과 같다.

〈표 5-4-16〉 청소년 대상 국민건강증진 목표(Health Plan 2010)

분야	목표
금연	1. 청소년의 흡연율을 감소시킨다.
	2. 청소년의 흡연시도 평균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억제한다.
	3. 청소년의 매일흡연시작 평균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억제한다.
	4. 청소년의 금연 홍보에 대한 인지율을 높인다.
	5. 지난 1년간 흡연예방 교육 경험률을 증가시킨다.
	6.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시간을 감소시킨다.
절주	1. 청소년의 월간음주율을 감소시킨다.
	2. 청소년의 음주시작연령을 연기시킨다.
	3. 청소년의 월간 폭음 경험률을 감소시킨다.
	4. 청소년이 경험하는 음주관련문제를 감소시킨다.
	5. 청소년 음주운전 경험률(오토바이 음주운전 포함)을 감소시킨다.
운동	1. 청소년의 규칙적 중강도 운동실천율을 증가시킨다.
	2. 청소년의 규칙적 고강도 운동실천율을 증가시킨다.
영양	1.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을 적정수준으로 섭취하는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2. 나트륨을 1일 2,000mg 이하로 섭취하는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3. 과일과 채소를 1일 500g 이상 섭취하는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4. 잘못된 식습관에 의한 아침결식률을 감소시킨다.
과체중과 비만	1. 청소년 비만 인구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2. 소아 비만 인구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에이즈·성병 및 혈액매개 전염병관리	1. 청소년의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에이즈 감염 학생의 옆자리 좌석 허락 여부)를 향상시킨다.
정신보건	1. 정신보건센터에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수행률을 높인다.
구강보건	1. 어린이의 치아우식 경험률을 감소시킨다.
	2. 어린이의 우식경험 치아 수를 감소시킨다.
	3. 어린이의 치아우식 유병률을 감소시킨다.
	4. 어린이의 우식경험 치아 중 치료된 치아 비율을 증가시킨다.
	5. 청소년의 치주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킨다.
	6. 구강보건실 설치비율을 증가시킨다(초등학교, 특수학교).
	7. 어린이의 점심직후 잇솔질 실천율을 증가시킨다.
학교보건	1. 학교보건지원센터를 2010년까지 설립한다.
	2. 건강증진학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학교를 10% 확보한다.
	3. 학생 질병, 위생 및 안전사고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학교를 60% 확보한다.
	4. 건강위해행태(흡연, 음주, 비운동, 약물) 학생인구비율을 감소시킨다.
	5. 학생 개인위생 실천율을 증가시킨다.
	6. 학생 영양관련문제(과체중과 비만, 빈혈 등)를 감소시킨다.
	7. 학생(청소년)의 자살사망률과 자살시도율을 감소시킨다.
	8. 학생의 성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임신과 성병감염 경험률을 감소시킨다.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 2005.12.

다. 어린이먹거리안전종합대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2월,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한 비전, 목표, 5대 전략 및 10대 핵심과제를 골자로 하는 어린이먹거리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식약청은 2010년까지 건강저해 식품의 유통·판매 근절,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 단체급식의 위생 및 품질 개선, 올바른 식품 선택권 보장,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구축 등 5개 분야별로 10개 핵심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림 5-4-10] 어린이먹거리안전종합대책 목표 및 추진과제

비 전	안전한 식품, 바른 영양, 건강한 어린이
핵심목표	과자,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유통·소비 환경을 개선하여 유해성분,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
↑	
전략목표	주요 추진과제
건강저해 식품의 유통·판매 근절	①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관리 ②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등 규제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	③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영양위해 성분 저감화 ④ 어린이 기호식품의 첨가물 사용 규제 강화 ⑤ 영양강화 및 영유아용식품의 안전기준 마련
단체급식 위생 및 품질 개선	⑥ 어린이 단체급식 지원체계 구축 ※ 교육부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과 연계 추진
올바른 식품선택 보장	⑦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강화 ⑧ 우수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구축	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마련 ⑩ 어린이 먹거리 안전·영양수준 평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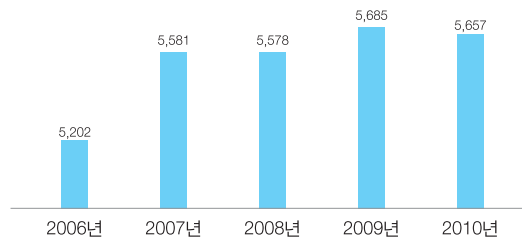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2007.

제6부

2010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5,657건 가운데 중복학대가 2,394건(42.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방임 1,870건(33.1%), 정서학대 773건(13.7%), 신체학대 338건(5.9%), 성학대 348건(6.1%), 유기 14건(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아동학대 건수(2006~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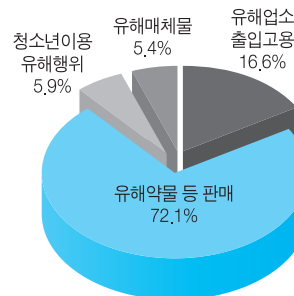
(단위 : 건)



자료 : 보건복지부, 「전국가동학대현황보고서」, 각년도

2010년 한 해 동안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총 8,154명을 단속하여 10명을 구속하고 7,281명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의 유해약물 등을 판매한 경우가 5,882명(72.1%)으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2010년)



자료 : 경찰청(2010)

제6부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제1장 | 청소년 안전
- 제2장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제3장 |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 제4장 |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 제5장 |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제1장 청소년 안전

1. 학교폭력대책

가. 학교 폭력 피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2010년)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경험 비율은 일반 청소년(7.1%)에 비해 위기청소년(8.3%)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초 폭력 피해 연령의 경우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모두 2009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청소년은 12.9세, 위기청소년은 13.6세).

최근 1년간 폭력 피해 경험의 경우, 일반 청소년 중에서 남학생(8.5%)이 여학생(5.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중1(12.6%)부터 고3(3.2%)까지 학년이 높아질수록 최근 일 년 간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낮아지고 있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쉼터청소년의 피해 경험률이 13.3%로 소년원청소년(7.9%)과 보호관찰소 청소년(5.8%)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청소년폭력예방대책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18조를 사업근거로 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비행·폭력 예방 및 교육적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첫째, 폭력 피해 청소년·가족을 대상으로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고 둘째, 비행을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과 비행·범죄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 및 재범을 예방·방지하고 학교·사회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청소년비행·폭력 예방은 현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8년 2억 6천 2백

만원, 2009년 2억 2백만원이 투입되었고, 폭력예방전문가 양성교육을 받은 인원은 2008년 216명, 2009년 232명이다. 학교폭력 피해자·가족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2008년 172명, 2009년 75명이 참여하였다. 2010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폭력예방 교육자료집 제작·배포와 또래상담자 양성을 위한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적 선도의 경우, 2005년 교육부 주관하에 9개부처 합동 범정부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2011년 교과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만들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임), 2008년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연도별 투입 예산은 국고의 경우 2008년 1억 5천, 2009년 1억, 2010년 1억원이 투입되었다.(국조보조금 50%, 지자체보조금 50%). 예방적 보호지원에 참여한 인원수는 2008년 613명, 2009년 149명, 2010년 119명이며 회복적 보호지원에 참여한 인원수는 2008년 450명, 2009년 364명, 2010년 118명이다. 교육적 선도는 2010년 현재 8개 광역시·도(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전남)에서 총 236명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2. 아동학대 대책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부터이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지법으로 제정된 후 20년 동안 별다른 변화 없이 존속되어오다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후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권리의 4대 원칙인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아동참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라는 UN의 권고를 받았으며, 1996년 OECD가입 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화롭고 체계화된 안전수단을 강구”하라는 권고를 받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보호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0년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11개의 아동학대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정의에서부터 신고의무,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기반이 되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가. 아동학대 관련 현황

아동학대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방임 등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가해지는 중복학대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방임과 정서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에 대한 양육 태도 및 올바른 자녀 양육방법을 모르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아동학대 사례유형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방임과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가해지는 중복학대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례유형을 분석한 결과, 2010년 한 해 동안 학대피해로 인해 보호된 아동의 보호건수는 5,657건이며, 이 가운데 여러 가지 학대가 중복된 중복학대가 2,394건(42.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방임 1,870건(33.1%), 정서학대 773건(13.7%), 신체학대 348건(6.1%), 성학대 258건(4.6%), 유기 14건(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방임과 중복학대가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방임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30% 이상을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표 6-1-1〉 아동학대 사례유형

(단위 : 건, %)

연도 유형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신체학대	439(8.4)	473(8.5)	422(7.6)	338(5.9)	348(6.1)
정서학대	604(11.6)	589(10.6)	683(12.2)	778(13.7)	773(13.7)
성 학 대	249(4.8)	266(4.8)	284(5.1)	274(4.8)	258(4.6)
방 임	2,035(39.1)	2,107(37.7)	2,237(40.1)	2,025(35.6)	1,870(33.1)
유 기	76(1.5)	59(1.0)	57(1.0)	32(0.6)	14(0.2)
중복학대	1,799(34.6)	2,087(37.4)	1,895(34.0)	2,238(39.4)	2,394(42.3)
계	5,202(100.0)	5,581(100.0)	5,578(100.0)	5,685(100.0)	5,657(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0.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는 크게 부모와 부모가 아닌 행위자로 구분할 수 있다. 2010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4,70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3.2%를 차지하고 있다.

〈표 6-1-2〉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건수
부모	4,709(83.2)
조부모	182(3.3)
친인척	144(2.5)
형제/자매	11(0.2)
타인	534(9.4)
파악 안 됨	7(0.2)
기타	70(1.2)
계	5,685(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0.

나. 아동학대 예방 대책

(1) 아동방임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학대아동 보호건수 중 중복학대를 제외하면 방임이 3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이래로 매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6년 4월부터 ‘보건소 아동보호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기존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던 방문간호서비스에 아동보호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 시범사업은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방문건수 대비 16.5%로 나타나는 등 사업성고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성고가 바탕이 되어 2007년에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희망스타트’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2008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희망스타트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0년 전국 101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사업량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나눌 수 있는데,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신고건수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30.9%를 차지한다. 이에 신고의무자인 교사, 의료인 등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신고의무자가 자격취득시 필수적으로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였고(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2007년에는 유치원 및 학원종사자, 구급대원 등을 신고의무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을 추가로 신고의무자 범위에 포함하기 위하여 현재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고의무자 교육교재를 제작·배포하여 신고의무자들에게 자신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아동학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였으며, 2008년 6월부터는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교사,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부모, 일반인들도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홍보 동영상 및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현철, 켈투, 타이거 JK와 윤미래 부부 등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을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대중적인 아동학대예방홍보를 하고 있으며, ‘아동사랑콘서트’ 개최, 훈육교재 및 부모교육 영상물인 「Easy Learning : 내 아이 사랑법」을 제작·배포하는 등 국민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3)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지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치료지원과 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08년 ‘아동학대행위자 특성별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9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48,050회의 교육·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많이 제공한 서비스 항목은 개별상담으로 2010년 이전 사례에는 15,625회(73.9%), 신규사례에는 212,569회(78.9%)를 실시하였다. 입원과 통원 치료서비스도 2010년 이전과 이후에 접수된 사례 모두 학대행위자에게 각각 17.4%와 15.6%로 타서비스 유형에 비해 많이 제공되었다.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정부는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0년 10월에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고, 2001년 10월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체계를 갖추었다. 2004년부터는 지역 기관 23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2004년에는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아동학대의 예방부터 치료·보호 및 가정 복귀까지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을 부과하여 시·도별 1개소씩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다. 아동보호종합센터에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실, 놀이실 등은 물론 보호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으며 아동보호를 위한 전체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2010년 현재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45개소).

현재, 보건복지콜센터(129)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4회선씩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사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학대 상황이 심각한 경우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 격리·보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가족)에게 상담, 교육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의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직과 전문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후 현재까지(2000년 10월~2010년 12월) 아동학대 유형별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

〈표 6-1-3〉 아동학대 유형별 실태

(단위 : 건)

연 도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인	유 기	중복학대
2000, 10~12	464	180	30	23	205	26	—
2001	2,105	476	114	86	672	134	623
2002	2,478	254	184	65	814	212	949
2003	2,921	347	207	134	965	113	1,155
2004	3,891	364	350	177	1,367	125	1,508
2005	4,633	423	512	206	1,635	147	1,710
2006	5,202	439	604	249	2,035	76	1,799
2007	5,581	473	589	266	2,107	59	2,087
2008	5,578	422	683	284	2,237	57	1,895
2009	5,685	338	778	274	2,025	32	2,238
2010	5,657	348	773	258	1,870	14	2,394

자료 :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0.

2010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통해 접수된 건수는 총 9,199건이며, 이중 7,406건 (80.5%)이 아동학대 의심사례였고 나머지는 일반 상담전화였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여 조사한 결과 5,657건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아동에게 있어 부모와 떨어져 격리되는 경험은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충격으로 남게 되며, 부모 또한 아동이 실종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아동을 찾는 일에만 전념하게 된다. 아동의 실종은 부모로 하여금 실종아동에 대한 죄책감과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여 최악의 경우 가정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실종아동 문제를 개인의 문제 또는 실종아동 가족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2004년 개구리소년들(1991

년 실종)의 유골 발견, 2004년 부천초등생, 포천여중생 실종사건 등으로 인해 실종아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가 차원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 구축 및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3년 이전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는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보호시설의 아동카드 송부누락 및 지연, 미신고시설 관리부실, 관련 법률의 부재, 일반 국민들의 인식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5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한 가정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5년 12월에 시행된 실종아동법은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대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달라진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종아동 등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8세 이하 아동에서 14세미만 아동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 상의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정신장애인은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호 및 지원하도록 하였다.

둘째, 실종업무를 전담할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 · 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실종 아동 ·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종 가족 지원 등 실종예방 및 가족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넷째, 아동 · 장애인시설 등 보호시설장의 신상카드 송부를 의무화하고 시설보호 대상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실종아동찾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경찰의 수색 · 수사를 의무화하여 경찰의 초동수사 및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미신고보호행위를 금지하여 개인의 불법 입양이나 미신고시설 등의 불법 보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일곱째, 보호시설에 대한 경찰의 현장 조사권한을 명시화하여 시설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전자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실종아동등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였다.

2006년 11월에는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마련 · 시행하였으며 동 대

책에 따라 신고의무자,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의무 불이행자 및 불법양육자의 처벌규정에 관한 홍보도 병행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2008년 4월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차원의 아동범죄 예방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도 이에 포함하여 실종예방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놀이터, 공원, 학교주변 및 아동범죄 다발 지역 등 아동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전개·지원하였다.

둘째, 시·도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를 지정(2010년 6월 8일, 60개소)하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및 장애인 발생시 우선적으로 일시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고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실종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가족 또는 경찰서에서 이들을 찾아 전국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셋째,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경찰청의 실종신고 자료와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신상카드 자료 간 전산연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넷째,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 2008년 12월 14일 시행)하고, 실종예방 인형극 순회 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연령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종예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다.

다섯째, 유괴예방 3단계 구호 100만인에게 알리기, 실종예방 공익광고 송출, 어린이안전 특별생방송 방영 등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날·실종아동의 날을 기념하여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였다.

여섯째, 실종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부모활동비·전단제작지원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실종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실종아동법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신상카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정신의료기관의 장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이 정신병원이나 보호시설을 방문하는 때에는 실종아동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실종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유전정보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한 명의 아동 및 장애인이라도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종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대책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표 6-1-4〉 실종 아동 및 장애인 발생 및 가족복귀 현황(경찰청 182센터)

(단위 : 명)

연 도	일반아동			장애인		
	발생건수	발견 현황		발생건수	발견 현황	
		보호자인계	미발견		보호자인계	미발견
2006년	7,064	7,057	7	6,872	6,820	52
2007년	8,602	8,600	2	7,239	7,218	21
2008년	9,470	9,469	1	4,864	4,850	14
2009년	9,240	9,237	3	5,564	5,523	41
2010년	10,829	10,780	49	6,699	6,529	170
합계	45,205	45,143	62	31,238	30,940	298

주 : 1) 2005년까지 일반아동 연령기준은 8세 이하이나 2006년부터 실종아동법의 시행(2005.12.1)에 의거 14세 미만으로 대상 확대.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자료 : 보건복지부(2010)

〈표 6-1-5〉 무연고아동 등 신상카드 D/B 구축현황(보건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단위 : 명)

합계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병원	부랑인시설	기타
15,992	2,762	7,174	2,079	2,137	1,820	20

자료 : 보건복지부(2010)

4.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가. 아동 안전대책의 성과

어린이는 미래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결정짓는 척도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안전 문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선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합계출산율이 1.29명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어린이를 안전하게 키워내는 일

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할 책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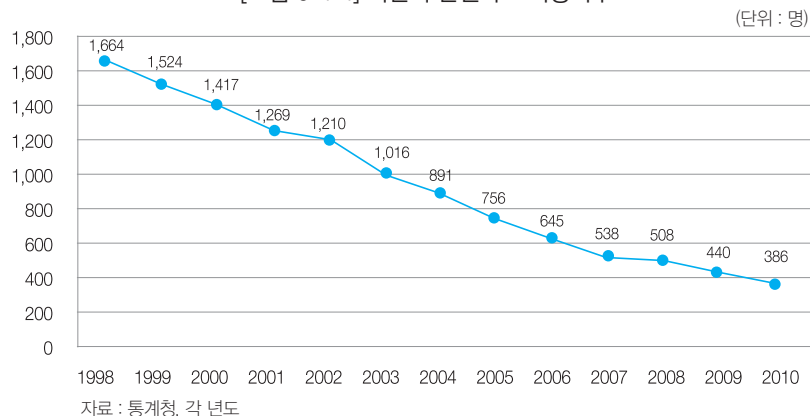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는 성인에 비해 사망 및 중상의 비율이 높고 인격발달과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사고로 인한 가족의 위기와 해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문제는 단지 피할 수 없는 일로 간주되거나, 부모들이 알아서 예방하여야 할 일로 여겨지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어린이 안전관련 정책 또한 소관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체계적, 종합적인 정책 개발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안타깝게도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청와대는 어린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2003년 5월 5일)하고 2003년 6월부터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향후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1/2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어린이 사고 사망 2001년 1,269명→2007년 538명) OECD 회원국 최하위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상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제를 조정해 나갔다.

이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2003년 1,016명에서 2007년 538명으로 47.1%가 감소하여 대책의 목표치인 50%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비교적 높은 감소율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이는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이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가 2002년 12.4명에서 2007년 6.3, 2009년 5.3명, 2010년에는 4.88명으로 줄어 안전사고 사망률 감소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1-1]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



분야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많은 예산과 과제가 수행된 교통사고의 경우 2002년 594명에서 2010년 194명으로 괄목할만한 감소를 보여 교통안전 대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놀이사고 사망자는 2002년 198명에서 2010년 44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추락사고의 경우에도 2002년 134명에서 2010년 41명으로 큰 감소를 가져와 추락사고 대책의 효과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2012년까지 7,332개소 총 1조 5,150억원 투자예정)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3,069개소가 개선 완료되었으며, ② 스쿨존 캠페인 전개와 보호 구역내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하였고, ③ 도로교통법을 개정(2006년 6월 시행)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특수 학교·보육시설 주변까지 확대지정(2006년 총 8,141개)하고, ④ 6세 미만 어린이 뒷좌석 승차시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고다발지역 9,757개소에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2006년 ‘119시민 수상구조대’ 4,229명을 운영하여 2,417명의 인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주택난간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개봉이 어렵게 설계된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를 시행하는 한편, 안전검사의무대상 및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바퀴운동화·레이저용품 등 18개 사고 다발용품을 지정하는 등 위해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어린이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식시설 현대화와 위탁급식 직영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단속강화 등 불량식품 방지노력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안전교육시간 확보(학기당 연간 21~23시간)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한 순회 안전교육 실시, 다양한 안전체험 행사 개최, 어린이 안전정보 제공 강화 등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2010년에는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4.88명으로 2005년 기준 OECD 회원국가 평균수준 5.6명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쿨존 만들기, 지역사회 중심 교통 예방 체험관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체계 정비, 학교 내 안전교육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놀이 공간의 축소와 인터넷 이용확대, 새로운 어린이용품의 출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혼자 있는 어린이의 증가, 인스턴트식품 의존 등에 의한 어린이 건강 악화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한 어린이 성장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아동연령별 발달수준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개발하고 교육해나가며, 새로운 안전 위협요소들에 대응하여 특히

취약계층 고위험군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개발과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하여 2009년부터 제2차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각 연도별 사망원인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은 다음 <표 6-1-6>과 같다.

<표 6-1-6>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교통	익사	추락	질식	화상	중독	기타
1998년	1,664	805	326	115	161	64	21	172
1999년	1,524	726	306	152	131	88	21	100
2000년	1,417	728	306	155	78	41	13	96
2001년	1,269	616	236	138	102	76	7	94
2002년	1,210	594	198	134	114	55	6	109
2003년	1,016	497	156	108	96	70	4	85
2004년	891	374	183	88	90	46	7	103
2005년	756	337	156	67	72	25	4	95
2006년	645	318	78	58	69	42	5	75
2007년	538	259	78	58	70	7	4	62
2008년	508	214	78	50	67	19	2	78
2009년	440	201	62	39	47	10	5	76
2010년	386	194	44	41	—	15	3	89

주 : 1) 1년 동안 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아동의 수이다.

2) 2010년부터 질식사고는 기타로 집계.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다.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관계부처 주요 정책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관계부처 주요정책은 다음 <표 6-1-7>과 같다.

<표 6-1-7>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관계부처 주요 정책

부처명 (소관과)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주관기관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유원시설 관련자 안전교육	■ 유원시설 사업주 안전교육 ■ 유원시설 담당공무원 교육 ■ 안전관리자 안전교육(2회)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사)한국종합유원 시설협회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 유원시설 실태점검(상, 하반기) ■ 전국 물놀이 유원시설 일제 점검	"
	유원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 유원시설업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초 통계 자료 데이터 구축 및 관리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어린이보호차량 관련기술 및 제도개선	■ 어린이보호차량 안전기준 강화 ■ 어린이 전용좌석 및 안전띠 개발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유아용보호장구 (카시트) 제작 · 보급	■ 유아용 보호장구 착용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감소에 기여	국토해양부 교통안전 공단
	어린이 안전모(헬멧) 제작 · 보급	■ 자전거 및 롤러스케이트 등의 어린이 보호용 안전모자를 자전거 자격시험과 병행 보급	"
	어린이 자전거 안전 운전 자격시험	■ 교육청 후원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필기 및 실기 시험, 교통안전 O, X 퀴즈대회 개최를 통한 교통안전 의식고취 및 자격증 교부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 안전과)	학교급식 개선 및 식품안전교육 실시	■ 학교급식 환경개선 및 급식위생 · 안전교육 실시로 식중독 사고 예방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추진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 지원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세금 감면 등 지원	■ 공 · 사립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구입 및 구조 개선비 보조	교육과학기술부 (시 · 도교육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터 등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놀이시설 안전관리 주체의 유치원 놀이터 안전관리 점검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시 · 도교육청)
	학급보조자 연수시 안전교육시간 배정 의무화	■ 교사 대 유아비율이 높은 유치원에 배치할 학급보조자 연수에 최소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시간 의무화 ※ 2008년부터 시 · 도교육청으로 사업이양	시 · 도교육청

부처명 (소관과)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주관기관 (단체)
환경부 (환경보건 정책과)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평가 및 관리	■ 어린이 실내놀이터, 보육시설 유해물질 노출 실태조사 ■ 어린이 실내놀이터, 보육시설 위해성 평가 ■ 학교, 학원 및 교통, 대중시설 오염노출 실태조사	환경부
	어린이 환경과 건강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	■ 어린이 환경과 건강 포털사이트 보완 · 운영 추진 ■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구축 · 제공	"
	어린이의 환경노출 에 의한 건강영향 조사	■ 대기오염, 화학물질 노출 등 환경오염과 질환과의 연관성을 규명, 매체별 오염관리정책, 취약계층 건강 보호정책 등에 반영 ■ 10세미만 어린이 2,800명(2006년도 대상자 추적 및 신규조사)의 환경노출실태 및 건강영향조사	"
	산모와 영유아 대상 의 환경노출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 환경오염요인과 주요 민감계층인 산모와 영 · 유아의 건강영향 관련성 파악을 위한 추적 조사사업 추진 ■ 1,2차년도 조사대상자 추적 및 신규 코호트 구축 ■ 산모와 영유아의 환경노출에 의한 건강영향 조사 추진	"
환경부 (생활환경과)	보육시설, 아동복지 시설 등 실내공기질 진단 개선사업	■ 실내공기질 진단 · 개선 보육시설 20개소의 개선 및 평가 ■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진단 · 개선 매뉴얼 보급	"
환경부 (제품안전성 평가과)	어린이 용품 유해물 질 위해성 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	■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의 경구노출(2차) 및 경피노출 중심 위해성 평가 ■ 영유아용품 및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노출경로별 (경구, 경피, 흡입, 혼합 등), 년차별 위해성 평가 실시 ■ 위해성 평가결과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대책 마련, 추진(환경보건법 등에 반영)	국립환경 과학원
식약청 (의약품안전 정책과)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 · 포장 사용품목 확대	■ 의약품 안전용기 품목 확대 (2종 추가)	식약청
식약청 (식중독예방 관리팀)	학교급식 개선 및 식중독안전 교육 실시	■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식중독 확산 차단) ■ 식중독 예방 교육(매월 1회)	"
식약청 (식품관리과)	불량식품제조 및 판 매업자 단속 강화	■ 학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제조 · 판매업소 단속	"

부처명 (소관과)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주관기관 (단체)
식약청 (영양기능식품 정책과)	식품안전교육 실시	■ '트랜스지방과 영양표시' 교육 (학부모, 조리종사원, 모니터요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및 영양교육 등) ■ 식품첨가물 안전관리 교육 (전국 시·도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식품첨가물의 용도 및 사용 방법 등)	"
여성가족부 (인권보호과)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운영	■ 아동성폭력에 대한 의료, 법률,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여성가족부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수사·법률 등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아동성폭력 교육 및 홍보	■ 여성폭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행사	"
지식경제부 (생활제품 안전과)	어린이·고령자용품 안전관리품목 확대	■ 어린이·고령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품목 확대	기술표준원
지식경제부 (안전관리과)	어린이용품 안전 모니터링	■ 어린이용품 및 놀이시설 모니터링	기술표준원
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사업규모 : 1,239개소 추진 ■ 사업추진형태 : 지자체 보조(보조율 50%)	시도 및 시군구
법무부 (법문화진흥팀)	초등 법교육 시범학교	■ 서울지역 10개 초등학교에서 총 10차시의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해피스쿨 법질서체험학교	■ 21개 초·중·고에서 체험형·토론형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 등 법질서 바로세우기 캠페인 실시	"

자료 : 여성가족부(2010)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1. 청소년 유해약물예방 기반 구축

청소년유해약물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 등이며,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을 말한다.

약물중독은 약성 약물에서 강성 약물로 전이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한번 사용하게 되면 습관성과 의존성 및 중독성과 내성이 강하여 중단하기 힘든데, 특히 청소년의 약물사용은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제2비행의 관문(Gateway)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우려되는 문제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청소년 약물예방 대책은 청소년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주류나 담배의 유통규제 제도의 한계 등으로 청소년의 음주·흡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존의 청소년 약물제도 및 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 약물 중 빈번한 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음주 및 흡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약물예방에 관한 국제적 표준에 적합한 제도와 법안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사회적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실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일반청소년의 연간 음주율은 39.1%로 2008년 53.7%, 2009년 41.6%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청소년의 최초음주 시작연령은 10세 이전이 12.1%, 11세~15세 이전이 43%, 15세 이상이 41.6%로 평균연령 13.6세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연간음주율이 68.3%로 2008년 80.7%, 2009년 74.9%에 비하여 다소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초음주 시작 연령의 경우 10세 이전이 3.7%, 11세~15세 이전이 55.3%, 15세 이상이 37%로 평균연령 14.0세로 나타났다.

〈표 6-2-1〉 청소년 최근 1년간 음주율(총괄)

(단위 : %)

일 반 청소년																		위기 청소년 ¹⁾		
전체			남			여			중학교			일반고			전문고					
08	09	10	08	09	10	08	09	10	08	09	10	08	09	10	08	09	10	08	09	10
53.7	41.6	39.1	53.7	42.9	41.1	53.6	40.2	36.9	41.9	28.4	25.2	64.1	51.4	49.0	74.5	68.1	65.3	80.7	74.9	68.3

주 : 1) 위기청소년 : 가출 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소년원 청소년.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검측 종합실태조사」, 2010.

〈표 6-2-2〉 청소년 음주실태

(단위 : %)

구 분 \ 대 상		일 반 청소년							위기 청소년 ¹⁾	
		2009년	2010년						2009	2010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지금까지 음주경험 여부	없다	44.2	48.1	46.4	50.0	61.8	37.2	25.6	12.4	17.0
	있다	55.8	51.9	53.6	50.0	38.2	62.8	74.4	87.6	83.0
최근 1년간 음주율	없다	58.4	60.5	58.6	62.6	74.3	50.6	34.3	25.1	31.2
	있다	41.6	39.1	41.1	36.9	25.2	49.0	65.3	74.9	68.3

주 : 1) 위기청소년 : 가출 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소년원 청소년.

2) 2010년도 최근 1년간 음주를 「있다 없다」의 응답합계가 일반청소년 99.6%, 위기청소년 99.5%로 100%가 안 된 이유는, 각각 무응답으로 인해 0.4%, 0.5%의 오차가 발생한 것임.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검측 종합실태조사」, 2010.

〈표 6-2-3〉 최초 음주시기

(단위 : %, 세)

대 상	일 반 청소년						위기 청소년 ¹⁾
	전 체	성 별		대 상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10세 이하	12.1	15.4	8.1	22.0	6.5	5.8	3.7
11~15세 미만	43.0	38.8	48.0	63.4	30.4	32.5	55.3
15세 이상	41.6	42.4	40.7	10.9	60.0	58.9	37.0
평균(만/세)	13.6	13.4	13.8	11.9	14.6	14.5	14.0

주 : 1) 위기청소년 : 가출 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소년원 청소년.

2) 일반청소년 전체 합계 96.7%, 위기청소년 합계 96.0%로 응답합계가 100%가 안된 이유는 각각 무응답으로 인해 3.3%, 4.0%의 오차가 발생한 것임.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검측 종합실태조사」, 2010.

청소년 흡연의 경우, 2010년도 일반청소년 흡연율이 9.6%로 2008년 10.8%, 2009년 8.2%에 비해 조금씩 낮아졌다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남자 청소년의 경우 13.9%, 여자 청소년의 경우 4.8%로 나타났으며, 최초 흡연 시작연령은 평균 13.9세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의 경우도 흡연율이 55.7%로 2008년 60.1%, 2009년 55.4%에 비하여 조금 낮아졌다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초 흡연 시작연령은 평균 13.5세로 일반청소년보다 조금 일찍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4〉 청소년 흡연율(총괄)

(단위 : %)

일반 청소년																		위기 청소년 ¹⁾		
전체			남			여			중학교			일반고			전문고					
08	09	10	08	09	10	08	09	10	08	09	10	08	09	10	08	09	10	08	09	10
10.8	8.2	9.6	15.0	11.9	13.9	6.0	4.2	4.8	6.6	4.3	4.5	11.2	8.3	10.3	27.6	24.7	28.3	60.1	55.4	55.7

주 : 1) 위기청소년 : 가출 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소년원 청소년.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010.

〈표 6-2-5〉 청소년 흡연실태

(단위 : %)

구 분	일반 청소년							위기청소년 ¹⁾	
	2009	2010						2009	2010
		전체	남	여	중학교	일반고	전문고		
전혀 피우지 않는다	82.9	81.3	74.6	88.8	85.9	82.3	59.8	14.6	15.4
과거흡연 · 현재안피움	8.9	9.1	11.4	6.4	9.5	7.4	11.9	30.0	28.9
현재 피우고 있다	8.2	9.6	13.9	4.8	4.5	10.3	28.3	55.4	55.7

주 : 1) 위기청소년 : 가출 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소년원 청소년.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010.

〈표 6-2-6〉 최초 흡연 시기

(단위 : %, 세)

대 상	일 반 청 소 년						위기 청소년 ¹⁾
	전 체	성 별		대 상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평균(만/세)	13.9	13.8	14.0	12.8	14.3	14.0	13.5

주 : 1) 위기청소년 : 가출 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소년원 청소년.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010.

나. 청소년 음주 · 흡연예방 기반 구축

(1) 청소년 음주 · 흡연예방 관련 법 · 제도 개선

2005년 WHO는 회원국에 음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제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회원국에 담배의 광고, 판촉 및 후원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국은 2006년 12월 연방의회에서 “청소년음주예방법” 제정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음주 · 흡연 환경 규제내용이 각 개별법에 분산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즉, 청소년 흡연규제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음주는 주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주류소매(면허)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과 달리 면허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류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음주 · 흡연예방을 위한 기존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류 · 담배의 청소년 대리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술 · 담배 등 청소년유해악물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주류의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를 개선하여 주류 용량에 따라 표기 기준을 정하는 등 누구에게나 눈에 잘 띄도록 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주류 · 담배 판매업소의 청소년 상대 판매실태 조사 및 개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 청소년 음주예방 대책 추진

여성가족부의 「2010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청소년의 “최근 1년간 음주율”은 2004년 36.0%에서 2008년 53.7%로 4년 사이 17.7% 포인트가 상승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09년 41.6%, 2010년 39.1%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한국 특유의 관대한 음주문화의 영향 등으로 사회전반에서 음주로 인한 수조원대의 사회 · 경제적 비용 발생과 음주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채 지속되어 왔고, 청소년들은 기성인들의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건강한 성장 발달권을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음주는 성장과정상의 복합적인 환경요인에 기인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통적으로 관대한 음주문화로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는 잘못된 인식에 대한 개선을 위한 ‘청소년 음주예방 공동 캠페인 선포식(2011년7월13일)’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선포식에는 청소년 · 여성 · 가족 · 학부모 · 보건의료 · 소비자 · 자원봉사 등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였고 ‘수능 백일주 근절 캠페인’, ‘하계 해수욕장 음주예방 캠페인’, ‘청소년에게 술 권하지

않는 건전한 명절문화 만들기’, ‘술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교육’ 등 연중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그밖에도 청소년 유해약물 모니터링, 유해약물 판매 점검·단속 강화 및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청소년음주예방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표 6-2-7〉 관계부처의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 주요 내용

관계 부처	대책 추진과제
여성가족부	■ 청소년 음주예방 공동캠페인 실시 ■ 주류 판매업소 계도·단속 ■ 주류 판매업소 종사자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교육 의무화 ■ 청소년들의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관련 - 호프집, 소주방, 카페를 일반음식점에서 분리, 주류 판매점에 편입 문제
교육과학기술부	■ 학생들의 음주율 증가 및 저연령화 문제 관련 - 학교 학생의 청소년 음주 예방 교육 강화 - 학생 음주예방 교육을 위한 교사 대상 교육과정 운영
법무부	■ 위기청소년(소년원)들의 음주율 증가 문제 관련 - 갱생프로그램에 최소한의 음주예방 교육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 관람가 영화속의 음주장면 노출문제 개선 - 영상물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보완
지식경제부	■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 주류유통물 규제 방안 - 인터넷상의 주류 유통물 심의 강화 및 기준보완
대검찰청	■ 청소년관련 범죄 수사시 “피의자 원표”에 음주여부 조사항목 신설
경찰청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 단속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 TV방송 3사(KBS, MBC, SBS)의 드라마 음주장면 노출문제 개선
지방자치단체	■ 주류판매 업소 특별계도 단속

자료 : 여성가족부 2010.

(3) 청소년 흡연예방 대책 추진

최근 들어 청소년 흡연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률은 세계 청소년들의 흡연률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청소년 유해환경정착 종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일반청소년 흡연율이 9.6%로 2008년 10.8%보다는 낮으나, 2009년 8.2%에 비해 조금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 흡연을 자제하고, 흡연은 좋지 못한 사회적 행동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흡연연령이 저연령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흡연이 시작된 후 행태를 교정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아를 위한 놀이형 교구를 개발하여 전국 유치원(8,268개소)에 보급하였다. 놀이형 교구는 기존의 교사용 지침서에서 탈피하여 문자능력이 없는 영유아들이 주사위 놀이나 역할극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현장 교사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다.

〈표 6-2-8〉 관계부처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주요 내용

관계 부처	대책 추진과제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대상 담배판매 행위 처벌 ■ 한방의료기관을 통한 청소년건강상담 및 무료금연침 시술 사업 지원 ■ 청소년 흡연예방 대국민 홍보(버스·지하철 광고 등) ■ 유아를 위한 흡연예방 교구개발 보급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운영 ■ 보건소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프로그램 제공 - 금연교실, 금연지도자교육,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 등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 관람가 영화속의 흡연장면 노출문제 개선 -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 운영규정 보완
기획재정부	■ 담배사업법 제정·운영
지식경제부	■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규제 방안 -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심의강화 및 기준보완
경 찰 청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 단속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 TV방송 3사(KBS, MBC, SBS)의 드라마 흡연장면 노출문제 개선
지방자치단체	■ 담배판매 업소 특별계도 및 단속

자료 : 여성가족부(2010)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다양한 유흥문화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유해업소 및 신·변종 유해업소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2-9〉 청소년유해업소의 수

(단위 : 개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86,234	768,689	760,386	789,468	796,113	803,114

자료 : 여성가족부(2010)

더구나 도시지역에서의 청소년 유해업소의 난립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2010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1)에 의하면 유해업소에 대한 일반청소년의 생애 이용율은 노래방 84.7%, 비디오방·DVD방 13.5%, 카페 40.0%, 호프집 및 소주방 14.4%에 달한다. 특히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이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주거지역 인근에도 유해업소가 난립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신도시 건설시 청소년유해환경격리 구획화 등을 통해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하고 있다.

즉, 기존 시가지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주거지, 학교, 학원 등이 혼재되어 입지하면서 청소년에게 교육적·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짐에 따라 유해환경에 대한 체계적·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인 ‘레드 존’을 설정하였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RED ZONE) 38곳, 통행제한구역 20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신도시 건설시 청소년유해환경격리·구획화 추진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 29일에 승인된 화성·동탄 신도시 실시계획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청소년유해환경 격리·구획화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표 6-2-10〉 청소년유해업소 현황

(단위 : 개소)

업종 시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무도 학원	무도 장	이용 업	숙박 업	노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게임 제공업체				계
											게임 제공	청소년 게임장	일반 게임장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계	30,267	15,402	589,038	70,546	1,218	86	21,570	30,691	36,880	1,408	895	3,017	153	1,943	803,114

주 : 1) 출입·고용금지업소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감상실 지정.

2) 고용금지업소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용업, 숙박업, 게임제공업을 지칭(일반음식점의 경우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며, 숙박업의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

자료 : 여성가족부(2010)

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1) 청소년보호법 점검·단속 실적

학교보건법상 절대·상대 정화구역의 지정·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거리를 벗어난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업소들이 유혹에 약한 청소년들을 퇴폐향락으로 이끌고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총 8,154명을 단속하여 10명을 구속, 7,281명을 행정처분 의뢰하였는데 단속 결과, 청소년유해사범의 88.7%가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 목인 및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로 나타났다.

〈표 6-2-11〉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단위: 명)

구분	총계	위 반 내 용				조 치		
		유해업소 출입·고용	유해약물 등 판매	청소년이용 유해행위	유해 매체물	구속	불구속	행정 처분
2010	8,154	1,351	5,882	479	442	10	8,144	7,281

자료: 경찰청(2010)

(2)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운영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는 전문적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그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특별히 부여하게 하는 것이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자기 소관업무와 범죄에 대해서 점검·조사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행정부공무원을 말한다.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2010년 말 현재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405명이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받아 청소년보호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과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조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표 6-2-12〉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여성가족부	36	40	37	45	43	70	66	38	24	24
서울	25	41	17	20	13	38	58	119	110	112
부산	47	45	36	22	46	43	32	49	53	54
대구	30	36	16	31	19	13	9	15	1	15
인천	41	27	13	13	18	15	19	21	1	38
광주	18	19	9	13	10	5	9	4	—	3
대전	24	23	19	18	18	18	3	3	3	4
울산	15	13	14	11	9	10	6	1	2	2
경기	88	124	54	57	19	27	20	12	12	74
강원	38	34	16	15	17	20	13	8	8	6
충북	29	37	33	12	7	7	11	11	—	—
충남	47	50	38	40	31	20	19	18	—	22
전북	13	13	30	40	24	17	19	19	2	10
전남	77	62	53	47	17	29	16	19	4	23
경북	50	53	42	39	28	15	11	9	—	7
경남	51	43	24	45	20	18	13	13	1	11
제주	6	6	6	12	1	—	—	—	—	0
합계	635	666	457	480	340	365	324	359	221	405

자료 : 여성가족부(2010)

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최근 주택가 및 학교 주변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환경이 증가하고 있다. 화상채팅방, 모텔, PC방 등 신·변종 업소가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단속 및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신도시 개발 계획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유해업소 업종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보호의식을 제고하였으며 기존 유해업소 및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대상 주류·담배판매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전국 350개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운영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각종 유해한 환경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1999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권변동 등으로 2010년말 기준 총 58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표 6-2-1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

(단위 : 개소)

시·도	구 분	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계		58	38	20
서울		10	6	4
부산		4	2	2
대구		1	1	-
인천		2	1	1
광주		2	1	1
대전		2	2	-
울산		-	-	-
경기		9	7	2
강원		7	7	-
충북		1	1	-
충남		2	2	-
전북		9	4	5
전남		1	-	1
경북		5	3	2
경남		3	1	2
제주		-	-	-

자료 : 여성가족부(2010)

(2) 청소년유해업소 격리 · 구획화

여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신도시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신도시 계획 시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하여 주거지 및 학교위생정화구역에 청소년유해업소를 제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특정용도제한구역을 설치하며, 도시의 건전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신도시에 적용 가능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 · 구획화 모델을 제시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주거지나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 격리 · 구획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2010년 6월 29일 화성 · 동탄(2) 신도시개발계획에 청소년유해업소 격리 · 구획화가 반영되었다.

(3) 학교주변의 환경개선

여성가족부는 각급 학교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유흥업소 · 숙박업소(일명 러브호텔) · 각종게임장 · 노래연습장 · 비디오물감상실 등 각종 유해업소가 청소년비행과 학교주변 폭력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질서의 확립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 운영 현황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는 학교보건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이며, 이중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를 절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한다. 정화구역 안에서는 유해업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해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②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규정에 의한 이전 · 폐쇄 대상 업소는 정화구역을 현행과 같이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구분한 제3차 개정(1981년 10월 8일)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것으로 기

존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이다. 이후 동시행령의 제4차(1990년 12월), 제6차(1993년 9월), 제12차(1998년 1월) 및 제14차(1999년 5월) 개정시 새로이 추가되는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전·폐쇄토록 규정한 바 있다. 2007년 8월 3일 학교보건법이 법률 제8578호로 개정되어 정화구역안에서 게임물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었으며, 2008년 8월 이후부터 학교 앞에 설치된 미니게임기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6-2-14〉 정화구역 내 각종업소 지역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유흥 단란 주점	숙박 업소	당 구 장	멀티 게임장 (pc방)	게임 제공업	만화 가게	무도 학원	노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전 화 방	성기구 취급소	미니 게임기	담배 자판기	복합 유통 시설
서울	11,337	2,713	1,628	2,135	1,399	451	232	69	2,316	321	7	7	42	3	14
부산	3,691	1,495	639	421	147	103	69	23	764	17	2	2	0	0	9
대구	1,794	335	310	247	183	49	25	40	591	14	0	0	0	0	0
인천	2,046	580	366	450	87	18	2	12	511	7	0	3	5	0	5
광주	891	49	41	162	162	65	21	11	209	6	0	1	158	3	3
대전	1,035	104	182	184	151	34	22	5	339	14	0	0	0	0	0
울산	1,023	405	172	183	5	17	18	25	194	3	0	0	0	0	1
경기	7,302	1,810	858	1,585	645	194	169	59	1,825	47	7	4	84	2	13
강원	1,462	506	390	164	97	31	14	6	249	5	0	0	0	0	0
충북	1,386	373	318	223	82	23	30	10	317	8	1	0	0	0	1
충남	1,690	414	399	247	166	65	11	10	360	7	0	0	1	5	5
전북	1,633	413	188	299	203	51	106	14	326	27	0	0	2	0	4
전남	2,238	790	360	339	254	92	2	12	382	4	0	0	0	0	3
경북	2,599	795	538	356	176	79	33	23	557	20	0	0	0	22	0
경남	3,419	1,149	464	424	281	237	110	19	720	12	0	0	0	0	3
제주	999	529	192	77	30	14	10	21	121	5	0	0	0	0	0
계	44,545	12,460	7,045	7,496	4,068	1,523	874	359	9,781	517	17	17	292	35	61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0)

③ 문제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장이 설정하지만 건축허가·영업허가와 유해시설의 방지 및 철거명령은 시·군·구청장 소관으로 되어 있어 교육청의 정화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교담장 옆이 쓰레기하차장 또는 불법 주차장화 되는 경우가 많아 비위생

적이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이용하는 통학로 주변의 불법·선정적인 광고물 등은 학생생활지도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1993년 한국청소년학회의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 개설·운영을 시작으로 민간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자율적으로 추진되었다. 1994년에는 서울 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운영되었고,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 서울 등 6대 도시에 6개 시민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 보급되었다. 1997년에 제정·시행된 청소년보호법상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10년 12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350개의 감시단(총 19,500명)이 활동하고 있다.

〈표 6-2-1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단위 : 개, 명)

시 도	합 계		시민단체		학교감시단	
	단체수	단원수	단체수	단원수	학교수	단원수
서울	118	7,527	66	6,848	52	679
부산	21	1,127	20	1,119	1	8
대구	10	621	10	621	—	—
인천	10	675	10	675	—	—
광주	8	371	8	371	—	—
대전	6	946	6	946	—	—
울산	9	522	9	522	—	—
경기	58	2,976	58	2,976	—	—
강원	14	776	13	762	1	14
충북	10	567	10	567	—	—
충남	21	1,038	18	975	4	63
전북	11	618	10	618	—	—
전남	19	651	16	620	3	31
경북	15	367	9	300	6	67
경남	14	360	15	360	—	—
제주	6	358	5	358	—	—
합 계	350	19,500	283	18,638	67	862

자료 :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거나 자체 감시활동을 통해 해당 업주가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문잡지, 도서, 문화, 사진첩 등 인쇄매체와 TV방송, 비디오물, PC통신 등 영상·통신매체의 건전화 유도를 위해 각 단계별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반’을 구성·운영하였고, 이들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조사·발표하고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 청소년유해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보호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세미나 개최, 각종 캠페인 전개 및 유해업소 종사자 교육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사업지원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고발 및 모니터활동을 위주로 하되,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협의회, 또는 사업연대(컨소시엄) 감시단에 우선 지원하였다. 지원사업신청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중복을 방지하였으며, 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공개 공모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제3장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1.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심의·결정 및 고시를 통하여 유해매체물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고발조치·심의요청 등 시정조치를 강화해 왔다.

또한, 방송·통신의 경계 붕괴, 모바일 화상통신, UCC, 스마트폰 등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시의적, 실효적 규제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작업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 법·제도개선

1997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통하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체환경의 급속한 발달과 변화로부터 청소년보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곧 국가지속발전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규제·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보호·교육 지원 등의 사전 예방적 보호조치와 인터넷 중독 등 매체역기능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 지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가정 및 사회에서 효율적인 청소년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매체 등급분류제도가 시청가능 연령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가정 내 시청지도의 활용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체물 내용 표시제(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의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정보를 숫자나 부호 등을 이용하여 표시) 도입을 추진하여 디지털, 다매체 시대에 학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들의 적절한 매체물 선택 및 이용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 매체물 심의기구 현황

우리나라의 매체물 심의기구는 각 정부기관 산하의 유관기관 및 매체별로 분리되어있는 다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인쇄매체의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방송 및 통신매체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영화 및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심의 및 등급분류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심의기구가 심의를 요청한 콘텐츠나 심의 없이 유통되는 콘텐츠의 등급부여, 음반 및 음악파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매체물 심의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연령등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연령등급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문화관련 3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등급분류제도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심의 및 등급분류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심의기관의 법적 성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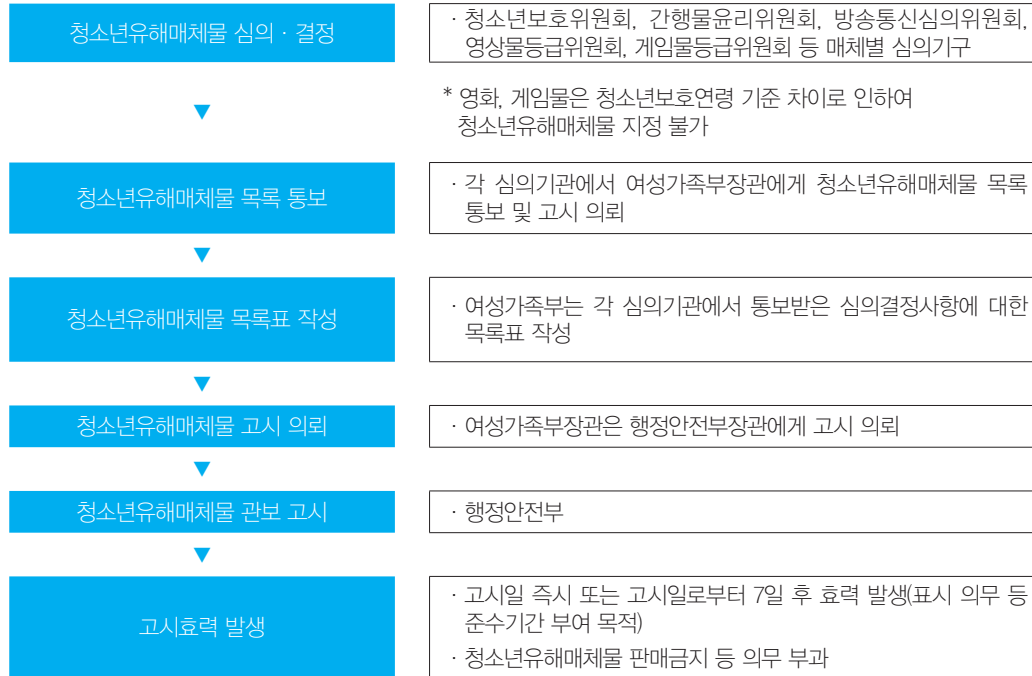
〈표 6-3-1〉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심의 기구	담당 매체	소관부처 · 법률	심의형태
청소년보호위원회	모든 매체물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법	사후심의
간행물윤리위원회	간행물	문화체육관광부/출판법	사후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 비디오 · CD	문화체육관광부/영화비디오법	사전등급분류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	문화체육관광부/게임산업법	사전등급분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물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법	사후심의
	방송 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방송법	사전자율/사후심의병행

자료 :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심의기준 등에 따라 소관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 · 결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법 제22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에서 제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종합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 고시를 의뢰하고 있다.

(그림 6-3-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절차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0)

〈표 6-3-2〉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별 결정·고시 현황

(단위: 건)

연도	고시횟수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 위원회		게임물 등급 위원회	청소년 보호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확 정 보 위	계
		도서	정기간행물	만화단행	만화잡지	광고광고	전자출판	영화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방송프로그램						통신분야		약물 관련 산업소	
												영 화	드 라 마	다 규	만 화	음악	기 타	PC 통신	인 터 넷		
97	19	59	105	1,994	29	11	12	102	444	0	0	1,699	0	1	19	9	8	607	0	5	5,104
98	62	173	416	1,140	52	0	49	151	762	0	0	916	30	12	52	14	0	755	0	0	4,522
99	62	304	388	1,501	14	1	16	71	428	0	4	280	2	5	2	0	4	61	36	1	3,118
00	41	366	699	1,227	0	0	0	(197)	(998)	0	(460)	158	0	9	4	0	67	53	41	1	2,625 (1,655)
01	45	289	983	1,387	1	0	0	(143)	(1,083)	(520)	(1,112)	655	58	5	99	451	975	7	407	0	5,317 (2,858)
02	51	259	1,098	1,492	8	0	3	(86)	(1,454)	(896)	(800)	1,432	33	1	114	19	202	435	851	0	5,947 (3,236)
03	68	611	1,220	1,802	131	0	256	(59)	(1,462)	(936)	(536)	2,768	145	0	3	510	284	0	3,537	0	11,267 (2,993)
04	63	371	528	1,810	269	2	602	(89)	(2,746)	(1,547)	(258)	269	67	2	0	0	0	0	7,657	0	11,577 (4,640)
05	55	334	318	1,464	199	0	817	(69)	(2,936)	(1,734)	(127)	1,304	237	0	15	2	179	0	17,131	1	22,001 (4,866)
06	57	365	339	1,424	78	0	740	(92)	(2,355)	(861)	4	3,001	207	0	29	3	480	0	19,475	0	26,145 (3,308)
07	65	414	377	1,867	46	0	776	(178)	(2,904)	(304)	349	6,506	190	0	151	1	840	0	15,314	0	26,831 (3,386)
08	44	497	280	2,059	53	0	758	(139)	(2,085)	(477)	653	1,041	1,059	0	142	0	609	0	1,198	0	8,349 (2,701)
09	51	809	223	1,756	229		658		(1,960)	(577)	955	3,119	2,094	0	533	0	1,835	0	229	0	12,440 (2,537)
10	39	745	220	1,758	162		973			(582)	1,057	1,041	902	0	459	0	969	0	239		8,525 (582)
계	722	5,596	7,194	22,681	1,271	14	5,660	324 (1,052)	1,634 (19,983)	0 (8,434)	3,022 (3,293)	24,189	5,024	35	1,622	1,009	6,452	1,918	66,115	8	153,768 (32,762)
총합계				42,416				1,958 (21,035)		0 (8,434)	3,022 (3,293)		38,331					68,033		8	153,768 (32,762)

주: 1) 인터넷의 '07, '08 대비 고시건수의 편차는 과거 모바일 사진, 화보집 이미지 등을 개별(매수) 심의하던 것을 사이트 기준으로 심의를 변경함.

2) 영화, 비디오물 등 통계중 () 안 숫자는 '18세미만 청소년이용불가 매체물' 숫자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지 않아 현황 총계에 미포함.

청소년 보호법 <만19세>와 타법 <만18세> 연령 차이로 고시불가에 기인

자료: 여성가족부(2010)

다. 음반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

여성가족부에서는 음반·음악파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 등을 모니터링하여 청소년 유해성 심의, 유통 차단 등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매년 30,000여 곡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음반심의 이후('06.11. 이후) 2010년까지 유해결정 곡은 총 3,022곡(국내 1,335곡, 외국 1,687곡)이다.

〈표 6-3-3〉 청소년유해음반 결정·고시 현황

(단위: 건)

구분	총계	2006년 11~12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3,022	8	349	653	955	1,057
국내곡	1,335	4	153	229	459	490
외국곡	1,687	4	196	424	496	567

자료: 여성가족부(2010)

또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2011.7.19 개정, 2012.1.20 시행)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제도를 도입,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에 대해서도 재심의 청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충분한 심의와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제도의 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매체물의 제작·발행자나 유통행위자가 유해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청소년의 바람직한 매체활용 능력 제고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성장은 정보교류, 여가활용 등 청소년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 게임중독, 음란·폭력물의 유통 등 각종 역기능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미디어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로부터 격리된 생활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미디어를 정면으로 마주 대하고 올바른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는 매체이용역량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학령단계별, 연령별 차별화된 매체역량 증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유해매체환경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변별력·대응력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스스로지킴이(YP, youth-patrol) 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가. 학령전 아동(유아)의 건전한 매체이용 습관 형성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0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만 3~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매체이용 초기부터 건전한 매체이용습관 형성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유아대상 미디어교육은 교사들의 교수학습 자료 부족, 연수기회 부족 등으로 체계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3-4〉 만 3~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 현황

구분	만3세 이상	만3~5세	만6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	77.8	63.0	78.3
인터넷 이용자수(천명)	37,010	840	36,180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0.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현장과 가정에서 교사, 부모와 유아가 놀이와 대화를 통해 전자매체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손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미디어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요」라는 교사용 지도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매체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부모용 지도서를 개발(2006)하였으며, 2007년도 서울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대상 미디어교육 직무연수를 시범 실시, 2008년부터는 전국 16개 시도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6-3-5〉 유아를 위한 미디어교육 교재 구성

■ 교사용 지도서

[제1부]

1. 유아기 전자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2. 유아기 전자미디어 환경
3. 효율적인 전자미디어 교육의 방법
4. 유아를 위한 전자미디어 교육 활동 모형

[제2부]

1. 나를 즐겁게 하는 미디어
2. 가족과 함께하는 미디어
3. 이웃과 친해지는 미디어
4. 세상을 보는 미디어

■ 부모용 지도서

- 제1장 : 텔레비전
 - 텔레비전 프로그램마다 볼 수 있는 나이가 달라요, 텔레비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등
- 제2장 : 전자게임
 - 세상 모든 것이 시시한 아이, 전자게임보다 재미있는 가족놀이 등
- 제3장 : 인터넷
 - 인터넷 댓글이 나를 슬프게 해요, 우리아이 보호 프로그램, 컴퓨터 체조를 해요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10)

〈표 6-3-6〉 학령전 아동의 건전매체 이용습관 형성 지원 교육실적

(단위 : 명)

계	'07년	'08년	'09년	'10년
20,956	1,816	5,612	6,838	6,690

자료 : 여성가족부(2010)

이와 같이, 여성가족부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이용 및 보급 환경에서 교사·부모 미디어 연수를 통해 유아기에 분별력있고 건전한 매체이용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학부모의 자녀 매체이용 지도능력 제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201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10대 인터넷 이용자의 99.8%가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정보 격차로 인해 가정에서의 효과적인 매체이용 지도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매체 변별력 및 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미디어 교육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6-3-7〉 인터넷 이용 실태 현황

(단위 : %)

구분	가정	회사 (직장)	장소구분 없음	학교 (유치원)	상업시설 (PC방 등)	교육장소 (학교 제외)	다른 사람의 집	공공시설 (관공서 등)
3-9세	99.4	-	9.2	53.1	3.0	6.1	5.3	0.5
10대	99.8	0.9	45.4	69.2	26.4	10.3	10.4	2.4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0.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을 인식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일차적인 활동공간인 가정에서 건전한 매체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모들의 매체변별력 및 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미디어교육을 199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현재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은 전국단위 교육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교육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교, 지자체, 시·도 교육청 등 각급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모 교육 강좌를 활용,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저소득층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및 전달 경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그간 학부모 대상 미디어교육의 노하우를 토대로 인터넷, TV, 휴대폰 등 각종 매체사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자녀와의 갈등 상황 등을 분석하여 개발한 학부모용 교육교재 「자녀를 위한 미디어교육,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를 교육시 배포·활용하고 있다.

〈표 6-3-8〉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 추진실적

(단위 : 명)

계	'99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302,589	1,030	4,450	10,000	18,870	22,965	36,213	39,610	34,511	43,072	43,985	47,883

자료 : 여성가족부(2010)

〈표 6-3-9〉 초등학교 자녀를 위한 학부모 미디어교육 교재 구성

- 제1장 : 인터넷 바로 사용하기
 - 빠지면 안돼, 인터넷중독! / 새빨간 유혹, 음란물! / 유해사이트로부터 자녀를 보호하세요 등
- 제2장 : TV 바로보기
 - TV 시청습관, 세 살버릇 여든까지 /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를 아시나요 /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 보아요 등
- 제3장 : 휴대전화 바로쓰기
 - 생활 속 휴대전화, 그 빛과 그늘 / 휴대전화 사용에도 예절을 지켜요 등
- 제4장 : 자녀와 대화하기
 - 평소의 나의 말투를 생각해 봅시다 / 자녀의 마음속을 들여다 봅시다 등
- 제5장 : 활용편
 - 인터넷중독 자가진단표 / TV야, 우리 약속하고 만나자 / 컴퓨터 이용시간 체크표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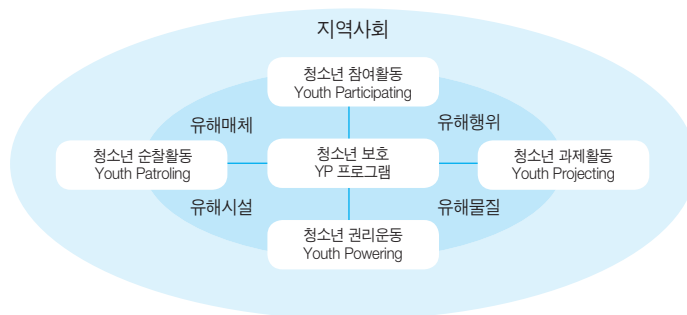
다.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P, youth-patrol) 활동 프로그램 보급

YP 프로그램은 미국의 청소년 매핑프로젝트(Youth Mapping Project, '97)와 청소년 에너지 패트롤(Energy Patrol, '84)에서 힌트를 얻어 학교 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모델링 실천 연구팀의 “Youth Patrol” 활동(2001)에서 유래하였으며, 활동 목적은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폭력, 음주, 흡연 등 유해환경은 물론 게임, 휴대폰, 만화, TV, 간행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매체환경 등에 대한 청소년 스스로의 분별력 및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YP 활동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성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전개되는 청소년보호 활동개념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가 전제된 청소년 중심의 자기보호와 사회의 규범적 보호를 강조하는 데 있다. 때문에, YP 프로그램만의 특징적인 전개방식은 청소년이 스스로 유해환경에 대한 변별력을 갖추고 대응해 나가도록 과제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학부모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YP프로그램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청소년 참여(Youth Participating), 청소년 과제(Youth Projecting), 청소년 순찰(Youth Patrolling), 청소년 권리(Youth emPowering)의 4가지로 설명된다.

[그림 6-3-2] 청소년보호 YP 프로그램의 개념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0)

여성가족부는 ‘YP 활동 프로그램’을 보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 YP 활동과제를 수행할 연구학교를 매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2003년~), 지역사회의 YP활동 참여확대를 위해 지역 민간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한 활동학교를 구성하여 YP프로그램의 보급을 지원(2006년~)하고 있다.

〈표 6-3-10〉 YP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현황

(단위 : 개, 명)

지원대상	계	'03	'04	'05	'06	'07	'08	'09	'10
연구학교	333	32	43	48	44	43	39	40	44
활동학교	958	—	—	—	115	172	211	230	230
교사 직무연수	996	80	131	157	132	127	142	144	83

자료 : 여성가족부(2010)

또한, 학교, 청소년단체 등 교육현장에서의 효과적인 YP 활동 지도를 위하여 YP 교사용 지도서를 발간·보급하고 있으며, 매년 YP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YP 활동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YP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청소년들과 교사 및 학부모 등이 협동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유해한 매체, 시설, 장소, 물질, 행위 등을 정화하고, 나아가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기본 전제가 되는 유익환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청소년권리를 발현할 수 있도록 동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4장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대응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인한 학업성적·사회성 저하, 가정 불화, 건강 악화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피해 해소를 위한 단계적·체계적 대응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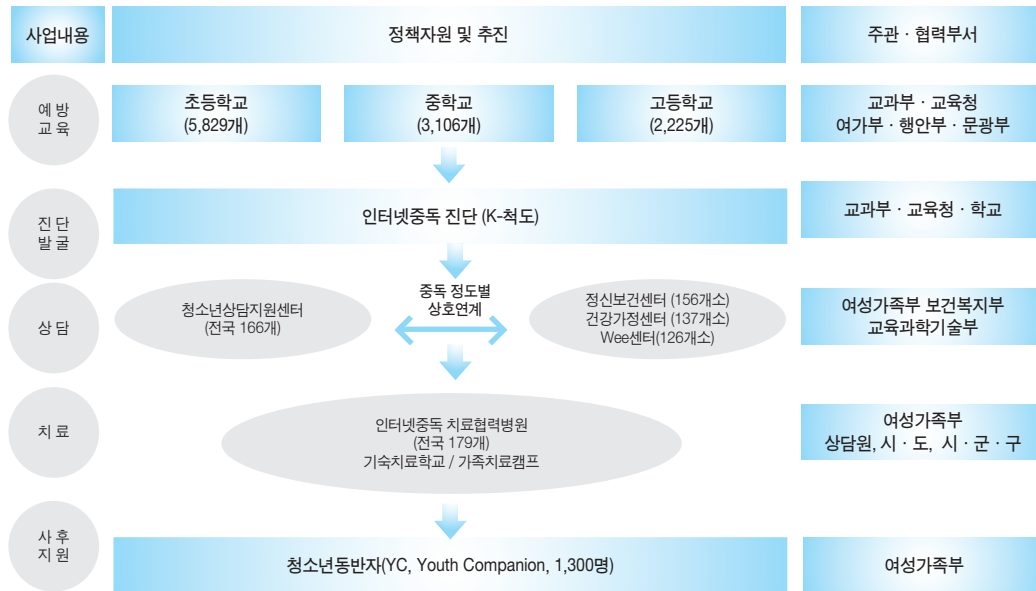
가. 인터넷중독 대응체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중독 대응정책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의 주요한 분야로서, 이를 위한 상호보완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 잠재적인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상담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중심으로 2010년 현재, 전국 16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연결하여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둘째, 심각한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해 전국 156개소의 정신보건센터 및 179개 치료협력 병원 연계를 통한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치료 기반 확대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허브로 하는 인터넷중독 대응 지역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자체, 교육청,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협력망을 통하여 지역내의 인터넷 중독 대응 기관간 연계·협력은 물론, 지역내 인터넷중독 청소년에 대한 조기 진단 발굴 및 상담·치료 등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및 상담실적은 위기청소년안전망(CYS-Net) 시스템에 연계하여 지역별 중독해소 서비스지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림 6-4-1] 여성가족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 추진 체계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0)

나. 인터넷중독 치료-재활 사업 추진

심각한 인터넷중독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치료 · 재활기반이 현저히 부족하여 국민적 고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와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는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프로파일 연구와 중독 청소년에 대한 장단기적 서비스의 총괄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2005년부터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기반 조성 및 임상적 치료-재활 모델개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1차 년도인 2005년에는 서울시를 시범지역으로 정하여 4대 권역에 각각 4개의 중심센터(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연세대병원, 중앙대병원) 및 협력병원 8개소를 치료 · 재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심각한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심층적 개인심리치료, 입원치료 및 가족치료, 공존 질환치료, 집단치료모델을 개발하였다.

2006년에는 이 사업에서 개발된 치료모델을 수정 및 보완하여 매뉴얼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

국 협력병원의 전문의들에게 인터넷중독 치료 모델을 교육시키는 등 치료 인력의 전문화를 꾀하였다. 또한 서울지역에 국한되었던 치료협력병원을 전국 64개 병원으로 확대하여, 전국의 대상 청소년들에게 좀 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7년에는 지역협력망 내에서 상담과 치료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전국 16개 시·도 96개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원을 확대하고, 국제심포지움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치료모델을 국제적으로 공유한 바 있다.

다. 특정학령기 인터넷 중독 진단 전수조사 실시

여성가족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통한 예방 강화에 초점을 두고, 2009년부터 특정학령기 인터넷이용습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전수조사는 2009년 초등 4년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에는 초등 4년, 중등 1년 12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11년부터는 초등 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등 총 186만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학령기간 동안 최소 3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인터넷 이용습관을 점검하여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중독을 조기 진단하여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라. 인터넷중독 위험단계별 상담·치료 지원

(1) 위험단계별 맞춤형 상담·치료 지원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단계별로 예방교육 및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전수조사를 통한 1차 선별결과를 근거로 지역 상담지원센터에서 위험군에 대한 공존질환 등 추가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고위험군 대상으로는 개인상담 및 병원치료 연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만원 이내 치료비 지원, 일반계층 30만원 이내)등을 지원하며, 잠재위험군 대상으로는 집단상담, 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인터넷중독 극복 특화 프로그램 운영

인터넷중독에 대한 상담·치료 이외에 인터넷에 몰입 혹은 중독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놀이 문화, 또래경험, 토론, 가족들과의 대화,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상담 및 등을 통해 인터넷중독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심각한 인터넷 중독을 호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주 과정의 “기숙형 치료

학교” 과정을 운영하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2주간의 합숙을 통해 인터넷과 단절한 채 자아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중독 해소의 의지를 북돋웠다. 치료학교 종료 후에도 해당 청소년과 YC(청소년동반자)를 1:1로 연계하여 치료효과를 유지하고 인터넷 중독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 상담과 생활점검을 통한 도움을 주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 기숙형 치료학교인 “인터넷레스큐스쿨”은 해마다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과 지지를 받아 매년 그 운영을 확대하여 2009년에는 전국 4개 권역에서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국에서 7회에 걸쳐 11박 1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2011년에는 총 8회에 걸쳐 160명 대상으로 11박 12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외에도 가족들의 이해와 협력이 치료·재활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청소년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기캠프인 “가족치료캠프”를 2006년부터 실시하였는데 특히 부모들이 적극 참여하여, 캠프 이후에도 정기적 모임을 갖는 등 인터넷 중독 치료에 긍정적인 모델로 성장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특화된 프로그램은 치료효과가 평균 50%를 넘으며, 만족도도 90%이상 얻는 등 지역단위로의 확대도 요구되고 있다.

마. 인터넷중독 상담 전문성 및 대응 강화

(1) 인터넷중독 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

인터넷중독 및 게임중독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및 온라인 게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06년 상반기에 청소년상담사를 위한 인터넷중독 전문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06년 200여명의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교육을 실시하였고, 2007년에는 급증한 인터넷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동반자, 학교상담사 등 총 30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치료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전문화를 기하였다.

2008년부터는 매년 상담지원센터, 청소년상담사, 정신보건센터,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중독상담·치료전문가 과정을 신규 및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등 인터넷중독 대응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에 노력하여 2008년 478명, 2009년 472명, 2010년에는 총 502명의 상담인력을 양성하였으며, 2011년에는 총 500명의 상담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2)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상담 실시

청소년인터넷중독에 대한 상담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중심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 면접 상담(9시~18시)을 원하는 경우 전국 16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을 추진하면서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매체인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상담에 대한 거리감을 허물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중독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www.kyci.or.kr)에 접속하면 사이버상담(9시~21시)을 통해 비밀상담, 채팅상담을 받을 수 있고, 휴대폰 문자서비스 수신번호에 #1388을 누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바.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청소년보호법 개정(2011.5.19 개정, 2011.11.20 시행)에 따라 16세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0시~6시)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청소년들을 인터넷게임 중독으로부터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UN아동권리협약에서 권장하는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수면권, 건강권)를 보장하는 제도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소하는데 있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청소년보호법 개정(2011.5.19 개정)에 따라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피해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피해 청소년의 발굴을 위한 진단,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교육·상담, 피해 청소년의 예방 등을 위한 다양 프로그램 개발, 치료·재활 지원을 위한 협력병원 지정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2.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 지원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및 게임 이용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매체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규범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버세계에서의 행동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가정과 학교에서만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대두된 바, 업계자율정화활동이 그 예이다.

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시스템의 구축

업계의 자율정화활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청소년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인 청소년에게 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모니터링, 감독 등 내부정화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정화시스템은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약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기준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확보하고, 청소년보호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미지를 개선하여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자율의지의 실현이다. 또한, 법위반 행위 예방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차단과 청소년보호법 준수에 노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이버윤리지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이버 세상을 한층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나. 사이버윤리지수평가 실시

사이버윤리지수평가의 실시는 국가기관, 사업자, 시민사회단체가 사이버 상에서의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사이버윤리지수를 이용한 사업자의 윤리수준의 측정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유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요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P2P사이트, UCC사이트 등 광범위한 참여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매체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사업이다.

사이버윤리지수는 2006년 6월 개발된 구성방법을 근간으로 인터넷 업계의 도움을 받아 업계의 사이버윤리 수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객관지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율적 평가자료를 근거로 한 자체평가지표, 시민을 대표하는 평가단의 평가를 근거로 한 이용자평가지표 등 3가지 수준으로 측정된다.

2010년에는 평가대상을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의무업체’로 확대하여 총 67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 의무업체인 포털·게임·동영상·파일공유·스포츠지 사이트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2011년은 2010년과 마찬가지로 실수요자인 수용자가 중심이 되는 평가체제를 유지하여 청소년보호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 청소년보호책임자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인터넷사업자 및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과 자율정화 의지를 제고하고자 2007년부터 인터넷·게임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각 사업체에서 청소년보호를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개발자, 프로그래머 등 모든 분야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청소년보호법 해설, 유해매체물의 심의 절차 기준, 고시제도 등의 강의를 청취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청소년보호 의식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사업장 방문을 통해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분야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향후에는 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자단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라. 사업자의 자율정화 지원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이어서 사이버 상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와 사업자의 협력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지원하고 불법 및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고객센터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게임업체의 자율규약선언, 이동통신사의 성인서비스 중단 등의 청소년보호정책이 사업자의 자발적인 정화활동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자율정화 활동은 앞으로도 법이나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하여 청소년을 유해매체물 피해로부터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

제5장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1. 성매매 대상청소년의 선도보호(재범방지교육)

가. 성매매 대상청소년 현황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청소년성매매 행위자 및 업주 등을 검거하였으며, 대상청소년은 검찰에 송치하였다. 성매매 대상청소년의 교육과정 이수제도를 도입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시행(2006년 6월 30일)에 따라 동 제도의 추진을 위하여 성매매 대상청소년 전원을 입건하도록 한 대검찰청 수사지침에 따라 2006년에 비해 2007년 대상 청소년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청소년 성매매 단속이 저조함에 따라 성매매 대상청소년 숫자는 감소추세에 있다.

〈표 6-5-1〉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단위 : 건, 명)

연도별	검거인원	검 거 대 상 별			조 치	
		행위자	업주 등 관련자	대상 청소년	구속	불구속
2005	1,946	1,611	305	30	295	1,651
2006	1,745	1,502	183	60	149	1,596
2007	2,582	1,835	242	505	126	2,456
2008	2,112	1,464	196	452	81	2,031
2009	2,182	1,543	264	375	125	2,057
2010	1,345	972	164	209	56	1,289

자료 : 경찰청(2011)

청소년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로는 여전히 인터넷이 가장 많았고, 2005년~2007년 기승을 부리던 티켓다방, 스포츠마사지 등에서의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최근에는 거의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2〉 청소년 성매매 최초 성립장소 유형

(단위 : 건)

연도별	계	인터넷	유흥단란	티켓다방	스포츠마사지	기 타
2005	1,139	924	23	7	62	123
2006	744	590	1	5	50	98
2007	839	701	7	47	2	82
2008	815	590	20	17	1	187
2010	528	414	14	4	4	92

자료 : 경찰청(2011)

나. 성매매 대상청소년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 대상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검사가 성매매 대상청소년에게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 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40시간)을 개발하고 전국에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교육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 중이며, 법적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은 성매매 대상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교육 강화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지원에 두고 있다. 주된 서비스 내용은 검사의 교육·상담과정 이수명령자 및 경찰에 의해 발견된 성매매 대상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5박 6일 동안 24시간 숙식을 함께 하며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성교육, 역할극, 문화 활동, 진로탐색 등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후 의료·법률·학업·자립·자활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2011년 현재 1개의 중앙센터 및 10개의 권역별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표 6-5-3> 교육과정 및 운영기관

교육과정	교육대상	운영기관
40시간	■ 검찰의 교육상담수강 결정 통보자 ■ 경찰의 대상청소년 발견 통보자	■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인천성산사랑의집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춘천길잡이의집 (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 대전광역시 여자청소년 쉼터 (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 광주YWCA (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전북여성인권센터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 대구여성회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2주	■ 지적 장애를 가진 성매매 대상청소년	■ 평화의 샘 (평화위기청소년센터)
중앙지원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료 : 여성가족부(2011)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서비스 목표는 청소년들이 ‘미래 가능성과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써,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청소년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발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진로계획을 설계하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탈성매매를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미래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성과 주체성을 기르는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40시간 교육으로 구성되는데 크게 사전준비, 심리검사(MMPI), 관계형성프로그램(나를 소개합니다, 만남프로그램, 행복쿠키, Let's go, 소개 및 관계형성), 치유 및 치료프로그램(심리치료, 동작치료, 푸드아트 세라피, 역할치료), 성주체성향상 1 - 성교육, 치료프로그램, 자존감향상프로그램(개인브랜드 가치, 칭찬프로그램), 성주체성향상 2 - 섹슈얼리티(섹슈얼리티 알기), 성교육(성주체성), 관계형성 2(비즈리본공예, 가출이데아, 영화속 나 만나기, 너를 보여줘, 문화체험활동), 사회통합1(자원봉사), 탈성매매(백분토론, 성매매바로알기), 사회통합2(미래꿈길 찾기, 직업체험), 미래설계, 수료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5-4> 참고).

〈표 6-5-4〉 교육프로그램 구성

분 야	프 로 그 램	비 고
심리진단	MMPI, 문장완성검사, 홀랜드검사, HTP, MBTI	5시간
치유 및 치료	동작치료, 미술치료, 푸드아트세라피, 부인과검진	6시간
탈성매매	백분토론, 탈성매매여성과의 만남, 성매매 바로알기,	5시간
자존감 향상	이미지메이킹, 행복한 페미니즘과 놀기, 인권감수성훈련, 여성인사만나기, 여성학	6시간
성주체성향상	Sexuality 점검하기, Sexuality 만들기, 성교육, 역할극, 잘못된 성문화 바라보기	6시간
사회통합	대학방문, 진로탐색, 직업탐색(체험), 여성인사만나기 자원봉사활동, 의사소통 능력기르기	6시간
여가활동	영화관람, 노래방, 아이스링크, 클라이밍	6시간

자료 : 여성가족부, 위기교육센터교육프로그램 매뉴얼 미간행 내부자료, 2008.

그동안 교육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6-5-5〉 교육실시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중앙 센터	40시간 교육									지적 장애	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북		
2006	24	—	20	10	26	—	—	—	—	—	14	94
2007	108	5	58	62	47	—	—	—	—	—	25	305
2008	—	45	47	45	43	—	—	—	—	—	25	205
2009	—	44	43	36	39	34	42	—	—	—	17	255
2010	—	52	60	40	48	29	46	50	18	—	29	372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

가.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목적과 의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등의 성범죄는 그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줌과 동시에 지속적인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2000년 7월 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 6월 30일에 개정·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 2월 4일에 다시 법을 개정·시행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0년 1월 1일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서 열람에서 인터넷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고(2010년 4월 15일부터는 20년간 등록관리 되고 있다.),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자는 10년 이내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열람제도는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법이 만들어져 시행되었다. 미국은 1994년 제이콥웨터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을 만들어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6년 메간법(The Megan's Act)을 만들어 열람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또한 2006년에 아담월쉬아동보호 및 안전법(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을 제정하여, 일반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미국내 성폭력전과자들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각 주별로 운영되던 등록·열람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드루소딘 국가 성범죄자 공개 웹사이트」(Dru Sjodin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를 만들어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종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①강간 ②강제추행 ③성을 사는 행위 ④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 ⑤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⑥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⑦알선영업행위 등이 해당된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등록대상이 되는 위반법률은 상기의 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형법」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 제305조 및 제339조까지,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 및 제6호의 죄를 위반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사가 인정하는 자는 열람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열람명령을 선고받으면 등록대상자가 된다.

다. 신상정보 등록 내용 및 절차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등록정보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등록대상자임과 등록정보를 제출하라는 고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등록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는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실제 거주지 ④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⑥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이다. 주소나 직장, 소유 차량 등이 바뀐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바뀐 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 변경 등록하여야 하며 사진은 1년 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는 관할경찰서 및 교정시설에서 확인 후 여성가족부에 보내진다. 여성가족부는 각 경찰서와 교정시설로부터 받은 신상정보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일자를 등록대상자에게 통보해 준다. 여성가족부는 등록된 신상정보를 10년간(2010년 4월 15일 부터는 20년간) 보존·관리하고(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서 제외된다). 등록기간이 지난 신상정보는 즉시 폐기하며,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여성가족부는 등록정보를 지역주민의 열람에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라. 신상정보 열람제도

범죄발생일자를 기준으로 2008년 2월 4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열람대상자 결정 명령)는 법원이 하게 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열람 명령”이라고 한다)을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열람대상자는 ①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이 법에 따른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③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제외된다. 열람정보의 내용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이다. 열람은 경찰서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권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열람할 수 있다.

마. 신상정보 공개제도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공개대상자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 명령”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여야 한다. 공개대상자는 ①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010년 4월 15일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②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③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기간은 징역·금고 3년 초과와 경우 10년, 징역·금고 3년 이하의 경우 5년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제외된다. 공개정보의 내용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 사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이다.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공개된다. 공개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위 '라' 항의 신상정보 열람자에 대해서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에서만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일반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 이와 같은 신상정보의 열람제한으로 성범죄의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 판결을 받아 열람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바.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2011년 1월 1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지역주민 우편고지제도가 도입되어 우편으로 고지정보서를 발송하게 되며, 고지대상자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고지정보를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 명령”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여야 한다. 고지대상자는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②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는다. 고지기간은 공개명령 기간 동안이며, 고지정보의 내용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사진, 아동·청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소년대상 성범죄 요지이다. 고지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실제주소지 읍·면·동 행정구역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를 대상으로 고지정보서 1부를 우편으로 송부하게 된다.

사. 신상정보 등록·공개대상자 현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등록이 완료된 자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167명이고, 공개명령이 선고되어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사람은 151명이다.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2006년 6월 30일~2008년 2월 3일까지는 5년)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운영 또는 취업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으로는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보육시설, 아동시설, 아동·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아동·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체육시설 등 24만여 개 시설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2010년 4월 15일부터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는 조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조회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조회대상자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및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임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인·허가증 등과 기관장의 신분증이다.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조회대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조회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회신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제한자가 법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취업 중인 자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거나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폐쇄를 요구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제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는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②「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③「아동복지법」 제14조의 아동복지시설 ④「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 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⑦「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⑧「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⑨「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같은 법 제19조의 한가족복지시설 ⑩「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⑪「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⑫「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 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⑬「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⑭「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⑮「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 2의 청소년

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가 해당된다.

아울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4.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

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립목적 및 의의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전국 16개 시·도에 2007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도록 하여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아동·청소년대상의 성교육시설인 청소년성문화센터는 ‘Education’ 과 ‘Entertainment’ 개념을 혼합한 ‘Edutainment’ 라는 신개념의 성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Sexuality’ 를 재미와 감동이 함께 하는 놀이터로 이미지화 하였다.

나. 추진배경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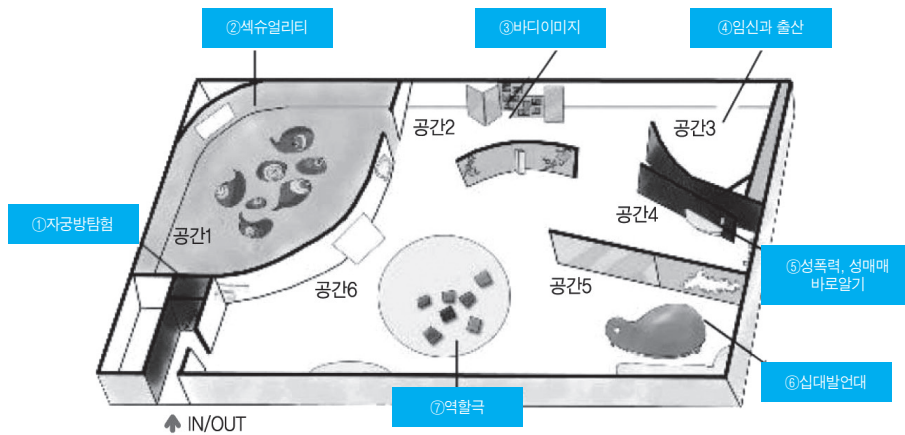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성인물, 음란성 게임, 미디어 또는 또래를 통해 얻고 있는데 반해 기존 학교의 성교육은 이론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되어 그 효과성이 결여됨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멀티미디어와 다양한 설치물을 활용한 참여형 성교육이 실시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한정된 지역에서만 교육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청소년정책자문위원회 성문화분과위원회가 전국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사업시행을 여성가족부에 건의(2006년 7월)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성

문화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7년 여성가족부 소관 정부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다.

2007년 4월 민간성교육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립추진단에 의해 표준콘텐츠 및 운영매뉴얼이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콘텐츠를 갖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6-5-1] 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 배치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0)

2011년에는 45인승 버스를 개조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주요 콘텐츠를 탑재하여 농·산·어촌 등에 찾아가는 성교육이 가능한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과 사업내용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은 시청각적, 참여적 성교육 및 실천지침 성격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재조명 및 대안 마련,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적 체험형태의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과 관련 정보 제공, 성교육 관련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성교육 센터로서의 인프라 구축 등이다.

사업내용은 대상별, 연령별 전문 성교육 실시(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청소년성교육 실시,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전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으로 성 비행 및

성범죄 예방, 인형극을 이용한 성교육 실시 등)와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유치원, 각급학교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출장 성교육 실시, 청소년성교육 캠프 등 특별기획사업 추진 등), 그리고 지역 내 성교육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관리(성교육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구축, 청소년성문화동아리 지원 및 자원 활동가 조직·관리) 등이다.

라.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현황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에 전국 16개 시·도 단위에 16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기존 일부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던 참여형 성교육관 5개소도 계속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12월 현재 3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6-5-6〉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7	6	3	1	2	1	2	1	3	3	2	1	4	3	2	1	2

자료 : 여성가족부(2011)

〈표 6-5-7〉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현황

시도	기관명(38개소)
서울(6)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광진구),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송파구), 탁틴청소년성문화센터(서대문구), 아해청소년성문화센터(영등포구),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도봉구), 하림이청소년성문화센터(성북구)
부산(3)	부산청소년성문화센터(사상구), 놀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동래구),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금정구)
인천(1)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대전(1)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중구)
대구(2)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달서구), 대구아름 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광주(2)	광주청소년성문화센터(북구), 광주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광산구)
울산(1)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경기(3)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 와~(안산시),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딸콩달콩' (파주시),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부천시)
강원(3)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춘천시), 강릉청소년성문화센터(강릉시),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원주시)
충북(2)	충북청소년성문화센터(청주시), 충주호암청소년성문화센터(충주시)
충남(1)	충남청소년성문화센터(천안시)
전북(4)	전주청소년성문화센터(전주시), 군산청소년성문화센터(군산시), 정읍청소년성문화센터(정읍시), 익산청소년성문화센터(익산시)
전남(3)	목포청소년성문화센터(목포시), 여수청소년성문화센터(여주시), 전남청소년성문화센터(완도군)
경북(2)	경북청소년성문화센터(김천시), 새들청소년성문화센터(포항시)
경남(1)	경남청소년성문화센터(사천시)
제주(2)	서귀포청소년성문화센터(서귀포시),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제주시)

자료 : 여성가족부(2011)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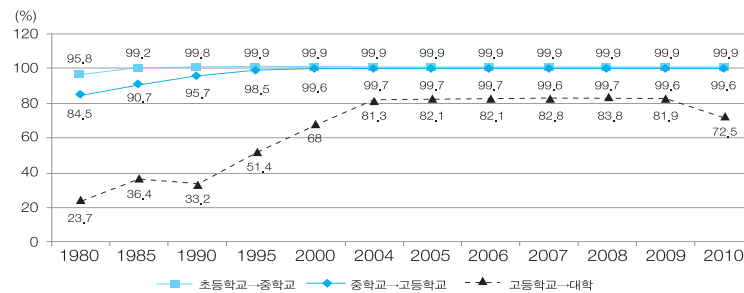
제 9 부

제 10 부

제 7 부

1995년 50%를 넘어선 대학 진학률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까지 80% 초반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에 들어서면서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 35.7%에 불과했던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2010년에도 63.7%로 증가상태이지만,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2000년 84.6%에서 2010년 72.5%로 감소하여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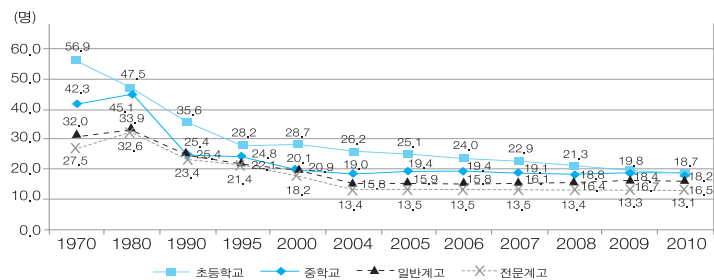
학교급별 진학률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010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8.7명, 중학교 18.2명, 일반계 고등학교 16.5명, 전문계 고등학교 13.1명이다. 2009년에 비해 초등학교는 1.1명 감소하였고 중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역시 미미한 수준이지만 감소하여 교육여건이 향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추이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제7부

청소년의 교육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제1장 | 학교교육 현황
- 제2장 |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 제3장 | 교육복지정책

제1장 학교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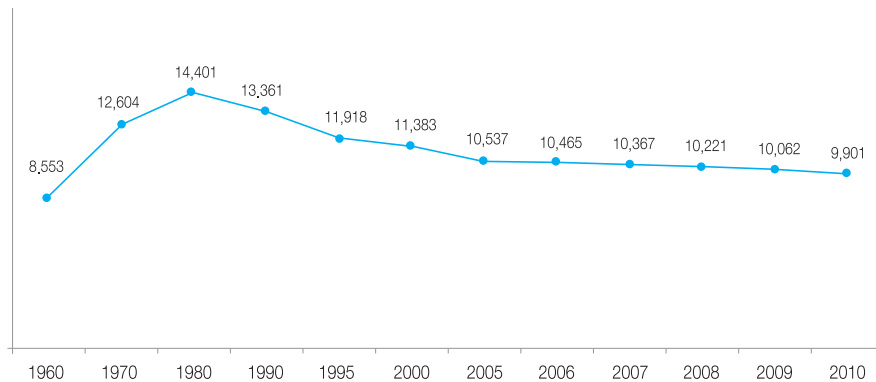
1. 학령인구

2010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9,901천명으로, 1980년(14,401천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 기준 학령인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11세(초등학교)가 3,297천명, 12~14세(중학교)가 1,962천명, 15~17세(고등학교)가 2,069천명, 18~21세(대학)는 2,574천명이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학령인구는 1970년대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그림 7-1-1] 학령인구

(단위 : 천명)



주 : 6~21세 기준.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표 7-1-1〉 학령인구

(단위 : 천명)

년도	계 (6~21세)	6~11세 (초등학교)	12~14세 (중학교)	15~17세 (고등학교)	18~21세 (대학교)
1960	8,553	3,629	1,566	1,417	1,941
1970	12,604	5,711	2,574	2,101	2,218
1980	14,401	5,499	2,599	2,671	3,632
1990	13,361	4,786	2,317	2,595	3,663
1995	11,918	3,901	2,443	2,349	3,225
2000	11,383	4,073	1,869	2,166	3,275
2005	10,575	4,016	2,058	1,864	2,637
2006	10,465	3,923	2,093	1,908	2,541
2007	10,367	3,806	2,095	1,971	2,495
2008	10,221	3,643	2,071	2,032	2,475
2009	10,062	3,464	2,025	2,067	2,506
2010	9,901	3,297	1,962	2,069	2,574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2. 학생인구 및 학교수

2010년 현재 학교급별 재학생수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3,299,094명, 중학생은 1,974,798명, 고등학생은 1,496,227명이다. 초등학교 재학생수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중학생은 2000년 이후 소폭으로 증가하다 2006년 부터 감소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생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4년 부터 소폭이긴 하나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으며, 전문계 고등학생은 199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 현재 4년제 일반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수는 2,028,841명이며, 교육대학생은 21,618명, 전문대학생은 767,087명이다. 증가추이를 보면 고등교육 인구는 2010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하였다. 2010년 대학생 인구는 1990년 대학생 인구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으며, 1980년에 비해서는 5배나 증가하였다. 대학원생 인구도 1980년 33,939명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86,911명, 2000년에는 229,437명, 2010년에는 316,633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인구의 변화 추이를 볼때, 이들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

하여 향후 고등교육 인구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표 7-1-2〉 학교급별 학생인구

(단위 :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대 학	대학원	교육대학	전문대학	특수학교
1980	5,658,002	2,471,997	932,605	764,187	402,979	33,939	9,425	165,051	8,904
1990	4,868,520	2,275,751	1,473,155	810,651	1,040,166	86,911	15,960	323,825	19,971
1995	3,905,163	2,481,848	1,246,427	911,453	1,187,735	112,728	19,650	569,820	21,607
1996	3,800,540	2,379,983	1,303,874	939,433	1,266,876	127,808	20,439	642,697	21,860
1997	3,783,986	2,180,283	1,376,688	960,037	1,368,461	153,034	20,948	724,741	22,569
1998	3,834,561	2,011,468	1,399,394	927,486	1,477,715	179,773	20,969	801,681	23,256
1999	3,935,537	1,896,956	1,399,389	851,751	1,587,667	204,773	21,323	859,547	23,490
2000	4,019,991	1,860,539	1,324,482	746,986	1,665,398	229,437	20,907	913,273	23,605
2004	4,116,195	1,933,543	1,232,010	514,550	1,836,649	276,918	23,335	897,589	23,876
2005	4,022,801	2,010,704	1,259,792	503,104	1,859,639	282,225	25,141	853,089	23,566
2006	3,925,043	2,075,311	1,281,508	494,349	1,888,436	290,029	25,881	817,994	23,394
2007	3,829,998	2,063,159	1,347,363	494,011	1,919,504	296,576	25,834	795,519	23,147
2008	3,672,207	2,038,611	1,419,486	487,492	1,943,437	301,412	24,116	771,854	23,419
2009	3,474,395	2,006,972	1,484,966	480,826	1,984,043	306,471	22,879	760,929	23,720
2010	3,299,094	1,974,798	1,496,227	466,129	2,028,841	316,633	21,618	767,087	23,85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010년 초등학교 수는 5,854개교로 이는 1980년(6,487개교)보다 633개교가 줄어든 것이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중학교 수는 3,130개교로 1980년(2,100개교)보다 1,030개교가 늘어났다. 2010년 고등학교 수는 총 2,253개교로 전문계 고등학교는 1980년 605개교에서 2010년 692개교로 늘어났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1980년 748개교에서 2010년 1,561개교로 크게 증가하였다.

대학교는 1980년에 96개교이던 것이 2010년 179개교로 약 1.9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전문대학교는 1980년 128개교에서 2010년 145개교로 늘어났으나, 각각 2007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다. 특수학교는 1980년 57개교에서 2010년 150개교로 2배 이상 늘었으나 최근에는 매우 더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7-1-3〉 학교급별 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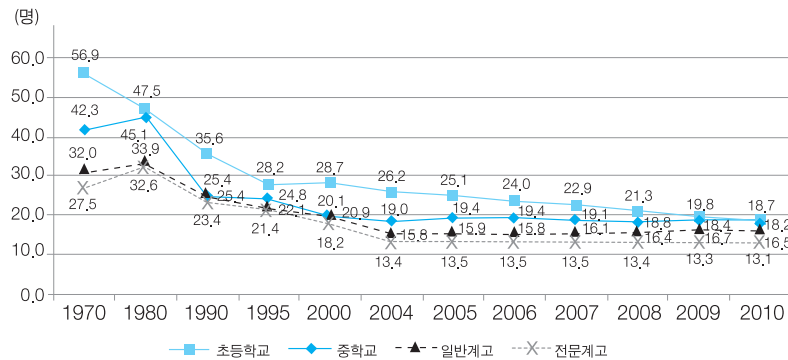
(단위 : 개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 학 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대학	전 문 대학교	특수학교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1980	6,487	2,100	1,353	748	605	96	121	11	128	57
1990	6,335	2,474	1,683	1,096	587	118	298	11	117	104
1995	5,772	2,683	1,830	1,068	762	142	421	11	145	108
2000	5,267	2,731	1,957	1,193	764	172	829	11	158	129
2004	5,541	2,888	2,080	1,351	729	182	1,030	11	158	141
2005	5,646	2,935	2,095	1,382	713	184	1,051	11	158	142
2006	5,733	2,999	2,144	1,437	707	186	1,051	11	152	143
2007	5,756	3,032	2,159	1,457	702	186	1,042	11	148	144
2008	5,813	3,077	2,190	1,493	697	185	1,055	10	147	149
2009	5,829	3,106	2,225	1,534	691	188	1,115	10	146	150
2010	5,854	3,130	2,253	1,561	692	179	1,138	10	145	15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010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8.7명, 중학교 18.2명, 일반계 고등학교 16.5명, 전문계 고등학교 13.1명이다. 2000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10명, 중학교는 1.9명, 일반계 고등학교는 4.4명, 전문계 고등학교는 5.1명이 줄어들었다.

[그림 7-1-2] 교원 1인당 학생수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7-1-4〉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 명)

년도	초등학교	중 학교	고 등 학 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1970	56.9	42.3	32.0	27.5
1980	47.5	45.1	33.9	32.6
1990	35.6	25.4	25.4	23.4
1995	28.2	24.8	22.1	21.4
2000	28.7	20.1	20.9	18.2
2004	26.2	19.0	15.8	13.4
2005	25.1	19.4	15.9	13.5
2006	24.0	19.4	15.8	13.5
2007	22.9	19.1	16.1	13.5
2008	21.3	18.8	16.4	13.4
2009	19.8	18.4	16.7	13.3
2010	18.7	18.2	16.5	13.1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3. 조기유학 현황

국외 교육기관에서의 수학을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해외이주 또는 부모의 해외파견으로 인해 동행하여 출국하는 경우 제외)한 초·중·고 학생 수는 2009학년도(2009년 3월 1일~2010년 2월 29일)기준으로 총 18,118명이다. 이 중 초등학생이 8,369명, 중학생이 5,723명, 고등학생이 4,026명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007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09년에는 전년 대비 33.8%가 감소하였다.

〈표 7-1-5〉 연도별 · 학교급별 출국 현황

(단위 : 명)

년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합 계
2001	2,107	3,171	2,666	7,944
2002	3,464	3,301	3,367	10,132
2003	4,052	3,674	2,772	10,498
2004	6,276	5,568	4,602	16,446
2005	8,148	6,670	5,582	20,400
2006	13,814	9,246	6,451	29,511
2007	12,341	9,201	6,126	27,668
2008	12,531	8,888	5,930	27,349
2009	8,369	5,723	4,026	18,11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0)

4.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2010년 5월 기준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는 23개교이며, 특성화 중학교는 9개교가 설립 · 운영되고 있다. 2010년 대안교육 특성화 중 · 고등학교 학생 수는 3,565명으로 이는 2009년 3,410명에 비해 155명 증가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수는 물론, 학생 수, 교원 수 모두 증가하고 있어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7-1-6〉 대안교육 특성화 중 · 고등학교 현황

(단위 : 개교,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고등학교	21	1,917	271	21	2,154	306	21	2,218	324	21	2,436	322	23	2,558	356
중 학교	7	567	62	8	669	86	8	766	95	8	974	94	9	1,007	109
합 계	28	2,438	333	29	2,823	392	29	2,984	419	29	3,410	416	32	3,565	46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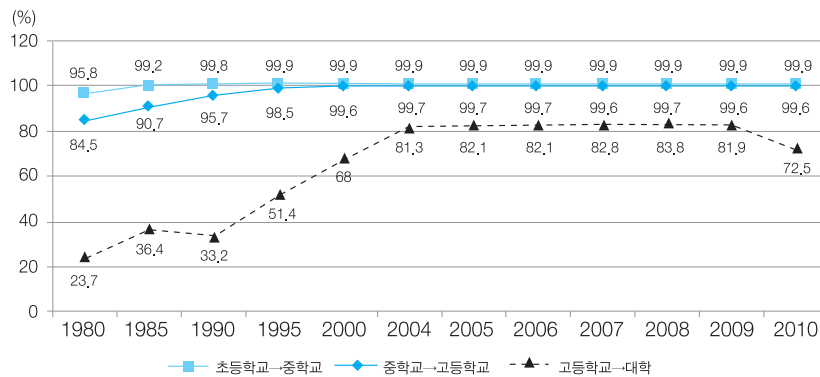
5. 진학률

2010년 현재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율은 99.9%이며,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6%로 2000년 이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72.5%로, 2009년에 비해 9.4%p 감소하였으나 1990년의 33.2%에 비해 39.3%p 증가한 것으로 고등교육 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 유형별 대학 진학률을 보면 2000년 35.7%에 불과했던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2010년에도 63.7%로 증가상태이지만,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2000년 84.6%에서 2010년 75.2%로 감소하여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7-1-3] 학교 급별 진학률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7-1-7〉 학교 급별 진학률¹⁾

(단위 : %)

	초등학교 →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학교 → 대학 ²⁾		
	계	계	계	일반계	전문계
1980	95.8	84.5	23.7	39.2	5.0
1985	99.2	90.7	36.4	53.8	9.9
1990	99.8	95.7	33.2	47.2	6.3
1995	99.9	98.5	51.4	72.8	17.2
2000	99.9	99.6	68.0	84.6	35.7
2004	99.9	99.7	81.3	89.8	57.3
2005	99.9	99.7	82.1	88.3	62.0
2006	99.9	99.7	82.1	87.5	68.6
2007	99.9	99.6	82.8	87.1	71.5
2008	99.9	99.7	83.8	87.9	72.9
2009	99.9	99.6	81.9	84.9	73.5
2010	99.9	99.6	72.5	75.2	63.7

주 : 1) 진학률 = (상급학교 진학자 수/졸업생 수)×100, 기타학교 진학 포함.

2) 전문대학, 일반대학, 교육대학 등 포함.

3)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0이 넘으므로 절사하였음.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6. 교육재정

가.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 부처 예산

2010년도 교육 부처의 예산은 41조 6,275억원으로 1980년 약 1조 992억원, 1990년의 약 5조 624억원에 이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 부처 예산은 19.6%로 교육 부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표 7-1-8〉 연도별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 부처 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정부예산(A)	교육과학기술부예산(B)	비 율 (B/A)
1970	446,273,301	78,478,212	17.6
1980	5,804,061,441	1,099,159,170	18.9
1990	22,689,432,968	5,062,431,258	22.3
2000	93,937,057,000	19,172,027,920	20.4
2001	102,528,518,000	20,034,364,710	19.5
2002	113,898,884,000	22,278,357,817	19.6
2003	120,477,623,000	24,404,401,310	20.3
2004	126,991,802,000	26,399,680,082	20.8
2005	134,370,378,000	27,982,002,000	20.8
2006	144,807,610,439	29,127,258,513	20.1
2007	156,517,719,000	31,044,747,984	19.8
2008	183,515,764,000	35,897,425,012	19.6
2009	214,563,409,000	38,696,405,000	18.0
2010	211,992,599,000	41,627,519,000	19.6

주 : 1) 정부예산 = 일반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3)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은 교육분야 예산 현황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나. GDP 대비 교육재정

2009년도 교육예산은 38조 7,000여억원이었으며, 2010년 예산계획은 37조 8,000여억원이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2007년에 3.5%, 2008년 3.7%, 2009년 3.8%로 미미하나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3.2%로 GDP 대비 교육예산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9〉 GDP대비 교육재정

(단위 : 조원)

		2007	2008	2009	2010
교육	유아 및 초·중·등	27.4	30.8	33.9	32.1
	고등교육	3.6	4.2	4.2	5.1
	평생교육	0.3	0.4	0.5	0.5
	교육일반	0.1	0.2	0.1	0.1
	소계	31.4	35.6	38.7	37.8
GDP규모		906.3	961.8	1,025.6	1,172.80
GDP대비비율		3.5%	3.7%	3.8%	3.2%

주 : 2010년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개요.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I」, 「2010년도 예산안 분석 IV」.

다.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

OECD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0(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7년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5.7%보다 1.3%p가 높은 7.0% 수준이다. 그러나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구성비율은 4.2%로 OECD 국가 전체 평균인 4.8%보다 낮은 수준이며, 학부모부담 비중은 OECD 국가 전체 평균보다 1.9%p 높은 2.8%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7-1-10〉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2007)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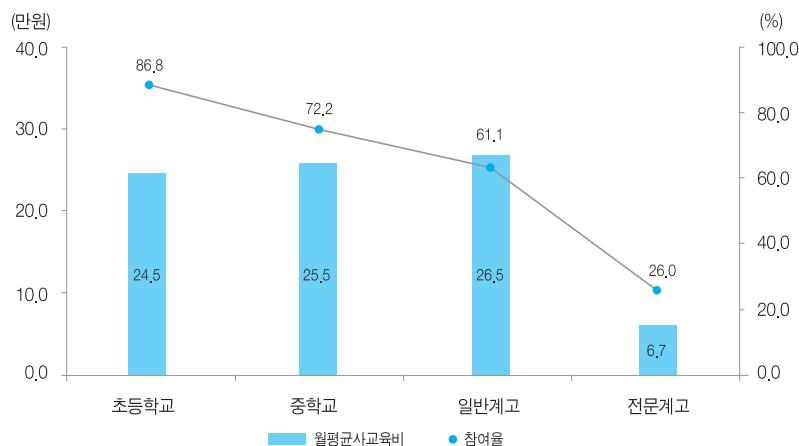
구 분	OECD평균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 공교육비/GDP	5.7	7.0	7.6	6.0	4.7	5.8	4.9
■ 정부부담	4.8	4.2	5.0	5.5	4.0	5.2	3.3
■ 학부모부담	0.9	2.8	2.6	0.4	0.7	0.6	1.6

자료 : OECD, 「2010년 OECD 교육지표」, 2010.

라.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

2010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2009년보다 0.8%p 감소하였고, 사교육 참여율도 73.6%로 전년대비 1.4%p 감소하였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가장 높고,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다.

[그림 7-1-4]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2010)



자료 :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2010.

〈표 7-1-11〉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¹⁾ (만원, %)			사교육 참여율 (% , %p)		
	2009년	2010년	증감률	2009년	2010년	증 감
전 체	24.2	24.0	-0.8	75.0	73.6	-1.4
초등학교	24.5	24.5	0.0	87.4	86.8	-0.6
중학교	26.0	25.5	-1.9	74.3	72.2	-2.1
고등학교	21.7	21.8	0.5	53.8	52.8	-1.0
일반계고	26.9	26.5	-1.5	62.8	61.1	-1.7
전문계고	6.0	6.7	11.7	26.1	26.0	-0.1

주 : 1)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임.
자료 :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2010.

제2장 |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1.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만 15세(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수준 파악 및 소양 수준을 파악하고 소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을 분석하여 각국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3년을 주기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를 추진해 오고 있다. 2009년 평가에는 총 65개국(OECD 회원국가 34개국 포함) 약 470,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57개교의 만 15세 학생 698,272명이 참여하였다.

PISA 2009 결과,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읽기 능력은 OECD 국가 중 1~2위, 수학 1~2위, 과학이 2~4위로 상당히 높은 성취수준을 보이고 있다. 평가 영역별로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표 7-2-1〉 PISA 2009 영역별 순위

읽기 소양				수학적 소양				과학적 소양			
국가명	등수 범위		평균 점수	국가명	등수 범위		평균 점수	국가명	등수 범위		평균 점수
	OECD 국가	전체 국가			OECD 국가	전체 국가			OECD 국가	전체 국가	
상하이 - 중국 ①	-	1	556	상하이 - 중국 ①	-	1	600	상하이 - 중국 ①	-	1	575
대한민국	1~2	2~4	539	싱가포르 ①	-	2	562	핀란드	1	2~3	554
핀란드	1~2	2~4	536	홍콩 - 중국	-	3~4	555	홍콩 - 중국	-	2~3	549
홍콩 - 중국	-	3~4	533	대한민국	1~2	3~6	546	싱가포르 ①	-	4~6	542
싱가포르 ①	-	5~6	526	대만	-	4~7	543	일본	2~3	4~6	539
캐나다	3~4	5~7	524	핀란드	1~3	4~7	541	대한민국	2~4	4~7	538
뉴질랜드	3~5	6~9	521	리히텐슈타인	-	5~9	536	뉴질랜드	3~6	6~9	532
일본	3~6	5~9	520	스위스	2~4	6~9	534	캐나다	4~7	7~10	529
호주	5~7	8~10	515	일본	3~6	8~12	529	에스토니아	4~8	7~11	528
네덜란드	5~13	8~16	508	캐나다	4~6	9~12	527	호주	4~8	7~11	527
벨기에	7~10	10~14	506	네덜란드	3~7	8~13	526	네덜란드	4~11	7~16	522
노르웨이	7~14	10~18	503	마카오 - 중국	-	10~12	525	대만	-	11~15	520
에스토니아	8~17	11~21	501	뉴질랜드	6~8	12~14	519	독일	7~10	10~15	520
스위스	8~17	11~21	501	벨기에	7~11	13~17	515	리히텐슈타인	-	10~16	520
폴란드	8~17	11~22	500	호주	7~11	13~17	514	스위스	8~12	12~17	517
아이슬란드	9~16	12~19	500	독일	8~12	13~17	513	영국	9~13	14~19	514
미국	8~20	11~25	500	미국	21~29	26~36	487	미국	13~22	19~29	502
OECD 국가별 평균			493	OECD 국가별 평균			496	OECD 국가별 평균			501

주 : 1) PISA 점수는 평균이 500점이고 표준편차가 100인 척도 점수임.
 2) OECD에서는 PISA 2006에서 95% 신뢰 수준에서 각 국가의 등수 범위를 제공하고 있음.
 3) ① : PISA 2009부터 PISA 연구에 처음 참여한 국가 및 경제협력 파트너임.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각 영역별 평가결과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읽기 영역에서는 성취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오다 2009년에는 하락했으며, 수학 영역에서는 2003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고 과학 영역에서는 7~13위에서 4~7위로 2006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2000년의 1위, 2003년의 3위에 비해 비교 순위가 낮아졌다.

〈표 7-2-2〉 PISA의 평가영역별 순위 및 평균 비교

PISA 평가 (비교국 수)	읽기 영역		수학 영역		과학 영역		문제 해결력 영역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PISA 2009 (65개국)	2~4	539	3~6	546	4~7	538	해당 사항 없음	
PISA 2006 (57개국)	1	556	1~4	547	7~13	522	해당 사항 없음	
PISA 2003 (40개국)	2	534	3	542	4	538	1	550
PISA PLUS* (41개국)	6	525	3	547	1	552	해당 사항 없음	
PISA 2000 (31개국)	6	525	2	547	1	552	해당 사항 없음	

주 : PISA PLUS : PISA 2000 실시 이후 동 평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1년에 PISA 2000과 같은 평가도구로 평가를 수행하여 PISA 2000 평가결과와 합한 총 41개국의 평가 결과를 분석한 자료(네덜란드, 루마니아는 평가에 참여하였으나 분석에서 제외).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영역별 학생의 수준별 성취 수준을 보면, 읽기는 하위수준인 1수준 이하의 학생 비율이 5.8%(2위)에 불과하고 최상위권인 5수준 이상의 학생비율이 12.9%(6위)로, 하위수준 학생 비율은 변동이 없으나 우수한 성취수준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학은 하위 수준인 1수준 이하의 학생 비율이 8.1%(3위)로 이전에 비해 다소 줄었고, 최상위권인 6수준의 학생 비율은 7.8%(5위)로 다소 낮아졌다. 과학은 하위수준인 1수준 이하의 학생 비율이 6.3%(3위)로 2006년에 비해 감소하여 하위수준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표 7-2-3〉 PISA 영역별 성취수준 변화 추이

(단위 : %)

영역	연구주기 (참여국 수)	PISA 2000 (41개국)	PISA 2003 (40개국)	PISA 2006 (57개국)	PISA 2009 (65개국)
읽기	1수준이하	5.7	6.8	5.7	5.8
	2수준	18.6	16.8	12.5	15.4
	3수준	38.8	33.5	27.2	33.0
	4수준	31.1	30.8	32.7	32.9
	5수준 이상	5.7	12.2	21.7	12.9
수학	1수준이하	해당사항 없음	9.6	8.8	8.1
	2수준		16.6	15.2	15.6
	3수준		24.1	23.5	24.4
	4수준		25.0	25.5	26.3
	5수준		16.7	18.0	17.7
	6수준		8.1	9.1	7.8
과학	1수준이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1.2	6.3
	2수준			21.2	18.5
	3수준			31.8	33.1
	4수준			25.5	30.4
	5수준			9.2	10.5
	6수준			1.1	1.1

주 : PISA 2000(41개국) : PISA 2000(30개국)과 PISA PLUS(11개국)를 합한 자료임.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PISA에서 설정한 읽기에 대한 학습 · 심리 척도 분석 결과, 우리나라 학생의 읽기 학습에 대해 즐겁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0.13%로 OECD 평균 0.1%보다 높아 읽기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읽기에 대한 학습전략 중, 암기와 정교화 전략 역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았으며, 특히 여학생의 암기 및 정교화 전략은 OECD 여학생 평균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제 전략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표 7-2-4〉 PISA 2009에서 읽기에 대한 학습 · 심리 척도 분석 결과

읽기에 대한 학습 · 심리적 척도		대한민국			OECD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읽기태도	즐거움	0.13	0.00	0.27	0.00	-0.31	0.31
	암기	0.08	-0.02	0.19	0.00	-0.09	0.09
읽기 전략	정교화	0.09	0.10	0.08	0.00	0.04	-0.04
	통제	-0.27	-0.34	-0.20	0.00	-0.13	0.14

주 : 각 지수는 표준점수(평균 0, 표준편차 1)임.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2009년 읽기 점수에서의 학교 간, 학교 내 차이는 OECD 평균보다 모두 낮다. 우리나라의 학교간 격차가 설명하는 읽기 점수의 분산은 약 31.6%, 학교 내 차이로 인한 읽기 점수의 분산은 61.0%로 학교 간 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에서의 차이가 OECD 국가들보다 낮아 학교 간, 학교 내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5〉 PISA 2009 읽기 점수에서의 학교 간 및 학교 내 차이

	읽기 점수에서의 OECD 평균 분산 대비 비율(%)		
	전체 분산	학교 간 분산	학교 내 분산
대한민국	72.4	31.6	61.0
OECD	100	41.7	64.5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2.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

통계청의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학생들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매우 만족’ + ‘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은 2000년 41.4%에서 2004년 46.5%, 2008년 51.0%로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나 2010년에는 오히려 46.5%로 감소하였다.

〈표 7-2-6〉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

	2000년			2004년			2008년			2010년		
	만족 (매우 만족 + 약간 만족)	보통	불만 (약간 불만 + 매우 불만)	만족 (매우 만족 + 약간 만족)	보통	불만 (약간 불만 + 매우 불만)	만족 (매우 만족 + 약간 만족)	보통	불만 (약간 불만 + 매우 불만)	만족 (매우 만족 + 약간 만족)	보통	불만 (약간 불만 + 매우 불만)
전반적인 학교생활	41.4	45.5	13.1	46.5	42.0	11.5	51.0	43.1	5.9	46.5	46.6	6.8
교육내용	30.7	48.9	20.4	35.7	48.1	16.2	50.8	39.2	10.0	46.3	43.5	10.2
교우관계	67.7	28.6	3.7	66.6	29.3	4.1	70.0	27.3	2.7	68.4	27.9	3.7
교사(교수)와의 관계	36.2	48.4	15.4	42.6	46.0	11.4	46.9	45.0	8.2	43.9	46.8	9.3
학교시설 및 설비	23.0	35.8	41.2	29.5	39.9	30.6	34.8	40.9	24.3	34.1	42.8	23.1
학교주변 환경	23.4	44.0	32.6	27.6	45.5	26.9	30.7	43.2	26.1	30.0	45.1	24.9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2010.

학교 생활 만족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매우 만족’ + ‘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 30.7%에서 2004년에는 35.7%, 2008년에는 50.8%로 높아지다가, 2010년에는 46.3%로 감소하였다. 교우관계 만족도는 2000년에 67.7%, 2004년에는 66.6%, 2008년에는 70.0%로 소폭 상승하였고, 2010년에는 68.4%로 나타났다. 교사(교수)와의 관계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 (‘매우 만족’ + ‘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에 36.2%이던 것이 2004년에는 42.6%, 2008년에는 46.9%, 2010년에는 43.9%로 나타났다. 학교시설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 (‘매우 만족’ + ‘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 23.0%에서 2004년 29.5%, 2008년 34.8%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 2010년에는 34.1%에 머무르고 있다. 학교주변 환경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 (‘매우 만족’ + ‘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 23.4%에서 2004년 27.6%, 2008년 30.7%, 2010년에는 30.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 시설과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 교육복지정책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가. 추진 목적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교육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불리함을 보완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불리한 학생들의 생활세계 전반에 걸친 교육적 성취에 관심을 갖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이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다각적인 교육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교육적 성취를 도모하고 나아가 능동적 시민 양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사업의 목적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나. 추진 경과 및 현황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2002년 7월에 교육인적자원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도시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을 재원하기로 합의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7개 부처 및 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준비기획단이 발족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 2003년부터 2년 간 시범적으로 서울과 부산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행정동 내 유·초·중학교가 포함된 학교군 단위로 8개 사업지역(zone)을 지정하고, 23개 행정동 내 79교(유치원 34교, 초등학교 29교, 중학교 16교)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5년에는 공모제를 도입하고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광역시 대상 신규 7개 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총 15개 사업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6년에는 사업지역을 인구 25만 이상의 중소 도시로 확대했을 뿐 아니라, 지역의 의미를 물리적 행정동이 아닌 취약집단 밀집 학교군으로 확대하여 16개 시도의 총 30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7년에는 총 60개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2008년 말에는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시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지역으로 하여 2010년 말 현재 총 100개 지역 534개교(초등학교 296개교, 중학교 234개교, 고등학교 4개교)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7-3-1〉 참조).

2010년 1월부터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제도화를 통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 T/F팀을 운영하고 2010년 7월 21일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초·중·고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매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던 사업 재원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사업학교 선정 방식 역시, 지역단위 선정에서 취약집단 학생이 밀집한 단위학교로 전환하여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도 포함시키도록 개선하였으며, 사업 명칭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사업 제도화 절차에 따라 2011년부터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사업학교 선정 기준 및 사업 모델, 예산 배부 기준, 사업 관련 교육 규칙 등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각 시도에서 지역적 특성과 취약집단 실태를 반영한 특성화된 사업 모델을 구안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며 취약집단 학생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7-3-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현황

연 도	2003~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대상 지역	8지역 (서울6,부산2)	15지역 (기존8,신규7)	30지역 (기존15,신규15)	60지역 (기존30,신규30)	60지역 (기존60)	100지역 (기존60,신규40)	100지역 (기존60,신규40)
지원 자격	—	광역시 이상	인구 25만 이상	인구 25만 이상	인구 25만 이상	모든 市	모든 市
학교수 (초·중·고)	45교 (초29,중16)	82교 (초50,중32)	163교 (초99,중61,고3)	322교 (초187, 중132,고3)	322교 (초187, 중132,고3)	538교 (초304, 중230,고4)	534교 (초296, 중234,고4)
학생수 ¹⁾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수)	40,707명 (4,758명)	75,189명 (9,765명)	153,178명 (16,719명)	326,826명 ²⁾ (35,110명)	304,464명 (27,904명)	490,081 (40,275)	452,467명 (35,725명)
지원액 (특별교부금) (대응투자)	238억원 (238억원) —	160억원 (110억원) (50억원)	359억원 (209억원) (150억원)	642억원 (374억원) (268억원)	514억원 (248억원) (266억원)	866억원 (504억원) (282억원)	810억원 (310억원) (417억원)

주 : 1) 유치원 원아를 제외한 초·중·고등학생에 한함.

2) 2007년에는 학생수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학생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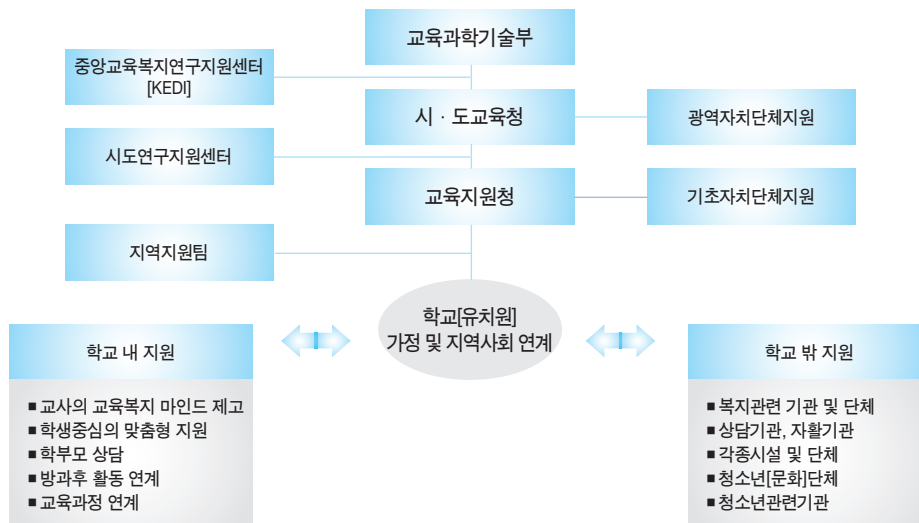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10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2011.

다. 추진 및 지원 체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사업 설계 시부터 추진·지원 체제가 포함된 사업 모델에 따라 추진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 사업전담팀에서 시도 내 사업을 총괄하고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사업전담팀은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학교의 사업을 지원하며 지역 단위 교육복지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사업학교는 교육복지부 등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부장교사를 중심으로 불리한 학생 발굴, 학생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지역 자원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을 포함하여 교육지원청과 사업학교의 전담팀(부서)에는 프로젝트조정자 또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불리는 민간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담당하며 학교 안팎에서 불리한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제로 중앙연구지원센터와 시도연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중앙연구지원센터(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센터)에서는 사업의 기본 방향과 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사업 운영 과정·결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 사업 핵심 인력 연수, 전문적 연구, 성과분석,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도연구지원센터는 지역 사업 운영의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 현장 컨설팅, 사업 관련 인력 연수, 자체 평가 및 환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7-3-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 체제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2년 발행 예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렇게 합니다」.

라. 사업 내용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취약집단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집단 아동·청소년을 발굴, 지원,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즉 학교 내에서 취약집단 학생을 발굴하고, 학교 내외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자원을 개발하여 이들에게 연계할 뿐 아니라, 담임교사, 프로그램 담당교사, 학교의 전담부서, 지역사회기관 담당자 등과의 교류 협력을 취약집단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학교를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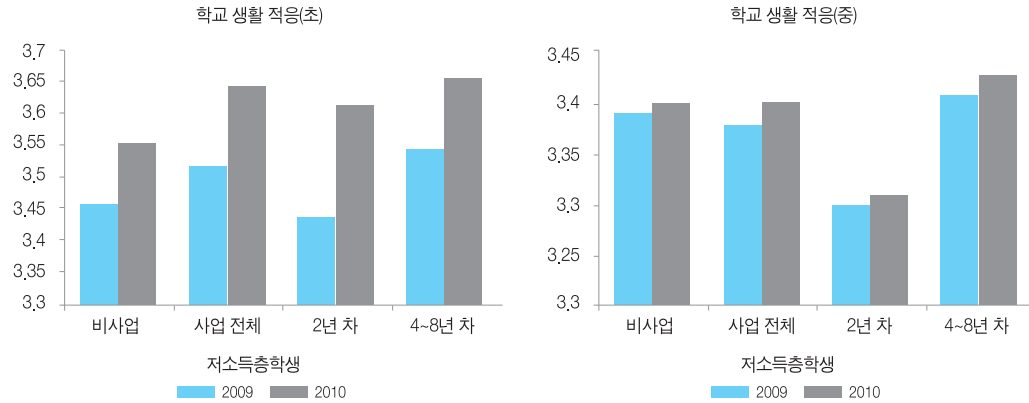
또한 이 사업에서는 불리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학습 결손 예방 및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하여 학습역량을 증진시키고, 문화예술의 체험을 통해 경험의 질을 고양시키며, 건강한 신체와 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취약집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각 학교별로 교육청 및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실태에 맞게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마. 사업 효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센터에서는 2009년부터 3년 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중단적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하여 학생과 학교 차원에서 나타나는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2차년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사업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이나 정서발달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방란 외, 2011).

다음 [그림 7-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학교와 비사업학교 저소득층의 학교 생활 적응도를 비교해 보면, 교육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학교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도가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년도 대비 학교 생활 적응도의 향상 폭 역시 비사업학교에 비해 사업학교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복지지원사업이 불리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이나 정서발달에 많은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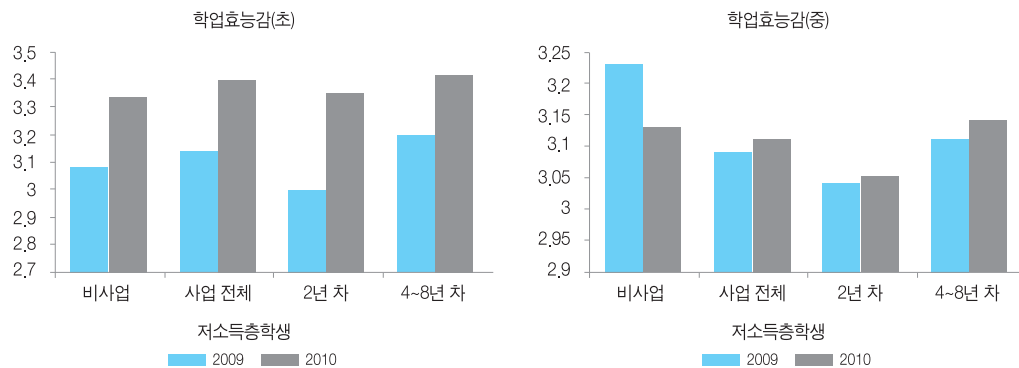
[그림 7-3-2] 학교생활적응



자료 : 류방란 외(2011), 교 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중단적 효과분석 연구(2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또한, 학업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학업효능감은 학생과 비교해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7-3-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사업학교 학생의 학업효능감이 사업학교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나, 전년 대비 향상율을 보면, 비사업학교는 학업효능감이 낮아진 반면 사업학교는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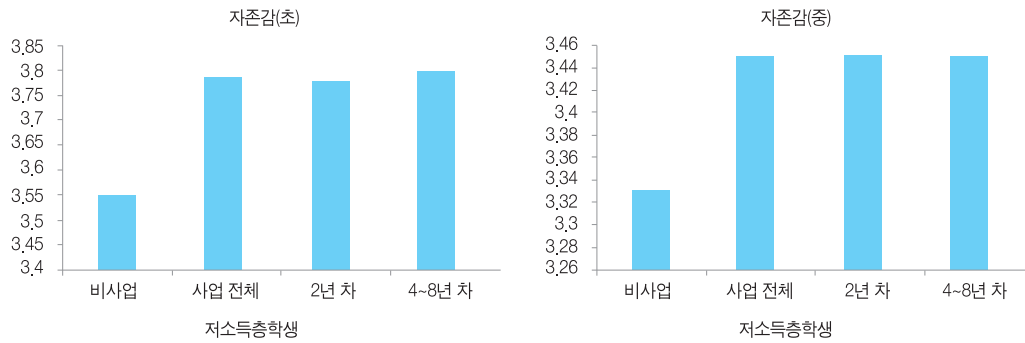
[그림 7-3-3] 학업효능감



자료 : 류방란 외(2011), 교 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중단적 효과분석 연구(2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2010년도 추가 조사한 자존감의 경우 역시 교육복지우선 사업의 효과를 드러내 준다. 초·중학교 모두 사업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이 비사업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에 비해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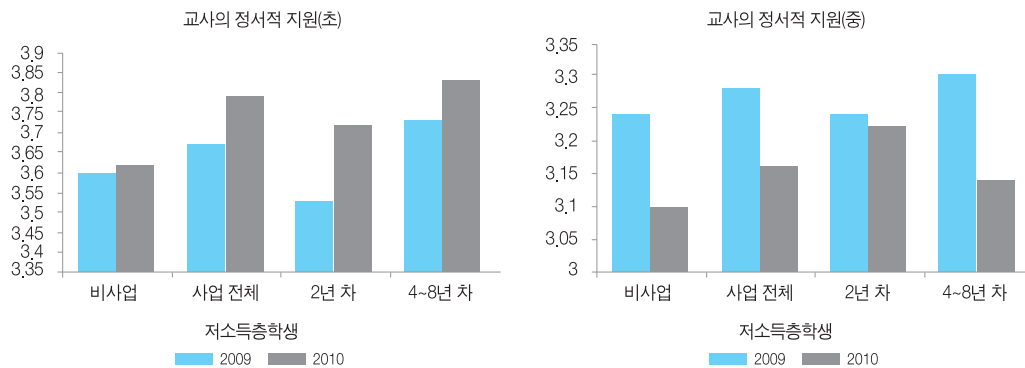
[그림 7-3-4] 자존감



자료 : 류방란 외(201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종단적 효과분석 연구(2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이러한 학생들의 긍정적 변화 뒤에는 교사들의 노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학교 교사들은 비사업학교 교사들에 비해 학생을 이해하고 고민을 들어주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주는 등 정서적 지원에 매우 적극적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계속될 수록 교사들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비사업학교에 비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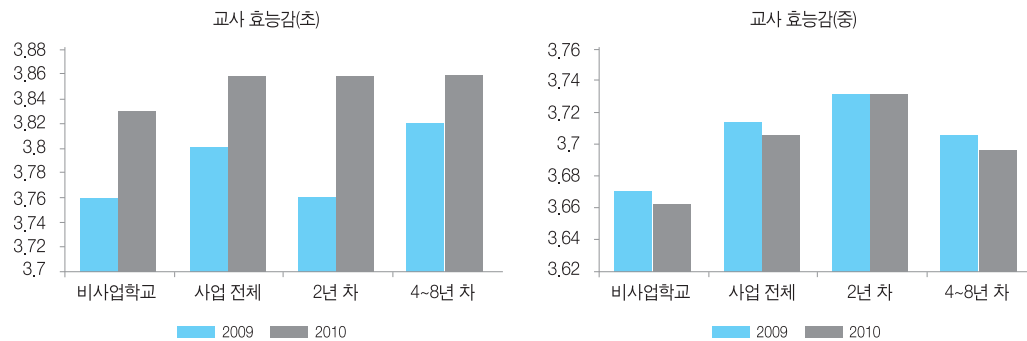
[그림 7-3-5] 교사의 정서적 지원



자료 : 류방란 외(201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종단적 효과분석 연구(2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사가 학생의 학습과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지각과 믿음을 의미하는 교사효능감 역시 사업학교의 교사들이 비사업학교 교사들에 비해 높다는 것을 다음 [그림 7-3-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3-6] 교사효능감



자료 : 류방란 외(201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종단적 효과분석 연구(2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만큼 조기지원을 통한 효과 제고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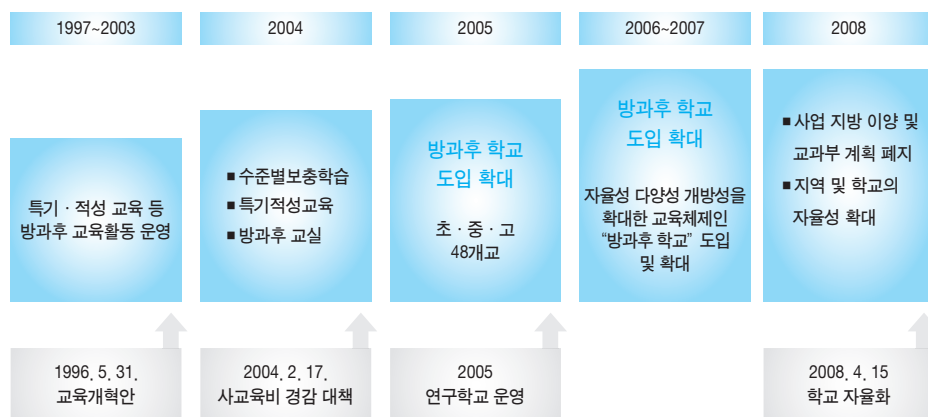
이밖에도 이 사업을 통하여 학교, 학생, 지역사회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와 우수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사업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2011년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하여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관심 하에 시도별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2. 방과후학교

가. 방과후학교의 성격 및 주요 정책

방과후학교는 수요자(학생·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 활동을 말한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던 방과후 교실(초), 특기·적성 교육(초·중·고), 수준별 보충학습(중·고)을 2006년 부터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단위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수업외에 시간에 교과, 특기·적성, 보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수요자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수강하는 방식으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위해서 국가, 지역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림 7-3-7] 방과후학교 변천 과정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0)

방과후학교는 「방과후학교에서 누구나 최고의 다양한 학습을」이라는 비전 아래 ‘학교 교육 기능보완’,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실현’, ‘학교의 지역사회화’ 라는 4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표 7-3-2〉 방과후학교의 정책 목표

목 표	추진 내용
학교 교육 기능 보완	■ 정규 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 -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잠재력 계발 및 인성·창의성 신장
사교육비 경감	■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
교육복지 실현	■ 계층간·지역간 교육 격차 완화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학교의 지역사회화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및 지자체·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0)

방과후학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7-3-3〉 방과후학교의 특징

구 분	내용
운영주체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중심이 되어 단위학교 자율로 운영 ■ 교육감이 수립한 시·도별 계획에 따라 외부기관(대학, 영리·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에 프로그램 위탁 운영 가능
지도강사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과 강사 간 계약에 의해 강사 채용 ■ 현직 교원, 전문가, 학원 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 ■ 단위학교가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교육대상 및 장소	■ 교육 대상 : 본교 재학생, 타교 학생 등 ■ 교육 장소 : 본교, 인근 학교 및 지역의 다양한 시설 활용
프로그램	■ 학생·학부모의 요구 및 지역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개설·운영하며,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 최대 보장 ■ 프로그램 유형 : 초등 보육, 특기·적성, 수준별·무학년 교과, 인성·창의성 계발 등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0)

정부는 취약 계층·지역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1)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정부는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읍·면이 있는 시·군에 예산을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총액으로 지원하며, 각 지역은 여건에 맞게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차량운영비, 시설 및 기자재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정부는 2006년 19개 군, 2007년 89개 시·군이 지원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농산어촌 지역 전체(140개 군 및 도·농복합시)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16,210학급(학년당 평균 2학급 미만 학교에 지원)에 학급당 연 2,596천원, 총 421억원을 지원하였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은 대부분의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2010년 전국 평균 참여율이 63.3%이고, 도시농어촌지역의 학생참여율이 60.9%인데 비해,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참여율은 77.2%로 나타났다.

〈표 7-3-4〉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연도	2007	2008	2009	2010
예산	500억원	528억원	382억원	421억원
지원학급수	—	14,645	14,605	16,21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2011.

〈표 7-3-5〉 지역별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단위 : %)

연도	2008	2009	2010
도시	52.0	54.7	60.9
농산어촌	67.8	74.1	77.2
전국	54.2	57.6	63.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행복한 방과후학교(홍보리플렛), 2011.

(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바우처의 일종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수강료를 지불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어려우므로,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유수강권은 ①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 지원되며, ②소년소녀 가장, 새터민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 수용 학생과 ③기타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생들은 물론,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에게도 제공된다.

2006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이후, 2007년 본격적으로 실시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

원액 및 지원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7년에는 24만명의 지원대상 학생에게 767억원이 지원되었다. 2010년에는 39만명에게 1,109억원을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학생 1인당 지원액도 연간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증액되었다.

〈표 7-3-6〉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만명, 만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예산	767억원	987억원	1,063억원	1,109억원
대상학생수	24만명	32만명	35만명	39만명
1인당지원액	연 30만원	연 30만원	연 30만원	연 36만원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2011.

(3) 초등돌봄교실 지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방과 후와 주말, 방학 중에 안전하게 보호·지도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발달하도록 돕기 위해 방과후학교에서는 돌봄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주로 운영되며, 맞벌이 가정 자녀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초등 돌봄 프로그램은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설비로 리모델링한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실시된다. 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력이 과제지도, 놀이지도, 상담, 소질개발, 인성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수 및 교실수, 참여학생수는 제시된 〈표 7-3-7〉과 같다. 2010년 6월 현재 전국 5,117개 학교에, 6,200개의 돌봄교실이 있으며 104,496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표 7-3-7〉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단위 : 명, 개)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운영학교수	1,421	2,275	2,716	3,413	5,117
운영교실수	1,631	2,491	3,030	3,819	6,200
참여학생수	31,788	43,720	51,110	66,691	104,496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2011.

(4) 대학생 멘토링

대학생 멘토링(Mentoring)은 소외계층 초·중·고 학생(Mentee)들을 대학생(Mentor)과 연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대학생 멘토링은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개별 학습 및 인성 지도를 통해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6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07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대학생 멘토링은 대학생 멘토와 소수의 소외계층 초·중·고 학생 간의 연결 및 정기적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학생 멘토 1인이 소수의 멘티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기초학습 및 교과지도, 특기·적성 지도, 진로 및 학교생활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멘토 활동비는 멘토링 횟수·시간·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되며, 활동비 지급 외에도 교·사대 등 대학과 연계·협력하여 봉사학점 등으로 인정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주중에 하는 일반 멘토링 및 방학 중에 하는 귀향 멘토링을 실시한다. 귀향 멘토링은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방학 중 고향을 방문하여 후배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서, 대학생 멘토 모집이 쉽지 않은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실시된다. 2010년 6월 현재 전국에서 13,231명의 대학생 멘토가 58,366명의 초·중등학생(멘티)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8〉 대학생 멘토링 운영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멘토수	3,654	10,838	9,050	9,983	13,231
멘티수	10,007	46,732	33,665	39,920	58,366

자료 : 김홍원외(2010), 2010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나. 방과후학교의 주요 성과

(1) 학생참여율

2010년 6월 현재 전국 99.9%의 학교에서 63.3%의 학생(4,573,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학생 참여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7-3-9〉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단위 :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학교 참여율	99.9	99.8	99.9	99.9	99.9
학생 참여율	42.7	49.8	54.3	57.6	63.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2011.

(2) 강좌 현황

2010년 6월 현재, 교과 강좌 338,891개, 특기·적성 강좌 156,074개, 총 494,965개의 방과후 학교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행 초기인 2006년에 비해 3.8배나 증가하였다. 2010년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3.4개의 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며, 월 평균 부담액은 26,293원으로 나타났다.

〈표 7-3-10〉 방과후학교 강좌 운영 현황

(단위 : 개)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교과프로그램	75,651	90,813	117,534	161,348	338,891
특기적성프로그램	54,850	68,403	112,885	124,581	156,074
계	130,501	159,216	230,339	285,929	494,96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2011.

강좌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수학 관련이 1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영어관련 17.5%, 국어관련 14.5%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수학 관련 강좌가 전체 1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컴퓨터 관련(14.2%), 영어 관련(14.1%), 음악(10.0%), 국어(9.5%)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영어(18.8%)와 수학(17.6%), 국어(14.8%)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수학(20.6%), 영어(20.5%), 국어(2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7-3-11〉 내용별 강좌현황

(단위 : %)

구분	국어 관련	사회 관련	수학 관련	과학 관련	영어 관련	제2외국어 관련	컴퓨터 관련	음악 관련	미술 관련	체육 관련	기타	계
초등학교	9.5	1.8	15.8	8.1	14.1	1.7	14.2	10.0	9.3	7.6	7.8	100.0
중학교	14.8	13.4	17.6	14.2	18.8	1.9	1.2	4.6	2.4	4.6	6.5	100.0
일반계고	20.2	19.0	20.6	16.4	20.5	0.5	0.2	0.5	0.3	0.8	0.9	100.0
기타고	15.0	7.7	15.4	4.8	17.1	2.1	12.6	3.0	2.9	3.3	15.9	100.0
총계	14.5	10.6	17.8	12.1	17.5	1.4	6.3	5.2	4.3	4.5	5.9	100.0

자료 : 김홍원외(2010), 2010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3) 강사 구성

2010년 6월 현재, 총 274,842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현직교사가 67.2%, 외부강사가 3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좌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기·적성 강좌의 강사는 현직교사가 30.8%, 외부강사가 69.2%로 외부강사의 비율이 높은 반면, 교과 강

좌의 경우에는 현직교사가 87.8%, 외부강사가 12.2%로 현직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12〉 방과후학교 강사 구성 현황

(단위 : 명, %)

강좌 유형	현직교사		외부강사		계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수(명)	비율(%)
특기 · 적성	30,522	30.8	68,588	69.2	99,110	100.0
교과	154,309	87.8	21,423	12.2	175,732	100.0
계	184,831	67.2	90,011	32.8	274,842	100.0

자료 : 김홍원의(2010), 2010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3. 농산어촌 지역 교육

가. 농산어촌 교육정책

교육복지국가 건설을 내세운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의 실시로 교육복지 종합대책(1996, 1997)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초기 교육복지 종합대책에는 특수 교육 대상자, 학교 중도 탈락자, 학습부진아, 귀국학생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수립되어, 농산어촌 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복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 아래 농산어촌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들이 나타났다. 이들 주요 사업 내용은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시범사업’, ‘1군 1우수고등학교 육성’, ‘소규모 학교간 통합 운영’, ‘농어촌교육특별법의 제정 추진’, ‘농·어촌 수당 신설, 주거 편의 제공, 인 사상 우대, 연수기회 부여 방안 추진’, ‘도서벽지사택보수비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정책’, ‘농·어촌학생 대학특별전형’,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확대’, ‘자영농과 생 급식비 지원’ 등이다.

이어서,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농촌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특별법에 따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제1차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의 4대 부분 중점 과제가 선정되었다. 제1차 5개년 기본계획에 의거하

여 2005년부터 5년간 3.1조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위의 정책 추진과 함께, 2008년에는 「농산어촌 통합형 교육복지 모델 구상」 연구가 수행되어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통합형 교육복지 전략’이 제안되었고 이에 기반한 ‘농산어촌 교육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농산어촌 교육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기본 방향은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다. 첫째, 농산어촌 학교·지역의 특색을 살린 자생적 교육역량 강화로 가고 싶은 농촌 학교의 육성, 둘째,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추진 역량 및 지역교육청의 조정·지원 기능 강화다. 이에 따라 당초에는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과 농산어촌 K-2학교 육성, 농산어촌 유학 시범학교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실행과정에서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와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으로 변경·실시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농산어촌의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정규 교육과정의 내실화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본래 학교가 갖고 있는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생력이 있는 농산어촌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나.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현재 농·림·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1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농산어촌의 인구는 물론 학생 이탈로 인한 학교의 소규모화,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곤란 등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여건의 악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교육 여건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초·중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모델을 만들고자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란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자율학교로서, 자연친화적 환경과 e-러닝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영어 등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산어촌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모델학교를 말한다. 또한, 전원학교는 자연체험 학습장·생태연못·산책로 등 자연친화적 시설과 전자칠판·IP TV 등을 갖춘 첨단 e-러닝 교실을 구축하여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와 학교 간 강력한 연계 하에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1) 임연기·최준열·양병찬·박삼철(2008), 농산어촌 통합형 교육복지 모델 구상,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농산어촌교육발전센터.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의 시설·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전원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2009년 7월에 도교육청 소속 면에 소재하는 학생 수 60명~200명 사이의 초·중학교 110개교를 지정하였고, 2010년에는 통폐합 본교와 연계하여 30개교를 추가 지정하였다.

〈표 7-3-13〉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정 현황

(단위: 개)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선정학교수	17	10	7	18	13	16	12	15	2	110	
유형	A	9	5	4	8	6	8	7	7	1	55
	B	5	3	2	6	5	4	3	5	—	33
	C	3	2	1	4	2	4	2	3	1	22

주: A-type(종합 지원학교), B-type(시설비 지원학교), C-type(프로그램 지원학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농산어촌 전원학교 선정 결과 발표, 2009.

특히, 전원학교는 지원 유형을 달리하여 지원하고 있다. 먼저 A타입은 종합 지원학교로 시설비와 프로그램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B타입은 시설비 지원학교로 자연친화적·첨단 e-러닝 교실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한다. C타입은 프로그램 지원학교로 강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한다. 연도별 지원비를 살펴보면, 2009년 790억 원, 2010년 570억 원, 2011년 33억 원 등 총 1,393억 원이 투입되었다.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A타입 826억 원, B타입 248억 원, C타입 99억 원이다. 이 외, 모든 전원학교에 첨단 e-러닝교실 설치비 220억 원이 2009년 지원되었다.

〈표 7-3-14〉 농산어촌 전원학교 연도별 사업비

(단위: 억 원)

구분	'09	'10	'11	계
■첨단 e-러닝교실	220	-	-	220
■종합 지원학교(A type)	413	413		826
■시설비 지원 학교(B type)	124	124		248
■프로그램 지원 학교(C type)	33	33	33	99
계	790	570	33	1,39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추진계획, 2009.

이와 같은 대형 재정지원에 따른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의하면, 전체

학교의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보다 전원학교 학생의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전년 대비 기초학력미달 비율 감소폭 역시 전원학교에서 크게 나타나 전원학교 지원이 기초학력미달 학생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표 7-3-15〉 농산어촌 전원학교 학교급별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단위 : %)

학교유형		초6					중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초학력 미달비율	전원학교	0.9	1.2	0.7	1.0	1.1	3.4	6.3	7.8	7.6	6.3
	전체학교	1.2	1.5	1.2	1.5	2.1	3.2	6.5	6.1	8.1	3.9
기초학력미달비율 감소폭	전원학교	1.6	0.0	1.3	0.2	0.3	1.1	0.2	7.2	-1.2	0.6
	전체학교	1.1	-0.2	0.1	-0.3	-0.3	1.4	1.1	4.8	-0.4	1.1

주 : 감소폭 = 전년도 기초미달 비율 - 금년도 기초미달 비율 / (-)값은 기초미달 비율이 늘어난 것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 2010.

또한, 농산어촌 전원학교의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에서 발표한 2010년도 사업 성과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원학교 초·중학교의 전체 학생수는 2009년 대비 104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점진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농산어촌 전원학교가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원학교가 공교육의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지역 학교를 다니면서 사교육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의 벽을 극복하고 나아가 농산어촌 지역의 미래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인재육성의 산실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유지 혹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의 접근을 독려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성과분석의 결과 학교가 통제할 수 없는 정책적 요인보다는, 학교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공동체로서 지역사회학교가 마을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보다 자율성을 갖고 운영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임연기 · 정택희 · 강대식 · 히고 코우세이, 2010 전원학교 성과분석,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2011

다.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농산어촌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시는 물론 해당 군의 읍지역 등으로 학생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읍보다 작은 면지역의 학교에는 가정이 제대로 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중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에서는 농산어촌 학생에게 학기중, 주말, 방학중에 학습결손을 치유하고, 돌봄 기능이 열악한 가정을 대신해 학교와 지역이 연계하여 학습과 생활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009년에 전국의 면지역에 소재하는 378개의 학교(유24, 초222, 중126, 고6)를 선정하였으나, 2010년에는 전원학교로 지정된 일부 학교를 조정하여 총 383개의 학교(유24, 초225, 중128, 고6)를 선정·지원하였다.

〈표 7-3-16〉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지정 현황

(단위 : 개, 개소)

시·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지역수	1	1	2	1	4	11	9	9	8	17	13	10	86
학교수	10	2	9	2	15	55	47	44	39	47	77	36	38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10년도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계획, 2010.

또한, 2009년에는 378교에 298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기본 지원액에 2009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차등 지원액을 포함하여 총 230억 원(지원금 140억 원, 대응투자 90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7-3-17〉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사업비 지원

(단위 : 백만원)

시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군 개수	1	1	2	1	4	11	9	9	8	17	13	10	86
기본	295.5	267	365	235	727	1,675	1,475.5	1,415	1,180	2,137	2,142	1,545	13,459
차등	15	3	24	0	25	32	111	50	41	66	126	48	541
총계	310.5	270	389	235	752	1,707	1,586.5	1,465	1,221	2,203	2,268	1,593	14,000

주 : 대응투자 90억 원은 학교여건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도별 자율배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10년도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계획, 2010.

이처럼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기초학력 향상 및 심리·정서 발달을 도모하는 등 농산어촌 학생에게 따뜻한 돌봄과 실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프로그램(교통, 급식, 건강 지원 등),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 심리·정서 발달 프로그램, 사회·문화적 소양 증진 프로그램, 특기·적성 계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업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연중돌봄학교 운영 관계자에 대한 사업 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의 운영 성과로는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의 감소를 들 수 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의하면, 전체 학교의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보다 연중돌봄학교 학생의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중3 영어 제외), 전년 대비 기초학력미달 비율 감소폭 역시 전원학교 학생들의 경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18〉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학교급별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단위 : %)

학교유형		초6					중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초학력 미달비율	연중 돌봄	0.9	0.8	0.9	0.8	1.5	2.6	5.0	5.3	5.3	4.7
	전체학교	1.2	1.5	1.2	1.5	2.1	3.2	6.5	6.1	8.1	3.9
기초학력 미달비율 감소폭	연중 돌봄	1.2	0.5	0.8	0.3	0.6	2.0	2.1	7.2	0.1	1.6
	전체학교	1.1	-0.2	0.1	-0.3	-0.3	1.4	1.1	4.8	-0.4	1.1

주 : 감소폭 = 전년도 기초미달 비율 - 금년도 기초미달 비율 / (-)값은 기초미달 비율이 늘어난 것임.

자 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 2010.

또한,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의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에서 발표한 2010년도 사업 성과분석 자료에 의하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생 만족도는 80.6점으로 조사되었고, 학부모는 77.5점, 교사는 78.8점이다. 한편, 재학생 수 변화를 살펴보면, 연중돌봄학교 초·중학교의 전체 학생수는 2009년 대비 평균 3.4명이 감소하였으나, 1억 원 이상의 외부 지원을 받지 않는 전국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46개교의 학생 수 변화가 평균 5.5명인 것과 비교했을 때, 학생 수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돌봄과 교육의 기능이 혼합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자아효능감, 특기 및 적성의 인지 등 학습능력, 학교의 사회적

3) 임연기 · 정택희 · 김종두 · 김은경, 2010 연중돌봄학교 성과분석,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2011

지지도에 대한 인식, 정서적 안정성 등 심리·정서적 상태, 인간관계 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공동체 의식 등 사회성과 같은 제반 심리적 특성 검사 결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³⁾

연중돌봄학교 사업은 면지역 소재 2개 이상의 학교(초 1교, 중 1교 포함)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기초지자체와 협약을 요건으로 하여 지역 단위 교육네트워크 구축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면에 소재하는 학교가 지역과 연계하여 교육력을 강화하고, 학생에 대한 365일 교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도·농간의 교육격차가 완화될 것이며, 학생이 도시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본 사업이 궁극적으로 농촌교육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즉, 단위 학교의 프로그램 위주 사업보다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가. 추진 내용

(1)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실태 분석 등 전문적인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07년부터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서울대)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교사용 교수-학습 자료 등을 개발·보급하였다.

(2) 시·도교육청 등 맞춤형 다문화교육 지원

시·도 교육청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험활동, 멘토링, 방과후교실,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사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09년에는 교육청과 지역 내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지원하였으며, 교대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교대생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였다.

(3)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09~’12)」 수립

교과부는 다문화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09~’12)」을 수립(’08.10)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2009~2012)」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학력 향상, 일반학생 등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과제(4대 영역, 14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실행을 위해 4년간 교과부와 교육청은 약 7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4) 외국인 학생 등의 취학 관련 제도 개선

교과부는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등의 국내학교 입학 또는 전학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개정(’08.2.22)하였다.

이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가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였다.

(5)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09년 9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8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참석)가 구성되었다. 주로 반기마다 이루어지는 동 위원회를 통해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 부처 합동) 수립, 부처간 사업 연계·조율 및 협력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6)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실시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 상담한 교사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 심사를 거쳐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실시(’09.11.25)하였고, 수상 교사 등에게는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 워크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나. 2011년 추진계획

교과부는 그간의 추진성과와 연계하여 2011년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다문화에 대한 이해제고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대 등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지역 내 인프라와의 연계·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1)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일대일 멘토링 지원을 확대하여 교사, 퇴직교원, 교대생을 멘토로 활용하였다. 특히 교대생의 멘토링을 위해 근로장학금과 멘토링을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09년 46개교→'10년 60개교→'11년 80개교) 언어·학습·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 중 학기중 멘토링이 어려운 학생, 방학중 다양한 체험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초학습, 특기적성, 문화체험을 위한 방학중 집중 캠프(15~60시간)를 운영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이 부모 출신국의 문화, 언어 등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지식·경험 등을 축적·활용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말·방학을 활용한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11년부터 '13년까지 운영할 것이다.

(2) 다문화교육의 기반 구축

다문화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과부에서는 예비교사 양성, 현직 교원의 연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요원으로 양성 활용하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예비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09년에 교대 등 초등교원 양성대학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을 지원하였고, 10개 대학에서 1,100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 '10년에 이어 '11년에도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 뿐만 아니라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 국립대·사범대학에 동 강좌 개설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현직교원의 다문화교육 이해 제고를 위해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 전문교원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지방에는 교육대학교와 교육청 연수원에서 다문화교육관련 직무 연수 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어와 모국어 등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학부모 인적자원을 선발·교육하여 거점학교 등에 이중언어강사로 배치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다문화가정과의 의사소통, 다문화 이해 확산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 이들을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지원을 위해서도 활용할 계획이다.

(3) 다문화 가정 학부모 지원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자녀교육 상담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센터 혹은 외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부모 상담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통역, 번역 인력 및 관련 장소 협조 등 연계활동을 추진하고 있

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실시하여 '11년 20개소 내외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유아교육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안내 책자를 8개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등)로 번역 제공하고 있다.

(4)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취학 전 아동의 수가 취학아동 수에 비해 훨씬 많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 단계부터 적절한 교육경험 및 상호작용을 제공하여 생애 초기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교과부는 「다문화가정 유아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첫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등 교육기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정보,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아를 위한 기초학습·자아존중감 제고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교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한다.

셋째, 교사와 다문화가정 학부모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유아간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고학력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선발, 집중 교육을 통해 양성하였으며 '11년에 공립 유치원 30곳에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배치 활용할 계획이다.

5.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가. 추진 목적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는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학교, 학업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있다. 입국 초기부터 사회 정착기에 이르기까지 탈북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통합적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6세에서 20세 이하의 탈북 청소년 수는 1999년에 22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부터는 점차 증가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매년 300명 가량의 탈북학생이 남한에 입국하였고 2009년에는 656명, 2010년에는 306명의 수준을 보였다.

〈표 7-3-19〉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 명)

대상 \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전체 (입국자수)	148	312	58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6
6~20세 (입국자수)	22	60	124	211	220	330	224	336	366	378	656	306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통계자료(www.unikorea.go.kr)

2011년 4월 현재 한국에 있는 탈북청소년의 규모는 2,020여명이다. 이 가운데 1,681명은 정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9% 가량에 해당하는 186명은 학교 밖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타 153명은 정규학교나 대안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원 등을 다니며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7-3-20〉 2010년 탈북청소년 수학 현황

('11. 4월 기준)

정규학교			학교 밖 탈북청소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교육시설	기타	
1021명(50.4%)	286명(14.2%)	374명(18.4%)	186명 (9.2%)	153명(7.5%)	2,020명 (100%)
1,681명(83.2%)					

자료 : 교과부, 탈북학생 재학현황 통계, 2011.

남한의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탈북청소년의 규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5년 421명이었던 탈북청소년의 규모는 2011년 4월 1,681명으로 늘어났다.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만 놓고 보면 전체 정규학교 재학학생의 31% 가량에 해당하는 526명이 서울에 있고, 476명이 경기도, 144명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표 7-3-21〉 탈북청소년 정규학교 재학생 수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년	2010	2011
학교재학생 수(6-20세)	421	474	602	966	1,143	1,417	1,681

자료 : 한만길, 탈북청소년 통합적 교육지원, 한국교육개발원, 2011.

다.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방향 및 추진 체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은 탈북청소년의 남한생활 초기적응을 지원하고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해 탈북학생의 정규학교 통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탈북청소년의 정규학교 통합교육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민간 교육시설 등을 통해 학교 밖 탈북학생에 대한 체계적 교육지원을 병행하여 모든 탈북청소년이 교육지원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탈북청소년교육지원 유관기관과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탈북학생이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시·도교육청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특교 지원사업) 및 시도교육청 자체사업을 수행하고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유기적 협력하에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한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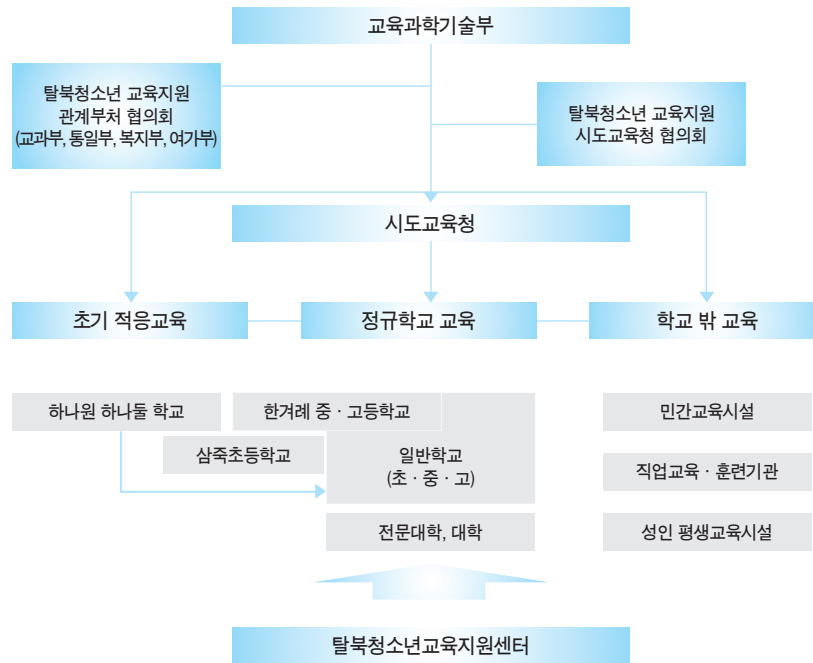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그림 7-3-8]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체계



자료 : 교과부(2010)

라.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현황

지난 2011년 실시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1)초기 적응교육 지원 강화, (2)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3)학교 밖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4)종합적인 교육지원 및 연계 체계 구축의 4대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영역별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초기 적응교육지원 강화

첫째, 남한에 입국한 탈북청소년의 입국초기 단계 교육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적응 교육 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국어, 사회, 수학, 영어 등 총 7개 교과 교육과정이 개발되었고 국어, 사회, 역사 등 총 4종의 교재가 개발·보급되었다. 둘째, 탈북청소년 학력인정 절차가 개선되어, 하나원을 퇴소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학력심의를 실시하여 학력을 인정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빠르게 학교에 편입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한겨레 중고등학교

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정규학교의 탈북청소년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였고 한겨레 중고등학교의 디딤돌 교육 기능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2)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정규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첫째,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1,681명 학생에 대한 1대1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멘토교사가 선정되어 탈북학생의 학습,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대상으로 탈북교사를 파견하여 1대1 학습지도를 실시하여 학력 신장을 지원하였다. 탈북학생이 밀집하여 재학중인 학교 및 지역의 탈북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학생이 20명 이상 재학중인 5개 학교 및 2개 밀집지역에 전담인력을 파견하여 311명의 탈북학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에 대한 교과교육, 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다. 둘째, 탈북학생을 지도하는 정규학교 교사의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연수를 실시하여 300여명의 탈북학생 지도교사 및 관리자가 연수에 참여하였다. 이와 함께 탈북학생 지도를 위한 각종 교재 및 검사도구를 개발하였고, 탈북학생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교사를 위한 자료(매뉴얼 2종)를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맞춤형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사업을 통해 기초학력진단 도구(국어, 수학 총 6종)가 개발되어 중학교 단계에 있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학력 진단 및 학년 배치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 외에 남북한 교과용어 비교 교재, 맞춤형 보충교재(총 12종)와 탈북학생 진로진학교육용 영상자료(1종)가 개발되었다. 또한 탈북전문인력 발굴 및 활용 사업을 통해 탈북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인력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에 활용하였다. 셋째, 진로직업 교육이 강화되어 탈북학생 및 교사용 진로진학 가이드북을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탈북학생 진로진학박람회 및 진로진학 상담을 실시하여 탈북학생의 진로진학을 지원하였다. 더 나아가 탈북대학생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대학생이 초기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넷째, 탈북학부모 역량개발 사업이 실시되어 탈북학부모의 남한사회 적응 및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고 특히 자녀지도를 위한 학부모 매뉴얼이 개발되었다.

(3) 학교 밖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확대

학교 밖 탈북청소년 지원을 위해 첫째, 22개 민간교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교육시설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를 지원하여 전체적으로 민간교육시설의 교육 역량이 강화되었다. 둘째, 민간교육시설 인력에 대한 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민간교육시설 담당자에 대한 합동 워크숍을 통해 탈북청소년 교육지도자로서 필요한 실무 역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량을 강화하였다. 셋째, 민간교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교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민간교육시설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우수한 사례가 전체 민간교육시설에 확산될 수 있게 하였다.

(4) 종합적인 교육지원 및 연계 체제 구축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첫째, 탈북청소년 교육 우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수사례 공모 및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탈북학생 담당 교사 및 전문가 간에 탈북학생 지도 노하우가 공유되었다. 둘째,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어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체제를 구축·운영하였다. 교육포털 및 상담 콜센터가 운영되어 탈북청소년 뿐 아니라 탈북청소년 담당교사, 민간교육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탈북청소년의 적응, 교육지도에 관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셋째,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북한교육, 통일대비 교육통합 관련 연구 및 자료 축적을 통해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보다 전문적,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넷째, 탈북청소년 교육기관·단체 간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 교육청, 복지관 등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유관단체 간에 원활한 소통 및 협의·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다섯째,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가 개발되고 관련 연구가 추진되었다.

마. 성과 및 과제

현재까지 실시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통해 탈북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었다. 이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학업 적응 수준이 향상되었고 결과적으로 탈북청소년의 정규학교 중도탈락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표 7-3-22〉 탈북청소년 중도탈락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명, %)

구 분		초	중	고	계
2008년도	'08. 4. 재학생 수	495	288	183	966
	중도탈락생 수	7	26	26	59
	중도탈락률(%)	1.4	9.0	14.2	6.1
2009년도	'09. 4. 재학생 수	562	305	276	1,143
	중도탈락생 수	5	26	25	56
	중도탈락률(%)	0.9	8.5	9.1	4.9
2010년도	'10. 4. 재학생 수	773	297	347	1,417
	중도탈락생 수	19	13	35	67
	중도탈락률(%)	2.5	4.4	10.1	4.7

주 : 1) 중도탈락률 = 학교급별 ('08년도 중도탈락자 총수 / '08년도 재학생 총수) × 100

2) '07학년도 중도탈락률 : 초 3.5%, 중 12.9%, 고 28.1%.

자료 : 한만길, 탈북청소년 통합적 교육지원, 한국교육개발원,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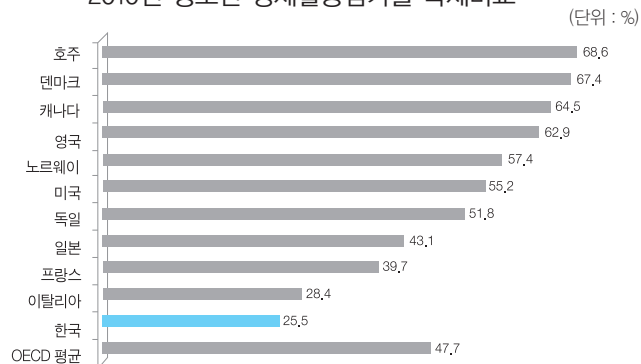
향후 과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지원을 양·질적으로 더욱 향상시켜 탈북청소년의 특성, 적응수준에 따른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입국 초기부터 진로진학 모색단계(대학진학 및 취업)까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특히 새로운 단계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탈북학생 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통해 축적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 교육통합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신장시켜 교육부분의 통일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8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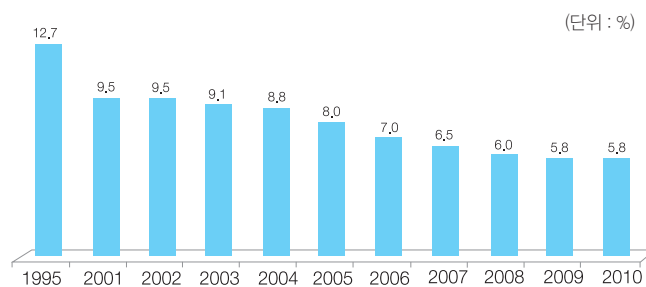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21.9%p 낮은 25.5%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은 청소년 실업률이 20%를 넘고 있는 이탈리아 정도이다. 호주(68.6%)나 덴마크(67.4%), 캐나다(64.5%), 영국(62.9%) 등의 국가들은 60%가 넘는 높은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전체 취업자(2,382만 9천명) 중 청소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8% 수준으로 1995년의 12.7%보다 6.9%p 감소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대학 진학률의 증가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998년 IMF 경제 위기이후 일자리 수가 크게 줄고 고용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총 취업자 중 청소년 취업자의 비율



제8부

청소년과 노동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제1장 |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 제2장 |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 제3장 | 청소년 직업 · 진로정책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152만 5천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25.5%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20.2%, 여자 청소년은 30.4%로 남자 청소년의 군입대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이 늦는 등의 영향으로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61.0%)보다 35.5%p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8-1-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199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경제활동인구 ¹⁾	2,758	2,034	1,807	1,671	1,554	1,507	1,525
▶ 경제활동참가율 ²⁾	36.9	33.3	30.2	28.1	26.3	25.4	25.5
· 남 자	31.2	26.7	24.3	23.1	21.0	20.4	20.2
· 여 자	41.9	39.0	35.5	32.7	31.1	29.9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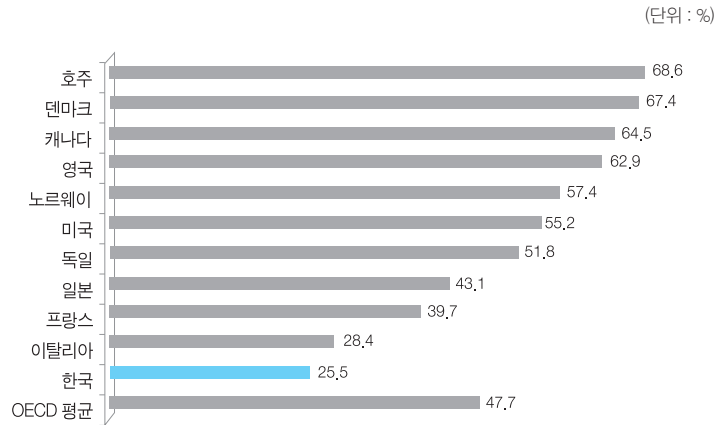
주 : 1)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 이상인 자를 조사하므로 청소년을 15~24세로 하였으며, 현역군인 등은 제외되었음.

2)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표 8-1-1〉에서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36.9%에서 2010년 25.5%로 11.4%p 낮아졌으며 2000년 이후 30%를 유지하다 2007년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성별 추이를 보면 남자 청소년(1995:2010=31.2:20.2)과 여자 청소년(1995:2010=41.9:30.4)의 감속 폭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 진학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전문대 포함)은 1995년 51.4%에서 2001년 70.5%로 증가한 이후 2010년 79.0%로 상승하였다.

[그림 8-1-1] 2010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최하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09년 OECD 국가들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47.4%로 우리나라보다 21.9%p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는 청소년 실업률이 20%를 넘고 있는 이탈리아 정도이다. 호주(68.6%)나 덴마크(67.4%), 캐나다(64.5%), 영국(62.9%) 등의 국가들은 60%가 넘는 높은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8-1-2〉 연령계층별 · 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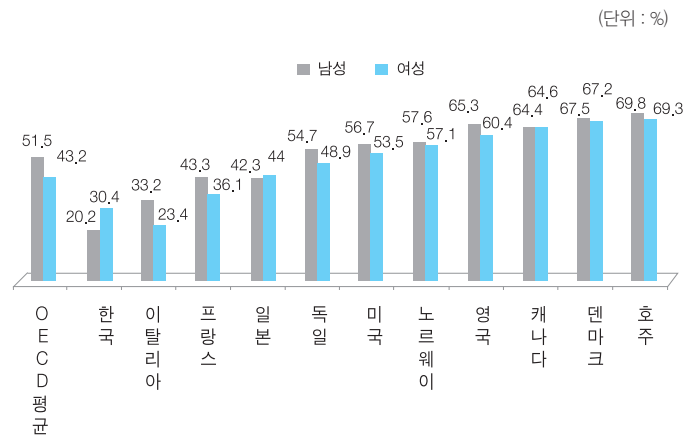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199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5~24세	36.9	33.3	30.2	28.1	26.3	25.4	25.5
남 자	31.2	26.7	24.3	23.1	21.0	20.4	20.2
여 자	41.9	39.0	35.5	32.7	31.1	29.9	30.4
15~19세	12.0	9.1	7.5	7.3	6.5	6.2	6.9
남 자	9.5	8.0	6.3	6.5	5.6	4.9	5.5
여 자	14.5	10.3	8.9	8.1	7.5	7.5	8.5
20~24세	63.1	57.2	54.6	52.6	50.1	49.2	48.9
남 자	58.8	49.8	48.4	47.3	43.9	44.1	42.7
여 자	66.1	62.6	59.1	56.4	54.6	53.0	53.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연령계층별·성별로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15~19세 청소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5년 12.0%에서 2010년 6.9%로 5.1%p 낮아졌으며 20~24세 청소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4.2%p 낮아져 20대 초반 청소년층 참가율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폭으로 참가율이 낮아진 것은 20~24세 남자 청소년들로 1995년 58.8%에서 2010년 42.7%로 16.1%p나 낮아졌다.

[그림 8-1-2] 2010년 청소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군복무로 인해 입대 대기, 대학 졸업이 여자보다 느려지는 등 여자 청소년보다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는 비율이 남성에서 더 높은 영향으로 보인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1.3%p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 청소년은 12.8%p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2010년 15~24세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는 445만 6천명으로 2009년에 비해 2만9천 명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집안에서 가사를 맡고 있는 가정주부를 비롯하여 학생,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등이 포함된다.

육아와 가사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1.8%로 2004년 이후 가장 작은 비중이며, 학교 통학이나 학원 수강 등을 의미하는 재학·수강은 2009년보다는 다소 하락한 87.3%를 기록했다. 연령대의 특성 상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은 학교를 다니거나 학원 수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1-3〉 청소년(15~24세)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별 현황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비 경 제 활 동 인 구		육아 가사		재학 수강		쉬었음		그 외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04년	4,136	100.0	143	3.5	3,527	85.3	173	4.2	293	7.1
2005년	4,079	100.0	90	2.2	3,488	85.5	185	4.5	317	7.8
2006년	4,176	100.0	81	1.9	3,632	87.0	158	3.8	305	7.3
2007년	4,266	100.0	81	1.9	3,764	88.2	137	3.2	284	6.7
2008년	4,365	100.0	86	2.0	3,852	88.3	138	3.2	289	6.6
2009년	4,427	100.0	88	2.0	3,887	87.8	162	3.7	291	6.6
2010년	4,456	100.0	79	1.8	3,888	87.3	155	3.5	334	7.5

주 : 재학, 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과 기관수강 등을 포함. 그 외는 취업준비, 군입대 대기, 심신장애, 결혼준비, 구직활동, 발령대기, 진학준비, 기타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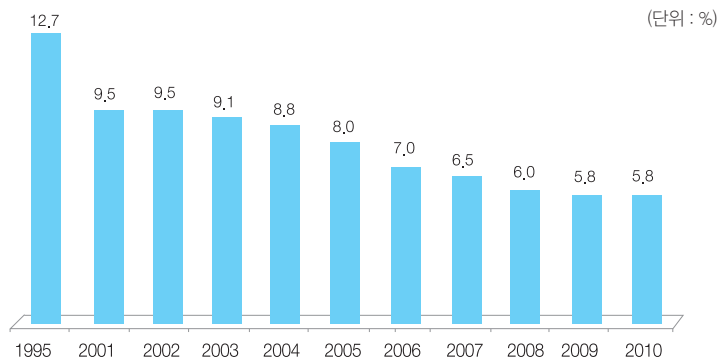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도 아니면서 취업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를 추려내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15~24세)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0년 15만 5천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쉬었음” 인구 비중은 2005년에 4.5%로 증가하였다가 2008년 3.2%로 감소하였는데, 2009년에 3.7%로 증가했고, 2010년은 다시 0.2%p가 감소하였다.

3. 청소년의 취업 현황

2010년 15~24세 청소년 취업자는 137만 5천명으로 2009년(135만 9천명)에 비해 1만 6천명 증가하였으며 1995년(258만 5천명)에 비해 121만명이나 감소하였다. 청소년 경제활동인구(150만 7천명)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0.2%로 2009년(90.2%)과 동일하였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률은 인구 전체 평균인 58.7%보다 35.7%p 낮은 23.0%로 나타났다.

[그림 8-1-3] 총 취업자 중 청소년 취업자의 비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전체 취업자(2,382만 9천명) 중 청소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8%로 나타나 2009년과 동일하였다. 1995년과 비교해보면, 청소년 취업자의 비율은 12.7%에서 5.8%로 6.9%p 낮아졌다. 이는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대학 진학률의 증가를 반영한 결과이다. 1998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일자리 수가 크게 줄고 고용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령계층별로 취업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취업자 중 15~19세의 비율은 2009년 13.1%에서 2010년 14.8%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20~24세의 비율은 각각 86.9%에서 85.2%로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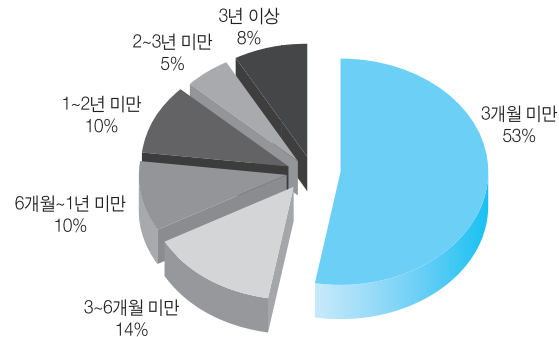
〈표 8-1-4〉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2005	구성비	2006	구성비	2007	구성비	2008	구성비	2009	구성비	2010	구성비
15~24세	1,826	100.0	1,627	100.0	1,524	100.0	1,410	100.0	1,359	100.0	1,375	100.0
남 자	670	36.7	605	37.2	577	37.9	522	37.0	510	37.5	514	37.4
여 자	1,156	63.3	1,022	62.8	947	62.1	887	63.0	848	62.5	861	62.6
15~19세	243	13.3	209	12.8	211	13.9	190	13.5	178	13.1	204	14.8
남 자	110	6.0	90	5.5	98	6.4	83	5.9	72	5.3	81	5.9
여 자	133	7.3	119	7.3	113	7.4	107	7.6	106	7.8	123	8.9
20~24세	1,583	86.7	1,418	87.2	1,313	86.1	1,220	86.5	1,181	86.9	1,171	85.2
남 자	560	30.7	514	32.6	479	31.5	439	31.1	438	32.2	433	31.5
여 자	1,023	56.0	904	54.6	835	54.6	780	55.4	743	54.7	738	53.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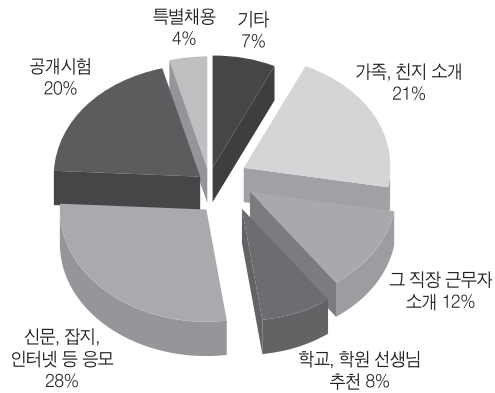
[그림 8-1-4] 2010년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10.

15~29세의 졸업자 및 중퇴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로 취업 중인 청(소)년 취업자가 첫 취업에 소요된 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 미만이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3~6개월 미만이 14%, 6개월~1년 미만이 10%, 1~2년 미만이 10%, 2~3년 미만이 5%, 3년 이상이 8%로 나타나 학교를 졸업(혹은 중퇴)한 후 첫 취업을 하는 데 평균 10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8-1-5] 2010년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10.

15~29세 청소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를 살펴보면 가족/친지나 직장 근무자, 학교 선생님 등의 추천을 통한 이른바 ‘연고취업’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문·잡지·인터넷 등 응모가 28%, 그리고 공개시험은 20%를 차지하였다. 연고취업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족/친지의 소개나 추천이 21%, 직장 근무자의 소개나 추천이 12%, 그리고 학교 선생님 추천이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의 실업 현황

2010년 전체 청소년 실업자는 15만명, 실업률은 9.8%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11.2%)이 여자 청소년(9.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15세 이상 전체 실업자는 92만명으로 실업률이 3.7%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실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8-1-5〉 청소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199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청소년 실업자수	173	208	180	147	145	149	150
▶ 청소년 실업률	6.3	10.2	10.0	8.8	9.3	9.9	9.8
· 남 자	7.8	12.3	11.7	11.4	11.5	11.9	11.2
· 여 자	5.3	9.0	9.0	7.2	7.9	8.6	9.0

주 : 1)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 이상인 자를 조사하므로 청소년을 15~24세로 하였으며, 현역군인 등은 제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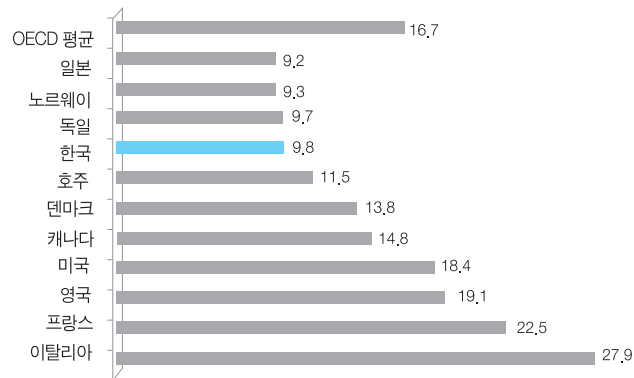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청소년 실업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6.3%, 2002년 8.5%이었으나 2003년 10.1%로 높아진 이후 10% 이상의 실업률에 머무르다가 2007년 1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1995년과 비교해 보면 2010년 청소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8-1-6] 2010년 청소년 실업률 국제비교

(단위 :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우리나라 청소년 실업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OECD 국가 전체 평균(16.7%)보다 6.9%p 낮아 우리나라 청소년 실업률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실업 문제가 최대 사회 현안 중 하나인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경우 청소년 실업률은 각각 27.9%, 22.5%로 20%를 넘는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산학협동

을 통해 청소년들의 취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은 각각 9.7%와 9.2%로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하위권임에도 매우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청소년들의 학교 재학률이 워낙 높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청소년 실업률은 15~19세가 11.9%로 20~24세(9.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5~19세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15.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15~19세의 실업률은 12.2%에서 0.3%p 하락했고, 20~24세 실업률은 전년도와 동일했다. 국제금융위기에서 빠져나와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일자리를 찾으려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 또한 증가해 청소년 실업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8.6%에서 9.0%로 증가했지만,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11.9%에서 11.2%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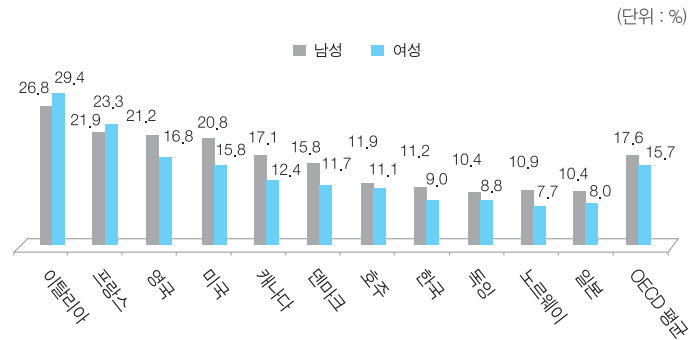
〈표 8-1-6〉 연령계층별 · 성별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15~24세	208	10.2	180	10.0	147	8.8	145	9.3	149	9.9	150	9.8
남 자	94	12.3	80	11.7	74	11.4	68	11.5	69	11.9	65	11.2
여 자	114	9.0	100	9.0	73	7.2	77	7.9	79	8.6	85	9.0
15~19세	35	12.6	24	10.4	22	9.3	22	10.2	25	12.2	28	11.9
남 자	17	13.4	11	10.4	10	9.5	12	12.2	13	15.1	15	15.1
여 자	18	11.9	13	10.5	11	9.2	10	8.6	12	10.3	13	9.6
20~24세	173	9.9	156	9.9	126	8.7	123	9.2	124	9.5	122	9.5
남 자	77	12.1	69	11.9	64	11.7	64	11.4	56	11.4	50	10.4
여 자	96	8.6	87	8.8	62	6.9	67	7.9	67	8.3	72	8.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그림 8-1-7] 2010년 성별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OECD 국가들의 청소년 실업률과 비교해 보면,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패턴을 대다수 국가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임금 및 노동시간

2010년 청소년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정액 및 초과급여 기준으로 19세 이하가 102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7.6%p 감소하였고, 20~24세는 142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3%p 상승하였다. 20~24세의 경우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19세 이하의 경우 200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0년 20~24세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136만 5천원, 전문대졸의 경우 140만 3천원, 대학교졸은 156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고졸자와 전문대졸자간의 임금 격차가 전문대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보다 작음을 보여준다. 증감률을 보면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명목임금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 특히 19세 이후 청소년의 명목임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8-1-7〉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 : 정액 및 초과급여

(단위 : 천원, %)

구 분	임 금 수 준		증 감 률	
	19세 이하	20~24세	19세 이하	20~24세
2001	792	877	10.8	5.3
2002	874	978	10.4	11.5
2003	903	1,047	3.3	7.1
2004	973	1,112	7.8	6.2
2005	1,059	1,200	8.8	7.9
2006	1,167	1,285	10.2	7.1
2007	1,197	1,324	2.6	3.1
2008	1,166	1,377	-2.6	4.0
2009	1,106	1,381	-5.2	0.3
2010	1,022	1,427	-7.6	3.3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표 8-1-8〉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 : 정액 및 초과급여

(단위 : 천원, %)

구 분	임 금 수 준			증 감 률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2001	868	869	994	4.6	5.6	8.4
2002	970	945	1,111	11.8	8.7	11.8
2003	1,029	1,018	1,200	6.1	7.7	8.0
2004	1,095	1,098	1,218	6.4	7.9	1.5
2005	1,174	1,190	1,306	7.2	8.4	7.2
2006	1,262	1,255	1,416	7.5	5.5	8.5
2007	1,294	1,304	1,450	2.5	3.9	2.5
2008	1,334	1,355	1,510	3.1	3.9	4.1
2009	1,334	1,365	1,513	0.0	0.1	0.1
2010	1,365	1,403	1,563	2.3	2.8	3.3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표 8-1-9〉 연령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연 도	연령별	전 체		남 자		여 자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2003	전 체	23.5	201.8	23.4	204.7	23.6	195.2
	19세 이하	23.5	202.3	23.8	211.7	23.4	197.8
	20~24세	23.6	198.9	23.7	212.0	23.5	192.8
2004	전 체	24.4	209.5	24.3	212.1	24.7	203.5
	19세 이하	24.5	208.4	24.6	215.1	24.5	204.5
	20~24세	24.6	207.5	24.7	220.3	24.6	200.8
2005	전 체	23.2	201.4	23.1	204.3	23.5	194.8
	19세 이하	23.4	198.9	23.5	203.9	23.3	196.4
	20~24세	23.5	198.8	23.8	211.9	23.3	192.1
2006	전 체	22.9	198.0	22.9	200.3	23.0	192.8
	19세 이하	23.3	196.8	22.9	200.3	23.4	195.5
	20~24세	23.1	197.0	23.6	209.5	22.8	190.9
2007	전 체	22.3	191.5	22.2	194.0	22.3	186.2
	19세 이하	22.6	200.2	23.1	204.4	22.3	198.4
	20~24세	22.4	193.0	23.0	205.8	22.1	186.8
2008	전 체	21.8	188.7	21.9	191.6	21.8	182.6
	19세 이하	21.7	185.6	21.0	176.8	22.2	192.0
	20~24세	21.9	188.9	22.3	204.6	21.7	181.3
2009	전 체	22.8	194.8	22.7	197.2	22.8	189.6
	19세 이하	21.2	182.1	21.2	186.9	21.2	179.9
	20~24세	22.6	193.9	22.7	205.9	22.6	188.5
2010	전 체	22.5	192.8	22.5	195.7	22.5	186.9
	19세 이하	19.8	163.5	19.7	165.4	19.9	162.2
	20~24세	22.5	189.9	22.6	200.3	22.4	184.9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9세 이하 청소년 노동시간(163.5시간)이 20~24세(189.9시간)보다 26.4시간 짧았으며, 남자 청소년보다 여성 청소년의 근로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생활과 직업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노동부에서 실시한 「2009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인 만 15~18세 청소년(3,202명)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본 비중이 32.9%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1.7%로 나타나고 있다. 특성별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펴보면, 남녀간에는 특별한 경험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학년에 따른 경험률은 중1이 5.3%에서 고3이 19.1%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모가 모두 있는 양부모 가정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8-1-10〉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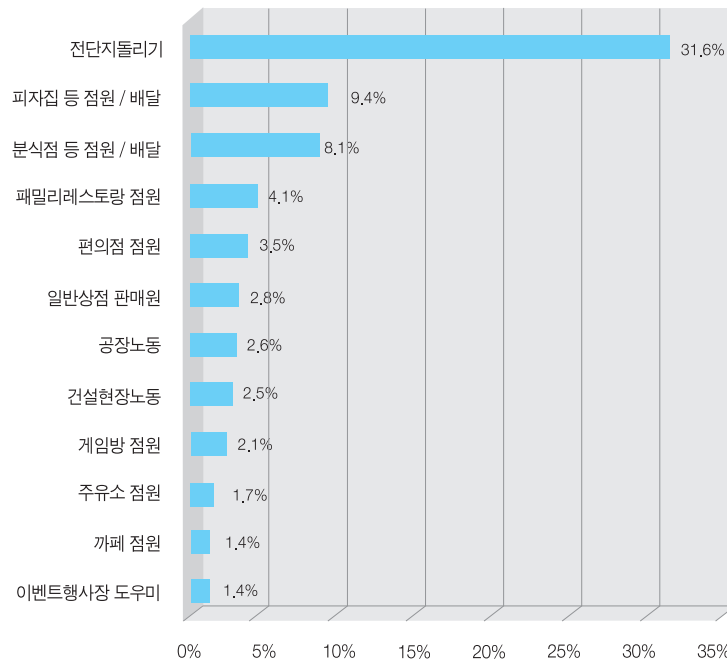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6,509	11.7	88.3
성별	남자	3,487	11.7	88.3
	여자	3,022	11.8	88.2
학년	중1	968	5.3	94.7
	중2	1,024	5.9	94.1
	중3	1,018	7.9	92.1
	고1	1,236	12.5	87.5
	고2	1,217	17.8	82.2
	고3	1,046	19.1	80.9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5,619	10.1	89.9
	한부모 가정	608	21.5	78.5
	조손 가정	76	19.7	80.3
	기 타	206	22.8	77.2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실태 조사」, 2009.

다음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종류를 살펴보면 전단지 돌리기가 3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피자집 등 점원/배달이 9.4%, 분식점 등 점원/배달이 8.1%, 패밀리 레스토랑 점원이 4.1%, 편의점 점원 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60~70%정도가 전단지 돌리기에 집중된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그리고 음식점 같은 서비스업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는 경로는 47.3%가 선배나 친구의 소개(47.3%),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19.8%)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8-1-8] 지난 1년중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종류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청소년 진로 · 직업실태 조사」, 2009.

제2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1.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2010년도 우리나라의 중학교 신규졸업자는 668,575명으로 이들 중 99.7%인 666,509명이 고등학교 및 기타 학교로 진학했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진학자 중 중졸 취업 인구수는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진학자 중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비율은 75.2%로 나타나고 있다.

〈표 8-2-1〉 2010년 중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상황

(단위 : 명, %)

구 분	졸업자수	진 학 자						
		총 계			일 반 계		전 문 계	
	계	비율(%)	계	여	계	여	계	여
총 계	668,575	99.7	666,509	310,464	501,074	234,785	134,577	59,418
국 립	2,165	99.5	2,155	998	1,517	706	555	249
공 립	543,931	99.7	542,270	252,936	409,372	192,472	107,401	47,121
사 립	122,479	99.7	122,084	56,530	90,185	41,607	26,621	12,04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0.

2. 고등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2010년도 고등학교 신규졸업자는 일반계 고등학교 477,470명, 전문계 고등학교 156,069명이며 이 가운데 취업자는 각각 4,266명과 29,91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자의 취업률은 4.9%인데 비해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67.7%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자는 상당수가 재수생으로 추정된다.

〈표 8-2-2〉 2010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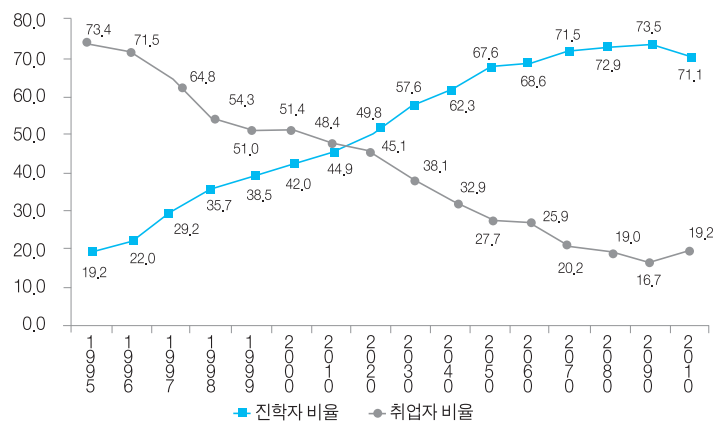
구 분	합 계		일 반 계		전 문 계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졸 업 자	633,539	301,274	477,470	229,091	156,069	72,183
진 학 자	500,282	242,587	389,241	191,616	111,041	50,971
취 업 자	34,182	17,403	4,266	1,956	29,916	15,447
무 직 자	73,000	31,162	63,420	27,078	9,580	4,084
입 대 자	1,405	—	540	—	865	—
미 상	24,670	10,122	20,003	8,441	4,667	1,681
취 업 률	25.9	29.7	4.9	5.2	67.7	72.8

주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 - (진학자수+입대자수)) × 1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0.

[그림 8-2-1] 전문계 신규 졸업자의 진학자와 취업자 비율 추이

(단위 : %)



전문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들 중 진학자와 취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진학자 비율은 71.1%로 취업자 비율(19.2%)보다 3.7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졸업 후 취업이라는 완성 교육을 목표로 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진학자 비율이 취업자 비율보다 높아진 시기는 2002

년(진학자비율:취업자비율 = 49.8%:45.1%)이나 그 이전까지는 취업자 비율이 진학자비율보다 높았으나 2002년 이후 졸업자 대비 진학자 비율이 더 높은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3. 특수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 상황

2010년도 특수학교 신규 졸업자들의 취업상황을 살펴보면, 졸업자 2,301명 중 취업자는 383명으로 진학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취업률은 31.5%로 나타나고 있다.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률(67.7%)에 비해 특수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8-2-3〉 2010년 특수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구 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전체	여 자	전 체	여 자	전 체	여 자	전 체	여 자
시각장애	254	82	86	35	147	43	21	4
청각장애	148	61	40	22	80	30	28	9
정신지체	1,570	546	833	283	117	32	620	231
지체장애	189	61	64	21	16	4	109	36
정서·행동장애	107	28	51	15	17	4	39	9
기타	33	2	13	1	6	—	14	1
합 계	2,301	780	1,087	377	383	113	831	29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0.

4. 대학 졸업자 취업 상황

대학 신규 졸업자의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39,996명 중에서 취업자는 267,003명으로 진학자와 입대자수를 제외한 취업률은 55.0%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 졸업자들의 경우는 190,033명 중 97,717명이 취업해 진학자와 입대자 수를 제외한 취업률은 55.6%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대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51.9%로 전문대에 비해서 낮았다. 다만, 여기서 취업자는 건강보험 DB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되므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취업자로 계산되지 않았다.

〈표 8-2-4〉 2010년 대학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¹⁾		전 문 대		일 반 대	
	전 체	여 자	전 체	여 자	전 체	여 자
졸업자	539,996	271,773	190,033	109,314	280,341	134,161
졸업자 중 유학생	9,860	5,120	1,912	937	3,859	2,123
진 학 자	36,105	15,828	6,929	3,635	24,879	10,648
취 업 자	267,003	127,997	97,717	56,462	129,130	57,474
입 대 자	2,518	—	1,675	—	760	—
취업불가능자	267	102	118	29	109	54
미 상	5,992	3,064	2,200	1,214	3,177	1,557
제외대상	5,888	3,938	3,531	2,474	2,074	1,318
취 업 률	55.0	51.9	55.6	55.2	51.9	47.9

주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제외인정자 + 외국인유학생))×100. 취업자수는 건강보험 DB 자료에서 산정.

1) 전문대, 일반대 외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대학원, 사내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수치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2010.

전문대 신규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상황을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졸업자 32,428명 중 10,415명이 취업해 가장 낮은 취업률(35.3%)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계열 졸업자 9,333명 중 6,637명이 취업해 가장 높은 취업률(74.1%)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의약계열(68.1%)과 공학계열(60.6%)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8-2-5〉 2010년 전문대 신규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구분 \ 계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졸업자	8,210	60,295	9,333	41,735	13,054	24,978	32,428
졸업자 중 유학생	207	892	47	510	53	10	193
진학자	618	2,241	155	1,368	438	430	1,679
취업자	3,455	31,543	6,637	23,439	5,931	16,297	10,415
입대자	41	423	8	643	95	133	332
취업불가능자	1	42	3	20	31	8	13
미상	186	597	68	548	127	160	514
제외대상	150	1,321	163	511	243	461	682
취업률	48.0	57.0	74.1	60.6	48.6	68.1	35.3

주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제외인정자 + 외국인유학생)) × 100. 취업자수는 건강보험 DB 자료에서 산정.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2010.

〈표 8-2-6〉 2010년 일반대 신규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구분 \ 계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졸업자	36,808	80,890	16,736	65,847	35,301	13,669	31,090
졸업자 중 유학생	797	2,193	71	384	140	73	201
진학자	3,648	2,829	689	8,093	6,411	563	2,646
취업자	13,904	38,956	6,147	36,293	14,200	9,529	10,101
입대자	81	156	57	161	66	49	190
취업불가능자	30	34	3	11	10	3	18
미상	649	1,018	119	569	390	64	368
제외대상	336	684	184	324	221	86	239
취업률	43.6	51.9	39.1	63.8	49.9	73.9	36.3

주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제외인정자 + 외국인유학생)) × 100. 취업자수는 건강보험 DB 자료에서 산정.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2010.

이어서 일반대 신규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상황을 살펴보면, 의약계열 졸업자 13,669명 중 9,529명이 취업해 73.9%의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계열 졸업자는 16,736명 중 6,147명이 취업해 가장 낮은 취업률(39.1%)을 보여주고 있다.

제3장 |

청소년 직업 · 진로정책

1. 청소년고용촉진대책

가. 청년고용촉진 대책 수립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시기별 청년고용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종합대책, 부문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2003년에는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해외취업 등 장단기 대책을 종합한 ‘청년실업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2005년에는 학교-노동시장간 이행 원활화에 중점을 둔 ‘청년고용촉진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해외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취업 촉진대책’이 마련되었고 고졸이하 학력 청년층의 실업자가 전체 청년실업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많고, 실업률도 전체 청년실업률 보다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이 마련 · 시행되었다.

2007년도에는 그간의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청년고용장려금 사업을 2010년까지 연장기로 하고 청년학생층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강화, 학교의 취업지원 인프라 확대, 취약청년층을 위한 고용지원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을 추진기로 하였다.

2008년 들어 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취업무대를 국내노동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국가성장을 주도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산 · 학 · 관 협약을 통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2009~2013) 해외취업지원(5만명), 해외인턴(3만명), 해외자원봉사(2만명)를 통해 총 10만명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취업에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 친화적 일자리 지원, 직업체험 확대,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청년고용촉진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불황으로 인해 청년고용 상황도 악화되었고, 청

년실업자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확대하는 ‘청년고용 추가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또한 2009년말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 되어 고용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쏠림현상이 계속 심화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대책’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간 정보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전용 일자리 중개시스템(잡영)을 구축하고 산학연계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는 것이다.

나. 직업탐색·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고용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근로의욕을 향상하고 올바른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CAP+, 성취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올라 프로그램, 취업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은 고등학생, 대학생, 직업훈련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만15~29세)을 대상으로 총 4.5일간(27시간) 진행되며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하여 2002년 10월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 10월말 현재 전국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10,363명이 참가하였고, 전국 특성화고교와 대학 및 민간위탁기관 등에서도 자체 운영하여 많은 수의 청소년이 참가하고 있다.

‘성취’ 프로그램은 구직의욕과 취업자신감이 낮은 만 18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효능감 제고 및 구직기술 습득 초점을 두고 있으며 5일(30시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고용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2011년 10월말 현재 6,391명이 참가하였고 18%의 참여자가 이후 취업에 성공하였다.

‘취업희망’ 프로그램도 만18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원만한 사회진출 및 적응을 돕기 위해 대인관계 향상과 의사소통 개선에 초점을 두고 4일(23시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 10월말 현재 10,331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올라(all-A)’는 청년층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자신감이 극히 저하되어 원활한 직업생활로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4일간(23시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자기이해를 심화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하며 삶에 대한 적극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10월말 1,421명이 참여하였다. 한편 ‘취업캠프’는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구직의욕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합형 과정이다.

청소년 직업체험학습프로그램인 잡스쿨(Job School)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2일짜리 프로그램이다. 첫날은 진로특강을 듣고, 둘째날은 직업과 관련된 대학 학과와 산업분야의 직업현장을 방문한다. 특히 보호관찰소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스쿨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부산소년원 등에 소속된 529명의 취약계층청소년이 제과제빵, 자동차정비 등의 체험을 실시하였다.

청년 직장체험프로그램(1~6개월)은 직업 현장에서 직접 일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다. 직업진로지도 내실화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심리검사를 비롯한 직업진로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취업지원관, 직업상담원, 커리어코치 등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고용센터와 워크넷에서는 각종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각종 직업심리검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한 것으로 청소년 및 청년용 직업심리검사 14종(초등학생 진로인식검사, 청소년 직업흥미검사(중2~고3), 청소년 적성검사(중/고), 청소년 직업인성검사(중1~고2), 청소년 진로발달검사(중2~고3), 직업가치관검사(중3~), 학과(전공)흥미검사(고1~고3)를 비롯하여, 만 18세 이상의 청년을 위한 직업선택도검사, 직업적성검사, 구직욕구진단검사, 구직효율성검사, 창업진단검사, 영업직무기본역량검사, IT직무기본역량검사가 보급되어 있으며, 2010년에는 105만명이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를 받았다.

〈표 8-3-1〉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활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등	계
2002	173,121	225,687	398,808
2003	189,495	250,132	439,627
2004	228,866	384,395	613,261
2005	247,333	304,028	551,361
2006	253,709	321,631	575,340
2007	200,100	252,862	452,962
2008	132,114	237,445	369,559
2009	133,085	189,960	323,045
2010	153,820	394,630	548,450

자료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2010)

〈표 8-3-2〉 성인용 직업심리검사 활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직업선호도 검사		직업적성 검사	구직효율성 검사	구직욕구 진단검사	창업진단 검사	직업전환 검사 등	계
	S형	L형						
2002	131,370	76,914	12,043	2,156	17,270	1,740	1,802	243,295
2003	98,710	69,839	11,022	1,837	12,363	935	336	193,771
2004	159,315	89,724	26,833	5,605	9,798	19,199	8,043	308,719
2005	97,400	80,604	17,679	2,064	23,586	1,647	692	222,980
2006	117,028	87,636	23,547	2,289	5,865	2,504	1,194	240,063
2007	80,207	78,713	15,457	1,334	5,123	842	79	181,755
2008	134,200	93,843	41,887	6,323	16,333	6,272	6,158	305,016
2009	145,582	121,953	117,524	19,889	30,385	8,610	9,528	455,480
2010	148,558	142,173	142,277	19,512	24,592	9,503	16,418	503,033

자료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2010)

주 : 만18세 이상의 청소년은 성인용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함.

아울러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하여, 「진로와 직업」 교과서, 초·중·고·대·특성화고용 진로지도프로그램(CDP), 사회과·과학과 진로탐색자료(중·고), 특성화고 취업지원로드맵, 대학교 취업지원로드맵, 직업카드, 직업동영상 활용매뉴얼, 사이버진로교육원 이러닝콘텐츠 등을 비롯한 진로교육 자료와 진로지도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진로와 직업」 교과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용으로 2003년도에 개발·보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초등 2007년 개정, 중학교 2011년 개정)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과서는 2010년 개발 보급되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진로지도프로그램(CDP)은 초·중·고·특성화고·대 등 각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한 학기용 자료로서 총 5종으로 개발·보급되었으며, 교사용 매뉴얼과 학습자용 워크북, 수업진행용 슬라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특성화고 및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학교급(특성화고/대학교)에 따라 학년별로 강조해야 할 구직역량과 이를 위한 활용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학교급별 취업지원 로드맵을 2010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 외에도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및 교과통합형 진로지도를 위해 중고등학교의 사회과·과학과 세부 과목들에 대해 단위별 진로지도를 위한 탐색자료집을 개발하여 보급했고, 학부모대상 진로특강 자료, 직업심리검사 해석을 위한 동영상과 슬라이드 등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로 보급하였다.

카드형태의 직업진로교육 매체인 ‘직업카드’ 역시 전국 고용센터와 학교에서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되어 청소년워크넷 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직업진로지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자기주도적 진로 학습이 가능한 사이버진로교육센

터(<http://cyber-edu.keis.or.kr>)을 개원하여 이력서 작성과 면접준비에 필요한 강좌 등 온라인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전직무연수과정, 창의적 진로 개발을 위한 멘토특강 등 14종의 과정에 17,670명이 수강하였다.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사 및 대학 취업관계자와 취업지원관, 담당공무원, 커리어코치, 민간 직업상담원 및 취업알선원 등의 직업진로지도 관련 직무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직업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교육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데 2011년에는 초·중·고 일반교사와 진로진학상담 교사, 학교 취업지원관, 교장·교감·장학사 등을 위한 진로지도전문화 교육과, 대학(교) 취업 및 경력개발 담당자, 지자체 및 민간취업관련기관 담당자, CAP+, 취업희망 등을 비롯한 집단 프로그램 진행자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라. 직업정보의 수집 제공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직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을 개발하였다. 2001년부터 실시한 우리나라 대표직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2003년부터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http://know.work.go.kr>)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대표직업 732개에 대해 요구되는 역량과 임금 및 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고 매년 추가할 직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KNOW에는 직업정보는 물론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전공)정보 및 온라인 진로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또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합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학과정보」, 「신생 및 이색직업」 등 초등학교에서 성인까지의 수요자 맞춤형 직업정보자료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더불어 입체적인 매체를 통해 생생한 직업정보 확인과 직업탐색이 가능하도록 ‘내일을 Job아라’와 ‘Work & Life’를 비롯한 직업 및 취업지원 동영상 제작하였다. 지금까지 415편의 직업 및 취업 동영상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각급 학교에 DVD로 배포되는 한편, 방송 송출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또한 이들 매체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지도기법이 소개된 직업동영상 활용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1년부터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학과정보 동영상이 제작되어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되고 있다.

마.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취업지원 확대

1998년 11월 이후 인터넷 방식의 「워크넷(Work-Net, www.work.go.kr)」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업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구인·구직자에게 직접 일자리정보, 직업정보 등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여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온라인 고용정보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이력서작성과 구직신청, 채용정보 북마크, 알선요청, 직업상담 등의 개별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맞춤 메일링 서비스」를 도입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직업·취업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워크넷에 「대기업 채용정보」항목을 신설하여 주요 대기업의 구인정보를 취합 제공하였고, 「지역고용동향」항목의 신설을 통해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제작한 각종 지역단위 고용정보를 구인·구직자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그 밖에 「구인·구직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하여 구직자 및 구인업체의 소개를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동영상 이력서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취업자료실」항목을 별도로 제공하여 취업관련 뉴스와 가이드, 동영상, 직업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채용정보와 인재정보를 직종별, 지역·산업단지별, 역세권별, 대기업채용정보, 단시간근로채용정보, 전공계열별, 청년인턴인재정보 등 특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온라인을 통해 기업들의 채용대행을 지원할 수 있는 「e-채용마당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채용마당」은 기업에게는 채용에 따른 비용, 인력, 시간을 절감시키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한편, 구직자에게는 우수기업체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워크넷 상의 구인·구직표 서식 개정 및 인증시스템 강화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확보 및 제공을 통해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 정보의 품질을 개선하였다.

2.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가.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정부는 2005년 6월 20일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다.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은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종합적·체계적인 보호 대책으로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의 강화방안,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의 제고방안,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방안,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방안, 제도개선을 통한 연소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성과점검을 통한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2008년 6월 ‘연소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피해사례 일제 신고기간 운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정부는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에 따라서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근로가 급증하는 방학기간 중 연소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서 법정 근로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1~2월, 7~8월)하고 있다. 매년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데 특히 연소근로자 보호조항과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0년 1,545개소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300개소에서 4,97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이중 4,977건은 시정조치, 2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였다. 또한 연소근로자가 신고한 사건 1,449건을 조사하여 그 중 권리구제 1,290건, 사법처리 154건, 과태료 부과 5건을 처리하는 등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으로 청소년 사용금지 직종에 대한 불법 근로를 지도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매년 주기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다.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 제고

정부는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을 통해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업주, 각 급 학교 교사 및 학생 등에 대한 연소근로자 근로관련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진로상담 교사에 대해 청소년 근로 및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연수과정 교육프로그램에 연소자 근로조건 및 피해사례별 구제방법 등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밖에 종합대책에서는 사례별 구제방법 지정, 직업교육 연구시범학교 워크숍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하거나 전문계 고교 CEO 연수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연소자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은 관련교과와 재량·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전문계 고교 및 평생직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전문계 고교까지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중·고교생 대상 일터 현장체험 프로그램인 잡 스쿨(Job School) 운영 시 학생에 대한 직업의식 및 법정근로조건 교육을 실시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교실 운영 시 취업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교실은 경찰서장 등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범죄예방교실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성 순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랑의 교실, 문제 학생을 대상으로 1:1 집중상담이 진행되는 상담교실 등이 있다.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은 다수 고용업종 대표 간담회를 통하여 연소자 근로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라.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에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건전한 직업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2006년 10월부터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통해 유관기관, 연소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주 협회 등과 협약 체결, 온라인 사이트 운영, 지역 청소년단체와 공동 캠페인 전개, 팸플릿·포스터 제작·배포 등 중·고등학교 및 연소근로자 아르바이트 관련 법정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매체의 효율적 활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2006년에 구축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관련 싸이월드 타운 홈페이지에 이어, 2008년 3월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고 블로그 이웃맺기 이벤트, 오행시 컨테스트 등 각 종 프로모션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령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였다. 또

한, 2010년부터는 청소년 스스로가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정책프로슈머로 활동할 수 있도록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제1기: 20개 팀, 87명, 제2기: 30개 팀, 127명)를 선발하였고, 월별 홍보미션을 부여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계된 노동관계법령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연소근로자의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청소년리더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관이 연계해 지역 밀착형 홍보를 전개하여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역단위의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마.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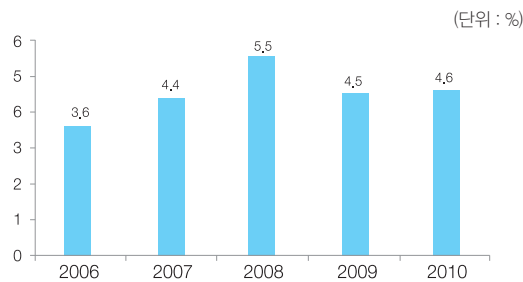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에 따라서 2005년 9월부터 초·중·고·대의 청소년층이 쉽게 다양한 진로 및 일자리 관련 정보를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워크넷’(<http://work.go.kr/youth>)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워크넷은 청소년층의 진로·직업·진학·취업가이드, 직업심리검사, 청소년 직장체험, 잡스쿨(Job school), 진로와 직업 이러닝콘텐츠, 직종별 일·훈련·자격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8년 8월부터 청소년단체 홈페이지, 네이버, 싸이월드 등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사이버 공간에 사이버 상담센터를 마련하여 인터넷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연소근로자들이 권리구제방법을 몰라서 보호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안심알바신고센터」를 2011년 도입하였다. 안심알바신고센터는 각급 학교에 설치되고 학교에 배치된 전담교사(생활지도교사 등)가 수집된 피해사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총 47개)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면, 근로감독관은 센터와 긴밀히 연계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안심알바센터는 우선 전국의 104개 학교에 설치하였고 성과를 보아가며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제9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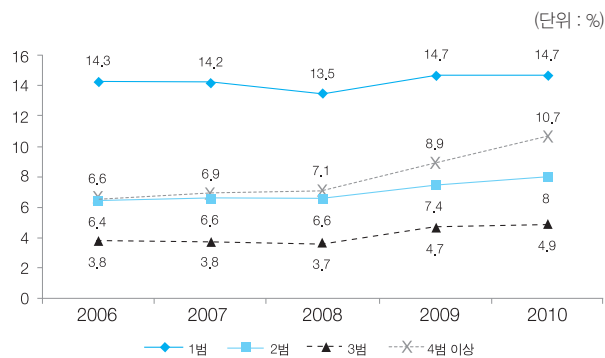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09년 4.5%, 2010년 4.6%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소년범죄 자체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법의 범위에서 19세가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실제로 소년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비율 추이



소년범죄의 재범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과가 없는 소년범죄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4범 이상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의 비율이 2006년 6.6%에서 2010년 10.7%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소년범죄가 상습화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소년범죄의 전과현황



제9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제1장 |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현장
- 제2장 |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처리

제1장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현황

1. 청소년 비행의 동향

지난 5년간 전체범죄인원은 2006년부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소년범죄인원은 2006년에 전체범죄인원 대비 3.6%를 기록한 후 증가하여 2008년에는 5.5%까지 증가하였다가 2009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2010년에는 4.6%를 보였다. 그러나 소년범 구성비율이 2009년부터 감소한 것은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범의 범위에서 19세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년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년사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표 9-1-1〉 전체범죄인원 중 소년범죄인원의 점유비율

(단위 : 명, %)

구 분 \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범죄자	1,932,729	1,989,862	2,472,897	2,519,237	1,954,331
소년범죄자	69,211	88,104	134,992	113,022	89,776
구성비율(%)	3.6	4.4	5.5	4.5	4.6

주 :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된 바, 2009년도 통계부터는 19세는 성인으로 분류되어 수치에서 제외됨.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1.

2010년 소년범죄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재산범죄가 40,478명(4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폭력범죄가 23,276명(25.9%), 교통사범이 13,842명(15.4%), 강력범죄가 3,106명(3.4%), 저작권법 위반사범이 275명(0.3%) 순이었다. 재산범죄가 2006년도에 42.6%이었던 것에 반해, 2010년에 45.1%로 재산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재산범죄 중 절도범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계형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표 9-1-2〉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69,211	88,104	134,992	113,022	89,776
강 력 범	소 계	1,857	1,928	3,016	3,182	3,106
	흉악범	878	1,094	1,427	1,608	999
	성폭력	979	834	1,589	1,574	2,107
폭 력 범	소 계	18,104	23,275	34,067	29,488	23,276
	공 갈	405	562	1,046	1,495	1,422
	폭행 · 상해 등	17,699	22,713	33,021	27,993	21,854
재 산 범	소 계	29,506	33,659	39,688	45,774	40,478
	절 도	24,842	28,839	33,073	38,494	33,534
	횡령 등	997	1,167	1,855	1,664	1,483
	장 물	222	271	571	820	722
	사 기	3,445	3,382	4,189	4,796	4,739
교 통 사 범		15,517	21,893	27,666	18,138	13,842
저작권법 위반		—	2,338	20,272	7,720	275
기 타		4,227	5,011	10,283	8,720	8,799

주 : 1) 흉악범 : 살인, 강도, 방화

2) 폭행 · 상해등 : 폭행 · 상해의죄 + 폭력행위등처벌법(공갈죄 제외) + 기타

3) 횡령 등 : 횡령 + 배임 + 손괴

4) 교통사범 :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5) 2006년도 통계에는 특별법 위반 현황 중 저작권법 위반 관련통계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음.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1.

2010년 전체 소년범의 연령을 보면 16세 소년범이 24.1%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 18세 22.2%, 17세 21.9%, 15세 21.5%, 14세 9.9%, 14세 미만 0.4%의 순이었다. 저연령 소년범의 비율은 줄어들었으나, 16세~18세 소년범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표 9-1-3〉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 년도	계	14세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6	69,211 (100)	400 (0.6)	8,484 (12.3)	13,400 (19.4)	13,367 (19.3)	11,087 (16.0)	10,637 (15.4)	11,836 (17.1)
2007	88,104 (100)	578 (0.7)	10,884 (12.4)	18,081 (20.5)	17,306 (19.6)	14,539 (16.5)	13,603 (15.4)	13,113 (14.9)
2008	134,992 (100)	3,800 (2.8)	16,638 (12.3)	26,385 (19.5)	26,932 (20.0)	21,784 (16.1)	20,808 (15.4)	18,645 (13.9)
2009	113,022 (100)	1,989 (1.8)	15,431 (13.7)	24,657 (21.8)	26,153 (23.1)	23,307 (20.6)	21,485 (19.0)	—
2010	98,776 (100)	445 (0.4)	8,870 (9.9)	19,280 (21.5)	21,611 (24.1)	19,637 (21.9)	19,933 (22.2)	—

주 :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된 바, 2009년도 통계부터는 19세는 성인으로 분류되어 수치에서 제외됨.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1.

최근 5년간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2010년도 전과가 없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61.7%인데 반해,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38.3%로 전년도에 비하여 2.6% 상승하였다. 특히 4범 이상 소년범의 비율이 2006년 6.6%에서 2010년 10.7%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년범죄가 상습화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9-1-4〉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

(단위 : 명, %)

전과 년도	계	전과 없음	1범	2범	3범	4범 이상
2006	64,225 (100)	44,236 (68.9)	9,193 (14.3)	4,124 (6.4)	2,428 (3.8)	4,244 (6.6)
2007	81,090 (100)	55,543 (68.5)	11,540 (14.2)	5,332 (6.6)	3,090 (3.8)	5,585 (6.9)
2008	114,699 (100)	79,285 (69.1)	15,476 (13.5)	7,553 (6.6)	4,299 (3.7)	8,086 (7.1)
2009	102,573 (100)	65,990 (64.3)	15,103 (14.7)	7,637 (7.4)	4,799 (4.7)	9,044 (8.9)
2010	82,368 (100)	50,830 (61.7)	12,091 (14.7)	6,546 (8.0)	4,070 (4.9)	8,831 (10.7)

주 : 2008년 6월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된 바, 2009년도 통계부터 19세는 성인으로 분류되어 수치에서 제외되고, 미상은 제외됨.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1.

2010년도 소년범죄의 남녀별 비율을 보면 남자가 80.8%, 여자가 19.2%로 남자의 비율이 4배 정도 많다. 그러나 2006년부터 남자소년의 범죄율은 84.8%에서 점차 줄어들다가 2009년에는 증가하여 82.7%를 기록한 후 2010년도에 다시 감소하여 80.8%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여자소년의 범죄비율은 2006년도 15.2%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약간 감소하여 17.3%가 된 후 2010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19.2%를 차지하였다. 여자소년범의 증가에 따른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9-1-5〉 소년범죄의 성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 년도	계	남 자		여 자	
	인 원	인 원	비율	인 원	비율
2006	69,211	58,710	84.8	10,501	15.2
2007	88,104	74,174	84.2	13,930	15.8
2008	134,992	108,482	80.4	26,510	19.6
2009	113,022	93,509	82.7	19,513	17.3
2010	89,776	72,461	80.8	17,315	19.2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1.

2.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전체 마약류사범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증가하다가 2008년 다소 감소하는 듯하다가 2009년 다시 증가 이후 2010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반면, 청소년마약류사범은 2006년과 2007년에는 감소하다가 2008년부터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 다시 감소하였다. 2009년부터 15세 이하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가 줄어든 반면 16~19세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표 9-1-6〉 청소년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구 분	전체 마약류사범	청소년 마약류사범			
			15세 이하	16~17세	18~19세	합 계
2006		7,541	2 (6.3)	1 (3.1)	29 (90.6)	32 (100)
2007		10,483	1 (5.9)	1 (5.9)	15 (88.2)	17 (100)
2008		9,705	6 (31.6)	0 (0)	13 (68.4)	19 (100)
2009		11,875	0 (0.0)	15 (18.3)	67 (71.7)	82 (100)
2010		9,732	0 (0.0)	6 (17.1)	29 (82.9)	35 (100)

자료 : 대검찰청 마약과 내부통계자료(2011)

2010년도 청소년마약범죄의 마약류별 현황을 보면 대마가 5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45.7%이었다. 2006년도 청소년마약범죄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대마보다 많았으나, 2010년도 청소년마약범죄는 대마가 향정신성의약품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9-1-7〉 청소년마약범죄의 마약류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구 분	전체	청소년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합 계
2006		7,709	—	24 (75.0)	8 (25.0)	32 (100)
2007		10,649	—	13 (68.4)	6 (31.6)	19 (100)
2008		9,898	—	16 (69.6)	7 (30.4)	23 (100)
2009		11,875	2 (2.4)	55 (67.1)	25 (30.5)	82 (100)
2010		9,732	—	16 (45.7)	19 (53.3)	35 (100)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1.

3. 학생범죄의 동향

전체 소년범죄 대비 학생범죄 구성 비율은 2006년 68.2%, 2007년 67.8%, 2008년 65.7%, 2009년 69.1%, 2010년 69.3%로 2006년부터 소년범죄 중 학생범죄의 비율이 감소하였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9-1-8〉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전체범죄(A)	소년 범죄		학생 범죄	
		인 원(B)	구성비(B/A)	인 원(C)	구성비(C/B)
2006	1,932,729	69,211	3.6	47,213	68.2
2007	1,989,862	88,104	4.4	59,701	67.8
2008	2,472,897	134,992	5.5	88,701	65.7
2009	2,519,237	113,022	4.5	78,077	69.1
2010	1,954,331	89,776	4.6	62,173	69.3

주 :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2008년도 통계부터 학생범죄의 대상도 7세 이상 18세 이하로 변경됨.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1.

제2장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처리

1. 청소년 권리 · 참여 정책의 형성

가. 경찰의 예방활동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경찰은 2005년 초, 고교연합 폭력서클이 주도한 여중생 집단성폭력 등 학교폭력 관련 강력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수립 · 추진하여 왔다. 특히 2005년부터는 피해학생들이 보복의 두려움에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학교폭력이 음성화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학교폭력의 악순환을 차단키 위해 매년 신학기 초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주관, 교육과학기술부 · 법무부 등 관련 6개 관련부처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신고기간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학생 등 경미초범 가해학생은 처벌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선도하는 조건으로 불입건’ 한 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선도하도록 하고, 피해신고 학생은 비밀보장과 함께 담당경찰을 서포터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9-2-1〉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실적

구 분 연 도	기 간	폭력서클 해체(개)	가해학생 처리(명)	자진신고(명)				단속 및 피해신고(명)		
				가해 학생 인원	조치			가해 학생 인원	조치	
					불입건	입건	소년부 송치등		입건	소년부 송치등
2006	3.13~5.31	270	9,071	4,088	3,535	311	44	4,983	4,099	884
2007	3.12~6.11	211	14,266	7,059	6,471	448	140	7,207	6,387	820
2008	6.2~8.31	225	13,614	7,515	6,901	498	116	6,099	5,041	1,058
2009	3.16~6.15	126	11,579	5,682	4,348	931	403	5,897	5,074	823
2010	3.15~5.14	43	6,472	3,504	3,076	335	93	2,968	2,445	523
	9.1~10.31	45	5,532	3,108	2,794	243	71	2,424	2,107	317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11.

이와 같은 보호활동의 결과 학교폭력의 중심이었던 폭력서클이 자진해체를 하는 등 학교폭력이 위축되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자진신고 학생에 대한 선도조건부 불입건 제도의 정착으로 2010년 자진신고 기간에는 5,870명이 불입건 처리되고, 578명이 입건되고 164명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2) 유해환경 정화활동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및 미디어에 폭력·음란성 매체물이 범람하고, 신종 풍속업소 등 유해업소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청소년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유해환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음란·폭력성 각종 매체물과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유흥주점·비디오방 등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에는 총 8,154명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하여 10명을 구속하고 8,14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표 9-2-2〉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2010년)

(단위 : 명)

계	단 속 내 용																조 치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행위				형사입건		행정처분
	소계	청소년고용	청소년출입	기타	소계	판매대여	포장표시	기타	소계	술판매	담배판매	기타	소계	성적퇴폐	풍기문란	기타	구속	불구속	
8,154	1,351	418	652	281	442	10	0	432	5,882	4,520	1,286	76	479	66	399	14	10	8,144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11.

정부는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시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청소년의 달(5.10~5.23)에 유해환경을 단속하여 502명을 검거하였고, 하계방학기간(7.19~8.22) 동안 유해환경을 단속하여 981명을 검거하였으며, 수능시험 전후(11.11~11.24) 유해환경을 단속하여 375명을 검거하였으며, 동계방학기간(2010.12.20~2011.1.28)에 유해환경을 단속하여 1,047명을 검거하였다.

(3) 청소년상담교실 및 사랑의 교실 등 운영

경찰은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면담이나 전화상담을 통하여 들어 주고 문제의 사전 진단과 해결을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청소년상담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에 친숙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버 상담제도’를 도입하여 2010년 한 해 동안 경찰관 7,030명, 민간 자원봉사자 1,184명을 모집·운영하여 청소년 32,877명을 상담하였다.

〈표 9-2-3〉 청소년 상담교실 운영실적

(단위 : 회)

구 분 \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상담횟수	26,734	30,925	31,278	29,995	32,877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11.

또한 해마다 각급 경찰관서별로 경찰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도 전국 초·중·고등학교 14,979개교 5,529,634명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청소년범죄의 심각성과 폐해를 인식시키고 범죄예방 교육시 시청각교재를 활용하는 등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청소년단체와 협조하여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소년범죄 예방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성인이 되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전국 33개 청소년전문교육단체에서 총 17,877명을 대상으로 2,506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9-2-4〉 사랑의 교실 운영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실시횟수	153	132	445	1,110	2,506
참가인원	5,577	5,883	7,630	6,837	17,877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11.

(4)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명예경찰소년단은 경찰, 학교, 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스스로가 각종범죄 및 제반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봉사활동과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초등학교 4·5·6학년 중 선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을 발대한 것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3일 명예경찰 소년단 전국 확대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전국학교로 선발대상이 확대되어 2010년에는 전국 1,719개교 20,053명의 명예경찰 소년단이 활동하고 있다.

〈표 9-2-5〉 명예경찰 소년단 현황

(단위 : 개소, 명)

실시학교(개소)				명예경찰 소년단(명)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719	1,701	18	0	20,053	19,969	84	0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11.

명예경찰 소년단은 청소년의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 따돌림을 당하거나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이나 저학년 어린이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과 연대감 쌓기 뿐만 아니라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교통캠페인, 경찰서 견학 및 112 순찰, 도보순찰 체험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명예경찰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지도교사 및 경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방지활동도 하고 있다.

〈표 9-2-6〉 명예경찰 소년단 활동실적

(단위 : 회, 개교, 명)

경찰서 견학 및 체험			교통캠페인			봉사활동			학교폭력방지활동					
									신고	취약지역 순찰	친구맺기			
회	개교	명	회	개교	명	회	개교	명	회	명	회	지도 교사	명예 경찰	대상자
542	1,823	18,431	4,192	3,152	30,758	1,169	1,328	10,736	189	273	5,034	3,179	554	541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11.

나. 검찰의 예방활동

(1) 우범소년 결연사업

우범소년결연사업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 11월 1일부터 서울·부산·광주·제주지검 및 산하 지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중 1995년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하의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회의」에서 검찰의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다.

동 사업은 범죄예방위원이 교육기관 등의 협조 하에 우범소년과 결연을 맺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선도하여 정상적인 학업과 생업에 복귀시킴으로써 소년범죄나 비행에 사전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결연대상자는 학교에서 퇴학·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폭력씨클에 가입하거나 학교 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연대상자는 선도결연회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결연활동 중 소년이 소재불명이 되거나 선도에 불응하여 결연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도 우범소년 결연사업 가운데 선도결연 회의 및 간담회는 1,730회 개최되었고, 범죄예방위원 교육은 1,491회 이루어졌다. 우범소년 중 결연 대상을 5,336명 선정하여 실제로 4,511명이 결연을 맺었다.

〈표 9-2-7〉 우범소년 결연사업 추진실적

(단위 : 회)

구 분 \ 연 도	선도결연회의 및 간담회	결연대상 선정인원	결연인원	지역추진대회	범죄예방위원교육
2008	1,825	4,933	4,535	387	563
2009	2,023	6,970	6,389	512	997
2010	1,730	5,336	4,511	460	1,491

자료 : 대검찰청, 「검찰연감」, 2011.

(2) 학교담당검사제

학교담당검사제는 1995년 11월 27일 대통령의 학교주변폭력 근절 지시에 의거, 같은 해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검찰의 3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중 학원폭력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학원

폭력방지 및 처리에 관한 지침」(’96. 6. 28. 대검 강력 61330 - 609)에 의거, 1996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학교담당검사제는 일정 지역 내의 수개의 중·고교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 유관기관이나 민간봉사차원의 학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과의 유기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방·선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담당검사는 선도보호위원 및 교사선도위원 학부모위원 등 구성원들과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원폭력 정보수집 및 예방선도 활동방안을 모색하고, 탈선 초기의 학생 상대 개별 면담과 학부모 접촉을 통한 비행의 사전방지, 청소년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합동순찰, 담당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담당검사의 선도강연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도 학교담당검사의 활동실적을 보면 합동순찰 6,691회, 간담회 2,631회, 우범학생 면담 11,997명, 선도강연 1,176회 등이다.

〈표 9-2-8〉 학교담당검사제 활동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 연 도	합동순찰	간담회	우범학생 면담인원	선도강연
2008	4,953	1,924	9,052	1,126
2009	5,651	2,063	10,576	1,466
2010	6,691	2,631	11,997	1,176

자료 : 대검찰청, 「검찰연감」, 2011.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라 함은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 도입의 배경은 소년은 성년과 달리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개선의 가능성도 많으므로 죄질이 다소 중하다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범죄예방위원에게 맡겨 선도·보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초점이 있다.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처음 시행하기 시작하

여 1981년 1월 20일 법무부훈령 제88호 소년선도보호지침이 제정되어 전국에 확대 실시된 뒤 수차례 걸쳐 소년선도보호지침이 개정되어 현재는 1996년 12월 27일 개정된 법무부훈령 제 373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소년선도보호방법은 「접촉선도」, 「원호선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접촉선도」라 함은 귀주 처가 있는 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선도방법을 말한다. 「원 호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귀주 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유예소년에 대하여 선 도보호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접촉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1981년부터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1981년 4,070명에 대하여 선도유예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2,967명에게 선도조건부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표 9-2-9〉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소년범죄	69,211	88,104	134,992	113,022	89,776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5,626	6,610	5,886	7,104	2,967

자료 : 대검찰청, 「검찰연감」, 2011.

기존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소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이외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소년범에게 적용함으로써 선도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그 종류를 보면 소년분류심사원(대안교육센터) 또는 소년원에서 전문가를 통해 일정기간 심리검사, 정신교육, 분노조절 훈련교육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범방지, 인성개발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청소년인 자원봉사 대학생이 범죄청소년과 1대1로 결연하여 상담·스포츠·문화활동·봉사활동 등의 일정한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대상 청소년을 선도하는 멘토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전문상담가로부터 전문적 상담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소년범을 기소유예 처분하여 청소년 비행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등이 있다.

2007년 12월 21일 소년법의 일부 개정으로 검사결정전조사제도(소년법 제49조의 2)를 도입하여 검사 처분 전에 비행원인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비행소년에 대한 교육, 보호자 교육 등을

통해 비행인자를 사전에 제거하여 소년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소년법에 명시하였으며, 이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또는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소년법 제49조의3).

(4)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동법 제15조 제3호(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에 근거하여 1995년 4월 15일 법무부훈령 제332호 보호관찰소선도위탁규정이 제정·시행된 이래, 현재는 개정된 법무부 훈령 제620호(2008. 6. 3.)에 따라 위탁이 시행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는 선도보호위원회에 의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와는 달리 보호관찰소의 장이 선도업무를 관장한다. 보호관찰소장은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방법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선도교육, 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구 등과 접촉할 수 있고, 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비보조, 취학·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대상은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유예 대상은 소년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관찰소는 2010년도에 4,411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실시하였고, 그 중 재범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인원은 163명이다.

〈표 9-2-10〉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 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제	취소
	2008	361,907	3,421	3,967	2,614	116
	2009	467,132	3,807	3,669	2,382	129
	2010	363,106	4,411	34,038	1,915	163

자료 : 대검찰청, 「검찰연감」, 2011.

다. 법무부의 예방활동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1) 개요

법무부는 2007년 7월 23일 부산, 광주, 대전, 청주, 창원, 안산 등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직원 56명을 배치함으로써 그동안 소년분류심사원과 대행소년원에서 담당하던 부적응학생(일반학교에서 의뢰)과 초기단계의 비행청소년(검찰 및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의뢰)에 대한 대안교육과 비수용 범죄소년에 대한 비행진단 및 교육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교육, 일반학생 및 국민에 대한 법교육,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문제 전문가에 대한 전문교육,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는 그동안 학계나 지역사회에서 강조한 비행예방의 중요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무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비행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비행예방에 국가와 지역사회 전체가 전방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용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센터’라는 명칭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행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9-2-1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임무

구 분	기 관 명	설립일	교 육 과 정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부산 · 창원 · 청주 · 광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07.7.23	- 상담조사 - 결정전 조사 - 대안교육 - 보호자교육 - 청소년 심리상담
	대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07.7.23	- 법교육 및 법문화 직무연수 -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안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07.7.23	- 대안교육, 보호자 교육 - 청소년심리상담 - 연구 · 개발 및 직무연수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1).

〈표 9-2-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운영실적 현황

(단위 : 명)

연 도	내 용	대안교육	심리상담	상담조사	결정전조사	보호자교육
2008	계	10,253	3,970	2,205	99	1,743
	부산센터	1,937	870	409	1	139
	광주센터	496	220	835	48	663
	청주센터	1,260	236	482	—	425
	안산센터	2,278	2,145	—	—	350
	창원센터	4,282	499	479	50	166
2009	계	43,263	4,128	2,047	118	1,538
	부산센터	7,031	563	276	25	140
	광주센터	1,644	869	679	53	635
	청주센터	3,626	310	425	10	278
	안산센터	16,153	1,970	—	—	—
	창원센터	14,809	416	667	30	485
2010	대전센터	—	—	—	—	—
	계	61,865	4,366	1,688	230	1,516
	부산센터	19,015	603	254	10	170
	광주센터	12,099	796	603	57	486
	청주센터	7,607	504	406	1	342
	안산센터	15,120	1,918	—	—	277
	창원센터	8,024	545	425	162	241
	대전센터	—	—	—	—	—

주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솔로몬 로파크로 별도 운영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2011).

(2)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 대안교육 실시

2002년부터 지역사회 일반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중·고등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반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이 같은 대안교육을 신설된 6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소년분류심사원 및 7개의 대행소년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안교육으로 진로·성격 등 심리검사, 심성훈련, 체험교육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안교육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학생 생활지도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학부모에게 적성검사 결과 등 자녀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학교와 협조하여 교육수료 학생에 대한 추수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안교육 기관은 비행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3) 기소유예 대상자 및 대안교육명령 대상자 등의 대안교육 실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은 각 해당 지방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 선도유예자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행성의 조기개선과 함께 재비행 방지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전문 진단기법과 교육 프로그램을 비행의 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 교육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강화 및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은 비합숙 체험교육 방식으로 심리 검사, 심성훈련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2008년부터 소년원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제42조의 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대안교육명령을 받은 소년에 대해 1개월의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9-2-13〉 대안교육 실시현황

(단위 : 명)

연 도	구 분	계	학교	검찰	법원	기타
2006		1,710	1,008	371	0	331
2007		3,974	1,507	703	0	1,764
2008		11,095	8,798	1,516	211	570
2009		44,959	5,629	1,425	294	37,611
2010		63,513	11,396	1,124	342	50,651

주 : 2008년 통계상 학교대안교육인원에는 법교육 인원이 포함되었으나 2009년부터 법교육 인원은 기타 인원 포함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2011).

(4) 청소년적성검사실 운영

1996년 2월부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분류심사업무를 대행하는 4개 소년원에서 청소년적성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적성검사실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능·적

성·성격 등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소질과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지침을 제공,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문제 청소년에 대해서도 비행성향을 규명하여 구체적인 개선지침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문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9-2-14〉 청소년심리검사실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 년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인 원	3,976	4,513	5,481	5,256	6,438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2011).

(5) 법교육

법교육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한국법문화진흥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법무부는 2005년 3단계 5개년 법교육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법교육시설 및 법문화 체험관 조성, 법교육 교사 양성,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3월 28일 법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 대국민 법의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동안 법무부는 ‘한국인의 법과 생활’, ‘청소년의 법과 생활’, ‘나는야 법짱’ 등 맞춤형 법교육 학습교재 및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교육 출장강연제, 학생자치법정, 교사 직무연수와 법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교 법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6) 보호자특별교육

2008년 6월 개정소년법 시행으로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이 신설됨에 따라, 법원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 32조의 2 제3항). 보호자특별교육을 위하여 법무부는 청소년이해, 자녀지도방법, 자녀-부모관계 회복 등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12회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운영하고 있다.

〈표 9-2-15〉 보호자교육 실적

(단위 : 명)

연 도	구 분	계	보호자특별교육명령	일반위탁소년 보호자
2008		3,494	56	3,438
2009		5,465	455	5,010
2010		6,626	293	6,333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2011).

2. 비행 청소년의 사법 처리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는 선도, 보호측면에서 교육적인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비행소년의 처리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있다.

가. 경찰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발견되면 경찰에서는 범죄내용과 신상관계,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내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소년범죄조사시 전문가참여제’란 소년범의 조사과정에서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로, 가정·학교 환경 등 43개 비행촉발요인과 공격성·반사회성 등 344개 인성평가 항목을 심층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범의 선도 및 재범가능성을 판단하여 전문적인 선도프로그램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2003년 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이후, 2004년 5개 경찰서, 2005년 45개 경찰서, 2006년부터 2008년에는 52개 경찰서, 2009년에는 60개 경찰서, 2010년 70개 경찰서로 확대운영 중이다.

2007년부터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 가해학생 조사에 전문가참여제를 적극 활

용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저위험군 학생은 사랑의 교실과 연계하여 경찰 단계에서 선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고위험군 학생은 재범방지를 위해 법원·검찰이 운영하는 선도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고 있다. 전문가참여비율은 2003년 0.05%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전체소년범의 7.6%에 해당하는 7,172명이 전문가참여조사를 받았다.

〈표 9-2-16〉 소년범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연도별 운영 현황

구 분 \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운영관서(개소)	2	5	45	52	52	52	60	70
전체소년범(명)	96,697	86,861	83,477	90,628	115,661	123,044	118,058	94,862
참여소년범(명)	55	331	1,320	3,958	5,675	6,266	5,507	7,172
참여비율 (%)	0.05	0.38	1.6	4.4	4.9	5.1	4.7	7.6

주 : 경찰청의 전체소년범 수치(94,862명)와 검찰청의 전체소년범 수치(89,776명)가 다른 것은 검찰단계에서 촉법소년의 수치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11.

나. 검찰

2010년 소년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처리한 내역을 보면 소년범죄자 89,776명 중 기소유예 46.8%, 소년보호 송치 33.6%, 구공판 3.2%, 구약식 2.8% 등이다. 성인범죄와 비교했을 때 소년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매우 낮고,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소년범죄에 대하여 일반범죄와 달리 선도 위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년부 송치는 2006년 20.4%, 2007년 24.3%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가 2008년 21.0%로 소폭 감소한 후 2009년 28.7%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0년 33.6%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4.9% 증가한 결과이다. 검찰단계에서 소년부송치율과 불기소처분율이 높은 것은 검찰단계에서도 소년범죄에 대하여 비행사건화하는 경향이 강해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9-2-17> 소년범죄 처리 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기 소			불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소 계	구 공 판	구 약 식	소 계	협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2006	69,211 (100)	9,315 (13.5)	2,496 (3.6)	6,819 (9.9)	43,495 (62.8)	2,353 (3.4)	36,808 (53.2)	306 (0.4)	4,028 (5.8)	14,105 (20.4)	20 (0.0)	103 (0.1)	2,163 (3.1)
2007	88,104 (100)	10,367 (11.8)	2,815 (3.2)	7,552 (8.6)	54,424 (61.8)	3,029 (3.4)	44,689 (50.7)	394 (0.4)	6,312 (7.2)	21,368 (24.3)	22 (0.0)	93 (0.1)	1,809 (2.1)
2008	134,992 (100)	15,150 (11.2)	4,823 (3.6)	10,327 (7.6)	88,932 (65.9)	4,944 (3.7)	62,977 (46.7)	2,073 (1.5)	18,938 (14.0)	28,360 (21.0)	30 (0.0)	104 (0.1)	2,370 (1.8)
2009	133,022 (100)	7,795 (6.9)	3,929 (3.5)	3,866 (3.4)	71,100 (62.9)	4,684 (4.1)	56,715 (50.2)	1,184 (1.0)	8,517 (7.5)	32,453 (28.7)	37 (0.0)	86 (0.1)	1,535 (1.4)
2010	89,776	5,443 (6.1)	2,913 (3.2)	2,530 (2.8)	52,685 (58.7)	4,801 (5.3)	42,021 (46.8)	339 (0.4)	5,524 (6.2)	30,143 (33.6)	9 (0.0)	93 (0.1)	1,392 (1.6)

주 : '계' 인원에는 성매매송치인원이 포함됨.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1.

다. 소년분류심사원

(1) 개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자질과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떠한 처분이 적합한가를 분류심사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이다. 1977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처음 개원하였고 이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설치되었다가 2007년 7월 소년보호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류심사원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은 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 등 7개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소년원이 설치되지 않은 인천·수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위탁소년의 수용관리와 분류심사업무를 맡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소년의 개체적 원인규명, 소년비행의 조기발견과 치료, 소년비행의 실증적 요인 규명, 청소년비행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위탁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법원소년부에 보내 조사·심리시에 참고하도록 하며, 소년원·보호관찰소에 처우지침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사후지도 방법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위탁소년의 수용

위탁소년의 수용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위탁결정서에 의한다. 새로 수용된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수용사실을 통지한다. 위탁소년은 성별, 연령, 비행의 질, 공범 및 질병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류·수용하고, 인권보호와 보건·위생, 비행의 감염방지에 적정을 기함과 동시에 소년들이 교육적 환경에서 안정감을 갖고 생활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년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법원소년부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06년 소년분류심사원의 신수용인원은 4,612명이었으나 2007년 5,275명, 2008년 5,620명, 2009년 6,065명, 2010년 6,29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일평균수용인원도 2006년 269명에서 2007년 289명, 2008년 341명, 2009년 399명, 2010년 41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9-2-18〉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신 수 용 인 원	4,612	5,275	5,620	6,065	6,295
일일평균수용인원	269	289	341	399	419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2011).

(3) 처우·교육활동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관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차림표에 따라 급식하며 피복·침구류, 세면용품, 학용품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소년원마다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여 위탁소년의 건강관리 및 질병을 치료하고, 시설내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병원에 통원치료를 실시하고 있으

며, 면회는 위탁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탁소년의 교육은 언어·행동·예절·규범 등 기초적인 생활지도와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심리극·분노조절훈련·감수성훈련 등 다양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체육활동·시청각교육·독서지도·레크레이션 등 심성순화 교육과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종교별 관계 인사를 초빙하여 신앙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를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 위탁소년의 신상 및 진로문제에 관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어머니회를 운영하여 무의탁소년 등 불우소년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4) 분류심사

분류심사란 비행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교정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요보호성이란 소년의 성격과 행동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치할 경우 범죄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을 말하며, 요보호성 여부의 판별이 분류심사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분류심사는 심사대상에 따라 수용분류심사와 외래분류심사, 실시방법에 따라 일반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로 구분한다. 수용분류심사는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외래분류심사는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분류심사는 수용된 모든 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비교적 간단한 소년에 대하여 면접조사와 신체의학적 진찰, 표준화검사, 자기기록 및 행동관찰 등을 주로 실시하며, 일반분류심사를 한 결과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하여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자료조회 및 현지조사 등의 특수분류심사를 추가하여 실시한다.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담당 분류심사관과 심리학·교육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류심사위원회에서 재비행 위험성 정도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처우지침, 예후(豫後) 및 판정종류 등을 기재한 분류심사결과를 법원소년부에 송부함으로써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소년원·보호관찰소 또는 위탁소년의 보호자 등에게 지도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0년에 수용된 소년 중 분류심사를 받은 소년은 5,723명이었는데, 이 중 일반분류심사를 받은 인원은 4,380명이고, 특수분류심사를 받은 인원은 1,343명이었다.

〈표 9-2-19〉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분류심사 실시현황

(단위: 명, %)

구 분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용분류심사	계	3,839 (100)	4,640 (100)	5,198 (100)	5,627 (100)	5,723 (100)
	일반분류심사	2,539 (66.1)	3,427 (73.9)	3,796 (73.0)	3,729 (66.3)	4,380 (76.5)
	특수분류심사	1,300 (33.9)	1,213 (26.1)	1,402 (27.0)	1,898 (33.7)	1,343 (23.5)

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2011).

(5) 소년심판절차 개선

법무부는 청소년 비행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송치 대상자 위주로 시행해 오던 분류심사제도를 불구속 송치자를 포함한 모든 소년보호사건 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상담조사제’와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를 대법원과 최종 협의를 거쳐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① 보호소년 상담조사제 도입

2003년 7월 새롭게 도입된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는 불구속 송치로 보호자 등에게 위탁되어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법원 소년부 판사 또는 가정법원 판사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주간에만 3~5일 출석하여 상담과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대상소년의 성격과 행동 특징, 능력과 욕구 등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질과 환경적 특성에 대한 조사와 비행원인 규명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담당 소년부 판사에게 심리자료로 송부하는 한편, 보호자에게는 소년의 훈육과 지도지침으로 제공하고 아울러 소년의 비행성을 없애기 위한 ‘특별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설수용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모든 소년사건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처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판사의 소년사건 심리시 심층적·과학적 판단에 기여하며, 상담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보호자에게 자녀의 지도방향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또한 대상소년에게는 집단상담, 봉사활동, 체험교육 등을 통한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상담조사제는 서울 소년분류심사원과 7개의 대행소년원(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소년원)에서 2006년 3,135명, 2007년 4,437명, 2008년 5,952명, 2009년 5,106명, 2010년 5,3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 9-2-20〉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조사현황

(단위 : 명, %)

연 도	구 분	법원보호처분	합계	위탁심사	상담조사	조사비율
2006		25,262	6,974	3,839	3,135	27.6
2007		35,514	9,077	4,640	4,437	25.6
2008		30,222	11,150	5,198	5,952	36.9
2009		35,819	10,733	5,627	5,106	30.0
2010		32,416	11,024	5,723	5,301	34.0

주 : 상담조사 인원에는 소년분류심사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상담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의 실적이 포함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2011).

② 분류심사관 심리참여 제도

분류심사관심리참여제도는 소년사건 심리과정에서 각 소년부판사가 분류심사결과통지서에 의문이 있거나 그 보고서만으로는 소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년의 성행과 비행환경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분류심사관을 법정에 참여시켜 직접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의 일환이며, 소년분류심사원의 국가 후견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소년법 이념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라. 소년법원

소년법원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와 가정지원을 말한다. 소년법원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가정법원, 대전·대구·부산·광주에 지방법원 가정지원, 인천·춘천·청주·창원·의정부·수원·전주·제주에 지방법원 소년부 등 13개소가 있다. 소년보호사건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11년 4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가정법원으로 승격되면서 소년부가 설치되고, 2012년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 지방법원 가정지원도 가정법원으로 승격될 예정이어서 독자적인 소년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소년법원에서는 소년의 성격·환경·비행경위·재비행성 여부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심사의견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2010년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4,200건으로, 검사송치가 71.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찰서장 송치가 20.8%, 법원 송치가 5.0%, 다른 법원 소년부에서 이송된 경우가 2.3%이다.

〈표 9-2-21〉 소년보호사건 접수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

(단위 : 명, %)

구 분 연 도	계	법원송치	검사송치	경찰서장 송치	타법원 소년부 에서이송	보호자등에 의한 통고 (법 제4조제3항)
2006	25,946 (100)	1,357 (5.2)	17,856 (68.8)	6,665 (25.7)	65 (0.3)	3 (0.0)
2007	37,910 (100)	1,538 (4.1)	26,682 (70.4)	9,636 (25.4)	49 (0.1)	5 (0.0)
2008	41,754 (100)	1,745 (4.2)	29,124 (69.8)	10,781 (25.8)	84 (0.2)	20 (0.0)
2009	48,007 (100)	2,050 (4.3)	33,385 (69.5)	11,609 (24.2)	949 (2.0)	14 (0.0)
2010	44,200 (100)	2,212 (5.0)	31,715 (71.8)	9,213 (20.8)	1,026 (2.3)	34 (0.1)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1.

소년법원의 판사는 검찰로부터 송부된 사건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소년법원에서 행한 최근 5년간 보호처분의 현황을 보면, 보호처분의 비율은 2006년 80.1%에서 2010년 71.9%로 8.2% 감소한 반면, 검사의 불처분결정율은 2006년 6.0%에서 2010년 6.9%로 증가하였고, 검사송치율도 2006년 0.2%에서 2010년 0.9%로 증가하였다. 특히 타법원 이송비율은 2006년 0.4%에서 2010년 4.0%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9-2-22〉 소년보호사건 처리상황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보 호 처 분										불처분	심리 불개시	검사 송치	타법원 이송	기 타
		소계	1호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	1·2호 병합	1·3호 병합	2호 단기 보호 관찰	3호 보호 관찰	4호 보호 시설 등에 감호 위탁	5호 병원 · 요양소에 위탁	6호 처분	7호 소년원 송치					
2006	25,262 (100)	20,241 (80.1)	4,596 (18.2)	7,003 (27.7)	6,416 (25.4)	10 (0.0)	10 (0.0)	462 (1.8)	10 (0.0)	883 (3.5)	851 (3.4)	1,512 (6.0)	3,344 (13.2)	50 (0.2)	106 (0.4)	9 (0.0)
2007	35,514 (100)	26,874 (75.7)	6,536 (18.4)	10,391 (29.3)	7,639 (21.5)	34 (0.1)	9 (0.0)	478 (1.3)	27 (0.1)	957 (2.7)	803 (2.3)	2,056 (5.8)	5,957 (16.8)	67 (0.2)	546 (1.5)	14 (0.0)

구분 연도	계	보 호 처 분																	
		소계	1호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	2호 수감 명령	3호 사회 봉사 명령	4호 단기 보호 관찰	5호 장기 보호 관찰	6호 소년 보호 시설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소년원 송치	1, 2호	1, 2, 3호	1, 2, 4호	1, 2, 5호	1, 2, 3, 4호	1, 2, 3, 5호	1, 3호
2008	39,532 (100)	30,222 (76.4)	6,214 (15.7)	130 (0.3)	181 (0.5)	-	10 (0.0)	410 (1.0)	-	6 (0.0)	762 (1.9)	857 (2.2)	972 (2.5)	-	3,535 (8.9)	874 (2.2)	765 (1.9)	1,576 (4.0)	227 (0.6)
2009	47,865 (100)	35,819 (74.8)	5,883 (12.3)	71 (0.0)	268 (0.6)	23 (0.1)	2 (0.0)	128 (0.3)	100 (0.2)	22 (0.0)	919 (1.9)	992 (2.1)	3,388 (7.1)	572 (1.2)	4,891 (10.2)	1,186 (2.5)	1,905 (4.0)	1,581 (3.3)	1,148 (2.4)
2010	45,090 (100)	32,416 (71.9)	4,527 (10.0)	37 (0.1)	116 (0.3)	34 (0.1)	13 (0.0)	73 (0.2)	81 (0.2)	11 (0.0)	861 (1.9)	806 (1.8)	4,251 (9.4)	615 (1.4)	4,473 (9.9)	1,309 (2.9)	1,777 (4.0)	1,288 (2.9)	1,399 (3.1)

구분 연도	보 호 처 분								불처분	심 리 불개시	타법원 이송	검사 송치	기 타
	1, 3, 4호	1, 3, 5호	1, 4호	1, 5호	4, 6호	5, 6호	5, 8호	기타					
2008	1,960 (5.0)	1,838 (4.6)	6,259 (15.8)	2,599 (6.6)	137 (0.3)	142 (0.4)	408 (1.0)	360 (0.9)	2,020 (5.1)	6,801 (17.2)	332 (0.8)	152 (0.4)	5 (0.0)
2009	2,183 (4.6)	1,731 (3.6)	4,780 (10.0)	1,256 (2.6)	192 (0.4)	739 (1.5)	1,708 (3.6)	151 (0.3)	3,041 (6.4)	7,377 (15.4)	1,234 (2.6)	394 (0.8)	-
2010	2,182 (4.9)	1,482 (3.3)	3,593 (8.0)	880 (1.9)	104 (0.2)	747 (1.6)	1,689 (3.7)	68 (0.1)	3,105 (6.9)	7,338 (16.3)	1,840 (4.0)	391 (0.9)	-

주 : 1) 2호 및 3호 처분 []내는 타처분과 병합된 인원수임.

2) 2008년도 6월 22일 소년법 개정으로 보호처분 유형이 7호처분에서 10호처분으로 변경됨.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1.

마. 형사법원

소년법원이 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이거나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형사법원으로 이송된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0세 미만자의 제1심 소년형사사건의 재판현황을 보면 집행유예의 비율이 가장 높고, 벌금형과 부정기형이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소년형사사건에서 사형과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정기형도 매우 낮은 비율로 선고되고 있다. 2010년에 종국처리된 5,294명 중 사형과 무기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었고, 집행유예가 1,577명(29.8%)로 가장 높았고, 벌금형이 590명(11.1%), 부정기형이 503명(9.5%), 정기형이 472명(8.9%) 순으로 나타났다.

〈표 9-2-23〉 제1심 소년형사사건 재판현황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사형	무기	정기형	부정기형	집행유예	벌금	기타
2006	3,543 (100)	—	—	18 (0.5)	624 (17.6)	934 (26.3)	367 (10.4)	1,600 (45.2)
2007	4,151 (100)	—	—	10 (0.2)	671 (16.2)	1,129 (27.2)	362 (8.7)	1,978 (47.7)
2008	5,026 (100)	—	1 (0.0)	215 (4.3)	531 (10.6)	1,504 (29.9)	554 (11.0)	2,222 (44.2)
2009	6,160 (100)	—	—	462 (7.5)	587 (9.5)	1,828 (29.7)	681 (11.1)	2,602 (42.2)
2010	5,294 (100)	—	—	472 (8.9)	503 (9.5)	1,577 (29.8)	590 (11.1)	2,152 (40.7)

주 : 1) '기타'에는 선고유예, 무죄, 소년부 송치 등이 포함됨.

2) 본 통계는 20세 미만자가 기준임.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1.

3.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가. 소년원

(1) 임무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과교육,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약물남용·발달장애·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의료 및 재활교육과 심리치료·사회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높여왔다.

1988년에는 소년원 학생이 학령기 청소년이란 점을 강조하여 소년원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학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학업연계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1999년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직업능력배양과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과교육 중심의 소년원 교육체제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중심의 특성화교육체제로 혁신하였다.

1958년 공포된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의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주고, 중도에 출원하는 학생은 일반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시켜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중·고등학교와 동일한 과정의 일반교육과정과 전체 교육시간의 70~80%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등의 특성화 교과로 운영하는 특성화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영농, 축산, 원예로 시작된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73년 안양소년원이 “법무부 제1공공직업훈련소”로 지정되고, 뒤이어 1974년 서울소년원 등 전국의 9개 소년원이 “법무부 제2~10 공공직업훈련소”로 인가되면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서울·부산·광주·안양소년원에서 자동화용접, 카일렉트로닉스, 중장비, 건축환경설비, 제과제빵, 피부미용, 헤어디자인, 사무자동화, 영상미디어 등 10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도의교육, 종교교육으로 출발한 소년원 인성교육은 2000년대 들어와서 국토순례, 야영훈련, 문화예술교육, 공연관람, 사회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특성 등을 고려한 집단지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에는 소년원 학생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대구·춘천소년원

을 인성교육 전담소년원으로 개편하고, 2007년 이를 제주소년원으로 확대하여 현재 3개 소년원에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담소년원 이외 소년원에서도 인성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1999년 교육현장의 자료와 전문가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교재를 발간한 이래 2007년까지 총 30여종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6년 (구)대전소년원을 “약물남용원생 전담소년원”으로 지정·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 약물남용,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재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는 대덕소년원이 법원으로부터 소년의료보호시설로 지정받으면서 「소년법」에 따라 병원, 요양소 위탁처분을 받은 소년까지 수용하여 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9년 3월부터는 대덕소년원을 ‘대산학교’로 개교하고 개방소년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9년 7월 1일부터는 청주소년원의 직제를 개정하여 여자소년원으로 개칭하고, 안양소년원에서 여자소년원생을 청주로 인수하였다.

이와 같이 소년원에서는 과거의 수용 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적극적·개방적인 교육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2) 조직

소년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안양·청주·춘천·제주 등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2010년 12월말 기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전체 직원은 769명으로, 교육과 감호를 담당하는 보호직 공무원이 550명(교사자격증 소지자 123명), 별정직공무원인 직업훈련교사 20명,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간호사 33명, 기능직 147명, 전산·건축직 3명, 식품위생직 16명이다.

(3) 보호소년의 수용

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자는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우범소년)이다.

소년법 개정 이전의 처우과정은 단기과정(6호), 일반과정(7호)으로 구분되었다. 단기과정은 6개월 이하를 수용하고, 일반과정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A과정,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의 B과정, 15개월 이상 19개월 미만의 C과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 이후의 소년원 처우 과정은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1개월 이내과정(8호), 단기과정(9호), 장기과

정(10호)으로 구분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 처분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7호처분의 경우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대덕소년원에서 그 임무를 전담하고 있는바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관사의 결정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호처분의 경우는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고, 9호처분의 경우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호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표 9-2-24〉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수용기간

(단위 : 명, %)

연도	기간	계	단기	장 기			평균수용기간 (개월)	
				일반A	일반B	일반C		
2006		1,468 (100)	821 (55.9)	119 (8.1)	73 (5.0)	455 (31.0)	9.10	
연도	기간	계	의료 (6개월미만)	단기 (6개월미만)	장 기			평균수용기간 (개월)
					일반A	일반B	일반C	
2007		1,511 (100)	7 (0.5)	860 (56.9)	206 (13.6)	199 (15.8)	239 (15.8)	9.9
2008 (~ '08.6.21)		651 (100)	4 (0.6)	318 (48.9)	144 (22.1)	104 (16.0)	81 (12.4)	8.9
연도	기간	계	7호(의료)	8호(1개월)	9호(단기)	10호(장기)	평균수용기간 (개월)	
2008 ('08.6.22~)		2,526 (100)	66 (2.6)	895 (35.6)	783 (30.9)	782 (30.9)	6.9	
2009		2,672 (100)	52 (2.0)	1,218 (45.6)	684 (25.6)	718 (26.8)	4.93	
2010		2,755 (100)	56 (2.0)	1,339 (48.6)	771 (28.0)	589 (21.4)	5.1	

주 : 1) 2008.6.22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장기과정의 기존 일반A, 일반B, 일반C과정을 10호처분으로 통합됨.

2) 수용기간별 인원은 처분변경, 처분취소, 유죄판결 항고 등을 제외하고 퇴원 및 임시퇴원 보호소년출원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2008년 6월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8호처분(1개월 미만) 인원 증가에 따라 평균 수용기간 단축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2011).

보호소년은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퇴원 또는 가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퇴원은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결정하고, 6개월~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소년원에 수용된 신수용 보호소년은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소년원 신수용인원은 전년도 2,775명보다 1.7% 증가한 2,822명이었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감소하였으나, 2008년 소폭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2010년에는 1,162명이었다.

〈표 9-2-25〉 보호소년 수용현황

(단위 : 명)

연 도	출원사유	신수용인원	1일평균 수용인원
2006		1,468	1,239
2007		1,511	1,214
2008		1,732	1,361
2009		2,775	1,191
2010		2,822	1,162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2011).

(4) 소년원 교육

소년원 교육혁신의 결과, 지난 1999년 9월 이후 일반학교 학생이 참가한 ‘전국 중·고등부 영어 말하기 대회’ 및 ‘컴퓨터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소년원학생이 각종 수상을 하였으며, 컴퓨터 및 각종 기능 자격을 취득하였다. 2010년도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1,387명이었고, 영어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45명, 일반기능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634명 등이다.

〈표 9-2-26〉 소년원 학생 자격 취득 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2,405	2,377	2,950	2,685	2,644
영 어		182	172	222	74	45
컴 퓨 터		1,328	1,297	1,478	1,389	1,387
일반기능		496	501	600	584	634
기 타		399	407	650	638	578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2011).

보호소년들이 임시퇴원 후 완전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고 더 이상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소년원에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민·관 합동의 총체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최근 5년간 1,628명이 취업함으로써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였다.

〈표 9-2-27〉소년원학생 취업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취업인원	349	277	339	335	328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2011).

한편 2010학년도에 고등학교 70명, 대학교 38명 등 총 108명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값진 향학의 꿈을 이루었다.

〈표 9-2-28〉소년원학생 진학 현황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129	131	172	162	198	159	132	113	166	108
대 학 교	39	51	75	80	97	80	63	49	52	38
고등학교	90	80	97	82	101	79	69	64	114	70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2011).

소년원 학교는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의 명칭 및 교육과정은 <표 9-2-29>와 같다.

<표 9-2-29>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구 분		기 관 (학교명)	설립일	개교일	처우 과정	교 육 과 정
특 성 화 학 교	정보 통신 학교 정보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42. 4.20.	'00. 8.30.	9호 10호	－ 중 · 고등학교 교과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 직업능력개발훈련 (제과제빵, 영상미디어, e-sports) － 보호자교육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45.11.21.	'00. 8.31.	9호 10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 보호자교육
		전주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	'67. 3.25.	'00. 9. 6.	9호 10호	－ 중학교 교과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 보호자교육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63. 9. 9.	'00. 9. 4.	9호 10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 직업능력개발훈련 － 보호자교육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87.11. 9.	'00. 8.30.	8호 9호 10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 8호처분자 교육(제주지역 남자 보호소년) － 보호자교육
	정보 산업 학교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47. 1.18.	'00. 8.31.	10호 위탁	－ 직업능력개발훈련, 컴퓨터, 검정고시 － 보호자교육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46.11. 7.	'00. 9. 6.	10호 위탁	－ 직업능력개발훈련, 컴퓨터, 검정고시 － 보호자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46.10. 1.	'00. 8.30.	9호 10호	－ 중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 － 보호자교육
인문계 학 교	대덕소년원 (대산학교)	'98. 7. 1.	'02. 3. 4.	7호 8호 9호 10호	－ 중학교 교과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 의료 · 재활교육 － 8호처분자 교육(남자 보호소년) － 보호자교육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09. 7. 1.	－	8호 9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 8호처분자 교육(여자 보호소년) － 보호자교육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2011).

(5) 소년원생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가정관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관은 단절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하여 가족합숙제, 1일 생활제, 가정관 면회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총 2,550명의 소년원생이 가정관을 이용하였다. 또한 소년원생들의 사회복귀 장애요소를 제거하고자 문신제거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소년원생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대상자나 수술비용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 산업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17,591명에게 무료로 시술해 주었다.

이와 함께 무의탁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자립생활관은 경기(의왕, 안양),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민간단체인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한다. 무의탁 소년원 퇴원생이나 청소년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며, 2010년에는 190명이 이용하였다.

(6) 출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하도록 하고 있고, 22세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용 중인 학생이 교과 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표 9-2-30〉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

(단위 : 명, %)

연 도	출원사유	계	퇴원	임시퇴원	처분변경	이송	기타
2006		2,359 (100)	1,380 (58.5)	112 (4.7)	5 (0.2)	811 (34.4)	51 (2.2)
2007		2,677 (100)	1,164 (43.5)	377 (14.1)	9 (0.3)	1,086 (40.6)	41 (1.5)
2008		2,793 (100)	871 (31.2)	857 (30.7)	10 (0.3)	1,013 (36.3)	42 (1.5)
2009		4,020 (100)	1,722 (42.8)	950 (23.6)	20 (0.5)	1,289 (32.1)	39 (1.0)
2010		3,941 (100)	1,821 (46.2)	934 (23.7)	26 (0.6)	1,121 (28.5)	39 (1.0)

주 : 1) 기타는 처분취소, 유죄판결, 항고 등 인원임.

2) 2009년부터 퇴원인원 증가는 2008년 6월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8호처분(1개월미만 소년원송치) 인원증가에 기인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2011).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년원장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심사를 신청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는 보호소년의 인격, 교정 성적,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부를 심사·결정한 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시퇴원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임시퇴원생이 임시퇴원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 비행의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임시퇴원 허가를 취소하고 재수용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도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현황을 보면, 퇴원이 4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송이 28.5%, 임시퇴원이 23.7% 순이다.

나. 소년교도소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처우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장소에 수용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3조). 다만,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 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소년교도소는 2004년까지는 천안교도소와 김천교도소에서 나누어서 수용하고 있었으나, 2006년 1월 법무부예규에 의해 천안교도소는 20세 미만 남자소년수형자를 전담 수용하였다. 그러나 교정본부 직제 개편으로 2009년 12월 31일부터 소년범죄자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다.

(1) 수용현황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2006년에는 356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146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소년교도소의 수용인원이 감소한 것은 2008년 6월 22일 개정소년법의 시행으로 만 19세 이상의 수용자가 성인교도소로 이송되었기 때문이다.

〈표 9-2-31〉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단위 : 명)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용인원	356	657	156	169	146

주 : 2006년은 천안소년교도소 수용현황이고, 2007년 이후는 소년수형자가 수용된 전체교정기관 통계임.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자료 (2011).

최근 5년간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을 보면, 절도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도, 강간 등의 비율이 높다. 2010년도 소년수형자 중 절도범이 45명(30.8%), 강도범 등이 33명(22.6%), 강간범 등이 32명(21.9%), 살인범이 11명(7.5%) 순으로 나타났다.

〈표 9-2-32〉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

죄 명 \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356 (100)	657 (100)	156 (100)	169 (100)	146 (100)
절도	109 (30.6)	156 (23.7)	73 (46.8)	62 (36.7)	45 (30.8)
사기·횡령	3 (0.8)	15 (2.3)	1 (0.6)	3 (1.8)	3 (2.1)
폭력·상해	22 (6.2)	10 (1.5)	9 (5.8)	8 (4.7)	1 (0.7)
강간 등	70 (19.7)	116 (17.7)	24 (15.4)	44 (26.0)	32 (21.9)
강도 등	83 (23.3)	192 (29.2)	24 (15.4)	32 (18.9)	33 (22.6)
살인	34 (9.6)	88 (13.4)	9 (5.8)	6 (3.6)	11 (7.5)
과실범	8 (2.2)	15 (2.3)	5 (3.2)	2 (1.2)	3 (2.1)
기타	27 (7.6)	65 (9.9)	11 (7.0)	12 (7.1)	18 (12.3)

주 : 1) 2006년은 천안소년교도소 수용현황이고, 2007년 이후는 소년수형자가 수용된 전체교정기관 통계임.

2) 폭력에는 폭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포함됨.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자료 (2011).

소년수형자의 형명을 보면 유기징역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고형은 거의 없었다. 형기별로는 3년 미만의 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년 미만의 징역형, 1년 미만의 징역형 순으로 높다. 대체로 장기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단기징역형의 비율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도에는 3년 미만 유기징역형의 비율이 3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30.8%, 1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15.8%, 10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10.3%, 15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3.4% 순으로 나타났다.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었다.

〈표 9-2-33〉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단위: 명,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형명·형기						
계		356 (100)	657 (100)	156 (100)	169 (100)	146 (100)
소년수형자	무기	—	16 (2.4)	—	—	—
	15년 이상	2 (0.5)	68 (10.3)	—	—	—
	15년 미만	25 (7.0)	74 (1.3)	3 (1.9)	3 (1.8)	5 (3.4)
	10년 미만	60 (16.9)	89 (13.6)	14 (9.0)	15 (8.9)	15 (10.3)
	5년 미만	63 (17.7)	108 (16.4)	27 (17.3)	42 (24.9)	45 (30.8)
	3년 미만	150 (42.1)	233 (35.5)	87 (55.8)	89 (52.7)	58 (39.7)
	1년 미만	51 (14.3)	52 (7.9)	24 (15.4)	19 (11.2)	23 (15.8)
	6월 미만	5 (1.5)	15 (2.3)	1 (0.6)	1 (0.6)	—
기타수형자	무기	—	—	—	—	—
	15년 이상	—	—	—	—	—
	15년 미만	—	—	—	—	—
	3년 이상	—	—	—	—	—
	3년 미만	—	—	—	—	—
	1년 미만	—	2 (0.3)	—	—	—
	6월 미만	—	—	—	—	—

주: 1) 2006년은 천안소년교도소 수용현황이고, 2007년 이후는 소년수형자가 수용된 전체교정기관 통계임.

2) 폭력에는 폭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포함됨.

자료: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자료, 2011.

(2) 교정교육

교정교육은 범죄적 심성을 순화시킴으로써 재범에 이르지 않고 사회에 유용한 일원으로 복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교화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0년도 소년교도소에서의 학과교육 인원은 75명인데, 이 중 일반학과 교육을 받은 자는 35명,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원은 40명이다.

〈표 9-2-34〉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교육인원(계)	89	60	85	75	75
일반학과교육	39	27	35	35	35
방송통신고(졸업인원)	50(8)	33(16)	50(8)	40(6)	40(13)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자료 (2011).

(3) 출소

소년수형자는 해당형기가 종료하면 출소하게 되지만, 형기가 종료하기 전에도 징역 또는 금고로 선고받은 소년이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1/3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소년법 제65조). 소년수형자 중 가석방된 자의 비율은 2006년 51.0%, 2007년 22.6%, 2008년 18.3%, 2009년 16.5%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2010년에 18.4%로 소폭 상승하였다.

〈표 9-2-35〉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단위 : 명, %)

연 도 \ 석방사유	계	가석방	집행종료결정	만기석방	기타
2006	275(100)	141(51.0)	—	102(37.0)	32(12.0)
2007	673(100)	152(22.6)	—	197(29.3)	324(48.1)
2008	317(100)	58(18.3)	—	164(51.7)	95(30.0)
2009	103(100)	17(16.5)	—	44(42.7)	42(40.8)
2010	114(100)	21(18.4)	—	66(57.9)	27(23.7)

주 : 1) 2006년은 천안소년교도소, 2007년 이후는 소년수형자가 수용된 전체교정기관 통계임.

2) 집행종료결정은 단기만료 후 장기도래전의 석방, 만기석방은 장기만료로 인한 석방을 의미함.

3) '기타'는 특별사면, 형집행정지, 사망, 노역종료 등을 포함함.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자료 (2011).

다. 보호관찰소

(1) 개요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조사,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에 관련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원호를 받게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를 하게 하거나,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법에 대하여 최초로 시행된 보호관찰은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어 성폭력사범(1994년), 성인형사범(1997년), 가정폭력사범(1998년), 성매매사범(2004년),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2008년)로까지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2010년 전체 보호관찰 접수인원 132,429명 중 소년대상자는 45,996명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의 40.5%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전체 보호관찰 실시인원 중 청소년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나, 청소년대상자의 높은 변화가능성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대상자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대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우수자원과 연계하여 재범방지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보호관찰의 재범방지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자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호관찰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조직

보호관찰행정 조직으로는 중앙감독기관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보호정책과, 보호관찰과가 있고,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고등검찰청 소재지(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 말 기준 지방검찰청 및 주요지청 소재지에 16개 보호관찰소와 40개 보호관찰지소, 서울지역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3) 보호관찰 실시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 「형법 제62조의 2」에 의한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소년법의 개정(일부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 6.22.)으로 단기보호관찰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으며, 보호관찰 부과연령이 10세로 하향되었다.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신규 접수인원은 2006년 23,451명, 2007년 29,005명, 2008년 36,099명, 2009년 46,686명으로 해마다 접수인원이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45,996명으로 감소했다. 2010년도 청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소년보호자가 38,681명(84.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소유예자 4,255명(9.3%), 집행유예자 1,723명(3.7%), 임시퇴원자 1,177명(2.6%) 순이다.

〈표 9-2-36〉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접수 추이

(단위 : 명)

구 분 연 도	계	신고 유예	집행 유예	소년 보호	가석방	임시 퇴원	가정 보호	성매매 보호	기소 유예	성구매 자교육	벌금 대체	이수 명령
2006	23,451	2	1,479	19,668	198	163	5	8	1,906	22	—	—
2007	29,005	4	1,560	24,555	142	432	5	15	2,265	27	—	—
2008	36,099	1	1,907	30,488	97	945	9	32	2,591	29	—	—
2009	46,686	4	2,174	40,139	95	1,156	6	29	3,060	24	9	—
2010	45,996	1	1,723	38,681	53	1,177	3	15	4,255	8	78	2

주 : 1) 접수는 신수와 이입을 합산. 보호관찰은 광의의 의미임.

2) 벌금대체 사회봉사명령은 2009년부터, 이수명령은 2010년부터 실시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2011).

보호관찰 기간 중 청소년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법정준수사항(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및 외출제한명령 등 법원 및 심사위원회에서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을 지키며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청소년대상자와의 초기면담,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일반, 주요, 집중대상자 등으로 분류하고, 분류등급에 기초하여 차별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최근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통제를 위해 출석지도 위주의 보호관찰 방식을 탈피하여 주거지 방문, 생활근거지에서의 면접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역동적 보호관찰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6년 9월부터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중감독을 실시하는 재범고위험군 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는 등 성적이 불량한 때

에는 형의 집행 등 불이익 처분 가능성을 경고하고,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인하고 유치한 후 보호처분변경, 집행유예 취소, 가석방·임시퇴원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 중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가해제 또는 부정기형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개선의지를 북돋우고 보호관찰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표 9-2-37〉 청소년대상자 보호관찰성적에 따른 조치현황

(단위 : 명)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성 적 양호자	계	214	202	183	369	105
	가해제	214	202	183	369	105
	부정기형 종료	—	—	—	—	—
성 적 불량자	계	14,093	16,273	19,459	24,903	25,873
	경 고	11,165	12,823	14,674	18,827	19,037
	구 인	1,012	1,161	1,538	1,987	2,153
	유 치	962	1,110	1,490	1,943	2,095
	취소·변경 등 ¹⁾	843	1,078	1,638	2,033	2,444
	기 타 ²⁾	111	101	119	113	144

주 : 1) 취소·변경은 집행유예취소, 보호처분변경, 가석방·임시퇴원취소, 선도위탁취소, 가정보호취소임.

2) 기타는 기간연장, 보호관찰 정지, 사회봉사허가 취소를 포함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2011).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처우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해 전국 56개 보호관찰(지)소에서 각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특성별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으로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 대안교육, 상담교육,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자특별교육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유도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한다. 청소년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주로 처벌적 효과보다는 교육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노인, 장애인 등 생활복지시설에

서 사회봉사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봉사체험을 통해 범죄에 속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사회봉사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 연령은 14세로 낮아졌으며, 사회봉사명령 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다(소년법 제33조 제4항).

2010년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인원은 총 7,394명이고,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1,324명,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6,070명이다.

〈표 9-2-38〉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구 분 연 도	총계	직접 집행	협 력 집 행					
			소계	자연 보호	복지 분야	공공 시설	대민 지원	기타
2006	4,031	1,899	2,132	23	1,889	171	25	24
2007	3,982	825	3,157	12	2,974	125	8	38
2008	5,726	1,477	4,249	11	3,990	166	17	65
2009	8,178	1,443	6,735	7	6,429	184	48	67
2010	7,394	1,324	6,070	2	5,812	157	80	19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2011).

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수강 명령을 통해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나 행동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의 범죄내용에 따라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알코올남용 방지교육, 정신·심리치료교육, 성폭력 방지교육, 준법운전강의, 가정폭력방지교육 등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수강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수강명령 부과 연령은 12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수강명령 시간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소년법 제33조 제4항).

2010년 청소년 수강명령 집행인원은 9,779명이고,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9,212명,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567명이다.

〈표 9-2-39〉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구 분 연 도	총 계	직접 집행	협 력 집 행						
			소 계	약 물	준 법 운 전	심 리 치 료	가 정 폭 력	성 폭 력	기 타
2006	3,059	2,683	376	2	4	92	1	19	258
2007	2,956	2,718	238	2	42	59	—	11	124
2008	5,847	5,620	227	—	40	77	—	14	96
2009	10,397	9,954	443	3	—	2	—	46	382
2010	9,779	9,212	567	—	—	78	2	43	444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2011).

(5) 판결(결정)전 조사 및 환경조사

판결(결정)전 조사는 법원이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조건으로 한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명하기 위하여 판결(결정)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요청함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범죄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의 제반사항에 관해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 처분의 적합성 판별과 법원의 적정판결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대해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검사결정전조사제도가 신설되었다(소년법 제49조의 2).

환경조사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수용자, 보호감호소의 감호처분자에 대한 범죄의 동기 및 현재의 환경을 조사하는 것으로 교정 교육자료와 가석방·임시퇴원·가출소 등의 심사자료, 그리고 보호관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내용은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생계대책 등이며, 면접, 사실조회, 자료분석 등의 기법이 사용된다. 환경조사 결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소장은 본인, 가족, 관계인의 동의 또는 협력을 얻어 수용자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다.

판결(결정)전조사는 2006년 1,537건에서 2010년 10,856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환경조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표 9-2-40〉 청소년대상자 판결(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접수실적

(단위 : 건)

연 도	구 분	환경조사(소년원 의뢰)	판결(결정)전조사
2006		1,584	1,537
2007		1,614	3,072
2008		1,477	3,036
2009		1,668	4,848
2010		1,454	10,856

주 : 판결(결정)전조사는 판결전조사와 결정전조사를 합산한 것임.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2011.

제10부

2010년 출범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은 청소년정책,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두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상시 점검단속 등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가족정책실과 관련한 별도의 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을 두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2010년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1,380명, 2급 청소년지도사 14,881명, 3급 청소년지도사 7,518명 등 총 23,779명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다. 청소년상담사는 2010년까지 모두 여덟 차례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을 실시하여, 청소년상담사 1급 256명, 2급 1,475명, 3급 2,339명 등 총 4,070명의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를 배출하였다.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양성 현황



자료 : 여성가족부(2010)

제10부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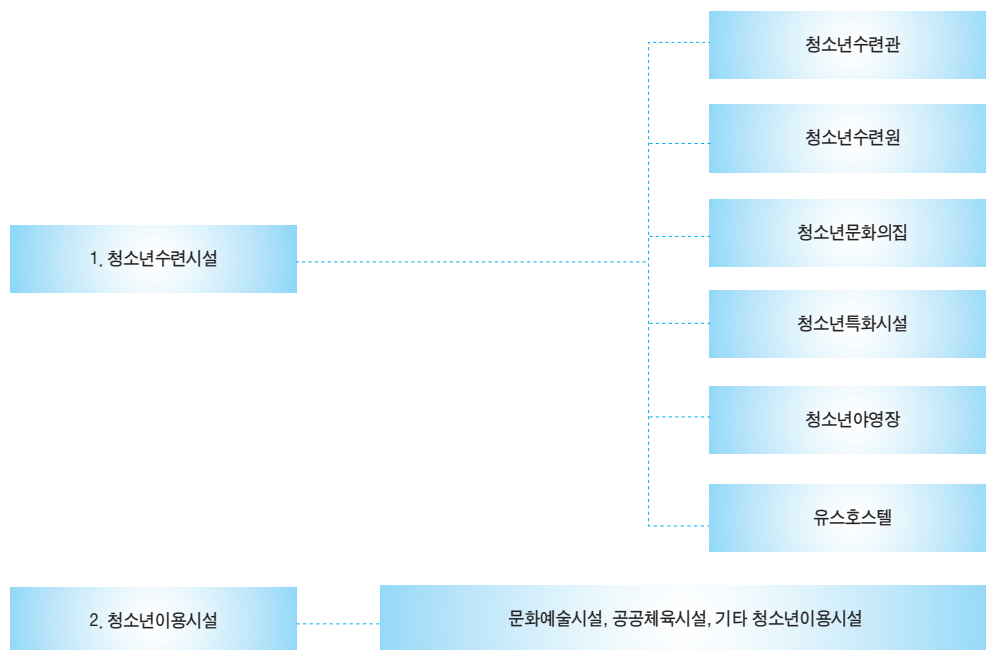
- 제1장 | 청소년 시설
- 제2장 | 청소년지도자
- 제3장 | 청소년 단체
- 제4장 |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 제5장 | 청소년관련 연구·개발기관
- 제6장 |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제1장 청소년 시설

1.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의 민간분야도 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지만, 민간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림 10-1-1]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자료 : 여성가족부(2011)

가. 청소년수련시설

(1) 수련시설 현황

청소년 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활동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하였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을, ‘청소년 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활동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992년 이전에는 수련시설이 150여개에 불과하였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2월 기준 721개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10-1-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21	168	216	174	41	116	6
공 공	464	165	213	43	25	12	6
민 간	257	3	3	131	16	104	0

자료 : 여성가족부(2011)

<표 10-1-2>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21	168	216	173	41	116	6
서울	60	33	17	2	0	3	5
부산	22	7	9	4	1	1	-
대구	12	5	5	1	0	1	-
인천	22	7	6	4	2	3	-
광주	11	5	4	1	0	1	-
대전	12	3	7	1	0	1	-
울산	9	1	6	2	0	0	-
경기	138	25	39	51	6	16	1
강원	74	12	24	14	5	19	-
충북	44	9	9	14	2	10	-
충남	45	7	10	12	3	13	-
전북	53	13	21	11	3	5	-
전남	43	11	13	8	6	4	-
경북	65	15	11	16	7	16	-
경남	70	12	16	27	3	12	-
제주	41	3	19	5	3	11	-

주 : 국립청소년시설(3개) - 중앙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 / 평창수련원(강원도 평창군) /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전남 고흥군, 2010.7월 개원).
자료 : 여성가족부(2010.12.31)

(2) 수련시설의 설치

① 중앙정부의 수련시설 설치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시설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및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를 건립·운영 중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해양환경체험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고 미래해양자원 개발 및 기술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센터」, FTA, DDA 등으로 인한 농업수입개방의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농업의 비전과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새로운 농업생명의 발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 국내·외 청소년교류 및 수련시설간의 네트워크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독립기념관 부지내(동곡)에 부지 808,633㎡, 연면적 35,144㎡ 내외 규모로 약 6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 6월에 준공되었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자연권 청소년수련활동의 시범적 운영 및 총괄·지원을 위한 자연권수련시설로, 수련시설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에 부지 478,300㎡, 연면적 21,127㎡ 규모에 약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8년 10월에 준공되었다.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는 우주분야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청소년 우주체험 활동의 장을 해외에서 국내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우주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에 부지 271,039㎡, 연면적 10,408㎡규모의 우주체험관, 우주생활관 등을 약 4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 7월에 준공되었다.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센터는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 Transfer Lease)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에 부지 50,756㎡, 연면적 12,567㎡에 해양환경체험시설 등 약 372억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2012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도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 Transfer Lease)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에 각각 부지 38,510㎡, 연면적 10,292㎡에 농경문화체험시설 등 약 22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2012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설치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많은 생활권 시설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1990년부터 지방양여금이 청소년시설 건립에 사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10년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한 지원으로 건립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로 생활권수련시설로, 행정구역별로 1개소씩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며, 읍·면·동에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신규건립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기능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부지 선정시 청소년의 접근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2011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26개소 신규건립 및 기존 시설 44개소에 대하여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③ 수련시설 설립 사전검토와 주택건설시 설치계획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국립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입지 조건이나 내부구조,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중 청소년 및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비율을 각각 5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생활공간 주변에서 손쉽게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단지 안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3,000호를 초과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기본계획에 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3) 수련시설 운영지원

① 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

수련시설의 증가와 함께, 시설의 안전을 위해 여성가족부 주관 하에 관련기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과 합동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주요 구조부의 균열, 내구성 저하 등의 위험사항, 석축, 옹벽, 담장 및 부대시설의 안전성, 전기, 기계, 소방 및 냉·난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기타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및 재난 관리 체계 구축 여부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 안전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단체가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동법 제25조에서는 수련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6년도부터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각 청소년시설 운영주체들에게 상황 개선 및 위상을 제고토록 유도하고 있다.

②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수련시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설 간 정보교류, 협력 체계를 통한 상호간의 권익과 교류사업 증진을 위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협회는 회원이 되는 수련시설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사업,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나. 청소년이용시설

(1) 청소년이용시설 개념과 유형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이지만,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활동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이용시설로는 ①「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②「과학관육성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③「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④「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 교육시설 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⑥「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⑦「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⑧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高水敷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로써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용시설 중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하여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청소년이용시설 현황

① 문화시설

문화예술시설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국가가 건립한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의 시설이 있다. 문화공간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관(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으로 분류된다.

② 과학관

과학관 중 대표적인 이용시설로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서울과학관이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상설전시관에는 4개 분야 약 4,100여점의 전시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 밖에 탐구관, 천체관, 영화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국립서울과학관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과학교실, 세미나실, 놀이 및 휴식 공간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③ 체육시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집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선수의 육성을 위한 전문체육시설의 건설을 지원해 왔으며, 각종 국제경기대회 등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수준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종류로는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동네운동장, 길거리농구대, 시·군 기본체육 시설 등이 있다.

2. 청소년 보호 · 복지시설

가. 청소년보호시설

(1)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폭력이나 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센터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The Youth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가정과 학교에서 학대와 폭력을 받은 청소년, 가출청소년, 성범죄 피해청소년, 임금체불 등 근로현장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3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활동하는 NGO와 경찰, 행정당국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가출청소년과 성매매 구조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의 긴급구조와 일시보호를 위한 드롭인센터(Drop-in-center)를 개설하였다. 2005년부터는 서울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를 부산, 광주, 경기, 경남 등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도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청소년재활센터 및 기타시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가해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한 청소년재활센터의 설치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데, 이 경우 보호시설로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보호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선도보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청소년지원시설로는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상담 시설로는 여성복지상담소와 모·부자복지법에 규정된 모·부자복지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이 있다.

나. 청소년복지시설

(1) 가출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9~24세의 청소년들을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쉼터유형에 따라 일시(24시간), 3개월, 2년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1992년 시범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서울YMCA 청소년쉼터가 개소한 이래 1996년 이후 광역시 중심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1년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을 받는 쉼터는 83개소를 운영 중이다.

2005년에는 가출 및 위기 청소년의 요구와 특성에 따른 보호시설 체계화를 위해 청소년 쉼터를 일시쉼터(드롭인센터), 단기쉼터(청소년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하였으며, 각 청소년쉼터의 전문성과 특성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11년부터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접근·개입을 위해 아웃리치 전담인력을 전국 일시쉼터에 배치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2) 청소년치료재활시설

최근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보호시설로 보내지거나 학업중단, 가출 등으로 거리를 방황하는 위기청소년과 ADHD,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의 증가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기존 청소년시설은 보호, 치료, 교육, 자립 등 개별적이고 분절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보다 종합적, 전문적 기능 부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의 성장·발달과정에 맞는 one-stop 서비스 제공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사업구상으로 '07년도 50억원의 예산확보로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면서 1차 부지선정 결과 건립 불가능 지역으로 '08.12월 최종부지를 경기도 용인시에 선정하였으나 건설비 등 49억원이 불용되었다.

그러나 그해 12월 센터 건립사업을 총사업비 대상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축기본계획 및 운영모델 기초연구를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09.5월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립틀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하여 '09.10월 조달청의 맞춤형서비스를 이용한 설계계약을 완료하고, '09.12월 진입도로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한국감정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유지 매입에 추진하여 센터건립에 매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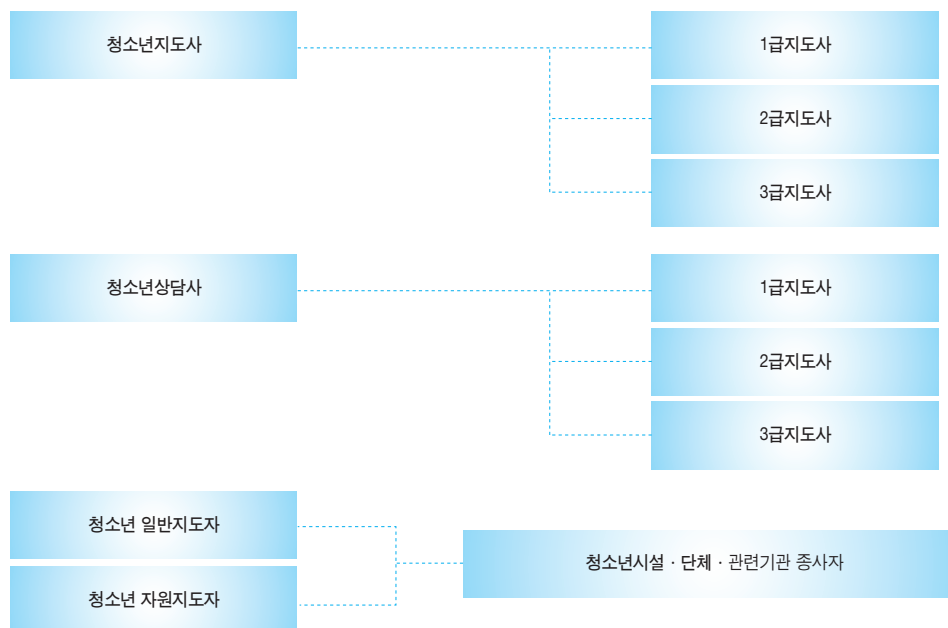
이에 따라 '10.5월 실시설계완료와 '10.7월 진입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 및 실시인가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축비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총사업비 13억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135억원 및 사업기간을 '08~'12년으로 1년 연장하여 총 공사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8월말 시설공사 및 시공감리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여 '10.9월부터 '12년 상반기까지 건축공사 진행 후 공사진행에 따라 개원할 예정에 있다.

제2장 | 청소년지도자

1. 청소년지도자의 정의 및 유형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총칭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2010년까지 총 23,779명이 배출되었으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도 1천2백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림 10-2-1] 청소년 지도자의 분류



자료 : 여성가족부(2010)

2. 청소년지도자

가.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해 오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1, 2, 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간 등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한다.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표 10-2-1>,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표 10-2-2>와 같다.

<표 10-2-1> 청소년 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등 급	응 시 자 격 기 준
1급 청소년지도사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급 청소년지도사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2의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표 10-2-1〉 청소년 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계속)

등 급	응 시 자 격 기 준
3급 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자료 : 여성가족부(2010)

〈표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구분	검정과목	검정방법	
1급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 · 객관식 필기시험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필기 시험	면접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식필기 시험	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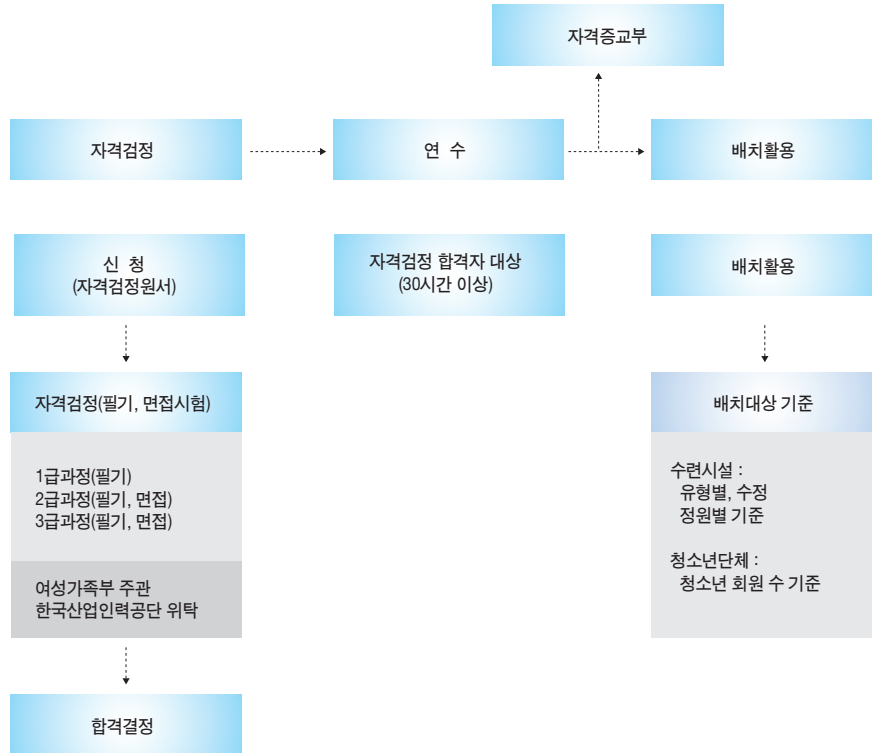
주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자료 : 여성가족부(2010)

나.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청소년지도사 양성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연수를 실시한 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는 다음 [그림 10-2-2]와 같다.

[그림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은 <표 10-2-3>과 같으며 자격검정의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또한 2008년 1월부터는 2급 자격 기준 중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와, 3급 지도사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는 해당 급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다. 청소년지도사 양성실적 및 배치기준

청소년지도사 양성계획에 따라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1,380명, 2급 청소년지도사 14,881명, 3급 청소년지도사 7,518명 등 총 23,779명의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다. 2010년도에는 총 3,295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는데 이중 여성이 2,661명으로 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1급은 53명, 2급은 2,374명, 3급은 868명 등이었다. 연도별 지도사 양성현황은 <표 10-2-3>와 같다.

<표 10-2-3>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1급		2급		3급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993	—	—	311	174	156	72	467	246	713
1994	78	18	229	146	137	100	444	264	708
1995	81	20	193	168	137	116	411	304	715
1996	36	11	105	88	54	47	195	146	341
1997	98	33	167	147	110	80	375	260	635
1998	87	33	122	158	93	100	302	291	593
1999	77	51	266	264	96	114	439	429	868
2000	70	43	255	330	139	151	464	524	988
2001	58	39	421	569	221	275	700	883	1,583
2002	78	39	310	527	189	286	577	852	1,429
2003	47	43	269	431	194	386	510	860	1,370
2004	28	46	232	431	180	400	440	877	1,317
2005	14	17	160	296	217	688	391	1,001	1,392
2006	43	47	314	478	148	218	505	743	1,248
2007	11	20	247	448	37	146	295	614	909
2008	7	20	342	1,744	114	517	463	2,281	2,744
2009	11	23	359	1,806	186	546	556	2,375	2,931
2010	20	33	437	1,937	177	691	634	2,661	3,295
누 계	844	536	4,739	10,142	2,585	4,933	8,168	15,611	23,779

자료 :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시설과 단체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표 10-2-4>와 같다.

<표 10-2-4>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 청소년수련시설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 1급청소년지도사 1인, 2급청소년지도사 1인, 3급청소년지도사 2인 이상 ■ 수용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인을 초과하는 250인 마다 1급, 2급 또는 제3급 청소년지도사중 1인 이상을 추가
청소년수련원	■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인 이상 ■ 수용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과 500인을 초과하는 250인 마다 1급, 2급 또는 제3급 청소년지도사중 1인 이상을 추가
유스호스텔	■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둔다. 다만, 다른 시설의 청소년지도사를 둔 때에는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이용의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
청소년특화시설	■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인 이상

자료 : 여성가족부(2010)

□ 청소년단체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단체	■ 청소년회원 수가 2,000인 이하인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0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000인 마다 1급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0,0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수의 5분의 1 이상은 1급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자료 : 여성가족부(20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청소년상담사

가. 청소년상담사의 정의 및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상담실무 경력이나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청소년상담사는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초·중·고·대학교의 학생상담소,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경찰청이나 법무부 등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사설 청소년상담실, 아동청소년대상 병원, 일반청소년관련 사업체, 근로청소년관련 사업체 등에서 청소년상담 업무에 종사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은 <표 10-2-5>와 같다.

<표 10-2-5>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등 급	응 시 자 격 기 준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상담 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2급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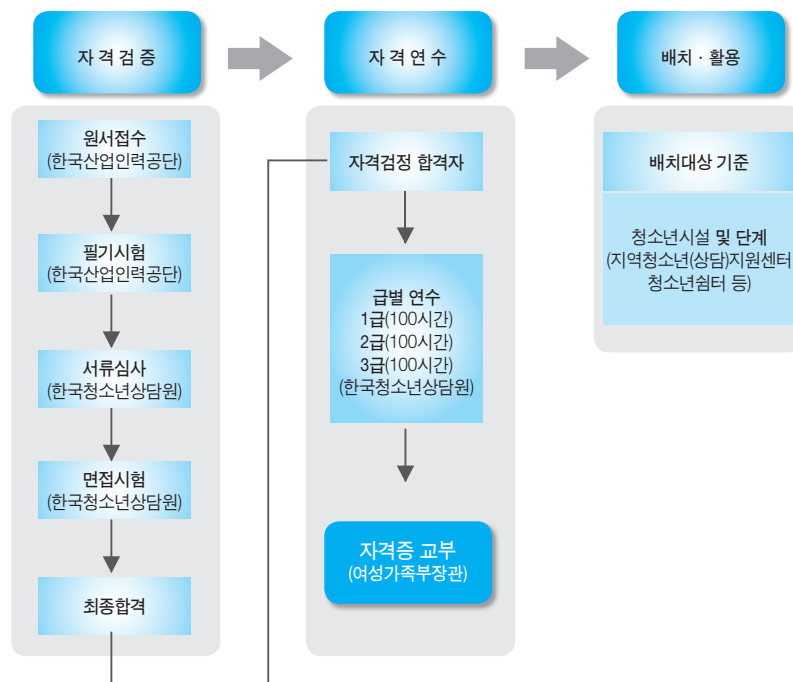
주 : 상담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자료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별표 3.

나. 청소년상담사 양성체제와 배치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100시간 의무 연수를 실시하며, 지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시설에 배치·활용된다. 이후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일정한 시간의 보수교육을 받게 된다.

[그림 10-2-3] 청소년상담사 양성체제



자료 :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시험 과목은 1급 5과목, 2급과 3급은 각각 6과목이며,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필기시험 합격 후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과한 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볼 수 있다.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자격검정 최종 합격자로 본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은 <표 10-2-6>과 같다.

〈표 10-2-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

등 급	검 정 과 목		검정방법	
	구분	과 목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선택	■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선택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선택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자료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별표 4.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은 청소년상담 관련 이론과 실제적인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급별로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급별 자격연수 과목은 〈표 10-2-7〉과 같다. 자격연수 형태는 급별 책무에 맞는 질적 교육을 위하여 이론, 세미나,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2-7〉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등 급	연 수 과 목
1급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상담수퍼비전 ■ 청소년상담프로그램개발 ■ 청소년위기개입 II ■ 청소년문제세미나 ■ 청소년관련법과 정책
2급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상담과정과 기법 ■ 청소년 진로·학업상담 ■ 청소년 위기개입 I ■ 지역사회상담 ■ 부모상담
3급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 개인상담 ■ 청소년 집단상담 ■ 청소년 매체상담 ■ 청소년 상담현장론 ■ 청소년 발달문제

자료 :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제31조 별표 2.

다. 청소년상담사 양성실적 및 배치기준

청소년상담사 양성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제8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이 있었으며, 청소년상담사 1급 256명, 2급 1,475명, 3급 2,339명 등 총 4,070명의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였다.

〈표 10-2-8〉 청소년상담사 양성현황

(단위 : 명)

연 도	1급		2급		3급		계
	남	여	남	여	남	여	
2003	8	99	22	271	37	247	684
2004	4	17	6	84	11	92	214
2005	5	16	21	150	19	132	343
2006	6	24	17	154	10	196	407
2007	0	1	11	166	17	279	474
2008	6	41	23	171	39	411	691
2009	3	12	20	219	56	461	771
2010	1	13	12	128	21	311	486
계	33	223	132	1,343	210	2,129	4,070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0)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에서는 1급 청소년상담사 또는 2급 청소년상담사 3인 이상을 두고, 3급 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2에 따른 시·군·구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에서는 2급 청소년상담사 또는 3급 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에서는 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사와 마찬가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23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이후 전문가로서의 윤리성과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 함양을 위하여 2007년부터 보수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0-2-9〉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현황

(단위 : 명)

연도	1급	2급	3급	계
2007년	5	52	78	135
2008년	16	74	161	251
2009년	33	122	147	302
2010년	27	148	307	482
계	81	396	693	1,170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0)

제3장 청소년 단체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약칭 : 청협, www.koreayouth.net)는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내·외 청소년단체의 상호연락과 제휴 협조를 도모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5년 12월 8일 국내 15개 민간 청소년단체의 협의기구로 창립되어, 청소년문제에 대한 공동연구, 정보교환, 청소년단체간의 상호협력 도모와 청소년관련 정부부처와 유관 사회단체, 각급 학교 그리고 세계청소년기구와의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1966년 8월 10일에는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orld Assembly of Youth : WAY)에 가입하였으며, 1972년 8월 15일에는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sian Youth Council : AYC)의 창설멤버가 되어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속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등 청소년육성 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의 제정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1988년 11월 11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이후 2004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수행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현재 72개 회원 청소년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2011년 기준으로 190만여명의 청소년회원과 18만여명의 청소년지도자 등 총 280만여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회원단체 가입은 청소년기본법에 준하여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신청을 하면 이 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단체가 된다. 회원단체 중에는 6개의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가 가입되어 있는데, 특정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목적에 따라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

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청소년관련 분야의 국제기구(WAY, AYC 등) 활동,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남·북 청소년 및 해외교포 청소년과의 교류·지원,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청소년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우수 청소년 단체와 모범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의 포상, 국제청소년센터 및 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2011년을 ‘청소년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합니다’의 해로 정하고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단체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청소년단체활동 내실화 지원을 통하여 미래사회 인재상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다각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청소년분야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대정부·대국민 활동을 전개하였고, 청소년분야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연구세미나와 청소년단체 전문연수에도 매진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회의 및 청소년기자단이 활동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분야의 정보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정보콘텐츠와 출판물 등을 제공하며 청소년분야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회원단체와 청소년기관단체들을 대상으로 각종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지원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상찬활동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개선활동과 청소년 건전인터넷문화 조성활동, 청소년 희망나눔기금 사업 등도 기업체 및 대외기관과 협력하여 성황리에 추진하는 등, 청소년분야에 대한 범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나아가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무대에서 당당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아시아청소년초청연수와 국제청소년포럼 등 국경과 인종, 문화를 초월한 청소년들의 교류의 장을 열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힘썼다. 이외에도 국제청소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청소년기관단체 연수는 물론 기업체 및 유관기관 각종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국가간 협정을 통한 전 세계 23개국과의 정기적인 청소년교류활동도 성황리에 추진하고 있는 등 국내·외 청소년분야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계속 매진하고 있다.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The Association Of Youth Centers, www.youthnet.or.kr)는 전국 810여개 공공 및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의 발전을 위한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정책 제안 등을 위해 1989년 10월 1일 창립되었고, 2002년도에 민간 청소년수련시설과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합하여 조직과 기능을 재정립하였으며, 2004년 2월에 공표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9조에 의거하여 2005년 2월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하였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청소년활동 기반 확대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청소년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극대화를 위한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의 연계사업 개발·운영지원, 청소년활동을 통한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실천방안 수립, 우수 마케팅 사례 발굴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유관기관, 청소년지도자 등과 상호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전한 사회 환경조성,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방협회 구성 및 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지원체제 구축 등이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활동 및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보급,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청소년활동 및 시설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 국·내외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실태조사관리 및 통계분석, 청소년수련시설의 투명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종합평가사업,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지원사업, 청소년활동 및 시설의 정보제공을 위한 시설정보시스템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총람 발간,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청소년지도사의 취업정보 제공, 예비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실습지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사업 수탁 업무 등 청소년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위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시설의 환경적·기능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는 청소년시설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적서비스 확대를 위해 개설하였으며 청소년방과후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 청소년

년방과후활동에 대한 홍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시설안전지원센터’는 안전한 청소년활동의 보장 및 지원을 위해 개설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안전 검토 및 기술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안전 능력 배양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자문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인증평가센터’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투명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기반 정착 및 청소년수련시설 간 선의경쟁을 유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질적 수준관리시스템 마련 및 평가과정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시설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지원수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마련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실태 파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중앙정부-지역-현장(청소년수련시설)을 매개하는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활동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오늘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국가성장동력이 됨은 물론 그들과 함께 땀흘려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부
록

제4장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 설치경위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는 최초의 정부조직은 청소년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인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된 1988년 당시 체육부에 설치된 청소년국이다. 이후 체육부 청소년국은 1991년 청소년 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되었고, 1993년 3월에는 정부조직의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부 청소년 정책실로 변화되었다. 이후, 1997년 3월 늘어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약물에 대한 유통규제와 단속,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시행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7년 7월 문화체육부에 설치되었다.

청소년조직은 다시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정책실이 청소년국으로 변화되어 문화관광부에 존치되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로 소속이 변경되어 활동하여 왔다. 이렇게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은 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체계적·종합적 정책수행이 곤란하였고,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능력이 미비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 정책기능(육성 및 보호)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국무총리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 설치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설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2005년 3월 24일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계법률(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정부조직법)을 개정·공포하였다. 또한 2005년 4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청소년위원회 직제」를 제정, 「청소년위원회」를 공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여성부 보육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정책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개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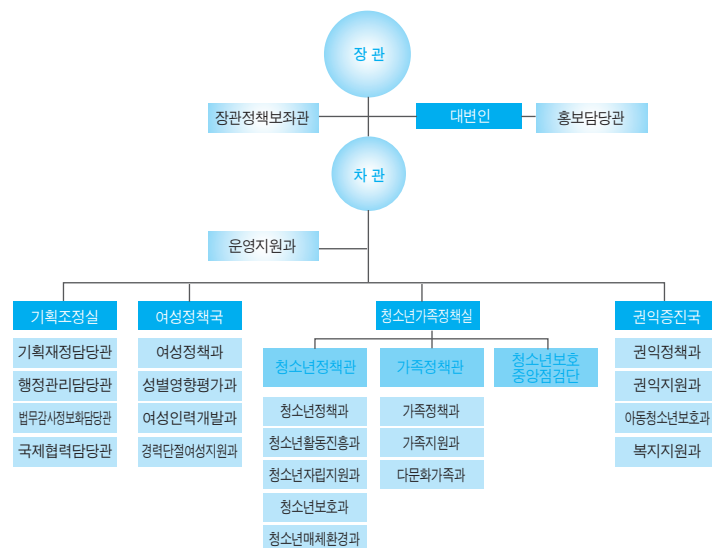
이와 함께 2008년 2월 29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가 수행했던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조정·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한편, 2010년 1월 18일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등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여성정책의 조정·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 조직구조 및 업무

청소년가족정책실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가정정책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소년정책관, 가정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그림 10-4-1] 여성가족부 조직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의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ogef.go.kr)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운영 청소년정책 전담 기구·공무원 등 전달체계 관계 기관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지원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포상 청소년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 청소년 관련 산하기관 및 법인 관리 총괄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의 교육·훈련 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구성·운영 지원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 우대정책의 수립 및 교육·홍보 청소년증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 및 국제교류 계획 수립·시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지원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 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지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연수 및 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관리 및 조성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운영 및 지도·점검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국유재산·물품의 취득 및 관리 학교교육·평생교육 연계 청소년 능력개발프로그램 개발·시행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 청소년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 교포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세계청소년축제 및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개최 소외계층 청소년의 해외연수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활동 협력·지원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청소년복지서 비스의 조사·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청소년복지·지원업무 중 사자 교육·훈련

청소년자립지원과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지도·감독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연수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치료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상담·자립 등 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가출·비취학·학업중단 등 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북한이탈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청소년 비행·폭력 등 예방 및 선도 폭력, 학대 등 청소년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상담·구조 기관·단체 지도·지원 청소년 전화·모바일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시행 청소년 사회진출 및 취업·창업 지원
청소년보호과	청소년 보호 업무 총괄 및 계획 수립·시행 청소년 보호 법령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 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 운영 지원 청소년 보호 관련 관계 부처 조정·실태조사 및 연구개발 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단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 청소년 유해업소·약물·물건·행위 등 유해환경 개선 계획 수립·시행 청소년 유해업소·약물·물건·행위 등 유해환경 점검, 단속 업소·약물·물건 등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심의·결정 청소년 유해 약물 남용 및 중독 청소년 예방·치료·재활 지원 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 관련 시민단체 지원
청소년매체환경과	청소년 유해매체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 유해매체물 조사·연구 및 법·제도 개선 매체물 청소년 유해성 여부 심의·결정 및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포장·전시·진열 및 판매금지 청소년 유해매체물 감시·단속 등 대책 수립 및 시행 청소년 유해 외국매체물 국내 유통 차단 매체물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의 업무협조 청소년 유해매체환경 개선 관련 기관·단체 협력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및 개선활동 지원 청소년 유해매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교육·홍보 청소년 건전 매체 활용능력증진 및 건전 매체 문화 조성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매체물 역기능 피해 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 청소년 유익매체물 제작·보급 등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조직은 [그림 10-4-1]과 같으며,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청소년매체환경과 등 5개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의 정원현황은 <표 10-4-1>과 같다

〈표 10-4-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정원현황

직 급	고위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계
정 원	2	1	4	2	13	9	6	1	4	42

자료 : 여성가족부(2011)

다. 청소년정책의 변천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정부의 청소년 정책담당 부서의 변천과 맥을 같이 한다. 청소년 정책기구의 변천과정은 앞의 설치 경위에서 알 수 있다.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일반적으로 〈표 10-4-2〉와 같이 7단계로 나눌 수 있다.

〈표 10-4-2〉 청소년정책의 변천

단 계	시 기	기간	특 성	명 칭	주무부처
1단계	1948. 8. ~ 1964. 9.	16년	부처별 산발추진	부처별 관련업무 추진	각 부처
2단계	1964. 10. ~ 1977. 8.	13년	부처차원의 조정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내무부 무임소장관실
3단계	1977. 8. ~ 1988. 6.	11년	정부차원의 조정	청소년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문교부
4단계	1988. 6. ~ 2005. 4.	7년	정부차원의 조정, 부처차원의 총괄 집행	청소년육성위원회	체육부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 위원회)
5단계	2005. 4. ~ 2008. 2.	3년	청소년조직 통합, 단일청소년 전담 조직 출범	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무총리실
6단계	2008.3. ~ 2010. 2.	2년	정부차원 통합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7단계	2010.3. ~ 현재		여성가족부 개편 및 이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자료 : 여성가족부(2010)

1단계인 1948년 8월부터 1964년까지는 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기구도 없고, 전담하는 행정 기구도 없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 청소년정책은 각 부처별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부였다.

2단계는 1964년 10월부터 1977년까지의 13년간이다. 이 시기에 내무부 및 무임소장관실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주요 업무는 문제청소년에 대한 규제 및 보호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청소년정책의 특징은 부처차원의 조정과 보호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3단계는 1977년 8월부터 1988년까지이며, 이 시기 청소년정책은 2단계의 부처차원의 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조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적 조정을 시작하였으며, 1983년 4월부터 1985년 1월까지의 청소년관련 정책이 문교부 소관으로 이관하였다가 다시 1985년 2월 국무총리실로 이전하였다.

4단계는 청소년정책 발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된 1988년 6월 1일부터 2005년 4월까지로 볼 수 있다.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청소년관련 전담조직이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전체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체육부가 관장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고,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이 신설되었다. 이는 곧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되었으며, 이 시기, 청소년헌장이 제정(1990년 5월 12일)되었다.

1990년 12월 체육부의 명칭이 체육청소년부로 바뀌면서 청소년업무의 영역이 확장되고 청소년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1991년 6월 27일)되었고,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는 청소년기본법이 제정(1991년 12월)되었다. 이후 1993년 문화체육부로 통합시 청소년정책조정실은 청소년정책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시기,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98년 10월 25일 새로운 청소년헌장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정책 기구조정도 함께 단행되었는데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따로 두게 되었다. 이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8년 2월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육성을 전담하는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를 전담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분리되었다.

제5단계는 2005년 4월 청소년정책 조직의 통합과 단일 청소년전담조직이 출범한 이후부터 2008년 2월까지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은 체계적·종합적 정책수행 곤란, 새로운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미비,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청소년기능(육성 및 보호) 통합을 위해 국무총리소속으로 「청소년

위원회」설치를 확정·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설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제6단계는 2008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아동과 청소년정책이 통합되어 보건복지가족부로 편입된 후부터 2010년 2월까지를 말한다.

제7단계는 2010년 1월 18일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등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여성정책의 조정·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청소년 관련업무 추진기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중앙정부 부처는 고유기능에 따라 청소년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 10-4-3>은 각 부처의 청소년관련 업무를 요약한 것이다.

<표 10-4-3> 부처별 청소년 관련 업무 현황

부처명	업무내용	주요담당부서
방송통신위원회	건전한 방송이용 환경 조성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캠페인, 법·제도 정비 및 관련 심의 규정 강화, 심의결과 DB 구축·운영 및 심의사례 공유, 감시체계 강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유해정보 심의 시스템 구축, 인터넷 윤리교육 및 저작권보호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등, 청소년 언어순화 공동캠페인	방송진흥기획과, 네트워크윤리팀
국가보훈처	각부처, 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나라사랑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나라사랑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관련 조항 포함	약관심사과
국민권익위원회	청소년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 함양	청렴교육과
교육과학기술부	가·피해학생 선도 및 보호, 가출예방교육, 온라인 위기상담, 건강증진학교 연구시범학교 확대운영,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교·사대 창의·인성교육 강화, 교과부 대학생 인턴사업 참가 시우대, 교원·청소년지도자 대상 청소년권리교육, 미래드림 장학금, 희망드림 장학금, 배움터지킴이, 등·하교안심알리미, 성범죄자에 대한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강화, 시설안전 및 학교밖 활동 안전시스템 확보, 신체적·정신적 건강환경 조성,	창의인재육성과, 학교생활문화팀, 학부모지원과, 진로직업교육과, 학교문화과,

〈표 10-4-3〉 부처별 청소년 관련 업무 현황 (계속)

부처명	업무내용	주요담당부서
교육과학기술부	언어순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언어순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이 륜차 안전사고 예방 강화, 자원봉사정보제공, 가족봉사단 운영활 대 및 1교 1나눔 연구시범학교 운영, 장애청소년 학업 및 진로지원 강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내 주요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창의인재육성과 부분, 창의인재육성과 부분,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취약·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강화, 프로그램 개발, 학교 성폭 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규칙 스스로 만들고 지키 기, 학교급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표준지침 마련, 학교안전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교용지 선정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제도 활성화, 학교참여전문교육, 학부모교육 지원자료 및 프로그램개발, 학 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회복적 지원 강화, 학교폭력대책기획/지 역/자치위원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정비, 학생 대상 정서·행 동발달 선별검사 확대, 학생안전강화학교, 배움터지킴이, CCTV 통 합관제센터 연계, 학업중단 시점에서의 조기개입체계 구축	대학장학지원과, 특수교육지원과, 학교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외교통상부	건학프로그램, 고등학교 방문 강연 프로그램, 국제협력특강, 글짓기 공모전, 대학생 외교통상부 워크숍, 사진 및 수기 공모전, 세계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외교부 건학 프로그램, 지구촌체험관 운영, 한·미 청소년 교류, 한·일 대학생 교류, 한·중 청소년 교류	정책홍보담당관실, 외교안보연구원 외국어교육과, 한국국제협력단 홍보실,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교육문화팀
통일부	디딤돌 학교 운영, 북한이탈 청소년 및 가족구성원 고용사업장 지원, 북한이탈주민 중고교 편입학·등록금 지원 및 대학 입학지 원 강화, 진로 및 자립지원 강화	정착지원과, 하나원교육기획과
법무부 (대검찰청포함)	가족솔루션 캠프,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보호 자교육 대상 '바람직한 부모 역할' 등 교육, 성폭력 가해 청소년 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범죄 청소년 재범방지교육 강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확대, 성폭력범죄자 적극적 치 료, 관리체계 구축, 소년보호기관 성교육 담당자 전문교육, 소년 원학생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실무능력 배양을 통한 안정된 사 회복귀 및 자립지원, 위기·비행초기단계 청소년의 보호자 대상 교육, 입소한 비행소년 대상 성비행예방교육 및 교정·치료프로 그램, 잡스쿨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교육 및 관련 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 활용,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내 주요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학 교폭력 가해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소년과, 보호관찰과,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국방부	청소년 안보체험활동 지원	문화정책과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월례휴가제 활성화, 교과부 대학생 인턴사 업 참가 시 우대, 아름누리 지킴이, 위키스쿨버스, 인터넷 중독 조 기발견 및 상담·치료 지원강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민간협력과, 정보문화과, 복무과, 정보자원정책, 안전개선과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제4회 장애아동·청소년 독후감 대회,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 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다문화가정을 위한 동화구연 콘텐츠 제 작,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책 꾸러미 돌려보기 사업, 등급표시제, 문화바우처, 생활체육 즐기기 문화보급, 스포츠바우처, 아름다운 우리말 선생님,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관광진흥과, 체육정책과, 장애인문화체육과, 체육진흥과, 국어민족문화과,

〈표 10-4-3〉 부처별 청소년 관련 업무 현황 (계속)

부처명	업무내용	주요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 어린이박물관 교육, 여행바우처, 우수 영상물에 대한 지속적 접근권 유지를 위한 교육홍보, 장애청소년 생활체육활동 지원, 정례 태조사, 관련 분야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및 권리구제 프로그램 개발·운영, 제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찾아가는 게임문화 교실 운영, 책과 도서관 연계한 가족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국악공연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언어 실태 의식조사, 청소년 저작권 교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학교, 지역사회 기반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학생선수 권익보호, 한옥체험 지원	문화여가정책과, 관광정책과, 게임콘텐츠산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저작권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	건강한 식생활 확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지원,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농촌사회과, 식품산업정책과
지식경제부	교육용로봇 시범사업 지원, 기술꿈나무육성사업, 임베디드SW공모대전(주니어부문), 테크로드 챌린저(청소년 산업기술 체험 프로그램),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산업기술기반팀, 디자인브랜드과, 산업기술정책과, 로봇산업과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 지자체, 학교 교과, 청소년 시설 등에 홍보 및 교육강화, 드림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시설보호 및 시설외소 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청소년 생명사랑 숲 체험 캠프, 음주에 대한 사회적 관리체계 강화, 장애청소년가족의 양육지원 강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친권상실 요청권자의 범위 확대	아동권리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정신건강정책과,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와
환경부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제, 생물자원보전 청소년리더 양성	녹색협력과
고용노동부	개인별·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자기주도적 참여 촉진, 교육적 고용프로그램 운영 확대중소기업체의 청년취업인턴제 확대, 밤10시 이후 청소년 아르바이트 단속강화, 종합직업체험관 신축, 직장체험, 직업체험, 취업캠프, 청년 창직·창업 인턴제 활성화, 청소년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국민인식제고, 청소년 워크넷 구축, 직업능력포털사이트, 1:1 맞춤형 커리어 코칭 서비스, 취업 희망 고교 졸업예정자 대상 직업교육 확대, 취업성공 패키지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근로기준과, 청년고용대책과, 고용서비스정책과, 인적자원개발과,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여성가족부	(시·군·구)청소년정책지역협의회설치·운영,가족사랑의날,가족정책과,가족여가프로그램개발·운영,가족지원과,각종유해환경에 대한규제및예방교육과치료강화,개개인의다양한체험활동참여이력관리,고위기청소년치료·재활을위한'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관련민간분야주요인사및전문가참여를위해협의회구성및확대,관련시설확충및실효적교육내용지원,국가간청소년교류사업,해외체험프로그램확대,권역별미혼모·부자지원기관및미혼모자보호시설확대,근로기준법상청소년보호및안전한근로환경조성,다문화청소년생활정서서비스지원,다문화청소년언어발달서비스제공,다문화청소년지원,다문화청소년지원,다문화청소년지원,대안학교,한부모시설중심가족관계회복상담서비스확대,드림스타트,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나우스타트,모니터링,유해정보차단시스템구축,자율규제지원,법·제도개선,조기발견및상담·치료지원강화,전문인력양성,법·제도정비및관련심의규정강화,부모교육활성화,부모교육이수인센티브제도입검토,비행범죄청소년교육적선도를통한사회복지지원강화,상담)지원센터와건강가정지원센터간협력강화(연계가족상담서비스확대,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강화,취업제한강화,재범방지도육,성폭력 사전예방상담,성폭력 피해아동원스톱 서비스 제공,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및 한국청소년 상	청소년보호과, 청소년자립지원과, 가족지원과, 가족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다문화가족과,

〈표 10-4-3〉 부처별 청소년 관련 업무 현황 (계속)

부처명	업무내용	주요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담원 지역 연계기반 구축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역 연계 기반 구축, 시설안전 및 학교밖 활동 안전시스템 확보, 실질적 보호 제공을 위한 특별지원사업 확대, 이웃리치 상담, 이웃리치활동, 온라인 위기상담, 가출예방캠페인 등 지원, 언어폭력 심의기준 보완, 효과적 제재조치 마련 검토,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두드림존) 제공,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정책성과 평가 법적 근거 마련 및 시행계획 점검·평가, 조손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주기적 정책수요 조사, 정책설계지원, 국내외 정책동향 모니터링 등, 중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한국청소년상담원 운영 개선 (중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 개선, 중장기계획수립, 운영매뉴얼 및 평가매뉴얼 마련, 학교-시설-단체간 공모사업유도, 지역별 관련센터간 협조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정보종합안내 '가족·청소년 친화자원 전자지도' 제작,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확대·강화,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내 주요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지자체 정책역량 강화 지원, 지자체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활성화, 직무보수교육 법제화 및 개발운영, 진로상담, 진로지도 전문가 양성, 청소년 교류센터, 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청소년 권리실태 및 관련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청소년 대상 멘토-멘티 관계 형성, 청소년 사이버상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청소년전화1388(문자#1388) 운영강화, 청소년 수련시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예비부모교육 실시, 청소년 친화적 환경만들기, 청소년권익증진 등,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정비 및 운영 활성화, 청소년 핵심역량의 개념 및 역량개발 목표 수립, 청소년건강종합대책, 청소년기교육,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 청소년문화존 활동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봉사활동 사이트(Dovol.net) 개편, 청소년상담사의 복지 개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스스로지킴이(YP), 청소년시설·단체·기관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 청소년 정책관계기관협의회 관련규정 구체화,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청소년지도사 실습 매뉴얼 개발 및 실습시간 의무화,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강화, 청소년지도사의 복지 개선, 청소년참여포털 운영, 청소년친화지수 개발 및 친화마을 확산추진, 청소년친화지수 개발 및 친화마을 확산추진,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시설의 전략적 확충, 청소년활동자원지도(YRM) 제작, 체계적 권리교육 교재·프로그램 개발, 초·중등 교사 양성평등 교수능력 함양 교육, 교과서 모니터링, 학교 내 정기적 상담, 가족상담 프로그램 강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회복적 지원 강화, 학업중단 시점에서의 조기개입체계 구축	권익정책과, 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정책과
국토해양부	성범죄자 공동주택 취업제한 강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지원, 신도시 개발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시범도입, 학교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마련	해양정책과, 주거복지기획과, 신도시개발과, 주택건설공급과
경찰청	과학수사요원 체형 등,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소년법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아동안전 지킴이 운영, 아동안전 지킴이집 운영, CCTV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여성청소년과, 과학수사센터, 생활안전과
소방방재청	미래직업박람회, 생애주기별 생활안전관련 교재 및 체크리스트 제작, 청소년활동 시설·단체의 안전성 강화	소방제도과

〈표 10-4-3〉 부처별 청소년 관련 업무 현황 (계속)

부처명	업무내용	주요담당부서
문화재청	고궁청소년문화학교,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 및 으뜸학교 지정·운영, 어린이 자연유산 체험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단	정책총괄과, 궁능문화재과, 활용정책과
농촌진흥청	4-H 회원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 사업 활성화 지원	농촌지원국 지도정책과
산림청	청소년 산림체험·교육 강화	산림휴양등산과
중소기업청	2011년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중소기업 체험학습	인력지원과, 창업진흥과
특허청	발명교육활성화	창의발명교육과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안전보호구역, 청소년건강종합대책	영양정책과
계	27개 부처 255개 사업	

자료 : 여성가족부(2011)

부처별 청소년업무의 특성을 보면 부단위 기관에서는 고유의 정책기능과 관련된 사업 중 청소년이 대상고객인 사업에 일정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청단위 기관에서는 정책 예산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성 예산을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청소년관련 시·도 행정조직

중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나뉘어서 추진되던 아동, 보육, 청소년 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어 추진되어 오다 2010년 1월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16개 시·도의 청소년관련 행정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시·도 청소년 업무 총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청소년업무 연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1년 각 시·도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은 〈표 10-4-4〉와 같다. 16개 시·도 중 11개 시·도가 청소년 업무를 통합 수행하며, 나머지 5개 시·도에서는 청소년 업무가 다른 부서에 편제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조직통합 후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의 긍정적 효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표 10-4-4〉 시·도 청소년관련 행정조직 현황

시·도	담당국	청소년분야
서울	여성가족정책관	아동청소년담당관
부산	여성가족정책관	아동청소년담당관
대구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
인천	가정복지국	아동청소년과
광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대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울산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경기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강원	자치행정국	체육청소년과
충북	문화여성환경국	여성정책과
충남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전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전남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경북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
경남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청소년과
제주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자료 : 여성가족부(2011)

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의 소속 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의 성격은 각 시도별로 상이한데, 〈표 10-4-5〉와 같이 부산, 대전, 충남의 경우 심의기구로 운영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표 10-4-5〉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성격

시 · 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성격	시 · 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성격
서울	자문기구	강원	자문기구
부산	심의기구	충북	자문기구
대구	자문기구	충남	심의기구
인천	자문기구	전북	자문기구
광주	자문기구	전남	자문기구
대전	심의기구	경북	자문기구
울산	자문기구	경남	자문기구
경기	자문기구	제주	자문/심의(기금)

자료 : 여성가족부(2010)

5. 정부 산하기관

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www.kywa.or.kr)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법(제6조)에 의해 2010년 8월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통합하여 새롭게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으로 청소년활동 현장과 정책을 총괄 지원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41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관리·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수련거리의 시범운영, 청소년활동시설이 행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부위탁업무 수행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2일에 설립된 공공기관이었다. 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2004년 2월에 공포된 청소년관련 3법(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기반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시행, 청소년 활동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복지지원을 위한 사업 및 서비스 영역개발과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2005년 3월 11일 설립되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평가 및 시범운영,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청소년 관련 제 기관 및 시설과의 상호 연계지원·지도·평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유지·관리 및 운영,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교육 및 교류 진흥,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및 참여·권리증진활동의 활성화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현재 3개소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 평창), 국립고흥우주체험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사업으로서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청소년자원봉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국제교류, 청소년지도자 양성제도, 청소년특별회의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종합정보 ‘e-청소년’은 청소년 활동·문화·복지·보호·참여·생활 등 청소년과 관련된 행사·소식·프로그램의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서비스이다.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관련 종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관련 제 기관의 연계 및 협력, 청소년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담당한다. 청소년자원봉사는 청소년봉사활동 관리 시스템(www.dovol.net) 개발·운영,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orea Youth Volunteer Programme) 파견, 청소년자원봉사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활동을 활동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활동기록관리가 일정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심사하여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 인증제도’로 청소년활동정책의 실효성제고, 청소년교육·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질의 청소년활동 정책과 “참여 기회 제공”, 글로벌·다문화 시대의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 및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사회·문화적 역량개발’ 강화, 활동참여기록의 진학 및 취업 시 자료로 활용한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청소년의 창의성 향상과 주도성, 균형 잡힌 성장을 통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제적인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며, 청소년국제교류는 다양한 국내·외 청소년 및 지도자간 교류를 통하여 글로벌단위의 상호 개방과 소통의 문화를 지향하면서 청소년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청소년지도자 양성제도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해 법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매년 전국 16개

시·도별 청소년대표 및 청소년전문가들의 토론과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여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청소년의 권익과 복지, 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동력화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 역량 개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수련·참여·교류·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일에 이바지할 것이다.

나.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상담 관련정책 연구개발, 청소년상담 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청소년상담 사업의 시범운영, 청소년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청소년상담기관 상호간의 연계 및 지원, 국내·외 상담기관간의 교류 및 정보자료 수집·공급, 지방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의 지도 및 지원 등 전국 상담기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고충과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과 효과적인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전문상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및 또래상담자 사업을 통해 상담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업중단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위기청소년 위기개입 및 자활지원 등 위기 및 소외청소년 대상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의 통합으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도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상담·지원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 교육연수사업, 전문상담사업, 청소년상담·지원체계 활성화 및 CYS-Net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는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정책의 변화전망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와 인터넷중독 유형별 개입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자살위기 프로그램 개발, 회복적 보호지원 프로그램 효과검증 및 개정, 다문화가정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 군 상담 장면에서의 솔리언 또래상담의 적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제5장 |

청소년관련 연구 · 개발기관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가. 설립배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www.nypi.re.kr, 원장 이재연)은 청소년육성법을 근거로 1989년 7월 1일에 「한국청소년연구원」으로 처음 설립되어 청소년정책관련 국가전문연구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 · 공포된 청소년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993년 1월 1일에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확대 · 개편되었고 1999년 1월 29일부로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산하 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되었다. 한편, 2005년 국무총리산하 인문사회연구회와 경제사회연구회가 통합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국무총리 산하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로 소속이 이관되었고, 2007년 5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개발, 청소년의 디지털 · 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 · 지원 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기초이론 연구, 현안정책개발, 프로그램개발, 정책평가지원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청소년 단체 · 시설, 청소년지도자 등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정책사업의 방향설정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 및 자문하는 청소년정책사업의 민간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청소년 생활환경, 의식, 여가, 활동 등의 실태와 변화양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 · 개발하는 기초통계자료의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기능’, 둘째, 청소년육성에 관한 장 · 단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연구를 수행

하고, 현장실천에 필요한 청소년정책 및 주요 시책과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책연구·개발기능’, 셋째, 청소년정책의 효과분석 및 평가를 지원·자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육성사업 기반조성을 위해 청소년관련 업무의 종합적인 평가·분석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평가모형 등을 개발하는 ‘정책평가·자문기능’, 넷째, 청소년관련 전문가·학계·기관과의 협력사업과 외국청소년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 사업을 통해 대내·외적인 협력체계와 정보교류체계를 구축하는 ‘대외교류·협력기능’, 다섯째, 청소년연구 및 정책개발의 방향제시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정책협의회, 정보서비스 사업을 통한 연구자료 및 정책관련 정보제공 등 ‘정책 및 연구자료 제공 기능’, 여섯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를 통한 전문지도사 양성,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청소년정보 DB개발 및 정보 서비스를 통한 청소년관련 정보 제공,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수련활동지원기능’이 있다.

나. 조직 및 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93년 1월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확대·개편될 당시 원장을 중심으로 부원장과 5실 7부의 체제였으나, 1995년 12월 이후 기획조정실, 홍보사업단, 복지환경실, 수련활동실, 정보자료실, 행정실 등 5실 1단 12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1997년 1월에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팀제를 도입하여 4실 5부 8팀으로 재개편하였으며,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부설 기구로 설치하여 청소년자원봉사중앙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1998년에는 자립경영 기반구축 및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 육성정책연구실, 복지정책연구실,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연구기획부, 총무부 등 2실 1센터 2부로 기구를 축소하였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기획부와 총무부를 기획조정실과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주요 영역별 업무를 팀제로 편성하였으며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사업부서인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분리 운영하는 등 3실 1국 1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2005년 초에는 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와 변화양상에 대한 종합적 조사연구를 통한 청소년 정책 수립의 시계열적 기초자료 축적을 위하여 정책기초연구실을 신설하여 4실 1국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2009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로의 통합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본부, 1국, 4실, 5팀 체제로 개편하였다. 즉, 기획조정본부에 연구기획팀, 예산기획팀, 대외협력·자격검정팀 등 3팀으로, 감사실 외에 전문분야별 정책연구실을 청소년정책연구실, 아동정책연구실, 통계조사연구실 등 3실로, 사무국에 총무팀과 경리팀 등 2팀으로 개편하였다.

한편 2010년에는 여성가족부의 위탁사업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를 개소하였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각 중앙부처에 개별·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관련 정책 사업을 조정하고 종합하는 범정부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향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디지털·글로벌 시대 청소년의 창의력과 도전정신 개발을 지원하는 국가 청소년 연구·정책 수립의 중심기관으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첫째, 연구기획의 체계화, 과학적 연구관리 체계 확립, 연구 성과의 정책반영과 사회적 확산을 통하여 연구기획의 체계화와 전문적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경영목표의 체계적 추진, 합리적·효율적 조직 구성 및 운영,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관리,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통하여 기관경영과 조직운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도모하며, 셋째, 청소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청소년정책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연구 국제협력체계 강화를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위상강화에 노력할 것이다.

다. 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1년도 연구과제는 ① 정관상 설립목적 및 정부시책과의 적합성 ② 국가의제(National Agenda) 적합성 ③ 청소년정책의 요구 적합성 ④ 청소년과 사회적 변화 적합성 ⑤ 정책반영도 및 현장 적용 적합성을 고려하고, 연구규모 및 추진전략 기준으로는 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위상 적합성 ② 연구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구성 등 7개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사업은 연구사업(기본연구과제, 일반연구과제, 협동연구과제), 연구관련사업, 연구부대사업이 있고,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시설·단체로부터 수탁을 받는 용역연구과제가 있다.

먼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년도 연구사업의 기본연구과제는 ①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②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③ 청소년수련시설 인종방안 연구, ④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⑤ 가족구조변화에 따른 아동·청소년생활실태분석및대책연구, ⑥ 한국아동·청소년종합통계체계구축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사업으로는 ①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의발달과정추적을위한중단연구Ⅱ, ② 취약계층아동·청소년중단연구Ⅰ, ③ 청소년의사회적참여활성화를통한저소득가정아동지원방안Ⅱ, ④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Ⅱ, 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Ⅰ, ⑥ 청소년 국

제교류정책의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⑦ 청소년도덕성발달검사도구표준화연구 I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에서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Ⅱ,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I, 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제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 I 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연구관련사업은 ① 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② 청소년 연구관련 교류·협력사업 등 2개 과제를 수행하였고, 연구부대사업은 ① 연구기획사업비, ② 학술지·간행물 발간, ③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④ 전산·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⑤ 한국 아동·청소년 통계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사업, ⑥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6개 사업을 수행하였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수행을 위한 기초연구로 2011년 10월 기준 24개의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그 동안 담당해 온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는 2011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위탁사업으로 2010년 6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를 개소하였다. 센터 조직은 소장을 중심으로 정책전략기획팀, 정책평가연구팀 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전략기획팀은 중장기 정책 및 청소년정책 의제 개발 지원,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 분석 및 성과지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이슈리포트 및 정책리포트, 청소년통계브리프를 발간하고, 주요 정책현안 및 이슈 관련 청소년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범부처적 차원에서 정책입안이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책평가연구팀은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에 대한 연도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자료 수집 및 분석으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총괄조정 및 연계발전 방안 등 정책 협의 및 컨설팅을 수행하며, 청소년정책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친화적 청소년정책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 단체·시설에 대한 최신 동향 및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고,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 유관기관 등의 최신 동향 분석, 주요 자료 번역·소개하는 등 국내외 청소년정책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www.ypec.re.kr)가 11월에 구축 및 오픈되어 센터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국내외 정책동향, 정책지표, 연도별 청소년백서, 법과 조례, 청소년 기본 및 시행계획 등 정책 및 통계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이슈리포트, 정책리포트, 통계브리프 등 센터 연구 성과 자료를 폭넓게 활용 및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센터 기능을 효율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본 센터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의제 개발 및 동향분석 실시하고, 각 부처 및 자치체별로 개별·분산적으로 추진·관리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평가 및 관련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정책의 과

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를 기초로 정책수요의 과학적 예측, 다수 부처 관련 사업의 비교분석을 통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중복사업 사전 조정, 부처간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공유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 청소년관련 학과 및 민간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더불어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1991년도부터 각 대학에 청소년관련 학과들이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학부, 대학원 등에 청소년관련 학과나 전공을 둔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대학원은 35개교에 달한다. 각 대학별로 학부와 대학원을 모두 설치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학부 또는 대학원만을 설치한 곳도 있다. 한편 평생교육 관련학과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위한 교과과정을 설치한 곳도 있다.

4년제 대학에 청소년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기대학교, 극동대학교, 광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서대학교, 명지대학교, 백석(구 천안)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중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가나다 순) 등이며, 사이버대학 중 한국디지털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 등이 관련학과를 설치하고 있다. 더불어 목포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청소년관련 학과를 연계 전공으로, 2년제 대학은 동아인재대학, 명지전문대학, 주성대학, 창원전문대학, 대구과학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은 가톨릭대학교, 경기대학교, 광운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아대학교, 명지대학교, 백석대학교, 서경대학교,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중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서대학교(가나다 순) 등에서 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기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명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서대학교는 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의 청소년관련 학과나 전공의 설치 또는 청소년관련 학과로의 독립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이는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 관련 분야의 발전과 확장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청소년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창출하며,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들도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학회는 한국청소년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등이 있다.

한국청소년학회는 청소년분야 일반의 공익을 위한 사단법인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청소년(관련)학 분야의 학술연구 및 연구자 상호간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청소년학의 정립과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되었다. 한국청소년학회는 ‘청소년학연구’ 라는 학술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 학술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이다.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는 2004년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2004년 학회 창립과 더불어 학술지인 ‘미래청소년학회지’ 를 발간하였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춘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학술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는 청소년시설 및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시설 및 환경을 보급하고 기존 청소년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청소년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2년 창립하였다.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는 ‘청소년시설환경’ 이라는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고, 국제교류·봉사활동, 국제심포지움, 학술대회, 작품집 발간, 월례세미나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1998년에 청소년복지의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설된 학회이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청소년복지연구’ 라는 학술지를 연 2회 발간하고,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부정기적으로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학회는 아니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한국청소년연구’ 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 학술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이다.

한편,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문제연구소, 농촌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교육전략21 등 청소년관련 민간 연구기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청소년학의 발전과 더불어 앞으로 이러한 독립 연구기관 및 대학 부설, 단체 부설 등의 민간 연구기관도 늘어날 전망이다.

3.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세계 각 국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 및 개발관련 기관 간의 협의회로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World Associ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Youth)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 협의회의 설립목적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연구개발기관 간 정보와 학술교류 확대를 통하여 서로 협조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연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21세기에 추구되어야 할 지구촌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에 있다.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995년 11월 2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본청소년연구소, 중국 사회과학원(청년사회학연구회)은 이러한 취지의 세계협의기구 구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1997년 10월 7일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6개국의 8개 기관 대표들이 한국에 모여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창립기념으로 ‘청소년폭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국제비교연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의 주요 사업은 ① 청소년연구 및 개발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 ②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의 상호방문 추진 ③ 청소년 관련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하여 회원국 간의 상호교류와 연대 강화 ④ 청소년 관련 정보와 자료의 상호교환 등이다. 주요 사업의 추진 실적은 국제심포지엄과 공동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국제심포지엄은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다. 제1차 WARDY 국제학술회의가 1997년 10월 7일 “청소년폭력의 국제비교”란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998년 9월 23일에는 “21세기 새로운 청소년정책 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서울에서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1999년 10월 11일에는 중국 북경에서 “21세기를 지향한 청소년과 청소년연구”란 주제로 제2차 WARDY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 다음 해인 2000년 10월 10일에는 제3차 WARDY 국제학술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주제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사회변화와 청소년 육성정책수립의 과제-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참여 증진을 중심으로”였다.

2002년 6월 20일에는 서울에서 “글로벌시대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미래 전망”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으며, 2004년 11월 11일에는 “동북아의 미래와 청소년 역할”이란 주제로 역시 서울에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가 수행한 공동연구는 1997년 “청소년의식에 관한 한·중·일 국제비교연구”, 1999년 “청소년 성공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연구-한·중·일을 중심으로”, 2000년 “새천년 청소년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연구-한·미·일·프를 중심으로”, 2001년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 연구” 등이 있다. 1997년 6개국 8개 기관이 가입한 이

후, 2008년 기준 11개국 18개 기관이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표 10-5-1〉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회원현황

국 가 명	기 관 명	홈페이지/E-mail
독 일	독일청소년연구소(Germany Youth Institute)	www.dji.de/overh_e/edasdj
미 국	아이오와대 가족자원연구소 (National Resource Center for Family Centered Practice, University of Iowa)	www.uiowa.edu/~nrcfcp
	일리노이주립대 동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Center for East Asian and Pacific Studie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www.eaps.uiuc.edu
	미국청소년정책연구소(Youth Policy Institute)	www.ypiusa.org
	미국청소년활동센터(American Youth Work Center)	www.aywc.org
	총기폭력예방교육재단 (The Educational Fund to End Handgun Violence)	www.gunfree.org
	하와이대 청소년연구센터 (Center for Youth Research in Hawaii University)	www.ssri.hawaii.edu/ pages/Youth
싱가포르	국립청소년청(National Youth Council)	www.nyc.gov.sg
영 국	국립청소년청(The National Youth Agency)	www.nya.org.uk
오스트리아	국제청소년정책위원회 (International Council on National Youth Policy)	www.icnyp.net
일 본	일본청소년연구소(Japan Youth Research Institute)	www1.odn.ne.jp/youth-study
중 국	중국사회과학원(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www.bic.cass.cn
	중국청소년연구중심 (China Youth and Children Research Center)	
프랑스	미디피레네 지역청소년센터 (Centre Regional de la Jeunesse de la Region Midi- Pyrenness)	☎33-4-6796-8916
	청소년 · 대중교육 연구소 (Institute National de la Jeunesse et de L'Education Populaire)	
핀란드	청소년연구회(The Finnish Youth Research Society)	www.alli.fi
한 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www.youthnet.re.kr
호 주	호주청소년연구센터(Youth Research Centre)	www.yam.edfac.unimelb.edu.au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제6장 |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1. 청소년정책 재정 현황

2011년도 청소년정책 예산은 총 1,453억원으로 일반회계 224억원, 청소년육성기금 734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49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6-1〉 연도별 청소년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관실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책실	문화부 청소년국		청소년 보호 위원회	국가 청소년 위원회	청소년육성기금		광특회계 (균특)	예 비 비	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농특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육성사업	시설용자			
1995	—	—	28,098	2,000	—	—	4,309	10,000	13,654	—	58,061
1996	—	—	37,896	3,000	—	—	6,300	10,000	18,984	—	76,180
1997	—	—	52,591	3,000	—	—	10,803	10,000	21,645	—	98,039
2000	—	—	25,954	1,000	4,111	—	10,814	12,350	26,525	—	80,754
2003	—	—	25,084	—	7,077	—	13,979	7,000	36,607	—	89,747
2004	—	—	23,149	—	8,817	—	41,610	6,000	30,248	—	109,824
2005	—	—	10,872	—	9,950	—	52,436	6,000	37,643	8,138	125,039
2006	—	—	—	—	—	19,825	67,727	4,500	45,442	321	137,815
2007	—	—	—	—	—	35,388	74,812		43,128	—	153,328
2008	—	116,433	—	—	—	—	75,182		39,251	—	230,866
2009	—	182,641	—	—	—	—	81,741 (증진기금 3,463 포함)		36,522	—	300,904
2010	18,972	—	—	—	—	—	90,604		37,114	—	146,690
2011	22,441	—	—	—	—	—	73,441		49,417	—	145,299

자료 : 여성가족부(2011.9)

일반예산은 청소년 인권증진 지원,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청소년자립지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참여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활동진흥원운영지원, 한국청소년상담원운영지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건립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청소년시설 건립 및 개보수 등에 사용되고 있다.

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및 지원현황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청소년기본법 제54조)은 정부의 출연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에 의한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청소년기본법 제55조)는 ① 청소년활동의 지원 ②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③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④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⑥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 ⑦ 청소년 육성정책의 수행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⑧ 기금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⑨ 기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은 수입 재원으로는 기금 조성 초기에는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액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경륜경정사업 법정 분담금이 유일한 수입 재원이고 그나마 2011년에 경륜·경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익금의 30%를 받던 것이 19.5%로 축소되어, 기금의 안정적인 확충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표 10-6-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1년까지의 누계 조성규모는 664억원이며, 재원별로는 정부출연금 35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734억원, 경륜사업수익법정 출연금이 3,285억원, 복권기금전입금 91억원, 이자수입 등 운용수익 적립금이 2,106억원 등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육성기금 사용액을 살펴보면, 2011년까지 청소년육성 사업 지원에 6,029억원, 기타경비 등에 14억원을 합하여 총 6,043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순 조성액은 2011년 기준으로 664억원이다. 기금설치 원년도인 1989년도에는 기금조성액이 극히 빈약하여 청소년 단체 우

수프로그래밍 지원 등 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도에는 8억 5천만원, 1991년도에는 10억 4천만원, 1992년도에는 15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분기점으로 점차 지원액이 급증하였다. 즉, 1994년에는 90억원을, 1999년에는 126억원을 지원하였고, 이후 2004년 407억원, 2005년에는 488억원, 2006년에는 689억원, 2007년에는 748억원, 2008년에는 752억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613억원, 2010년에는 699억원, 2011년에는 723억원을 청소년시설 및 단체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 10-6-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조성액(A)							사용액(B)				순조성액 (A-B)	순조성액 (A-B)	계
	정부 출연금	국 채 진 기 출연금	민 육 흥 금	경 사 수 법 출연금	문 인 의 정 금	복 기 전 입 금	이 자 수	기 타 수	기 타 경 비	기 금 전 출	기 금 전 입			
1989	-	5,000	-	-	-	206	-	5,206	132	-	132	5,074	5,074	
1990	-	5,000	-	-	-	1,352	10	6,362	847	3	850	5,512	10,586	
1991	-	5,000	-	-	-	2,259	51	7,310	1,031	9	1,040	6,270	16,856	
1992	-	5,000	-	-	-	3,351	3,213	11,564	1,506	13	1,519	10,045	26,901	
1993	10,000	5,000	-	-	-	3,848	118	18,966	1,613	6	1,619	17,347	44,248	
1994	-	11,000	-	-	-	5,284	-	16,284	9,034	13	9,047	7,237	51,485	
1995	10,000	10,000	-	-	-	7,610	140	27,750	4,484	15	4,499	23,251	74,736	
1996	10,000	10,000	-	-	-	8,668	70	28,738	5,415	8	5,423	23,315	98,051	
1997	5,000	10,000	-	111	-	11,517	81	26,709	8,208	6	8,214	18,495	116,546	
1998	-	4,400	5,888	-	-	15,408	45	25,741	6,245	6	6,251	19,490	136,036	
1999	-	3,000	6,251	-	-	13,195	76	22,522	12,547	7	12,554	9,968	146,004	
2000	-	-	11,836	-	-	10,557	643	23,036	9,905	7	9,912	13,124	159,128	
2001	-	-	32,320	-	-	13,114	46	45,480	7,283	84	7,367	38,113	197,241	
2002	-	-	46,920	-	-	10,074	20	57,014	9,443	21	9,464	47,550	244,791	
2003	-	-	70,805	-	-	13,675	1,049	85,529	14,362	31	14,393	71,136	315,927	
2004	-	-	40,786	-	-	13,335	1,351	55,472	40,669	73	40,742	14,730	330,657	
2005	-	-	24,623	-	-	19,710	-	44,333	48,721	57	48,778	-4,445	326,212	
2006	-	-	14,330	-	-	16,878	-	31,208	68,857	48	68,905	-37,697	288,515	
2007	-	-	2,846	735	-	17,634	-	21,215	74,750	62	74,812	-53,597	234,918	
2008	-	-	17,489	255	-	6,812	1,328	25,884	75,138	44	75,182	-49,298	185,620	
2009	-	-	15,672	860	-	9,146	1,938	27,616	61,059	262	61,343	-33,727	151,893	
2010 (결산)	-	-	19,312	2,964	-	4,144	1,888	28,308	69,639	32	69,884	-41,576	110,317	
2011 (확정안)	-	-	19,312	4,318	-	2,837	1,999	28,466	71,984	50	72,340	-43,874	66,443	
계	35,000	73,400	328,501	9,132	210,614	14,066	670,713	602,872	857	541	604,270	66,443	-	

주 : 09년~11년 사업비는 시설비(건설 중인 자산에 들어간 비용)를 제외한 금액.

자료 : 여성가족부(2011.6)

부록



〈부록 1〉 청소년관련 학과[전공] 현황

(2011년 6월)

학 교	학과명 [전공명]	주 소
총 35개	총 52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상담교육 전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443-760) [과사 : 031-249-9490]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석·박사)	
	사회과학부 청소년학 전공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 전공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산 5 (369-851) [과사 : 043-879-3530]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복지학 전공	충남 천안시 쌍용동 456 [과사: 041-570-7773]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석사) 복지관리학과 청소년학전공(박사)	경북 경산시 유곡동 290(712-715) [과사 : 053-819-1348]
	교육대학원 청소년상담전공	
	청소년교육상담학과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상담심리전공	부산 사상구 주례2동 산 69-1 (617-716) [과사 : 051-320-1908]
동아인재대학	복지관광학부 청소년교육상담전공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산 22-1 (526-872) [과사 : 061-470-1742]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석·박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120-728) [과사 : 02-300-0620]
	사회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청소년지도학과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56-1 (120-728) [과사 : 02-300-1207/1376]
목포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전남 무안군 처계면 도림리 61 (534-729) [과사: 061-450-2510]
서울여자대학교	인간개발학부 청소년학전공[연계전공]	서울 노원구 공릉동 126 (139-774) [과사 : 02-970-5591]
숙명여자대학교	청소년·아동문화전공[연계전공]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53-12 (140-742)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과학과 청소년상담 및 지도전공(석·박사)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 (336-745) [과사 : 041-530-1146]
	교육대학원 청소년상담전공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주성대학	청소년문화복지과	충북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산 4 (363-794) [과사 : 043-210-8460]

〈부록 1〉 청소년관련 학과[전공] 현황 (계속)

(2011년 6월)

학 교	학과명 [전공명]	주 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석·박사)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156-756) [과사 : 02-820-5157]
	사회개발대학원 청소년학과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청소년전공	
창원전문대학	아동청소년복지과	경남 창원시 두대동 96 (641-771) [과사 : 055-279-5112]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전공	충남 천안시 안서동 115 (330-704) [과사 : 041-550-0541]
	상담대학원 청소년상담전공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전공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복지학과	경기 평택시 용이동 111 (450-701) [과사 : 031-659-8549]
	사회복지학부 청소년복지학전공	
한국디지털대학교	청소년학과	서울 종로구 계동 1-21 (110-800) [과사 : 02-6361-1832]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부 청소년지도전공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15 (138-763) [과사 : 02-410-6753]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복지학과(석·박사)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 (356-706) [과사 : 041-660-1049]
	정보산업대학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아동청소년복지학과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청소년문화상담학과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120-1 (330-713) [과사 : 041-560-814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 청소년교육전공	서울 종로구 동숭동 169 (110-791) [과사 : 02-3673-1870]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서울 노원구 월계동 447-1 (139-701) [과사 : 02-940-5407]
	청소년지도복지전공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시 남구 신선로 179번지 (608-711) [과사 : 051-629-2111]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사회교육전공	부산 사하구 하단2동 840 (640-714) [교학과 : 051-200-7074]
서경대학교	대학원	서울 성북구 서경로 124 (136-704)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인천 남동구 간석4동 614-6 (405-234) [과사 : 032-433-1996(111)]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부록 1〉 청소년관련 학과[전공] 현황 (계속)

(2011년 6월)

학 교	학과명 [전공명]	주 소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전공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565-701) [교학과 : 063-290-1616]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 및 지도전공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561-756) [교학과 : 063-270-2739]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아동 · 청소년 상담학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교학과 : 063-220-2693]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복지학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 43-1 (420-743) [대학원실 : 02-2164-4913]
동의대학교	평생교육학과 (※ 청소년지도사 · 상담사 시험과목 개설)	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 995번지 (614-714) [과사 : 051-890-2180]
고려사이버대학교	청소년학과	서울 종로구 북촌로 106 (110-800) [과사 : 02-6361-1862]
광주대학교	청소년상담 · 평생교육학과	광주시 남구 효덕로 52 (503-703) [과사 : 062-670-2057]
대구과학대학	아동청소년지도과	대구시 북구 영송로 47 (702-723) [과사 : 053-320-1139]

〈부록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회원단체 현황

(2011년 9월기준, 단위 : 명)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 인 원 수	청소년 회원수	설 립 목 적
	직위	성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차광선	1965.12. 8	2,856,078 (1,894,562)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 · 외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이사장	정신철	1996.12.30	24,088	(22,800)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선도를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국제청소년연합	회장	도기권	2001. 5.31	13,467	(13,410)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화 시대 주도 청소년 양성
그린레인저	이사장	최영길	1991. 7.24	25,663	(23,439)	국토보전을 위한 나무심기 운동 전개 및 푸른숲선도원 선발 · 육성
그린웨일리 · 그린스카우트연합	총재	정진해	1994.10.12	30,021	(17,850)	청소년 환경교육 및 훈련으로 자연 보호 정신 함양
기독교청소년협회	이사장	정진해	1995.10.30	14,179	(13,147)	기독교정신에 의한 청소년상담 교육으로 인재양성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총재	정경석	2000.11.20	19,755	(15,472)	남북청소년 동질성회복 프로그램운영 및 공동체의식함양
농촌 · 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류태영	2002. 6.27	150	(150)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줌
대건청소년회	이사장	이용훈	1998. 9.21	3,000	(2,900)	건전 사회기풍 조성 및 국가 및 사회 발전에 필요한 올바른 청소년육성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정우식	1920. 6.20	70,478	(9,672)	불타의 가르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심신계발과 사회정화
대한적십자사 청소년적십자(RCY)	총재	유종하	1953. 4. 5	162,401	(150,191)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현 및 세계 평화와 인류복지 공헌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본부장	김찬호	1929.12. 1	17,816	(17,104)	종교, 지육, 체육, 봉사생활로 바른 교회생활 기여
대한청소년총효단연맹	총재	김영희	1997.12.30	17,643	(15,151)	충 · 효 · 예의 연구와 교육 및 수련 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비로자나청소년협회	회장	김우식	2000. 7.24	5,851	(5,767)	청소년에게 불교이념을 통한 인류공영에 이바지
삼동청소년회	이사장	안민순	1989. 1.18	7,623	(6,570)	일원주의 사상의 도덕적 품성 함양과 세계평화에 기여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이사장	조규만	1999. 9. 1	9,800	(7,300)	가톨릭정신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

〈부록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회원단체 현황 (계속)

(2011년 9월기준, 단위 : 명)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 인 원 수	청소년 회원수	설 립 목 적
	직위	성명				
성산청소년효재단	이사장	최성규	1994. 2.28	1,836	(1,721)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보호·지도 육성 및 가치관 확립
세계도덕재무장 (MRA/IC)한국본부	총재	김상원	1948. 6. 4	78,476	(76,078)	절대 정직·순결·무사·사랑으로 청소년 건전지도 육성
아르미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	안구현	1992. 6.29	744	(500)	지·덕·체가 균형잡힌 청소년육성 과 한민족의 주체성 전파
아이섹코리아	중앙 위원장	조연주	1962.11.26	514	(493)	미래의 유능한 경영인 양성과 국제 적 교류
어린이재단	회장	이제훈	1948.10.15	160,136	(59,937)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토록 보호 및 지원
우리누리청소년회	회장	이만희	1997. 4. 8	547	(400)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도모를 위해 수련활동제공 및 미래지향적청소년 육성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회장	최해상	1977. 3.17	2,132	(460)	선도활동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 총장	전택수	1954. 1.30	9,061	(5,500)	교육, 과학, 문화보급 및 국제교류를 통한 인류복지증진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김영순	1961. 4. 1	45,285	(0)	가족계획, 모자보건, 청소년 성교육 및 가정복지 도모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박현성	1966. 4.16	47,577	(46,724)	청소년불자 신행활동 지도와 청소년 육성
청소년과사람사랑	이사장	양중수	1994.12.22	4,835	(4,135)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을 통 한 청소년 육성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박철원	1995.10.31	6,212	(1,071)	청소년 수련활동· 선도·유해환경정화·복지증진
탁틴내일	이사장	김혜경	1995. 3. 1	11,018	(8,318)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 강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총재	이덕행	1996. 9.30	16,066	(15,346)	민족의 주체성 확립과 건전한 청소 년 육성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정숙	1946. 5.10	215,821	(196,482)	소녀와 젊은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민주시민 자질 함양 및 봉사 실천

〈부록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회원단체 현황 (계속)

(2011년 9월기준, 단위 : 명)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 인 원 수	청소년 회원수	설 립 목 적
	직위	성명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이사장	권진관	1948. 4.25	1,514	(500)	참된 인간세계 실현을 위한 그리스도의 화해와 교회일치
한국라보	이사장	이재정	1973.12.31	5,266	(3,920)	각국 간의 상호민박을 통한 친선 문화교류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이사장	엄익수	1997. 7.15	80,108	(30,368)	청소년의 지역사회 봉사와 국제간의 이해 증진
한국불교청년지도자회	회장	김상백	1911. 6.15	35,230	(31,900)	불타의 정신계승 및 인격도야와 청소년육성
한국B.B.S중앙연맹	총재	홍문중	1964. 9. 5	33,939	(14,943)	우애와 봉사의 이념 아래 청소년 보호와 지도
한국 4-H본부	회장	김준기	1954.11. 9	74,789	(65,277)	4-H 농·어촌 청소년에 대한 소양과 기술 지원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강영중	1922.10. 5	371,314	(338,278)	민주시민 자질향상 도모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회장	유주영	1995.10.28	18,086	(396)	시민자원 봉사정신의 구현·사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한국YWCA연합회	회장	강교자	1922. 4.20	90,099	(12,770)	젊은 여성의 기독교생활 실천 및 평화와 정의사회 건설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차선각	1903. 4. 3	130,448	(28,146)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중의 복지향상과 새문화 창조
한국우주소녀단	총재	서상기	1989. 3.11	49,089	(46,438)	우주시대 인재양성 및 정보화 선진 과학입국 실현
한국웃음운동 청소년진흥회	회장	김성업	2009.12.16	5,694	(3,232)	웃음운동 캠페인 활동 및 교육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총재	유재건	1967. 4.17	56,330	(26,199)	야외여행활동을 통한 풍부한 지식과 건전 청소년육성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총재	이군현	2002. 3.22	5,485	(5,335)	발명영재의 발굴지원을 통해 유능한 발명인 육성

〈부록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회원단체 현황 (계속)

(2011년 9월기준, 단위: 명)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 인 원 수	청소년 회원수	설 립 목 적
	직위	성명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이사장	이만수	1994. 7.22	8,777	(7,741)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삶의 실천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회장	최노사	1991. 5. 4	35,080	(20,309)	복음선교와 후원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	회장	유창원	2001.12.13	3,081	(2,554)	진취적 개척자적 기상 진작 및 신지식청소년으로 육성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이사장	김봉태	1997.10.24	5,235	(5,175)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 및 인성교육을 위한 교화
한국청소년스포츠연맹	이사장	이수호	2008.9.18	5,361	(4,914)	스포츠클럽 연합단체로 청소년 인성교육을 실현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황우여	1981. 3.19	400,626	(320,662)	청소년 전인교육을 통한 민족·국가관 확립
한국청소년연합	대표	김창신	1997.11.27	6,500	(5,380)	정신문화 창달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 및 민주시민 육성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	이혁병	1964. 9.11	40,562	(2,769)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건전활동 지도로 민주시민 육성
한국청소년인권센터	이사장	강병연	1993. 8.25	2,224	(1,500)	심신단련과 지도육성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 확립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	김병후	2000. 2.25	450	(33)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한국항공소년단	총재	김홍경	2005. 8. 2	4,409	(3,590)	항공, 우주교육을 통한 도전, 개척정신 함양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총재	황규호	1980. 5.24	192,540	(68,690)	해양개척정신 고취를 통한 진취적 기상증진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회장	박찬성	1989. 7.10	52,068	(44,159)	강건한 신체와 올바른 품성 및 국가관 확립
한국환경청소년단	총재	최성진	2001. 5. 9	6,951	(5,102)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정착과 자연환경 계몽 감시운동
한국환경청소년연맹	대표이사	송재수	2005. 3. 2	3,130	(3,000)	환경사랑 활동과 관련정보 제공을 통해 환경보전 확산 이바지

〈부록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회원단체 현황 (계속)

(2011년 9월기준, 단위: 명)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 인 원 수	청소년 회원수	설 립 목 적
	직위	성명				
흥사단	이사장	반재철	1913. 5.13	9,936	(3,228)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으로 인재 양성
21세기공동체개발원	이사장	손대근	1994. 6.28	58	(24)	수련거리연구 개발 · 보급하여 바람 직한 청소년상 제시
대한치어리딩협회	이사장	이선화	2008.8.25	3,100	(3,000)	치어리딩 보급을 통해 생활체육 진 흥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청소년흡연 · 음주예방협회	회장	윤종필	2008.2.26	2,274	(1,300)	술 ·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민주시민의식 함양제고 및 건전성장 환경 조성
한국청소년골프협회	회장	김창연	2005.12.24	330	(312)	청소년골프선수 선발 및 육성
한국청소년 스킨스쿠버협회	상임 의장	강경순	2003.10.6	4,500	(4,000)	해양스포츠 지도교육 능력 함양 및 해양환경보전활동
한국향토사랑 청소년봉사단	이사장	이경희	2004.9.10	5,555	(5,524)	향토봉사 활동을 통한 향토사랑 및 조국 사랑 기여
대구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남정달	1996. 3. 1	21개 지역청소년단체		지역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 지 원과 청소년 건전 육성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오재진	2002.10.11	21개 지역청소년단체		지역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 지 원과 청소년 건전 육성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임장근	2001. 9. 7	29개 지역청소년단체		지역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 지 원과 청소년 건전 육성
울산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최해상	1998. 3. 5	16개 지역청소년단체		지역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 지 원과 청소년 건전 육성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이창운	2001.12. 4	14개 지역청소년단체		지역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 지 원과 청소년 건전 육성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서창훈	1995. 5.11	11개 지역청소년단체		지역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 지 원과 청소년 건전 육성

자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부
록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영자(단체)
서울	강남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국YWCA
서울	강동청소년회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강북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
서울	강북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
서울	강서청소년회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흥사단
서울	관악청소년회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온터두레회
서울	광진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흥사단
서울	구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서울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서울	금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금천구청
서울	노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	노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	도봉숲속마을	수련원	민간	직영	(재)송석문화재단
서울	돈보스코청소년센터	수련관	민간	직영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
서울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수련동맹
서울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동작문화원
서울	마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청소년교통문화재단
서울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명지전문대학
서울	마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학교법인 명지학원
서울	망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서울	목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서울	목동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서울	문래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영등포구청장
서울	방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	방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	봉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재)원불교유지재단
서울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행동과학문화원
서울	살레시오교육회관	수련관	민간	직영	(재)천주교살레시오
서울	삼성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민간	직영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서대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서대문구청장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영자(단체)
서울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서울올림픽파크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	서울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공공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서울	서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서울	서울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서울	서초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서울YWCA
서울	성동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	성북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서울	송파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
서울	수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세상
서울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서울	쌍문동청소년랜드	문화의집	공공	위탁	한국청소년문화활동협회
서울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청소년교육전략21
서울	역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서울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청소년과 사람사랑
서울	용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울	은평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은평천사원
서울	종로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공공	위탁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서울	종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서울	중랑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창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창동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광운대학교
서울	청소년문화교류센터	특화시설	공공	위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울	청소년미디어센터	특화시설	공공	위탁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	청소년성문화센터	특화시설	공공	위탁	(재)한국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서울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특화시설	공공	위탁	연세대학교
서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특화시설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화곡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부산	구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구덕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위탁	(재)내원청소년단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 주체	운영 주체	운영자(단체)
부산	금곡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부산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직영	부산광역시장
부산	금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범어청소년동네
부산	기장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산	기장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산	기장문화예절학교	수련원	공공	위탁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산	부산유스호텔아르피나	유스호텔	민간	직영	부산도시공사
부산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부산YMCA
부산	부산해양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재)해성
부산	북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부산	사상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부산YMCA
부산	사상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부산YMCA
부산	양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불국토청소년도량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불국토청소년도량
부산	오마이랜드부산	수련원	민간	직영	해화학원
부산	중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함지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해운대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해운대구청장
부산	화지청소년문화회관	문화의집	민간	직영	동래정씨 대종중
대구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
대구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
대구	달성군청소년센터	수련관	공공	위탁	(재)달성복지재단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
대구	동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대구	북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
대구	북구청소년회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
대구	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함께하는 마음재단
대구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
대구	팔공산맥섬석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팔공산맥섬석유스호텔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 주체	운영 주체	운영자(단체)
대구	중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대구중구청
인천	가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강화갯별나무청소년야영장	야영장	민간	직영	김선미
인천	강화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군시설관리공단
인천	강화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군시설관리공단
인천	강화남산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에버리치홀딩스
인천	강화성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재)성산청소년육성재단
인천	강화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이경래
인천	강화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조병돈
인천	검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계양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	그레이스힐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서울도시가스
인천	동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동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마니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지맨산업개발
인천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서해청소년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서해교문
인천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연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	수련관	공공	위탁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	화도마니청소년야영장	야영장	민간	직영	윤종식
인천	화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광주	광산구유스호텔	유스호텔	공공	위탁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광주	광산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흥사단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광주	남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광주	동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동구청장
광주	동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동구청장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영자(단체)
광주	북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한국인권센터
광주	빛고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광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서구청장
광주	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대전	갈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한국걸스카우트대전연맹
대전	대덕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대전	대덕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대전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수련원	공공	위탁	(사)대전청소년심신수련회
대전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대전YWCA
대전	도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대전흥사단
대전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대전YMCA
대전	삼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성광청소년문화회관
대전	유성구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공공	위탁	한국BBS대전충남연맹
대전	장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천주교유지단
대전	천주교살레시오회 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민간	직영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대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공공	위탁	대전주부교실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공공	위탁	대전YMCA
울산	공업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울산흥사단
울산	남목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울산기독교청년회
울산	동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한국유네스코울산광역시협회
울산	문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한국걸스카우트 울산연맹
울산	삼동배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사)삼동청소년회
울산	울산학생교육원	수련원	공공	직영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울산	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산	울주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산	중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울산YWCA
경기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사)한국청소년 한마음연맹
경기	가평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임문갑, 장명순
경기	가평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남상환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 주체	운영 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위탁	(재)대건청소년회
경기	경기도학생포천야영장	야영장	공공	직영	포천교육청
경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경기	고양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고양문화재단
경기	고양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고양YMCA
경기	고양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정철호
경기	곤지암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올림픽관광
경기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과천시청
경기	광림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광림교회
경기	광명1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좋은친구들
경기	광명5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경기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군포탁틴내일
경기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파주YMCA
경기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경기	국제광림비전랜드	수련원	민간	직영	광림교회 김정석
경기	군남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명진기업
경기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군포시청소년수련관
경기	권선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그린스포츠타운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이건혁(예소교역)
경기	그린캠프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양재철
경기	근로청소년복지관	특화시설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연맹
경기	금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파주문화원
경기	김포로그벨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김형금
경기	김포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나래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경기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남양주시공사
경기	뉴라이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정사무엘
경기	당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군포시민의모임
경기	대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오희택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덕평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신한개발
경기	덕풍2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청소년비전센터
경기	동두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동두천시장
경기	동안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드림아일랜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김재용(하나레저)
경기	딱따구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신필호/신평호
경기	만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만안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문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김동규
경기	미리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미리내
경기	베어스타운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양상욱
경기	부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BBS이천시지회
경기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부천문화재단
경기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부천문화재단
경기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부천문화재단
경기	북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평택YFC
경기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브띠프랑스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한홍섭(에프엔에프)
경기	비전빌리지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마임
경기	사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산정호수유스타운	수련원	민간	직영	이종욱
경기	상천에덴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김해성(한국기독교에덴성회)
경기	새싹동산청려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봉사회
경기	살롬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재)기독교대한가림유지재단
경기	서경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서경대학교
경기	서삼릉청소년야영장	야영장	민간	직영	(사)한국스카우트연맹
경기	서울YMCA일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재)서울YMCA
경기	서울시학생교육원	수련원	공공	직영	서울특별시교육청장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서평택 아츠벨리우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황선길
경기	석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선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아름다운 청소년들
경기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부천YMCA
경기	수동유스타운	수련원	민간	직영	박원희
경기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공공	위탁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수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스위트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조영희
경기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기	시흥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시흥YMCA
경기	신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아침햇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위탁	(주)바로교육문화
경기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경기	안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안산YWCA
경기	안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경기	안양블루몬테 유스호텔&리조트	유스호텔	민간	위탁	현대엠코주식회사
경기	안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평택YMCA
경기	양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경기	양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경기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양평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재)한국교육문화재단
경기	엄마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임계두
경기	여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차기원
경기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여주군수
경기	여주리치빌리지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리치빌리지
경기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	여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홍영광
경기	여주황학산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신재운
경기	연인산캠핑장	야영장	공공	위탁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경기	연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분당사회관장
경기	영산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재)순복음선교회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 주체	운영 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영안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양병희(대한예수교영안교회)
경기	영통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유린보은동산
경기	용두암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김성식
경기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용인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용인자연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한은규
경기	우리마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김영일
경기	원평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평택YMCA
경기	유네스코평화센터	수련원	민간	직영	한국유네스코위원회
경기	유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은곡유스타운	수련원	민간	직영	이민우
경기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열린청소년육성회
경기	의정부시청소년회관	수련관	공공	위탁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경기	이아마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이아마을
경기	일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경기	임진강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박찬명
경기	자연나라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사)동심
경기	자연문화체험수련장	야영장	민간	직영	(사)이시대의 좋은소리
경기	장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주)애타스아카데미	수련원	민간	직영	이관응
경기	중산힐스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중산힐스
경기	중앙(곤지암)야영장	야영장	민간	직영	(재)한국스카우트재단
경기	중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창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BBS이천시지회
경기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청심국제문화재단
경기	청운인성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이강조
경기	청학서당예절교육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서재욱
경기	코스모피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이세영
경기	통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 주체	운영 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파라다이스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윤천옥
경기	파인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파인리조트
경기	팽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평택YFC
경기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공공	위탁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수련관	공공	위탁	포천시시설관리공단
경기	포천염광수련원	수련원	민간	위탁	최주일
경기	하네테마파크	수련원	민간	직영	전학열
경기	한국민속촌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조원관광개발
경기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경기	한터캠프청소년수련의집	수련원	민간	직영	김용실
경기	흙브리지캐빈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삼성애버랜드
경기	흙프리지힐사이드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삼성애버랜드
경기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화성시문화재단
강원	O2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태백관광개발공사
강원	간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김춘광
강원	강릉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강릉시장
강원	강릉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강릉시장
강원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
강원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수련원	공공	위탁	한국스카우트강원연맹
강원	강원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천주교회 춘천교구
강원	강원도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천주교회 춘천교구
강원	강촌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정립
강원	강촌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위탁	(사)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
강원	고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속초YMCA
강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강원	기화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위탁	(주)산책 커뮤니케이션
강원	낙산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강원	대경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이순옥
강원	대관령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기세남
강원	도계청소년장학센터	문화의집	공공	직영	삼척시장
강원	동서울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동서울레스피아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록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 주체	운영 주체	운영자(단체)
강원	동해송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동해예총
강원	동해송지골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직영	동해시장
강원	동해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푸른동해
강원	동해항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동해예총
강원	둔내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로알관광
강원	문곡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한국청소년강원연맹
강원	방산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양구군수
강원	삼척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삼척시장
강원	상장청소년문화의집 (황지청소년장학센터)	문화의집	공공	위탁	한국청소년강원연맹
강원	설악산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설악산유스호스텔
강원	설악수련의집	수련원	민간	직영	문석민
강원	세계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개인
강원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속초YMCA
강원	속초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강원	신동청소년·아동 장학복지센터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강원연맹
강원	알프스수련의집	수련원	민간	직영	(주)우민
강원	양구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양구군수
강원	양구군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직영	양구군수
강원	양구남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양구군수
강원	양구동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양구군수
강원	양구읍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양구군수
강원	예동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경안개발
강원	오항리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위탁	춘천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강원	용평리조트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용평리조트
강원	원주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원주YMCA
강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원주YMCA
강원	원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금광교회
강원	유토피아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유토피아유스호스텔
강원	인제남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인제군수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영자(단체)
강원	인제미리내캠프	수련원	민간	직영	(주)미리내캠프
강원	인제북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인제군수
강원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정선군수
강원	중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강원	철암청소년문화의집 (철암청소년장학센터)	문화의집	공공	위탁	한국청소년강원연맹
강원	철원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철원군수
강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수련관	공공	위탁	춘천YMCA
강원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춘천YWCA
강원	춘천시청소년여행의집	유스호스텔	공공	위탁	춘천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강원	치악산드림랜드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공공	위탁	한국청소년야외활동협회
강원	치악산황둔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치악산리조트
강원	태백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한국청소년강원연맹
강원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평창군수
강원	평창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리드패밀리
강원	풍수원성당청소년야영장	야영장	민간	직영	재단법인천주교원주교구
강원	한국안전문화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한국안전문화수련원
강원	현대성우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현대시멘트
강원	호림오대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호림동산 평창점
강원	홍천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홍천군수
강원	홍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춘천YMCA
강원	홍천군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직영	홍천군수
강원	홍천대명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대명레저산업
강원	홍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직영	홍천군수
강원	화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아름다운청소년들
강원	횡성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문화협회
강원	휘닉스빌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보광
강원	춘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충북	괴산군청소년문화의 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괴산군수
충북	괴산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대한청소년충효단
충북	꽃동네사랑의연수원	수련원	민간	직영	(재)청주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영자(단체)
충북	단양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단양군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
충북	단양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민간	(주)단양유스호텔
충북	단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단양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회
충북	매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매포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회
충북	박달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이종진
충북	반딧불수련원	수련원	민간	민간	(주)반딧불수련원
충북	별방유스타운	수련원	민간	직영	최우성
충북	보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한국BBS충북연맹보은군지회
충북	사조마을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수안보사조마을
충북	서당골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최성은
충북	소백산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민간	(주)세촌 소백산유스호텔
충북	속리산알프스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속리산알프스수련원
충북	속리산유스타운	수련원	민간	직영	(주)계룡산업
충북	속리산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계룡산업
충북	송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일곡
충북	수련연수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박영화
충북	열림원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송영수
충북	영동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영동군수
충북	옥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옥천군수
충북	음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음성군수
충북	음성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직영	음성군수
충북	이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옥천군수
충북	일양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일양유스호텔
충북	제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충북	제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진각복지회
충북	증평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권세원
충북	증평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증평복지재단
충북	진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직영	진천군수
충북	청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옥천군수
충북	청소년수련원보람원	수련원	민간	직영	(재)오운문화재단 보람원
충북	청원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흥사단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영자(단체)
충북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한국청소년충북연맹
충북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학)주성학원
충북	청주향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민간	직영	충청북도향교재단
충북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수련관	공공	위탁	(학)주성학원
충북	충주호월악산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김지수
충북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수련원	공공	위탁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충북	태동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속리산알프스수련원
충북	학생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직영	제천교육지원청
충북	한국전통문화체험학교	수련원	민간	직영	박남병
충북	화양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화양청소년수련원
충북	후산리청소년야영장	야영장	민간	직영	이기철
충남	계룡산갑사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계룡산갑사유스호스텔
충남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공공	위탁	한국BBS대전충남연맹공주지부
충남	공주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공주유스호스텔
충남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충남	군포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직영	군포시장
충남	금산다락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금산군수
충남	꾸지나무골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꾸지나무골유스호스텔
충남	논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논산시장
충남	논산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논산시장
충남	당진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인천청소년재단
충남	당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당진군수
충남	대천오성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김병동
충남	도고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파라다이스도고지점
충남	독립기념관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직영	독립기념관
충남	마달피삼육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재)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
충남	만리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만리포청소년수련원
충남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보령시불교청소년연합회
충남	보령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충남	부여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부여군청소년수련원
충남	부여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재)부여군청소년수련원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 주체	운영 주체	운영자(단체)
충남	삼정부여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삼정관광호텔
충남	서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한서대학교
충남	서해안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재)서해안청소년수련원
충남	서해천수만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사)한국인성문화원
충남	아가페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아가페유스호스텔
충남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수련관	공공	위탁	(학)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충남	안면도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안면도유스호스텔
충남	안면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안면도청소년수련원
충남	안면도해양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안면도해양유스호스텔
충남	연기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연기군수
충남	예산저수지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직영	예산군수
충남	자연부여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자연부여유스호스텔
충남	천안상록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공무원연금공단
충남	천안용연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위탁	(사)JCI KOREA-동천안
충남	천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천안시장
충남	천안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천안시장
충남	천연휴식공간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전정길
충남	청양송의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충남	청포대썬셋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케이와이엠커뮤니티
충남	태안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태안군수
충남	합덕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대전카톨릭청소년회
충남	합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당진군수
충남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
충남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재)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충남	홍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
전북	(유)블루새들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유)블루새들유스호스텔
전북	고창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고창군수
전북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군산기독교청년회
전북	군산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군산기독교청년회
전북	금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김제시장
전북	김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김제시장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 주체	운영 주체	운영자(단체)
전북	김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김제시장
전북	남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남원YMCA
전북	남원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남원지리산유스호스텔
전북	대광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장흥기
전북	대한특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유)대한특전수련원
전북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흥사단
전북	만경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김제시장
전북	만경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전주안디옥교회
전북	만덕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원불교재단
전북	모악산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최지승
전북	무주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이장호
전북	무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전주카톨릭청소년육성회
전북	반딧불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직영	무주군수
전북	부안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부안군수
전북	선운산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공공	직영	고창군수
전북	섬진강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김성호
전북	성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고창군수
전북	세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조만석
전북	솔내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전주카톨릭청소년육성회
전북	순창군청소년센터	수련관	공공	직영	순창군수
전북	신태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정읍시장
전북	신평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민간	직영	권영세
전북	썬리치랜드청소년수련의집	수련원	민간	직영	김순오
전북	안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나누는사람들
전북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봉상청소년육영회
전북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완주군수
전북	익산YMCA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민간	직영	(재)익산YMCA
전북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익산YMCA
전북	임실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임실군수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 주체	운영 주체	운영자(단체)
전북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장수군수
전북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전북	정읍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정읍YMCA
전북	정읍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정읍시장
전북	정읍청소년문화체육관	문화의집	공공	직영	정읍시장
전북	정읍학생복지회관	수련관	공공	직영	정읍교육청장
전북	남원지리산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남원지리산유스호스텔
전북	죽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김제시장
전북	진안군마이산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위탁	(사)한국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전북지회 진안지회
전북	진안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한국YMCA전국연맹유지재단 진안YMCA
전북	채석강리조트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심기본
전북	청정테마센터	수련원	민간	직영	청인영농조합법인
전북	한국스카우트송광훈련장	야영장	민간	직영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전북	회문산청소년수련의집	수련원	민간	직영	윤병규
전북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아모스청소년회
전북	흥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고창군수
전남	고흥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고흥군수
전남	곡성군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위탁	(사)한빛청소년육성개발원
전남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공공	위탁	광양YMCA
전남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광양YMCA
전남	구례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구례군수
전남	구례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갯돌청소년육성회
전남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수련원	공공	위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전남	나주시청소년수련관(일송정)	수련관	공공	위탁	광주YMCA(광주기독교청년유지재단)
전남	담양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담양군수
전남	담양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성암청소년교육재단
전남	대나무골청소년야영장	야영장	민간	직영	대나무골야영장
전남	대한국독교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재)대한국독교청소년수련원
전남	도화청소년수련실	문화의집	공공	직영	고흥군수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 주체	운영 주체	운영자(단체)
전남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공공	위탁	목포YMCA
전남	목포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목포YMCA
전남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보성기독교청소년협회
전남	보성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임원택
전남	성암국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국제청소년수교육재단
전남	순천시유스호텔	유스호텔	공공	위탁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남	순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순천시청
전남	순천시청소년수련소	수련원	공공	위탁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남	순천시청소년수련소야영장	야영장	공공	위탁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남	스카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조동희
전남	신안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엘림코뮤니어
전남	여수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육성회여수지구회
전남	여수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여수YMCA
전남	영암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한국청소년인권센터
전남	옥정골쉼터청소년야영장	야영장	민간	직영	강낙현
전남	완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꿈틀
전남	완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전남	완도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전남	장흥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회진면사무소
전남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들청소년센터
전남	장흥군청소년수련방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장흥문화원
전남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사)남호청소년회
전남	진도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전남	함평군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직영	함평군수
전남	해남고도청소년수련실	문화의집	공공	위탁	고도마을회
전남	해남우수영유스호텔	유스호텔	공공	위탁	(사)월드유스비전해남군지부
전남	해남유스호텔	유스호텔	공공	위탁	자연사랑메아리
전남	해남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임창완
경북	리멤버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김성기
경북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경산시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 주체	운영 주체	운영자(단체)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	수련관	공공	위탁	(재)경북청소년육성재단
경북	경주시산내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공공	위탁	(사)청소년서라벌문화원 정보남
경북	경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경주시
경북	계림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송영일
경북	계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직영	경산시
경북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직영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경북	구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구미시
경북	구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사)청소년밝은세상
경북	국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국민관광농원
경북	군위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군위군
경북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김천시
경북	대현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김행조
경북	동궁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박순열
경북	동양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동양유스호스텔
경북	마락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마락마을발전협의회
경북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공공	위탁	문경시관광진흥공단
경북	문경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문경시
경북	문경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문경시관광진흥공단
경북	물도리에솔춘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길원개발
경북	보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보문청소년수련원
경북	보현청소년야영장	야영장	민간	직영	조정숙
경북	봉화군청소년센터	수련관	공공	직영	봉화군
경북	불국사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손우익
경북	상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상주시
경북	상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상주시
경북	상주학생야영장	야영장	공공	직영	상주교육청
경북	서라벌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삼봉개발 경주지점
경북	서울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윤형돈
경북	선유동유스센터	수련원	민간	직영	양병모
경북	성덕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재)성덕유지재단
경북	성도비치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최인석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영자(단체)
경북	세종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김춘희
경북	수하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직영	영양군
경북	신라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이종찬
경북	아지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직영	영주시
경북	아카데미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송옥현
경북	안동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북	안동예절학교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안동예절학교
경북	안양과학대학울진수련원	야영장	민간	직영	안양과학대학
경북	영덕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영덕군
경북	영덕군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직영	영덕군
경북	영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국BBS경상북도연맹
경북	영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영주시
경북	영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영천시
경북	영풍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김은희
경북	예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예천군
경북	옥계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직영	고령군
경북	울릉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울릉군
경북	울릉군청소년센터	수련관	공공	직영	울릉군
경북	울진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울진군
경북	울진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울진군
경북	의성군청소년센터	수련관	공공	직영	의성군
경북	제일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진성우
경북	청도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청도군문화체육시설사업소
경북	칠곡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칠곡군
경북	칠보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곽경수
경북	토함산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토함산유스호텔
경북	포시즌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윤선길
경북	포항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포항시
경북	포항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포항시
경북	한국관유스호텔	유스호텔	민간	직영	김정자
경북	한더울청소년야영장	야영장	민간	직영	김규태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 주체	운영 주체	운영자(단체)
경남	가배랑리조트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십오야
경남	가야연수원	수련원	민간	직영	(주)가야개발
경남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거제시시설관리공단
경남	거제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임춘남
경남	거제해와나루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해성 이성관
경남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사)흥사단
경남	거창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거창YMCA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한국스카우트연맹
경남	경호강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신영철
경남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고성군수
경남	금송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정청명
경남	김해수련장	수련원	민간	직영	이경훈
경남	김해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김해시시설관리공단
경남	김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김해시장
경남	남해바다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박희택
경남	남해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박희택
경남	남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직영	체육시설사업소
경남	노자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임만규(진영운)
경남	눌푸른전당	수련관	공공	위탁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남	대암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성진경
경남	대유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사)국제교육복지센터 보물상자
경남	덕유산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민간	김종원
경남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마산YMCA
경남	몽양당청학동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김보곤
경남	밀양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밀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범죄예방위원밀양지역협의회
경남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봉화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선진규
경남	부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윤영화
경남	사랑섬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권휘수
경남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영자(단체)
경남	소남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김경호
경남	아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안병의
경남	아멘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조주형
경남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양산시청
경남	양산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양산시청
경남	여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창원시장
경남	여항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심태희
경남	영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푸른쉼터장학재단
경남	옥색청소년야영장	야영장	민간	직영	학교법인 동래학원
경남	옥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거제시시설관리공단
경남	온누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김윤희
경남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공공	위탁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남	유스호스텔파래소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영남관광개발
경남	의령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박기곤, (주)남강레저
경남	자곡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사)경남사회진흥연수원
경남	지리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조임순
경남	진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하동군수
경남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진주시청
경남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창원시장
경남	진해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경남	진해청소년수련원	야영장	공공	위탁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창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푸른쉼터장학재단
경남	청학동고목당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김원석
경남	청학동명륜학당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김미경
경남	청학동서당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서흥석
경남	청학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이명희
경남	통영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한국해양소년단경남남부연맹
경남	하동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경남	한가람청소년야영장	야영장	민간	직영	이재웅
경남	한려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한대섭
경남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합천군수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록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 주체	운영 주체	운영자(단체)
경남	합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경남본부
경남	합천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심춘덕
경남	해운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해운개발
경남	홍의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사)경남청소년교육개발원
경남	황매산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위탁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
경남	황석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조종원
제주	C&P리조트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C&P리조트유스호스텔
제주	강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강정동마을회
제주	남국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직영	남국청소년수련원(신장실)
제주	남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노블렛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노블렛유스호스텔
제주	뉴코리아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세호
제주	대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도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도남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회
제주	도평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도평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회
제주	메이폴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이경철(개인)
제주	명도암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공공	직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모구리아영장	야영장	공공	직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법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법환동마을회
제주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한국스카우트연맹
제주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서귀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서귀포YWCA
제주	서귀포학생문화원야영장	야영장	공공	직영	제주도교육청장
제주	성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직영	신풍리마을회
제주	송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송산동청소년지도협의회
제주	신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아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아라동마을회
제주	아라마리조트 제주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김지인
제주	안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안덕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직영	대평리마을회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계속)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영자(단체)
제주	예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예래동청소년운영위원회
제주	용담1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용담1동노인회
제주	이도1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제주메트로프라자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메트로패밀리
제주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공공	직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직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제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위탁	한국스카우트연맹
제주	제주퍼니빌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아르본리조트
제주	조이빌제주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아트오브리빙
제주	중문에스피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중문에스피유스호스텔
제주	중문웰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중문웰유스호스텔
제주	추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토평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토평동마을회
제주	표선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하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한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직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화북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공공	위탁	화북동주민자치위원회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록

〈부록 4〉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

순번	시도명	쉼터명	유형 (일시, 단기, 중장기)	보호 성별 (남, 여)	운영주체	정원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립금천청소년쉼터	단기	여	(사)한국청소년연맹	20
2		신림중기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10
3		신림청소년쉼터	단기	남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20
4		서울특별시립이동청소년쉼터	일시(이동형)	남, 여	(사)한국청소년연맹	—
5		서울특별시립청소년일시쉼터	일시	남, 여	한국청소년육성회	—
6		강서청소년쉼터	단기	남	(사)새날청소년세상	8
7		강남구청소년쉼터	단기	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태화복지재단	15
8		노원구청소년쉼터	단기쉼터	여	천도교유지재단	6
9		어울림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민간운영	8
10		성심디딤돌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재)성심수도회	7
11		안젤라의집	중장기	여	(단)아씨시의프란치스코전교 수녀회	10
12	부산광역시	부산일시청소년쉼터	일시	남, 여	(재)박영학원	—
13		부산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재)박영학원	15
14		부산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	(재)불국토 청소년도량	15
15		부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영희네집)	중장기	여	(재)범어 청소년동네	10
16	대구광역시	대구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	(재)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10
17		대구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재)대구YMCA	10
18		달서구청소년쉼터	단기	남	(사)대구YWCA	15
19	인천광역시	인천청소년 단기청소년쉼터우리들	단기	남	한국근로청소년능력개발원	15
20		인천청소년 단기청소년쉼터바다의별	단기	남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15
21		인천여자 단기청소년쉼터하늘목장	단기	여	(사)대한청소년육성회	15
22		인천남자중장기쉼터 별마루	중장기	남	(재)인천가톨릭청소년회	7
23		인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하모니	단기	여	성산사랑의집	15
24		인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예꿈	중장기	여	성산사랑의집	10

〈부록 4〉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 (계속)

순번	시도명	쉼터명	유형 (일시, 단기, 중장기)	보호 성별 (남, 여)	운영주체	정원
25	인천광역시	인천일시청소년쉼터꿈꾸는별	일시	남, 여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
26		인천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일시	남, 여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
27	광주광역시	광주일시청소년쉼터	일시	남, 여	광주YWCA	—
28		광주단기남자청소년쉼터	단기	남	광주YMCA	10
29		광주중장기여자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7
30		광주단기여자청소년쉼터	단기	여	광주YWCA	10
3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청소년남자쉼터	단기	남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10
32		대전광역시청소년여자쉼터	단기	여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10
33		대전광역시청소년드롭인센터	일시	남, 여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
34		대전광역시이동일시청소년쉼터	이동일시 청소년쉼터	남, 여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
35		대전광역시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봉사회	7
36	울산광역시	울산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사)울산기독교사회봉사회	10
37		울산광역시청소년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재)천주교예수성심 전교수녀회	10
38		울산남구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	(사)울산기독교사회봉사회	10
39	경기도	남양주시일시청소년쉼터	일시	남, 여	(사)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선사 지회	—
40		의정부시청소년쉼터 십대지기	단기	남	(사)청소년 문화공동체 십대지기	15
41		의정부시청소년쉼터 십대지기	단기	여	(사)청소년 문화공동체 십대지기	15
42		안양시청소년쉼터 만들레 뜨락	일시	남, 여	(재)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
43		군포시청소년쉼터 하나로	중장기	남	(사회복지) 온누리 복지재단	10
44		성남시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단기	여	(사)청소년이아름다운세상	15
45		성남푸른청소년쉼터	단기	남	사회복지법인 안나의집	15
46		고양 열린 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선교감리교회	10
47		고양청소년쉼터 동지	단기	남	사단법인 행복한세상	15
48		안양시청소년쉼터 For You	단기	남, 여	(단)청소년쉼터 FOR YOU	15

〈부록 4〉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 (계속)

순번	시도명	쉼터명	유형 (일시, 단기, 중장기)	보호 성별 (남, 여)	운영주체	정원
49	경기도	용인시청소년쉼터	단기	남	(사)푸른꿈 청소년 상담원	15
50		용인시중장기 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사)푸른꿈청소년상담원	10
51		안산시청소년쉼터 자유세대	단기	남	(사)청소년의 하늘과 바다	15
52		안산시청소년쉼터 한신	단기	여	(사)들꽃청소년세상	15
53		수원시 청소년쉼터	단기	남	(사)참빛청소년상담마을	15
54		수원시여자단기쉼터	단기	여	(사)참빛청소년상담마을	15
55		평택시청소년쉼터	단기	여	(사)흥사단평택지부	15
56		부천시모퉁이청소년쉼터	단기	여	(재)성심수도회	12
57		시흥시청소년쉼터	단기	여	(사)청소년의하늘과 바다	15
58	강원도	강원도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 (보급자리)	중장기	남	천주교춘천교구 사회복지회	8
59		강원도중장기여자청소년쉼터 (루치아쉼터)	중장기	여	원주카톨릭 사회복지회	8
60		강원도단기남자청소년쉼터	단기	남	춘천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춘천YMCA)	15
61		강원도단기여자청소년쉼터	단기	여	춘천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춘천YMCA)	15
62	충청북도	청주청소년쉼터	단기	남	(재)한국 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유지재단	15
63		충북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한국청소년 충북연맹	7
64		청주노티나무청소년쉼터	단기	남	유스투게더	12
65	충청남도	천안청소년단기여자청소년쉼터	단기	여	(사)청소년만세	15
66		천안청소년단기남자청소년쉼터	단기	남	(사)청소년만세	15
67		천안청소년중장기 남자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사)청소년만세	12
68		아산옥련청소년쉼터	단기	남	(사)충남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	14
69	전라북도	전주푸른청소년쉼터	단기	여	(사)기독교 청소년협회	10
70		임마누엘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사)사랑자리	8

〈부록 4〉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 (계속)

순번	시도명	쉼터명	유형 (일시, 단기, 중장기)	보호 성별 (남, 여)	운영주체	정원
71	전라북도	전주한울안청소년쉼터	단기	남	(사)한울안운동	14
72	전라남도	여수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사)여수YWCA	7
73		목포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사)청소년과미래자립지원센터	15
74		유달단기여자청소년쉼터	단기	여	(사)청소년좋은세상	10
75	경상북도	경북청소년쉼터 (희망의샘터자리)	단기	여	(재)전주교안동교구 사회복지회	7
76		경상북도쉼터	단기	남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15
77		포항시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사)포항청소년복지회관	7
78		구미시청소년쉼터 느티나무	단기	여	(사)청소년밝은세상	12
79	경상남도	마야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	7
80		하라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사)하라	10
81		김해YMCA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	(단)김해YMCA	15
82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청소년쉼터	단기	여	(사)제주상담센터	10
83		성지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재단법인 성지문화재단	7
84		온누리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사회복지 법인 예담	7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부
록

2011 청소년백서 편집위원 및 집필진, 감수자 명단

기획 · 편집

박현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김병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사무관
 조선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문위원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배은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집필진(가나다순)

강구섭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강정민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강태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석병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류기욱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박현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배은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은선 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은미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이재복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
 이지연 통계청 사무관
 이진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실장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
 조규필 한국청소년상담원 조교수
 조중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팀장
 주익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감 수(가나다순)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교수
 유성렬 백석대학교 교수
 전명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부장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상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백서

발행인 | 김금래

발행처 | 여성가족부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기 획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전 화 02-2075-8621
디자인/인쇄 사회복지법인 해든디자인플러스(T.02-868-6854)
발 행 일 2011.12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102-10
www.mogef.go.kr

